

2017년 하반기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2017. 7.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 제1장 총칙

##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1-3 적용방법

-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 ①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 ②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 ③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 ④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 ⑤ 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 지세구분 내역표

구분 \ 지구		평탄지	야산지	산악지
지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협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협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협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협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조건	도로구배 통행	대소로(유)완만양호	대로(무)완급불편	대소로(무)극급극히불량
자연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호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불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편	불량 울창 불편
기타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리 " "	차도에서 1km이내 불편 " "	차도에서 1km이상 극히 불편 불가 "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증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A. 공통공사 .....	1
C. 지반개량공사 .....	11
D. 토공사 .....	17
E. 현장타설 콘크리트공사 .....	43
F.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	54
G. 관공사 .....	59
H. 배수공사 .....	69
I. 강구조공사 .....	78
J. 말뚝공사 .....	81
K. 교량공사 .....	85
L. 도로 및 포장공사 .....	89
N. 터널공사 .....	166
O. 하천 및 항만공사 .....	167
Q. 기타공사(1) .....	170
R. 기타공사(2) .....	171

## 대분류 A 공통공사

### ■ AA12\* 흙쌓기 및 헐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120.10000	흙쌓기 및 헐기	-	m <sup>3</sup>	1,421	26%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가설도로 축조를 위한 흙쌓기 및 헐기비용을 포함한다.
- ② 흙의 다짐 및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 ■ AA12\* 방진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100.20010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1.0m	m	8,792	32%
AD100.20015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1.5m	m	12,889	32%
AD100.20020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2.0m	m	17,305	32%
AD100.20025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2.5m	m	21,632	32%
AD100.20030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3.0m	m	25,960	32%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방진망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 ② 방진망, 철선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비계등의 가시설 비용은 제외한다.
- ④ 방진망 사용횟수 1회 기준의 단가이다.

■ AA21\* P.P마대 쌓기 및 헐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10.90000	p,p마대 쌓기 및 헐기	45×70cm	m <sup>2</sup>	37,235	9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흙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P.P(Poly Propylene)마대의 제작 및 쌓기, 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조수 및 유수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AA22\* 가도수로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20.20000	가도수로 설치	-	m	1,026	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도수로 설치전에 임시 도수로의 역할 및 비탈면 유실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재료비(P.E필름, T=0.1mm W=1.8m), 설치비 및 철거비를 포함한다.

■ AA22\* 물푸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20.50000	물푸기	-	hr	6,050	3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물푸기에 소요되는 펌프의 기계경비(연료비, 잡품, 기계손료), 운반비(목도운반),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펌프는 건설용펌프(자흡식, 파이프규격 Ø150mm), 동력은 디젤엔진(11.19kw)에 기준한다.
- ③ 펌프 운전공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AD24\* 토공규준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240.31000	토공규준틀	비탈규준틀	nr(개소)	29,737	96%
AD240.32000	토공규준틀	수평규준틀	nr(개소)	31,884	9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토공규준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제작, 가설, 철거(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AA27\* 낙하물 방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70.02000	낙하물 방지공	비계목	m <sup>2</sup>	5,513	8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낙하물 방지망의 해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비계목(L=3.6m), 아연도금 철망(#21), 밧, 못, 철선등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설치 높이는 7m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AA27\* 낙하물 방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70.02100	낙하물 방지공	강관(12개월)	m <sup>2</sup>	9,442	4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낙하물 방지망의 해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강관(∅48.6mm×2.4mm), 브라켓, 철선, 클램프, 낙하물방지망등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낙하물방지망(그물망)은 합성섬유재(폴리에틸렌)에 준하며, 구조물 첫 단(지상으로부터 약8m)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경비는 제외한다.

■ AA31\* 강관비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61000	강관비계	30m이하, 3개월이하	m <sup>2</sup>	13,798	76%

【단가정의】

- ① 강관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비계 및 비계발판(이동용 내부계단 포함)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강관비계(발판/내부계단 포함)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④ 설치높이 30m이하를 기준한다.

【단가보정】

- ①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강관비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16	1.49
노무비율	1	0.86	0.67

■ AA31\* 가설계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02100	가설계단	경사형, 3개월이하	m <sup>2</sup>	69,061	80%

【단가정의】

- ① 경사형 가설계단은 높이 6m이하에서 조립형 발판과 강관을 사용하여 경사형태로 조립, 설치,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이며, 단위는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다.
- ③ 가설계단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단가보정】

- ①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경사형 가설계단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18	1.55
노무비율	1	0.84	0.64

■ AA31\* 시스템비계 / 재료비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71000	시스템비계	30m이하	m <sup>2</sup>	8,340	98%

【단가정의】

- ① 시스템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비계 및 비계발판(이동용 내부계단 포함)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시스템 비계(비계발판 포함)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 ④ 설치높이 30m이하를 기준한다.

■ AA32\* 동바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20.01000	목재동바리	1회	공 m <sup>3</sup>	38,708	93%
AA320.11100	강관동바리	암거용(3개월)	공 m <sup>3</sup>	10,271	96%
AA320.21100	강관동바리	교량용(3개월)	공 m <sup>3</sup>	21,986	96%
AA320.51000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3개월)	m <sup>2</sup>	3,887	8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동바리용 자재의 공급, 설치 및 철거 비용이 포함된다.
- ② 목재동바리(길이 3.6-7m, 중경 12cm, 말구 12cm)의 설치높이는 7m이내, 강관동바리(직경 48.6mm×2.4mm)는 3.5m이내를 기준한 것이다.
- ③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는 1단설치에 준한다.
- ④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용회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목재동바리	1회	2회	3회	4회
표준시장단가	1	0.97	0.96	0.95
노무비율	1	1.03	1.04	1.05
강관동바리(암거용)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03	1.11	
노무비율	1	0.97	0.90	
강관동바리(교량용)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03	1.09	
노무비율	1	0.97	0.91	
강관동바리(수평연결재)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14	1.46	
노무비율	1	0.88	0.68	

■ AD42\* 시공측량말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424.10000	시공측량말뚝	5cm×5cm×30cm	nr(개소)	749	8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시공측량말뚝의 자재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AE11\* H파일 항타 및 항발 / 진동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E110.10300	H파일 항타 (진동식)	H=300×300, ℓ=3m이하	본	41,862	59%
AE110.10500	H파일 항타 (진동식)	H=300×300, ℓ=5m이하	본	50,639	58%
AE110.10800	H파일 항타 (진동식)	H=300×300, ℓ=8m이하	본	63,381	57%
AE110.11000	H파일 항타 (진동식)	H=300×300, ℓ=10m이하	본	68,969	56%
AE110.20300	H파일 항발 (진동식)	H=300×300, ℓ=3m이하	본	33,664	47%
AE110.20500	H파일 항발 (진동식)	H=300×300, ℓ=5m이하	본	38,050	47%
AE110.20800	H파일 항발 (진동식)	H=300×300, ℓ=8m이하	본	43,837	47%
AE110.21000	H파일 항발 (진동식)	H=300×300, ℓ=10m이하	본	49,807	4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진동식파일 해머에 의해 H파일을 항타 또는 항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발전비, 인건비,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③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H파일 자재구입 및 운반비
  - 소운반용 보조크레인 사용비용
- ④ 항타 또는 항발시 적용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 파일근입장(ℓ) : 각 규격별 길이
  - 토질 : 사질토 및 역질토
  - 파일크기(H) : 300×300
  - 작업조건은 다음의 장애요인중 2항목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하며, 장애요인이 3항목인 경우는 위 단가의 7%, 4항목인 경우는 14%를 할증한다.

no	조건	비고
1	가옥, 철도, 교량, 도로, 시설, 구조물 등에 의한 장애의 정도	작업중단의 유무 및 기계의 행동에 제약
2	현장의 넓이에 의한 작업난이 정도	기계의 이동, 널말뚝의 거치장소, 널말뚝의 세워넣기등에 충분한 넓이 부족
3	비계 상황에 따라 작업에 미치는 정도	연약지반등에 있어서 비계의 양부
4	시공규모	시공수량 50본 미만

■ AE13\* 토류관 설치 및 철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E300.10300	토류관 설치 및 철거 (T=6cm)	3개월미만	m <sup>2</sup>	42,044	60%
AE300.20300	토류관 설치 및 철거 (T=8cm)	3개월미만	m <sup>2</sup>	47,257	53%
AE300.00300	토류관 설치 및 철거 (T=10cm)	3개월미만	m <sup>2</sup>	52,997	48%
AE300.30300	토류관 설치 및 철거 (T=12cm)	3개월미만	m <sup>2</sup>	57,678	4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지하 터파기용 흙막이 공사시 토류관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토류관(할증포함)의 구입 및 운반, 공구손료, 소운반, 뒷채움 비용을 포함한다.
- ③ 토류관 설치규격은 다음 준한다.

토류관	규격
토류관 설치 및 철거(T=6cm)	육송, 60×150×2,000
토류관 설치 및 철거(T=8cm)	육송, 80×150×2,000
토류관 설치 및 철거(T=10cm)	육송, 100×150×2,000
토류관 설치 및 철거(T=12cm)	육송, 120×150×2,000

- ④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토류관(T=6cm)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표준시장단가	1	1.25	1.40
노무비율	1	0.80	0.71
토류관(T=8cm)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표준시장단가	1	1.28	1.46
노무비율	1	0.78	0.69
토류관(T=10cm)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표준시장단가	1	1.31	1.50
노무비율	1	0.76	0.67
토류관(T=12cm)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표준시장단가	1	1.33	1.53
노무비율	1	0.75	0.65

■ AE14\* 슈트파일 향타 및 향발 / 진동식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E141.4011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4, ℓ=11m이하	본	105,581	44%
AE141.4014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4, ℓ=13m이하	본	133,115	39%
AE141.4017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4, ℓ=16m이하	본	158,092	39%
AE141.4020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4, ℓ=20m이하	본	183,069	39%
AE141.3005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3, ℓ=5m이하	본	47,183	46%
AE141.3008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3, ℓ=8m이하	본	73,416	46%
AE141.3011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3, ℓ=11m이하	본	97,229	44%
AE141.3014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3, ℓ=13m이하	본	137,106	39%
AE141.3017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3, ℓ=16m이하	본	162,543	39%
AE141.30200	슈트파일 향타 (전동식)	Type3, ℓ=20m이하	본	187,971	39%
AE146.40150	슈트파일 향발 (전동식)	Type4, ℓ=15m이하	본	62,290	44%
AE146.40180	슈트파일 향발 (전동식)	Type4, ℓ=18m이하	본	74,911	39%
AE146.30150	슈트파일 향발 (전동식)	Type3, ℓ=15m이하	본	64,920	44%
AE146.30180	슈트파일 향발 (전동식)	Type3, ℓ=18m이하	본	77,951	3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전동식 진동파일 해머에 의해 슈트파일(강널말뚝)을 육상에서 향타 또는 향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발전비, 인건비,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③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슈트파일 자재구입 및 운반비
  - 소운반용 트럭크레인 사용비용
  - 전기 용접에 소요되는 비용
  - 직선형 기준틀 제작 및 사용비용
  - 췌기형 슈트파일 제작 및 사용비용

④ 향타 또는 향발시 적용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 향타길이( $\ell$ ) : 각 규격별 길이
- 토질 : 점성토
- 슈트파일 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규격	비고
슈트파일 Type3	400 × 150 × 13
슈트파일 Type4	400 × 170 × 15.5

- 작업조건은 다음의 장애요인중 1항목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하며, 장애요인이 2항목인 경우는 6%, 3항목인 경우는 위 단가의 13%를 할증한다.

no	조건	비고
1	가옥, 철도, 교량, 도로, 시설, 구조물 등에 의한 장애의 정도	작업중단의 유무 및 기계의 행동에 제약
2	현장의 넓이에 의한 작업난이 정도	기계의 이동, 널말뚝의 거치장소, 널말뚝의 세워넣기등에 충분한 넓이 부족
3	시공규모	시공수량 100본 미만

### ■ AE16\* H-Beam 설치 및 철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E160.00030	H-Beam설치 및 철거 (H=300~500)	3m미만	본	128,902	64%
AE160.00050	H-Beam설치 및 철거 (H=300~500)	3-5m이하	본	131,070	64%
AE160.00080	H-Beam설치 및 철거 (H=300~500)	6-8m이하	본	143,557	64%
AE160.00110	H-Beam설치 및 철거 (H=300~500)	9-11m이하	본	157,083	64%
AE160.00150	H-Beam설치 및 철거 (H=300~500)	12-14m이하	본	202,795	64%
AE160.00190	H-Beam설치 및 철거 (H=300~500)	15-18m이하	본	241,953	6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H-Beam(H=300~500)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② H-Beam 자재의 구입 및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분류 C**    **지반개량 공사**

■ **CG11\* 보강토옹벽/ 블록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CG110.10000	보강토옹벽/블록식	-	m <sup>2</sup>	98,114	6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식 보강토 옹벽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기초블록, 블록, 속채움, 뒷채움, 보강재, 유공관, 다짐, 마무리블록, 마감면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보강토 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의 재료구입 및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CG12\* 보강토옹벽 / 패널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CG120.10150	보강토옹벽/패널식	-	m <sup>2</sup>	286,515	2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보강토옹벽 시공에 소요되는 패널설치, 버팀목 제작/설치, 패널배면의 흙 고르기비용을 포함한다.
- ② 패널, 섬유보강재(보강띠), 빗장고리, 채움재, 앵커철근등 재료비와 재료의 운반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③ 패널규격은 일반형 PC패널(1.5m×1.5m)에 준한다.

■ CG5\*\* 옹벽(역T형)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CG520.13000	역T형 옹벽	(H)30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298,934	78%
CG520.13500	역T형 옹벽	(H)35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348,020	78%
CG520.14000	역T형 옹벽	(H)40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395,743	78%
CG520.1450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446,584	78%
CG520.1500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497,923	78%
CG520.1550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570,197	78%
CG520.1600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624,729	79%
CG520.1650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705,482	80%
CG520.1700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754,928	80%
CG520.1750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818,452	80%
CG520.1800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수평, 성토높이:0m	m	884,997	80%
CG520.23010	역T형 옹벽	(H)3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3.00m	m	308,543	78%
CG520.23020	역T형 옹벽	(H)3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6.00m이하	m	317,212	79%
CG520.23510	역T형 옹벽	(H)3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3.50m이하	m	357,630	78%
CG520.23520	역T형 옹벽	(H)3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7.00m이하	m	374,110	79%
CG520.24010	역T형 옹벽	(H)4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2.00m이하	m	407,139	78%
CG520.24020	역T형 옹벽	(H)4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4.00m이하	m	424,393	79%
CG520.24030	역T형 옹벽	(H)4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8.00m이하	m	446,798	80%
CG520.2451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13m이하	m	463,078	79%
CG520.2452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2.25m이하	m	480,710	80%
CG520.2453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4.50m이하	m	484,270	80%
CG520.2454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9.00m이하	m	530,770	81%
CG520.2501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25m이하	m	537,124	8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CG520.2502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2.50m이하	m	532,316	79%
CG520.2503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5.00m이하	m	565,853	81%
CG520.2504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0.00m이하	m	597,392	81%
CG520.2551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38m이하	m	596,126	80%
CG520.2552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2.75m이하	m	614,559	81%
CG520.2553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5.50m이하	m	626,827	81%
CG520.2554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1.00m이하	m	673,413	81%
CG520.2601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50m이하	m	685,338	80%
CG520.2602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3.00m이하	m	674,118	81%
CG520.2603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6.00m이하	m	719,677	81%
CG520.2604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2.00m이하	m	786,549	82%
CG520.2651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63m이하	m	742,318	80%
CG520.2652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3.25m이하	m	737,427	81%
CG520.2653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6.50m이하	m	778,383	81%
CG520.2654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3.00m이하	m	847,248	82%
CG520.2701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75m이하	m	813,846	81%
CG520.2702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3.50m이하	m	803,736	81%
CG520.2703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7.00m이하	m	850,834	81%
CG520.2704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4.00m이하	m	939,937	82%
CG520.2751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88m이하	m	912,610	82%
CG520.2752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3.75m이하	m	896,983	81%
CG520.2753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7.50m이하	m	920,476	81%
CG520.2754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5.00m이하	m	1,074,697	83%
CG520.2801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2.00m이하	m	993,406	81%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CG520.2802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4.00m이하	m	974,894	81%
CG520.2803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8.00m이하	m	1,054,516	82%
CG520.2804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8, 성토높이:16.00m이하	m	1,248,058	84%
CG520.33010	역T형 옹벽	(H)3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3.00m이하	m	303,721	78%
CG520.33020	역T형 옹벽	(H)3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6.00m이하	m	307,742	78%
CG520.33510	역T형 옹벽	(H)3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3.50m이하	m	352,776	78%
CG520.33520	역T형 옹벽	(H)3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7.00m이하	m	359,256	78%
CG520.34010	역T형 옹벽	(H)4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2.00m이하	m	399,697	78%
CG520.34020	역T형 옹벽	(H)4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4.00m이하	m	419,939	79%
CG520.34030	역T형 옹벽	(H)4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8.00m이하	m	428,531	80%
CG520.3451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13m이하	m	456,238	78%
CG520.3452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2.25m이하	m	472,267	79%
CG520.3453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4.50m이하	m	475,546	79%
CG520.34540	역T형 옹벽	(H)4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9.00m이하	m	505,504	80%
CG520.3501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2.50m이하	m	526,238	79%
CG520.3502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5.00m이하	m	527,596	79%
CG520.35030	역T형 옹벽	(H)5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0.00m이하	m	546,184	80%
CG520.3554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38m이하	m	579,182	79%
CG520.3551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2.75m이하	m	601,622	80%
CG520.3552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5.50m이하	m	608,640	80%
CG520.35530	역T형 옹벽	(H)5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1.00m이하	m	639,495	80%
CG520.3601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50m이하	m	671,602	81%
CG520.3602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3.00m이하	m	666,392	81%
CG520.3603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6.00m이하	m	669,658	8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CG520.36040	역T형 옹벽	(H)6.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2.00m이하	m	742,724	81%
CG520.3651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63m이하	m	726,759	81%
CG520.3652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3.25m이하	m	723,001	81%
CG520.3653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6.50m이하	m	730,307	81%
CG520.36540	역T형 옹벽	(H)6.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3.00m이하	m	812,510	81%
CG520.3701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75m이하	m	798,717	80%
CG520.3702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3.50m이하	m	813,944	81%
CG520.3703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7.00m이하	m	827,959	81%
CG520.37040	역T형 옹벽	(H)7.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4.00m이하	m	884,376	81%
CG520.3751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88m이하	m	862,730	80%
CG520.3752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3.75m이하	m	882,984	81%
CG520.3753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7.50m이하	m	896,181	81%
CG520.37540	역T형 옹벽	(H)7.5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5.00m이하	m	996,555	82%
CG520.3801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2.00m이하	m	974,514	82%
CG520.3802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4.00m이하	m	957,283	81%
CG520.3803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8.00m이하	m	1,025,917	81%
CG520.38040	역T형 옹벽	(H)8.0m, 사면경사:1:1.5, 성토높이:16.00m이하	m	1,110,725	82%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역T형 옹벽 설치에 소요되는 철근(현장가공및조립), 콘크리트, 거푸집, 부대작업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철근,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또한, 비계, 동바리 문양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비용을 제외한다.
- ③ 부대작업(채움제, 봉합재, 다웰바, 스페이서, 지수재, 수축줄눈)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표준도 및 적용기준】**

- ① 표준도 및 적용기준은 “도로옹벽표준도(국토교통부)”지침을 따른다.
- ②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 ③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체 (A)	<b>*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b>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ton	( )	400,715	( A1 )	· EE000.300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카, S=15	m <sup>3</sup>	( )	13,141	( A2 )	· EC220.12321
	무근콘크리트타설 /빈배합	m <sup>3</sup>	( )	24,425	( A3 )	· EC110.11002
	거푸집 /매끈한마감	m <sup>2</sup>	( )	32,474	( A4 )	· ED300.01000
	거푸집 /보통마감	m <sup>2</sup>	( )	27,795	( A5 )	· ED200.01000
	거푸집 /거친마감	m <sup>2</sup>	( )	22,836	( A6 )	· ED100.01000
소계		A1~A6의 합( ① )				
부대공 (B)	<b>* 실 설계수량 × 시중물가</b>					
	수축줄눈	m	( )	( )	( B1 )	
	채움재(스티로폼)	m <sup>2</sup>	( )	( )	( B2 )	
	봉합제(실런트)	m	( )	( )	( B3 )	
	다웰바	ea	( )	( )	( B4 )	
	지수재(수팽창고무)	m	( )	( )	( B5 )	
	스페이셔	m <sup>2</sup>	( )	( )	( B6 )	
소계		B1~B6의 합( ② )				
			※항목별 직접계상이 곤란한 경우는 본체공사비 ①의 5% 계상			
합계			① + ②			목적물 단위당단가

**대분류 D 토 공사**

**DA10\* 별개제근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100.00000	별개제근공	-	m <sup>2</sup>	315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깎기부 및 쌓기부의 수목뿌리를 뽑는 비용(별목제외)으로, 입목 본수도는 50~60%, 수경 10~20cm의 침엽, 잡목, 활엽 등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다만, 소각비용 등이 요구되는 경우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가로수 제거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DA2\*\* 별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210.10000	별목	5m미만	m <sup>2</sup>	429	93%
DA220.20000	별목	5~8m미만	m <sup>2</sup>	547	93%
DA230.30000	별목	8m이상	m <sup>2</sup>	731	9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나무베기, 잔가지정리, 집재를 위한 나무자르기, 집목(집재거리 100m이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뿌리뽑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집재거리 10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노무비를 30%씩 가산한다.

**DB\*\*\* 표토제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B100.00000	표토제거/답구간	T=20cm	m <sup>2</sup>	343	37%
DB200.00000	표토제거/답외구간	T=20cm	m <sup>2</sup>	210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토피 20cm까지의 표토를 장비로 제거하는 비용이다.
- ② 제거된 재료를 유용 또는 사토하기 위한 적재 및 운반비용은 흙운반에서 계상된다.

■ DC11\* 기존구조물 철거/ 철근콘크리트 깨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110.10000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	m <sup>3</sup>	30,751	71%
DC110.20000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	m <sup>3</sup>	37,549	6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시공에 의해 철근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철근의 절단, 들어내기, 소운반 비용을 포함하며, 철근고재의 매각대금을 공제한 단가이다. 공제조건은 철근고재의 발생량은 부피기준의 0.8%, 공제율은 80%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다만, 철거한 재료에 대한 적재 및 폐기물처리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철근콘크리트깨기 조건별(기계대인력비율)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깨기(30cm미만)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10%	2.41	1.08
인력20%	3.82	1.10
깨기(30cm이상)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10%	2.16	1.14
인력20%	3.31	1.18

■ DC12\* 기존구조물 철거/ 무근콘크리트 깨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120.10000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	m <sup>3</sup>	21,089	39%
DC120.20000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	m <sup>3</sup>	26,422	4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시공에 의해 무근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소운반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철거한 재료에 대한 적재 및 폐기물처리 비용은 제외한다.
- ③ 무근콘크리트깨기 조건별(기계대인력비율)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깨기(30cm미만)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10%	1.79	1.74
인력20%	2.58	2.03
깨기(30cm이상)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10%	1.61	1.65
인력20%	2.22	1.94

### ■ DC2\*\* 기존구조물 철거/ 기존포장 깨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210.10000	콘크리트포장 깨기	T=30cm미만	m <sup>3</sup>	22,531	70%
DC220.10000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미만	m <sup>3</sup>	9,548	64%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 도로의 포장을 철거하기 위한 기계깨기 비용으로 소운반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적재비 및 철거한 재료에 대한 폐기물처리 비용은 제외한다.

### ■ DC2\*\* 기존구조물 철거/ 포장 절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220.20000	포장절단/아스팔트	-	m	1,720	60%
DC210.20000	포장절단/콘크리트	-	m	1,877	59%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 포장깨기를 위해 절단하는 비용이며, 기계사용료 및 물운반비용을 포함한다.
- ② 이 단가의 절단깊이는 1차절단(50-75mm)을 기준한 것이다.

■ DC23\* 기존구조물 철거/ 보도블록(인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230.00000	보도블록	-	m <sup>2</sup>	2,054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보도블럭 포장의 인력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DC3\*\* 기존구조물 철거/ 석축철기(기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310.00000	석축철기	찰쌓기	m <sup>2</sup>	11,028	41%
DC320.00000	석축철기	메쌓기	m <sup>2</sup>	8,579	4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 석축(찰쌓기, 메쌓기)의 철거 비용으로 기계깨기와 운반을 위한 집토비용이 포함된다.
- ② 석축철기 조건별(기계대인력비율)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찰쌓기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50%	2.38	2.09
인력	3.76	2.38
메쌓기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50%	1.73	1.95
인력	2.47	2.33

■ DC4\*\* 기존구조물 철거/ 콘크리트관 깨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410.00000	콘크리트관 깨기	D=300mm이하	m	721	48%
DC420.00000	콘크리트관 깨기	D=300~500mm	m	982	47%
DC430.00000	콘크리트관 깨기	D=500mm초과	m	2,498	4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 콘크리트관의 깨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계깨기와 운반을 위한 집토비용등이 포함되며, 철거한 재료에 대한 적재 및 폐기물처리 비용은 제외한다.

■ DC72\* 기존구조물 철거/ 가드레일(인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720.10000	가드레일 철거	-	m	5,899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 가드레일의 인력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DC80\* 건설폐기물 파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800.00000	건설폐기물 파쇄	100mm	m <sup>3</sup>	4,776	2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콘크리트, 아스콘등)의 파쇄 비용으로 파쇄에 필요한 크래셔 투입 및 크래싱 비용이 포함된다.
- ② 기존 구조물의 철거비용과 건설폐기물의 크래셔 설치장까지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 ③ 크래셔 투입을 위한 추가 소할비용은 제외한다.

■ DC90\* 호안블록 헐기(인력 1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900.10000	호안블록헐기	-	m <sup>2</sup>	1,105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90%, 인력10%에 의한 호안블록 헐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DC90\* 돌망태 헐기(인력 1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900.20000	돌망태헐기	-	m <sup>2</sup>	1,806	6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90%, 인력10%에 의한 돌망태헐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DD\*\*\* 흙깎기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100.10000	흙깎기공/토사	중규모이하	m <sup>3</sup>	1,050	37%
DD100.20000	흙깎기공/토사	대규모	m <sup>3</sup>	909	30%
DD200.00000	흙깎기공/리핑암	-	m <sup>3</sup>	1,590	3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도저, 리퍼 등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소운반(운반거리 20m이하)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소운반이 아닌 흙의 외부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흙깎기공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중규모이하 : 공사수량이 100,000m<sup>3</sup> 미만인 경우
  - 대규모 : 공사수량이 100,000m<sup>3</sup> 이상인 경우
- ③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DD30\* 흙깎기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300.10000	흙깎기공/발파암 /미진동 암파쇄굴착	지발당 허용작약량 0.125kg/미만	m <sup>3</sup>	39,638	59%
DD300.20000	흙깎기공/발파암 /정밀진동제어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0.125~0.5kg미만	m <sup>3</sup>	26,322	61%
DD300.30000	흙깎기공/발파암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0.5~1.6kg미만	m <sup>3</sup>	16,188	63%
DD300.40000	흙깎기공/발파암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1.6~5.0kg미만	m <sup>3</sup>	10,347	53%
DD300.50000	흙깎기공/발파암 /일반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5.0~15.0kg미만	m <sup>3</sup>	7,366	46%
DD300.60000	흙깎기공/발파암 /대규모 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15kg이상	m <sup>3</sup>	5,532	40%
DD300.70000	흙깎기공/발파암 /확장발파	-	m <sup>3</sup>	20,501	43%

【단가정의】

- ① “DD300.10000 미진동암파쇄 굴착”은 특수화공품인 미진동 파쇄약(또는 미진동파쇄기)에 의해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후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 (1차)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2차)굴착에 필요한 장비사용료 및 소할비용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 ② “DD300.20000 정밀진동제어발파”는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후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폭약은 일반상용 에멀전폭약(Ø 25~50mm)에 준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 (1차)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2차)굴착에 필요한 장비사용료 및 소할비용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 ③ “DD300.30000 소규모 진동제어발파”와 “DD300.40000는 중규모 진동제어발파”는 폭약에 의해 암반에 균열 및 파쇄를 유도하는 공법으로, 폭

약은 일반상용 에멀전폭약(∅ 25~50mm)에 준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 또는 제외한다.

- 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 소할비용 및 시험발파비용은 제외

④ “DD300.50000 일반발파”와 “DD300.60000 대규모 발파”는 폭약에 의해 압반에 균열 및 파쇄를 유도하는 공법으로, 폭약은 일반상용 에멀전폭약(∅ 25~50mm)에 준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 또는 제외한다.

- 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포함
- 소할 및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은 제외

⑤ “DD300.70000 확장발파”는 진동제어발파 10%, 기계 90%에 의한 연암+보통암+경암의 평균 깎기비용으로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 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굴착에 필요한 장비사용료 및 소할비용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⑥ 소운반이 아닌 흙의 외부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⑦ 정밀진동제어발파(DD300.20000), 소규모 진동제어발파(DD300.30000), 중규모 진동제어발파(DD300.40000), 일반발파(DD300.50000), 대규모발파(DD300.60000)의 표준시장단기는 일반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 고속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와 이에 준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⑧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DD30\* 발파암 소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300.80000	발파암 소할	-	m <sup>3</sup>	1,176	2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발파암 유용량 1m<sup>3</sup>에 적용하는 소할단가이다.
- ② 이 단가는 유용량중 일부(15%이내)를 기계소할하는 조건의 단가이다.
- ③ 발파암 소할비용이 발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DE\*\*\* 터파기/ 인력 3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100.31110	터파기/육상토사	0-1m	m <sup>3</sup>	6,141	90%
DE100.31210	터파기/육상토사	0-2m	m <sup>3</sup>	7,080	91%
DE100.31310	터파기/육상토사	0-4m	m <sup>3</sup>	8,956	93%
DE100.33110	터파기/수중토사	0-1m	m <sup>3</sup>	11,795	91%
DE100.33210	터파기/수중토사	0-2m	m <sup>3</sup>	13,672	92%
DE100.33310	터파기/수중토사	0-4m	m <sup>3</sup>	17,425	94%
DE200.31310	터파기/육상리핑암	0-4m	m <sup>3</sup>	122,131	96%
DE200.33310	터파기/수중리핑암	0-4m	m <sup>3</sup>	217,054	97%
DE300.33310	터파기/수중발파암	0-4m	m <sup>3</sup>	299,000	9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구조물 터파기 토질별·깊이별 소요비용으로, 인력 30%, 기계 70%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DE\*\*\* 터파기/ 인력 1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100.11110	터파기/육상토사	0-1m	m <sup>3</sup>	2,788	72%
DE100.11120	터파기/육상토사	1-2m	m <sup>3</sup>	3,414	78%
DE100.11130	터파기/육상토사	2-3m	m <sup>3</sup>	4,041	82%
DE100.11140	터파기/육상토사	3-4m	m <sup>3</sup>	4,665	84%
DE100.11150	터파기/육상토사	4-5m	m <sup>3</sup>	5,289	85%
DE100.12110	터파기/용수토사	0-1m	m <sup>3</sup>	4,056	75%
DE100.12120	터파기/용수토사	1-2m	m <sup>3</sup>	4,995	81%
DE100.12130	터파기/용수토사	2-3m	m <sup>3</sup>	5,934	84%
DE100.12140	터파기/용수토사	3-4m	m <sup>3</sup>	6,872	86%
DE100.12150	터파기/용수토사	4-5m	m <sup>3</sup>	7,811	87%
DE100.13110	터파기/수중토사	0-1m	m <sup>3</sup>	4,950	80%
DE200.11110	터파기/육상리핑암	0-1m	m <sup>3</sup>	61,070	92%
DE200.11120	터파기/육상리핑암	1-2m	m <sup>3</sup>	64,418	92%
DE200.11130	터파기/육상리핑암	2-3m	m <sup>3</sup>	67,770	93%
DE200.11140	터파기/육상리핑암	3-4m	m <sup>3</sup>	71,120	93%
DE200.11150	터파기/육상리핑암	4-5m	m <sup>3</sup>	74,469	94%
DE200.12110	터파기/용수리핑암	0-1m	m <sup>3</sup>	73,755	94%
DE200.12120	터파기/용수리핑암	1-2m	m <sup>3</sup>	78,781	95%
DE200.12130	터파기/용수리핑암	2-3m	m <sup>3</sup>	83,804	95%
DE200.12140	터파기/용수리핑암	3-4m	m <sup>3</sup>	88,833	95%
DE200.12150	터파기/용수리핑암	4-5m	m <sup>3</sup>	93,856	95%
DE300.11110	터파기/육상발파암	0-1m	m <sup>3</sup>	75,915	93%
DE300.11120	터파기/육상발파암	1-2m	m <sup>3</sup>	79,266	94%
DE300.11130	터파기/육상발파암	2-3m	m <sup>3</sup>	82,616	94%
DE300.11140	터파기/육상발파암	3-4m	m <sup>3</sup>	85,967	93%
DE300.11150	터파기/육상발파암	4-5m	m <sup>3</sup>	89,317	9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구조물 터파기의 토질별·깊이별 소요비용으로, 인력 10%, 기계 90%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DE10\* 터파기/ 인력 1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100.11210	터파기/육상토사	0-2m	m <sup>3</sup>	3,101	75%
DE100.11220	터파기/육상토사	2-4m	m <sup>3</sup>	4,353	83%
DE100.11230	터파기/육상토사	4-6m	m <sup>3</sup>	5,604	86%
DE100.11240	터파기/육상토사	6-8m	m <sup>3</sup>	7,046	84%
DE100.11250	터파기/육상토사	8-10m	m <sup>3</sup>	8,296	86%
DE100.13210	터파기/수중토사	0-2m	m <sup>3</sup>	5,576	76%
DE100.13220	터파기/수중토사	2-4m	m <sup>3</sup>	8,078	83%
DE100.13230	터파기/수중토사	4-6m	m <sup>3</sup>	10,581	88%
DE100.13240	터파기/수중토사	6-8m	m <sup>3</sup>	13,346	87%
DE100.13250	터파기/수중토사	8-10m	m <sup>3</sup>	15,849	8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하천 구조물 터파기의 토질별 · 깊이별 소요비용으로, 인력 10%, 기계 90%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DE10\* 터파기/ 인력 1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100.11310	터파기/육상토사	0-4m	m <sup>3</sup>	3,727	80%
DE100.11320	터파기/육상토사	4m이상	m <sup>3</sup>	6,419	86%
DE100.13310	터파기/수중토사	0-4m	m <sup>3</sup>	6,828	86%
DE100.13320	터파기/수중토사	4m이상	m <sup>3</sup>	12,095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옹벽, 교량등 구조물 터파기의 토질별 · 깊이별 소요비용으로, 인력 10%, 기계 90%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DE\*\*\* 터파기/기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110.10000	터파기/육상토사	0-2m	m <sup>3</sup>	1,111	27%
DE120.10000	터파기/육상토사	0-4m	m <sup>3</sup>	1,111	27%
DE130.10000	터파기/육상토사	0-6m	m <sup>3</sup>	1,111	27%
DE140.10000	터파기/육상토사	6-10m	m <sup>3</sup>	1,323	27%
DE110.20000	터파기/용수토사	0-2m	m <sup>3</sup>	1,526	26%
DE120.20000	터파기/용수토사	0-4m	m <sup>3</sup>	1,526	26%
DE130.20000	터파기/용수토사	0-6m	m <sup>3</sup>	1,526	26%
DE140.20000	터파기/용수토사	6-10m	m <sup>3</sup>	1,821	26%
DE210.1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0-2m	m <sup>3</sup>	38,076	84%
DE220.1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0-4m	m <sup>3</sup>	38,076	84%
DE230.1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0-6m	m <sup>3</sup>	38,076	84%
DE240.1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6-10m	m <sup>3</sup>	38,247	84%
DE210.20000	터파기/용수리핑암	0-2m	m <sup>3</sup>	37,283	85%
DE220.20000	터파기/용수리핑암	0-4m	m <sup>3</sup>	37,283	85%
DE230.20000	터파기/용수리핑암	0-6m	m <sup>3</sup>	37,283	85%
DE240.20000	터파기/용수리핑암	6-10m	m <sup>3</sup>	37,517	85%
DE310.10000	터파기/육상발파암	0-2m	m <sup>3</sup>	39,683	81%
DE320.10000	터파기/육상발파암	0-4m	m <sup>3</sup>	39,683	81%
DE330.10000	터파기/육상발파암	0-6m	m <sup>3</sup>	39,683	81%
DE340.10000	터파기/육상발파암	6-10m	m <sup>3</sup>	40,007	81%
DE310.20000	터파기/용수발파암	0-2m	m <sup>3</sup>	39,489	80%
DE320.20000	터파기/용수발파암	0-4m	m <sup>3</sup>	39,489	80%
DE330.20000	터파기/용수발파암	0-6m	m <sup>3</sup>	39,489	80%
DE340.20000	터파기/용수발파암	6-10m	m <sup>3</sup>	39,935	79%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구조물 터파기의 토질별·깊이별 소요비용으로, 기계시공에 준한다.
- ② 리핑암 및 발파암 터파기는 착암기에 의한 암석절취비용(발파비, 기계사용료) 및 집토비용을 포함한다.
- ③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DF1\*\* 비탈면 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F110.00000	흙깎기의부대공 /비탈면고르기	토사	m <sup>2</sup>	2,115	64%
DF120.00000	흙깎기의부대공 /비탈면고르기	리핑암	m <sup>2</sup>	3,676	68%
DF130.00000	흙깎기의부대공 /비탈면고르기	발파암	m <sup>2</sup>	8,706	9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공기압축기, 브레이크, 에어호스 등 절토사면의 면고르기에 필요한 기계사용료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DF2\*\* 노상준비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F210.00000	흙깎기의부대공 /노상준비공	깎기부	m <sup>2</sup>	533	41%
DF220.00000	흙깎기의부대공 /노상준비공	기존도로부	m <sup>2</sup>	229	4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존 도로지역 및 토사, 리핑암 절토지역에 적용되며, 노상 형성, 끝마무리 및 보호에 소요되는 도저 및 리퍼 등에 의한 긁어 일으키기 비용, 모터그레이더 등에 의한 정리비용, 다짐용 로울러 사용비용 등을 포함한다.

■ D\*\*\*\* 흙운반

○ 토사운반(덤프15톤) 기준 표준단가표 (단위: 1m<sup>3</sup>당)

속도 거리	적재7 (km/hr)	적재10 (km/hr)	적재15 (km/hr)	적재20 (km/hr)	적재25 (km/hr)	적재30 (km/hr)	적재35 (km/hr)	적재50 (km/hr)	적재60 (km/hr)
	공차8 (km/hr)	공차15 (km/hr)	공차20 (km/hr)	공차25 (km/hr)	공차30 (km/hr)	공차35 (km/hr)	공차35 (km/hr)	공차55 (km/hr)	공차60 (km/hr)
1km당	2,127	1,276	911	708	580	490	457	304	266

- 1) 거리는 편도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표준시장단가를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함.
- 2) 단, 표준시장단가는 동거리를 왕복하여 운반하는 단가임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흙의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위 ②항의 비용은 “DS\*\*\* 흙운반(적재·적하)”의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 ④ 흙운반 도로조건에 따른 평균주행속도는 “표준품셈 토목부문 10-11 덤프트럭”의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의 기준을 따른다.
- ⑤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sup>3</sup>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토질분류 \ 장비규격	8톤	10.5톤	15톤	20톤	24톤	32톤
토사	32%	23%	-	-9%	-14%	-19%
리핑암	57%	46%	19%	8%	2%	-4%
발파암	98%	85%	50%	37%	29%	22%

② 노무비율은 다음 표를 따른다.

토질분류 \ 장비규격	8톤	10.5톤	15톤	20톤	24톤	32톤
토사	44%	36%	31%	25%	23%	18%
리핑암	44%	36%	31%	25%	23%	18%
발파암	44%	36%	31%	25%	23%	18%

③ 공종코드 작성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p>☞ 공종코드체계 : ① A A B C . * * * * *</p> <p>A 윤반종류 : 사토운반 (F3), 유용토운반 (I2), 순성토운반 (I3)</p> <p>B 토질종류 : 토사 (1), 리핑암 (2), 발파암 (3)</p> <p>C 장비규격 : 15톤 (1), 20톤 (2), 24톤 (3), 32톤 (4)</p> <p>☞ 예시 : DF311.*****</p> <p>* 사토운반, 토질(토사), 장비규격(15톤)</p>
--

④ 적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운반조건**

(A) 토질 : 리핑암, (B) 적재조건 : 로더+덤프24톤, (C) 운반장비 : 덤프 24톤  
 (D) 왕복거리 : 21.6km (E) 주행속도 : 17.5km/hr ~ 35km/hr (F) 운반량 : 1 m³

토취(사토)장	거리 (편도)	주행 속도	표준시장단가 (왕복)	
↓ ↑	0.45 (km)	적재15, 공차20 (km/hr)	410×(1+0.02) = 418원 ①	
토취(사토) 진입로	↓ ↑	4.3 (km)	적재35, 공차35 (km/hr)	1,965×(1+0.02) = 2,004원 ②
(a) 사거리	↓ ↑	4.7 (km)	적재35, 공차35 (km/hr)	2,148×(1+0.02) = 2,191원 ③ *
현장 진입로	↓ ↑	1.35 (km)	적재15, 공차20 (km/hr)	1,230×(1+0.02) = 1,255원 ④
현장			(5,868원)	

\* ③의 표준시장단가산정 (예시)

□ 조건 : (사토운반) ① 편도거리: 4.7km, ② 속도 35km/hr ③ 리핑암 ④ 덤프24톤

(1) 표준단가 산정 ( ①, ② )

- “주행속도”에 의한 표준단가 판정 ⇨ 457원/km
- 거리에 따른 단가보정 ⇨ 457원/km × 4.7km = 2,148원

(2) 토질, 장비규격에 따른 단가보정 ( ③, ④ )

- 표준단가 × 보정계수 (1 + 조건별 계수) = 2,148 × (1+0.02) = 2,191원

**(2) 비용산정**

- 1) 운반 표준시장단가 : ① + ② + ③ + ④ = 5,868원
- 2) 적재·대기 표준시장단가 : 2,895원
- 3) 합계 : 8,763원

■ D\*\*\*\* 흙운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I012.0003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30m이하)	m <sup>3</sup>	451	20%
DI012.0004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40m)	m <sup>3</sup>	751	20%
DI012.0005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50m)	m <sup>3</sup>	1,076	20%
DI012.0006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60m)	m <sup>3</sup>	1,428	20%
DI012.0007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70m)	m <sup>3</sup>	1,816	20%
DI012.0008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80m)	m <sup>3</sup>	2,243	20%
DI012.0009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90m)	m <sup>3</sup>	2,716	20%
DI012.0010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 (L=100m)	m <sup>3</sup>	3,238	2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집토거리 20m이하에 대한 비용은 무대로서 공제된 조건의 단가이다.
- ③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sup>3</sup>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④ 표준시장단가를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저 운반거리 30m이하는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적용기준】

- ①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흙운반(도저) 단가 = 표준단가 ×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계수

토질분류 \ 장비규격	32ton	19ton
토사	1	1.2
리핑암	1.7	2.1
발파암	3.3	4.0

- ② 노무비율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흙운반(도저) 노무비율 = 표준 노무비율 ×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계수

토질분류 \ 장비규격	32ton	19ton
토사	1	1.4
리핑암	1	1.4
발파암	1	1.4

■ DS\*\*\* 흙운반(적재·적하) (집토후 상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S100.1008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로더+덤프8톤	m <sup>3</sup>	1,211	41%
DS100.1010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로더+덤프105톤	m <sup>3</sup>	1,265	37%
DS100.1015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로더+덤프15톤	m <sup>3</sup>	1,299	33%
DS100.1020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로더+덤프20톤	m <sup>3</sup>	1,378	30%
DS100.1024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로더+덤프24톤	m <sup>3</sup>	1,439	28%
DS100.1032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로더+덤프32톤	m <sup>3</sup>	1,593	24%
DS200.1008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로더+덤프8톤	m <sup>3</sup>	2,318	40%
DS200.1010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로더+덤프105톤	m <sup>3</sup>	2,450	36%
DS200.1015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로더+덤프15톤	m <sup>3</sup>	2,563	33%
DS200.1020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로더+덤프20톤	m <sup>3</sup>	2,752	30%
DS200.1024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로더+덤프24톤	m <sup>3</sup>	2,895	28%
DS200.1032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로더+덤프32톤	m <sup>3</sup>	3,237	25%
DS100.2008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백호+덤프8톤	m <sup>3</sup>	1,677	46%
DS100.2010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백호+덤프105톤	m <sup>3</sup>	1,796	41%
DS100.2015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백호+덤프15톤	m <sup>3</sup>	2,156	35%
DS100.2020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백호+덤프20톤	m <sup>3</sup>	2,326	31%
DS100.2024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백호+덤프24톤	m <sup>3</sup>	2,453	29%
DS100.2032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백호+덤프32톤	m <sup>3</sup>	2,754	25%
DS200.2008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백호+덤프8톤	m <sup>3</sup>	2,483	46%
DS200.2010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백호+덤프105톤	m <sup>3</sup>	2,671	41%
DS200.2015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백호+덤프15톤	m <sup>3</sup>	3,243	35%
DS200.2020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백호+덤프20톤	m <sup>3</sup>	3,513	31%
DS200.2024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백호+덤프24톤	m <sup>3</sup>	3,714	29%
DS200.20320	흙운반(적재·적하)/리핑암	백호+덤프32톤	m <sup>3</sup>	4,181	26%
DS300.20080	흙운반(적재·적하)/발파암	백호+덤프8톤	m <sup>3</sup>	4,323	52%
DS300.20100	흙운반(적재·적하)/발파암	백호+덤프105톤	m <sup>3</sup>	4,341	51%
DS300.20150	흙운반(적재·적하)/발파암	백호+덤프15톤	m <sup>3</sup>	5,494	42%
DS300.20200	흙운반(적재·적하)/발파암	백호+덤프20톤	m <sup>3</sup>	5,753	40%
DS300.20240	흙운반(적재·적하)/발파암	백호+덤프24톤	m <sup>3</sup>	5,941	38%
DS300.20320	흙운반(적재·적하)/발파암	백호+덤프32톤	m <sup>3</sup>	6,454	3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③ 집토후 상차에 따른 흙운반시를 기준으로 하며, 로더 또는 백호에 의한 상차비를 포함한다.
- ④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sup>3</sup>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DS\*\*\* 흙운반(적재·적하) (직상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S101.2008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덤프8톤	m <sup>3</sup>	928	49%
DS101.2010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덤프10.5톤	m <sup>3</sup>	1,048	41%
DS101.2015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덤프15톤	m <sup>3</sup>	1,146	36%
DS101.2020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덤프20톤	m <sup>3</sup>	1,317	29%
DS101.2024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덤프24톤	m <sup>3</sup>	1,444	26%
DS101.20320	흙운반(적재·적하)/토사	덤프32톤	m <sup>3</sup>	1,741	2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③ 백호가 굴착한 흙을 별도의 상차장비 없이 덤프트럭에 직접 상차하는 경우의 단가로서, 백호에 의한 굴착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sup>3</sup>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DF3\*\* 잔토처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F310.00000	잔토처리	토사	m <sup>3</sup>	578	33%
DF320.00000	잔토처리	리핑암	m <sup>3</sup>	740	33%
DF330.20000	잔토처리	발파암(연암)	m <sup>3</sup>	1,377	33%
DF330.10000	잔토처리	발파암(보통암)	m <sup>3</sup>	1,578	3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관 부설시 터파기와 되메우기후 잔여 토사를 운반거리 20m이내의 지정장소에 버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DG10\* 흙쌓기공/ 다짐도 9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G100.10000	흙쌓기/토사	다짐도90%이상	m <sup>3</sup>	1,417	4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다짐도 90%의 건조밀도를 얻기 위하여 흙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조절하기 위한 살수비용도 포함한다.
- ③ 이 단가는 다짐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④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DG10\* 흙쌓기공/ 다짐도 95%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G100.20000	흙쌓기/토사	다짐도95%이상	m <sup>3</sup>	1,852	4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다짐도 95%의 건조밀도를 얻기 위하여 흙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조절하기 위한 살수비용도 포함한다.
- ③ 이 단가는 다짐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④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DG10\* 흙쌓기공/ 비다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G100.30000	흙쌓기/토사	비다짐	m <sup>3</sup>	664	3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도저 등 장비에 의한 정지비용으로 운반은 흙운반에서 계상된다.
- ②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③ 흙의 적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DH11\* 퇴메우기 및 다짐공(기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H110.00000	퇴메우기/토사	다짐	m <sup>3</sup>	4,071	78%
DH110.00010	퇴메우기/토사	비다짐	m <sup>3</sup>	857	3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구조물의 기계 퇴메우기 및 다짐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② 다짐은 다짐상태의 토량, 비다짐은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③ 퇴메우기 조건별(기계대인력비율)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단, 노무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적용)

다짐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10%	1.31	1.10
인력30%	1.92	1.20
인력	4.06	1.32
비다짐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기계	1	1
인력10%	1.69	2.06
인력30%	3.07	2.76
인력	7.90	3.23

■ DI11\* 성토면 고르기(인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I110.00000	성토면 고르기	-	m <sup>2</sup>	1,182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성토부 비탈면의 인력 고르기 비용이 포함된다.

■ DI14\* 교대앞 성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G140.00000	교대앞 성토	-	m <sup>3</sup>	4,657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교량부 교대앞 성토시 소요되는 성토재의 기계포설, 살수 및 다짐비가 포함된다. 성토재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DI52\* 토목용섬유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I520.00000	매트부설(육상)	하천호안용	m <sup>2</sup>	108	100%
DI540.00000	매트부설(육상)	연약지반용	m <sup>2</sup>	165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매트의 육상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② 매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③ 매트의 봉합, 차광막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DI61\* 뒷채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I610.00000	뒷채움/부설밧다짐	-	m <sup>3</sup>	5,987	9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뒷채움재의 기계부설 및 다짐비용으로, 뒷채움재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DI90\* 층따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I900.10000	층따기	-	m <sup>3</sup>	960	3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층따기에 필요한 도우져 등 장비의 비용이다.

■ DI90\* 쌓기 비탈면 다짐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I900.20000	쌓기비탈면다짐	-	m <sup>2</sup>	824	4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성토부 범면 다짐에 필요한 유압식 진동 콤팩트, 백호우 등의 기계사용료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DJ11\* 비탈면보호공/ 줄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J110.00000	비탈면보호공	줄떼	m <sup>2</sup>	3,985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법면보호를 위한 줄떼의 재료비, 소운반, 기타 식재에 필요한 제비용이 포함된다.

■ DJ12\* 비탈면보호공/ 평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J120.00000	비탈면보호공	평떼	m <sup>2</sup>	9,924	8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법면보호를 위한 평떼의 재료비, 소운반, 기타 식재에 필요한 제비용이 포함된다.

■ DJ21\* 비탈면보호공/ 씨앗뿌어붙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J210.00000	씨앗뿌어붙이기 (Seed spray)	-	m <sup>2</sup>	1,605	4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비탈면 녹화를 위해 씨앗뿌어붙이기(Seed Spray)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씨앗붙어붙이기에 소요되는 재료(종자, 비료, 피복재, 침식방지안정제, 색소등)의 구입 및 운반비와 시공전의 비탈면 정리 및 청소, 소운반, 종자살포에 소요되는 기계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③ 다만, 거적덮기, 펌프 및 탑재용 트럭의 기계경비, 살수양생, 객토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DJ24\* 비탈면보호공/ 거적덮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J240.00000	거적덮기	-	m <sup>2</sup>	2,198	2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비탈면 보호를 위한 종자살포시 종자의 유실방지를 위한 거적  
덮기 비용으로서 재료비(벧짚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소운  
반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DJ31\* 식생기반재 취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J310.01010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	T=1cm, 토사	m <sup>2</sup>	14,731	46%
DJ310.01020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	T=2cm, 토사	m <sup>2</sup>	17,386	48%
DJ310.02030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	T=3cm, 리핑암	m <sup>2</sup>	23,841	47%
DJ310.02050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	T=5cm, 리핑암	m <sup>2</sup>	34,806	4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법면보호를 위한 유실방지네트 설치 및 식생기반재 취부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유실방지네트(D5, 25×25) 및 고정핀, 녹화용 토양(식생기반재, 혼합종자고  
분자 수지등)의 구입 및 운반비, 설치비, 잡재료 및 공구손료가 포함된다.
- ③ 면고르기, 관수 비용은 제외한다.
- ④ 수직고 20m이하에 준한다.

■ DJ44\* 비탈면 보호공 / 절토사면녹화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J441.00050	절토사면녹화	발파암(T=5cm)	m <sup>2</sup>	30,058	53%
DJ441.00070	절토사면녹화	발파암(T=7cm)	m <sup>2</sup>	41,276	49%
DJ441.00100	절토사면녹화	발파암(T=10cm)	m <sup>2</sup>	45,881	48%
DJ441.00150	절토사면녹화	발파암(T=15cm)	m <sup>2</sup>	55,903	4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법면보호를 위한 고정핀, 착지핀, 부착망(PVC코팅), 철선(PVC코팅), 녹화기반제(유기자연토양), 양생제(섬유소), 안정제(침식방지제), 단립제(구조성형), 종자(6종혼합)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② 앵커핀 및 착지핀 홀 천공시 드릴 및 비트손료를 포함하며, 면고르기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수직고 20m이하에 준한다.
- ④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⑤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에는 노무비에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 직 고	20-30m미만	30-50m미만	50m이상
할 증 율 (%)	20	30	40

## 대분류 E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사

### ■ EC\*\*\* 콘크리트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C110.11002	무근콘크리트타설	빈배합(leanmix)	m <sup>3</sup>	24,425	100%
EC120.11001	무근콘크리트타설	-	m <sup>3</sup>	25,573	100%
EC220.11001	철근콘크리트타설	-	m <sup>3</sup>	27,932	97%
EC150.11001	무근콘크리트타설	소형구조물	m <sup>3</sup>	41,441	100%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하며, 레미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② 인력비빔타설, 기계비빔타설등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③ EC110.11002 무근콘크리트 타설(빈배합)은 무근 콘크리트 타설(VIB제외), 바닥콘크리트 타설등에 적용한다.

### ■ EC\*\*\* 콘크리트타설/펌프카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C120.12321	무근콘크리트타설 /펌프카	슬럼프 15 (100m <sup>3</sup> 이상/일)	m <sup>3</sup>	11,759	76%
EC220.12321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카	슬럼프 15 (100m <sup>3</sup> 이상/일)	m <sup>3</sup>	13,141	77%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붓타설) 및 다짐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레미콘 재료비,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 및 보양비용은 제외한다.
- ③ 배관으로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슬럼프값 또는 일일타설량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카)	슬럼프 15				슬럼프 8-12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표준시장단가	0.92	1	1.07	1.28	0.96	1.05	1.14	1.37
노무비율	1.07	1	0.95	0.83	1.04	0.96	0.90	0.79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카)	슬럼프 15				슬럼프 8-12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표준시장단가	0.91	1	1.08	1.34	0.95	1.05	1.15	1.43
노무비율	1.08	1	0.94	0.80	1.04	0.96	0.90	0.76

### ■ EC7\*\* 비탈면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C000.70010	비탈면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1:1.2~1:1.8 (1:1.2를 포함)	m <sup>3</sup>	53,503	70%
EC000.70020	비탈면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1:1.2보다 급한 경우	m <sup>3</sup>	79,951	72%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도수로, 산마루 측구 등)의 콘크리트 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콘크리트 타설, 다짐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③ 레미콘 재료비, 양생비, 잡재료비(급경사시 와이어메쉬)는 제외한다.

■ ED\*\*\* 거푸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D300.01000	거푸집/매끈한마감	0 ~ 7m	m <sup>2</sup>	32,474	65%
ED340.01000	거푸집/매끈한마감/곡면	0 ~ 7m	m <sup>2</sup>	52,902	73%
ED200.01000	거푸집/보통마감	0 ~ 7m	m <sup>2</sup>	27,795	66%
ED100.01000	거푸집/거친마감	0 ~ 7m	m <sup>2</sup>	22,836	64%
ED420.01000	거푸집/무늬거푸집	0 ~ 7m	m <sup>2</sup>	33,559	6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거푸집의 준비, 조립 및 철거를 위한 제비용이 포함된다.
- ② 매끈한 마감, 보통마감, 거친마감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격	전용회수	적용기준
매끈한마감	2~3회	T형보, 난간,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슬래브, 교대, 교각, 옹벽, 파라펫트, 날개벽 등 약간 복잡하거나 복잡한 구조 (견고하고 미려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보통마감	4회	측구, 수로, 확대기초,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안전하고 견고한 기능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거친마감	6회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극히 간단한 구조(외관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

- ③ “ED300 거푸집/매끈한마감”, “ED200 거푸집/보통마감”, “ED100 거푸집/거친마감”은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m<sup>3</sup>미만)인 경우에는 노무비를 3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④ 거푸집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초과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 ED41\* 강제 거푸집(D=3m)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D410.01000	강제거푸집(D=3m)	0 ~ 7m	m <sup>2</sup>	35,392	9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강제 거푸집의 제작,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강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으로 하며, 강재는 두께(T) = 3.2mm에 준한다.
- ③ 인력거치 및 해체시를 기준으로 하며, 장비조합 거치 및 해체시(교량의 교각 및 코핑부위)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거푸집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초과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 ED43\* 유로폼 거푸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D430.01000	거푸집/유로폼	0 ~ 7m	m <sup>2</sup>	22,607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거푸집의 준비, 조립 및 철거를 위한 제비용이 포함된다.
- ② 거푸집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초과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 ED44\*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D441.09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기초맞슬라브	φ900	nr(개소)	46,982	79%
ED441.12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기초맞슬라브	φ1200	nr(개소)	52,152	78%
ED441.15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기초맞슬라브	φ1500	nr(개소)	63,269	78%
ED441.18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기초맞슬라브	φ1800	nr(개소)	76,534	78%
ED441.21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기초맞슬라브	φ2100	nr(개소)	90,262	78%
ED442.09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벽체	φ900	nr(개소)	111,983	61%
ED442.12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벽체	φ1200	nr(개소)	145,677	61%
ED442.15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벽체	φ1500	nr(개소)	178,385	61%
ED442.18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벽체	φ1800	nr(개소)	211,839	61%
ED442.21000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벽체	φ2100	nr(개소)	233,773	59%

【단가정의】

- ① 합성수지(P.E) 원형 맨홀거푸집의 구입(운반포함), 조립, 해체비용을 포함한다.
- ② 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에 준한다.
- ③ 벽체의 높이는 1m에 준한다.

■ EE00\* 철근 가공 및 조립 / 현장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E000.10000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간단	ton	314,903	99%
EE000.20000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ton	350,016	98%
EE000.30000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복잡	ton	400,715	98%
EE000.40000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매우복잡	ton	430,523	9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철근의 소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비용을 포함하며, 철근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또한,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m<sup>3</sup>미만)에서는 노무비를 3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가보정】

- ① 단일공사에 있어 “철근가공 및 조립”의 전체수량이 10ton 미만일 경우 위 단가의 115%를 적용한다.

■ EE71\* 특수한 이음 / 나사식 이음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E710.03000	나사식 이음	직경 16~25mm	nr(개소)	5,855	10%
EE710.04000	나사식 이음	직경 29~35mm	nr(개소)	6,650	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나사식 철근이음의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EE73\* 철근인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E730.01000	철근인상	H=30m미만	ton	23,587	28%
EE730.02000	철근인상	H=30~60m미만	ton	27,929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교각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기계경비가 포함된다.

■ EE80\* 와이어메쉬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E800.00000	와이어메쉬	-	m <sup>2</sup>	443	8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와이어메쉬의 현장내 소운반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다만, 와이어메쉬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② 와이어메쉬 설치비가 콘크리트포장의 예와 같이 단위공종별 단가의 일부로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중복하여 적용치 않는다.

■ EF42\* 지수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F420.00000	지수판	200×5	m	24,714	6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P.V.C. 지수판(200×5) 및 신축이음(1000×1000×20mm)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EF61\* 조인트 / 스티로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F610.00500	조인트 / 스티로폼	T=5mm	m <sup>2</sup>	1,517	94%
EF610.01000	조인트 / 스티로폼	T=10mm	m <sup>2</sup>	1,903	81%
EF610.02000	조인트 / 스티로폼	T=20mm	m <sup>2</sup>	2,987	7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교량 슬래브 및 교대의 신·구 콘크리트 접합부에 설치되는 스티로폼, 접착제의 재료비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 EF80\* 조인트 / 다웰바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F800.17010	다웰바	신축이음부 (D25×L1000)	ea(개)	11,632	77%
EF800.26050	다웰바	접속슬라브 (D25×L600)	ea(개)	25,923	3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조인트 시공시에 소요되는 다웰바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신축이음부의 다웰바 설치비는 다웰바 및 다웰캡의 설치, 철근가공조립, PVC파이프 설치비용을 포함하며, 아래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다만, 철근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다웰바(Dowelbar) : 직경(25mm) × 길이(1000mm)
  - 다웰캡(Dowelcap)
  - 브라운 아스팔트
  - PVC파이프
- ③ 접속슬라브의 다웰바 설치비는 다웰바 설치, 철근가공조립 비용을 포함하며, 아래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다만, 철근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다웰바(Dowelbar) : 직경(25mm) × 길이(600mm)
  - 타르페이퍼

- 브라운 아스팔트
- Steel파이프
- 방진고무판

■ ER13\* 슬라브양생/ 피막양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R130.10000	교량표면처리 /슬라브양생	피막양생	m <sup>2</sup>	447	3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교량슬라브의 표면양생을 위한 양생재의 재료비 및 설치 인건비가 포함된다.
- ② 단 동절기의 경우, 보온덮개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계상한다.

■ ER13\* 교량표면처리/ 슬라브면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R130.30000	교량표면처리 /슬라브면고르기	테크피니셔	m <sup>2</sup>	474	3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테크피니셔(교량용)를 이용하여 교량 슬래브 면고르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슬라브 두께는 T=25cm에 준한다.

■ ER22\* 스페이서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R220.12000	스페이서	벽체용	m <sup>2</sup>	303	5%
ER220.11000	스페이서	슬라브 및 기초	m <sup>2</sup>	152	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스페이서(콘크리트)의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② 벽체용은 두께(T) = 150mm, 슬라브 및 기초는 두께(T) = 120mm에 준한다.

■ ER40\* 신구-콘크리트 접합(인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R400.00000	신구-콘크리트접합	-	m <sup>2</sup>	47,001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신구-콘크리트 접합에 소요되는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치핑 및 접착비용을 포함한다.
- ② Epoxy 접착제, 신너등 신구 콘크리트 접합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와 치핑 및 접합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구손료를 포함한다.

■ ER40\* 시공이음면 정리(콘크리트 치핑)(인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R400.50000	시공이음면정리 (콘크리트치핑)	-	m <sup>2</sup>	21,810	9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치핑 및 기구손료를 포함한다.

■ ER50\*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인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R500.00000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	m <sup>3</sup>	223,333	8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무수축 모르타르의 인력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무수축 혼화제의 구입 및 운반비, 배합 및 치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포함된다.
- ③ 다만, 모래 및 시멘트의 구입 /운반비는 제외된다.

■ ER60\*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인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R600.00000	무수축 콘크리트	-	m <sup>3</sup>	311,093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무수축 콘크리트의 인력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무수축 혼화제의 구입 및 운반비, 배합 및 치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포함된다.
- ③ 다만, 모래 및 시멘트의 구입/운반비는 제외된다.

## 대분류 F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 ■ FB\*\*\* PSC빔 제작(부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B001.01000	PSC빔 제작부재	빔 제작대	m	67,616	67%
FB001.02000	PSC빔 제작부재	콘 조립	조	183,575	13%
FB001.03000	PSC빔 제작부재	쉬즈관 조립 (Ø66mm)	m	8,943	81%
FB001.04000	PSC빔 제작부재	인장작업 (12-Ø12.7mm)	케이בל당	47,954	95%
FB001.05000	PSC빔 제작부재	그라우팅 (Ø66mm)	m	2,666	81%
FB001.06000	PSC빔 제작부재	강재거푸집	m <sup>2</sup>	35,285	9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PSC빔 제작부재별(빔 제작대, 쉬즈관, PC콘, 인장, 그라우팅, 강재거푸집)별 소요비용을 포함한다.
- ② 빔 제작대는 제작·설치비와 기초잡석 부설비를 포함하며, 재료(각재, 판재, 꺾쇠, 못)의 구입·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빔 제작대의 설치 폭은 2m 이내를 기준한다.
- ④ 쉬즈관은 제작·설치비를 포함하며, 재료(쉬즈관, 결속선)의 구입·운반비를 포함한다.
- ⑤ 인장작업은 인장 및 기계손료 비용을 포함한다.
- ⑥ 그라우팅은 배합·설치비와 기계사용료를 포함하며, 재료(시멘트, 혼화제)의 구입·운반비를 포함한다.
- ⑦ 강재거푸집은 제작·설치·철거비를 포함하며, 재료(강재거푸집)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FB\*\*\* PSC빔 제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B601.02500	PSC빔 제작	25m	본	8,709,708	77%
FB601.03000	PSC빔 제작	30m	본	11,408,050	77%
FB701.03500	PSC빔 제작	35m	본	14,597,036	7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PSC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재료(철근, 콘크리트, PSC강연선)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보강재(Soleplate) 구입 및 설치비는 제외한다.
- ④ 부대작업(빔 제작장, 몰탈비빔, PVC파이프, 용접 및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단 빔제작장 조성시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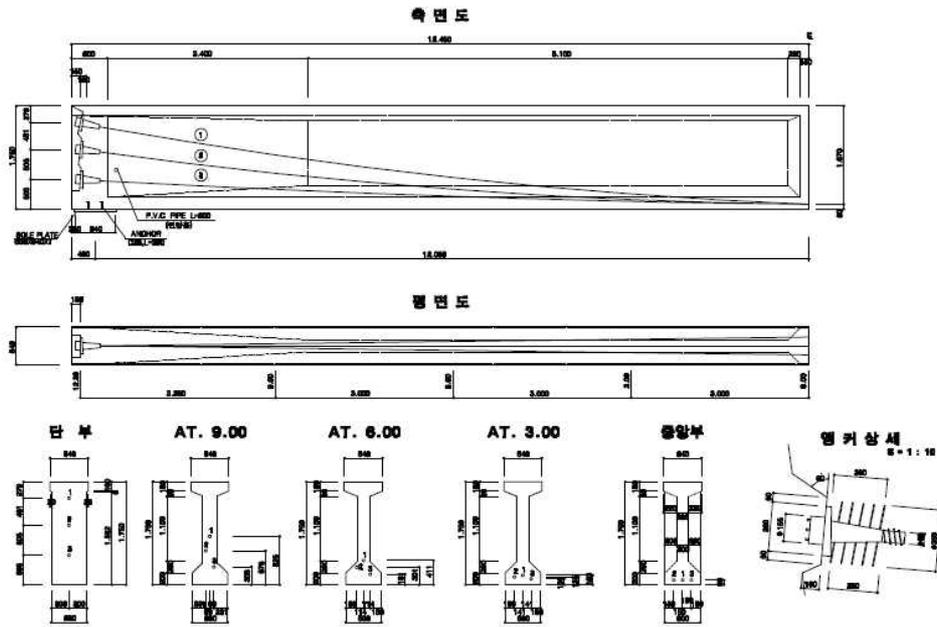
【표준도 및 적용기준】

- ①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 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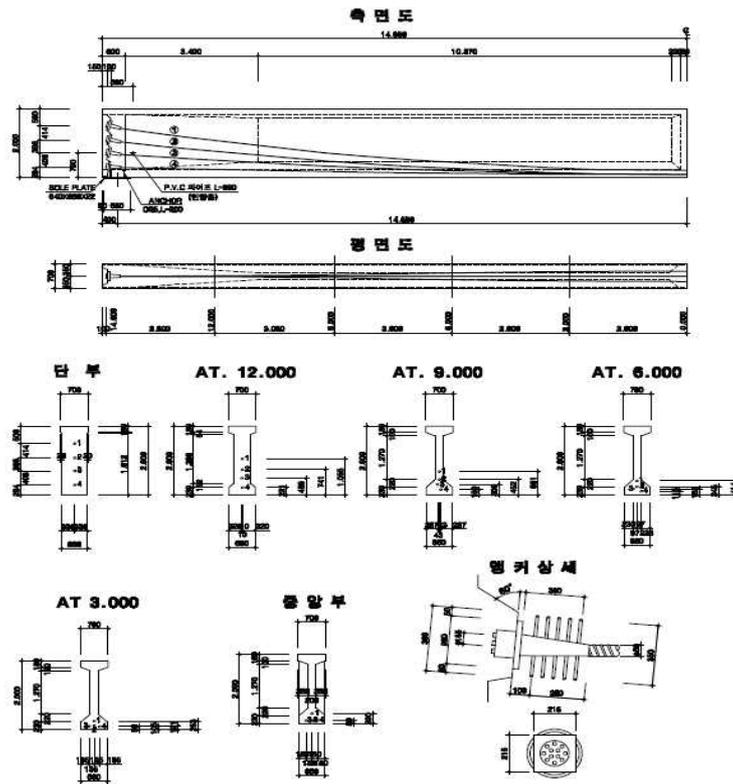
②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체 (A)			*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			
	빔 제작대	m	( )	67,616	( A1 )	· FB001.01000
	쉬즈관 조립	m	( )	8,943	( A2 )	· FB001.03000
	콘 조립	조	( )	183,575	( A3 )	· FB001.02000
	인장 작업	케이블당	( )	47,954	( A4 )	· FB001.04000
	그라우팅	m	( )	2,666	( A5 )	· FB001.05000
	강재거푸집 (PSC빔용)	m <sup>2</sup>	( )	35,285	( A6 )	· FB001.06000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 )	400,715	( A7 )	· EE000.30000
	철근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S=15	m <sup>3</sup>	( )	13,141	( A8 )	· EC220.12321
	소계		A1~A8의 합( ① )			
부대공 (B)			* 실 설계수량 × 시중물가			
	몰탈비빔	m <sup>3</sup>	( )	( )	( B1 )	
	PVC파이프	m	( )	( )	( B2 )	
	빔 제작장 조성	본	( )	( )	( B3 )	· 임대료제외
	용접 및 검사	m	( )	( )	( B4 )	
	소계		B1~B4의 합( ② ) ※항목별 직접계상이 곤란한 경우는 본체공사비 ①의 2% 계상			
합계		① + ②			목적물 단위당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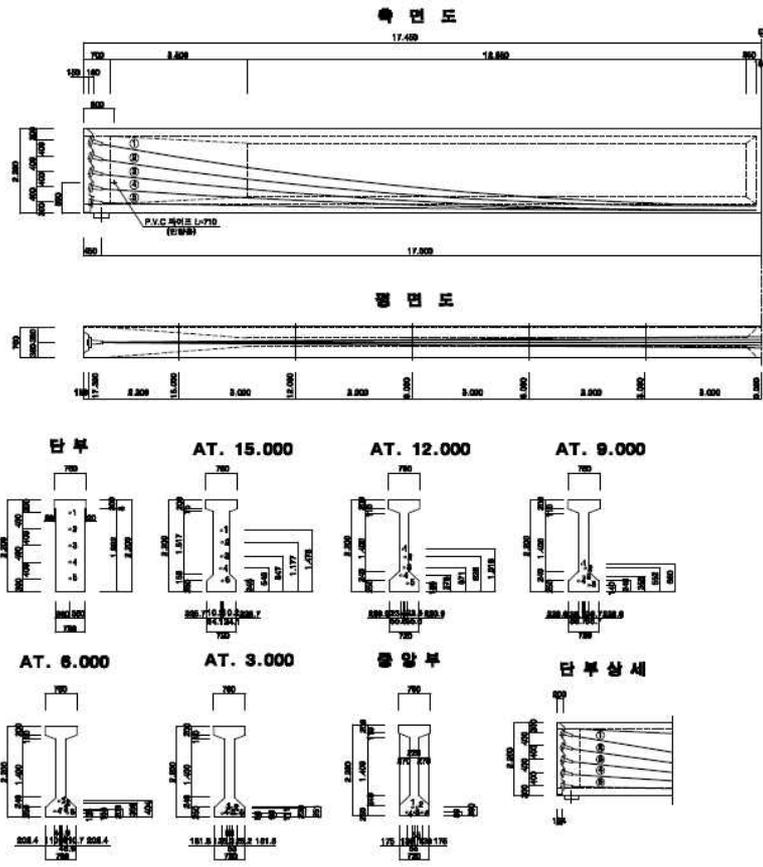
③ 표준도



<PSC BEAM(L=25m) 표준도>



<PSC BEAM(L=30m) 표준도>



<PSC BEAM(L=35m) 표준도>

## 대분류 G 관 공사

### GA\*\*\* 흙관 접합 및 기계부설(P.E 수밀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A210.025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25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29,046	40%
GA210.030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30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35,323	38%
GA210.035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35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39,256	39%
GA210.040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40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43,260	42%
GA310.045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45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46,009	40%
GA310.050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50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60,047	39%
GA310.060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60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79,737	40%
GA410.07000	흙관 기계부설 및 접합	ø700mm,기초무, PE수밀밸트 접합	m	88,706	41%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P.E 수밀밸트 접합 및 기계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직관A형), 접합부속물(P.E 수밀밸트, 볼트)의 구입 및 운반비, 흙관 절단, 관 접합 및 기계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등 토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수압을 받지 않는 하수도 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관 길이는 2.5m에 준한다.
- ④ 이 단가는 작업방해가 없는 대단위의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GB\*\*\* 주철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B200.00800	주철관	ø8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4,951	85%
GB200.01000	주철관	ø10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5,239	85%
GB200.01500	주철관	ø15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8,484	88%
GB200.02000	주철관	ø20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9,413	55%
GB300.03000	주철관	ø30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10,717	61%
GB300.04000	주철관	ø40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19,329	67%
GB400.05000	주철관	ø50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24,221	71%
GB400.06000	주철관	ø60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27,898	74%
GB400.07000	주철관	ø700mm,토사기초, KP매카니칼접합	m	30,952	7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주철관의 KP매카니칼 접합 및 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수압시험 및 상수관 경고용 테이프를 포함한다.
- ② 주철관, K.P접합부속물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등 토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④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GB\*\*\* 주철관 절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B200.00801	주철관 절단	ø80mm	nr(개소)	19,979	95%
GB200.01001	주철관 절단	ø100mm	nr(개소)	20,504	94%
GB200.01501	주철관 절단	ø150mm	nr(개소)	23,422	94%
GB200.02001	주철관 절단	ø200mm	nr(개소)	27,955	94%
GB300.03001	주철관 절단	ø300mm	nr(개소)	34,612	95%
GB300.04001	주철관 절단	ø400mm	nr(개소)	40,673	95%
GB400.05001	주철관 절단	ø500mm	nr(개소)	47,292	95%
GB400.06001	주철관 절단	ø600mm	nr(개소)	54,178	94%
GB400.07001	주철관 절단	ø700mm	nr(개소)	56,681	9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주철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GD00\* 배수파이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D000.05000	배수파이프	P.V.C. ø50mm	m	71	100%
GD000.10000	배수파이프	P.V.C. ø100mm	m	239	100%
GD000.15000	배수파이프	P.V.C. ø150mm	m	556	100%
GD000.25000	배수파이프	P.V.C. ø250mm	m	1,374	100%
GD000.30000	배수파이프	P.V.C. ø300mm	m	1,873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옹벽 배수시설에 필요한 P.V.C.관의 설치비로서, 재료(P.V.C. 관)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GD02\* PVC 이중벽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D020.15000	PVC 이중벽관	ø150mm	m	16,065	6%
GD020.20000	PVC 이중벽관	ø200mm	m	23,310	6%
GD020.25000	PVC 이중벽관	ø250mm	m	35,383	7%
GD020.30000	PVC 이중벽관	ø300mm	m	45,948	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PVC 이중벽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수압을 받지 않는 오수공사에 적용한다.
- ② PVC 이중벽관, PVC DC 고무링, PVC DC 소켓의 구입 및 운반비와 관의 절단 및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소운반, 기구손료, 잡재료비, 자재할증비용을 포함한다.
- ③ 관로의 터파기, 모래부설 및 다짐, 되메우기, 잔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GE\*\*\* GRP관 접합 및 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E000.00200	GRP관 접합 및 부설	200mm	m	67,877	27%
GE000.00250	GRP관 접합 및 부설	250mm	m	76,545	20%
GE000.00300	GRP관 접합 및 부설	300mm	m	91,102	19%
GE000.00350	GRP관 접합 및 부설	350mm	m	105,635	17%
GE000.00400	GRP관 접합 및 부설	400mm	m	112,937	14%
GE000.00450	GRP관 접합 및 부설	450mm	m	133,623	14%
GE000.05000	GRP관 접합 및 부설	500mm	m	146,284	14%
GE000.06000	GRP관 접합 및 부설	600mm	m	185,577	13%
GE000.07000	GRP관 접합 및 부설	700mm	m	222,595	1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GRP관(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관) Glass-Reinforced Thermosetting Plastics Pipe)의 접합 및 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직관 및 이음구의 구입/운반비, 관의 소운반/절단/접합/부설비, 그리고 모래의 구입/운반/부설비를 포함한다.
- ③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비용은 제외한다.
- ④ 시공시 적용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 관경 200mm이하는 인력부설, 관경 200mm초과는 기계부설에 준한다.
  - 수압을 받지않는 비압력관에 준한다.

■ GG10\* 스테인레스관 / 나사접합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G100.02500	나사접합	D=25mm	nr(개소)	9,792	99%
GG100.03000	나사접합	D=30mm	nr(개소)	12,840	99%
GG100.04000	나사접합	D=40mm	nr(개소)	13,912	99%
GG100.05000	나사접합	D=50mm	nr(개소)	14,817	99%
GG100.07500	나사접합	D=75mm	nr(개소)	21,400	99%
GG100.10000	나사접합	D=100mm	nr(개소)	28,307	9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나사접합관 접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접합자재비(불건성패킹제) 및 소운반,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② 다만,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등 토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GI\*\*\* 주철관 이음쇠 / 플랜지 접합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I110.00750	플랜지 접합	D=75mm	nr(개소)	10,852	73%
GI210.01000	플랜지 접합	D=100mm	nr(개소)	18,517	69%
GI210.01500	플랜지 접합	D=150mm	nr(개소)	22,687	67%
GI210.02000	플랜지 접합	D=200mm	nr(개소)	24,925	65%
GI310.03000	플랜지 접합	D=300mm	nr(개소)	33,730	58%
GI310.04000	플랜지 접합	D=400mm	nr(개소)	48,004	49%
GI310.05000	플랜지 접합	D=500mm	nr(개소)	63,014	44%
GI310.06000	플랜지 접합	D=600mm	nr(개소)	132,472	36%
GI310.07000	플랜지 접합	D=700mm	nr(개소)	163,963	3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플랜지 조인트관 접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접합자재(고무패킹, 볼트, 너트, 조합페인트) 구입비 및 소운반,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② 다만,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등 토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GI\*\*\* 주철이형관(시멘트라이닝 탁터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I110.108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80mm	nr(개소)	22,368	57%
GI210.110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100mm	nr(개소)	26,502	57%
GI210.115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150mm	nr(개소)	37,705	57%
GI210.120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200mm	nr(개소)	50,627	57%
GI310.130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300mm	nr(개소)	68,894	57%
GI310.140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400mm	nr(개소)	101,490	45%
GI310.150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500mm	nr(개소)	133,867	45%
GI310.160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600mm	nr(개소)	172,491	43%
GI310.17000	주철이형관 접합및부설	ø700mm	nr(개소)	219,304	4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주철 이형관(KP접합)의 접합 및 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접합부속품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주철 이형관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GR03\* 내충격 수도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R030.00250	내충격 수도관	D=25mm, 기초무	m	4,649	66%
GR030.00400	내충격 수도관	D=40mm, 기초무	m	9,853	65%
GR030.00500	내충격 수도관	D=50mm, 기초무	m	13,508	63%
GR030.00750	내충격 수도관	D=75mm, 기초무	m	17,087	30%
GR032.01000	내충격 수도관	D=100mm, 모래기초	m	24,913	11%
GR032.01500	내충격 수도관	D=150mm, 모래기초	m	45,510	17%
GR032.02000	내충격 수도관	D=200mm, 모래기초	m	60,008	2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수압을 받는 내충격수도관을 인력에 의해 접합, 부설, 절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모래기초는 모래의 구입, 운반, 부설비용과 수압시험비를 포함한다.
- ③ 내충격 수도관(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HIVP) : 직관/일반관)의 구입 및 운반비용을 포함한다.
- ④ 이탈방지장치(편수이탈방지압륜)의 설치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GR04\*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R040.003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300mm, 콘크리트기초90°	m	12,487	74%
GR040.004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400mm, 콘크리트기초90°	m	13,755	74%
GR040.0045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450mm, 콘크리트기초90°	m	15,244	74%
GR040.005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500mm, 콘크리트기초90°	m	20,509	74%
GR040.006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600mm, 콘크리트기초90°	m	20,536	75%
GR040.007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700mm, 콘크리트기초90°	m	23,490	76%
GR040.008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800mm, 콘크리트기초90°	m	26,124	76%
GR040.009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900mm, 콘크리트기초90°	m	33,655	79%
GR040.010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1000mm, 콘크리트기초90°	m	36,785	80%
GR040.011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1100mm, 콘크리트기초90°	m	42,166	81%
GR040.01200	레진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1200mm, 콘크리트기초90°	m	49,323	8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PRC ; Polyester resin concrete pipe) 접합 및 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레진콘크리트관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고무링, 지수화제등 부속자재의 구입 및 운반비, 관의 접합 및 부설비, 콘크리트 기초(레미콘 구입/운반비제외)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④ 시공시 적용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 기계부설에 준한다.
  - 수압을 받지않는 비압력관에 준한다.
  -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관길이는 본당 2.5m에 준한다.

■ GR07\* 흠관철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R071.00300	흠관철거	D-300MM	m	12,478	100%
GR071.00400	흠관철거	D-400MM	m	9,471	75%
GR071.00450	흠관철거	D-450MM	m	11,469	75%
GR071.00500	흠관철거	D-500MM	m	14,764	75%
GR071.00600	흠관철거	D-600MM	m	18,283	78%
GR071.00700	흠관철거	D-700MM	m	20,852	79%
GR071.00800	흠관철거	D-800MM	m	26,634	80%
GR071.00900	흠관철거	D-900MM	m	34,108	81%
GR071.01000	흠관철거	D-1000MM	m	34,699	82%
GR071.01200	흠관철거	D-1200MM	m	46,233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원심력콘크리트관(흠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관의 재사용을 위한 철거비용으로, D-300mm이하는 인력시공, D-300mm초과는 기계시공에 준한다.
- ③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대분류 H 배수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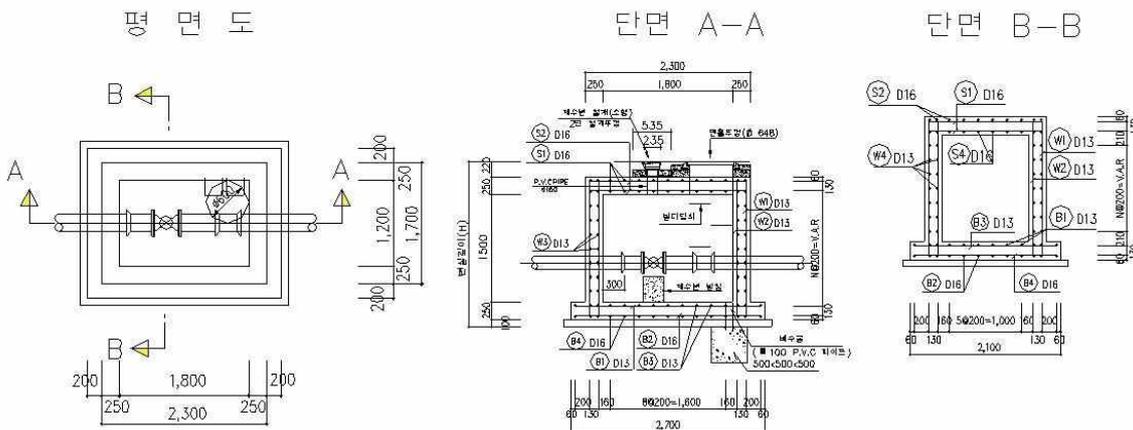
## HB2\*\* 변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B231.10000	제수변실	1.8×1.2	nr(개소)	2,287,979	55%
HB231.20000	제수변실	2.5×2.0	nr(개소)	3,084,050	54%
HB231.30000	공기변실	1.2×1.2	nr(개소)	1,689,270	55%
HB213.10000	이토변실	1.2×1.2	nr(개소)	1,733,98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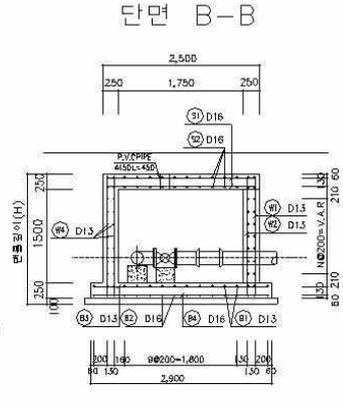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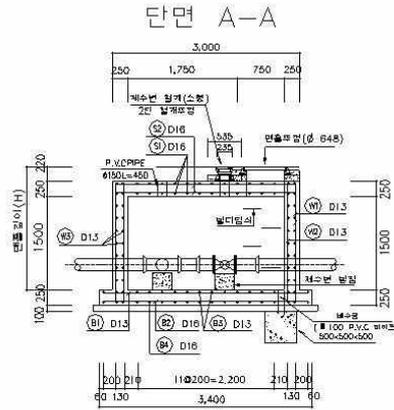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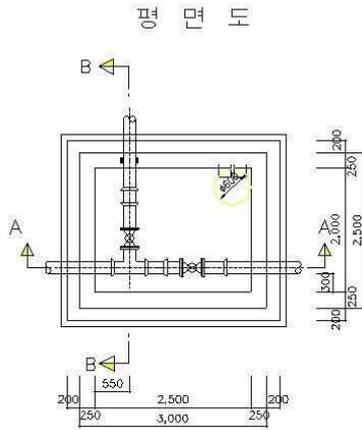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콘크리트 구입 및 타설, 거푸집 조립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철근 구입 및 가공 조립, PE맨홀발디딤쇠, 맨홀뚜껑(구상흑연), 받침대(구상흑연), M.S맨홀조정세트, PVC파이프의 구입 및 설치, 쇠석골재, 모래의 구입 및 부설 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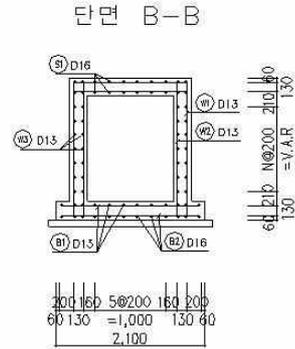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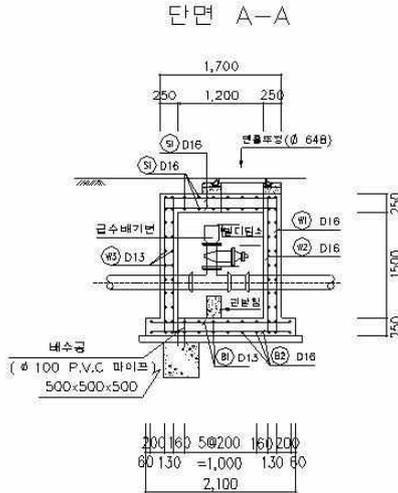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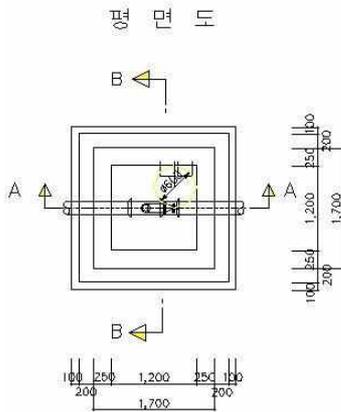
###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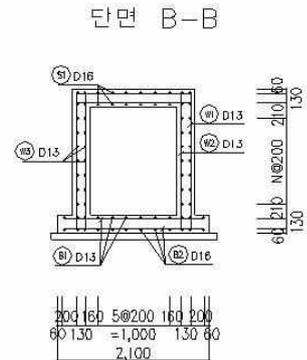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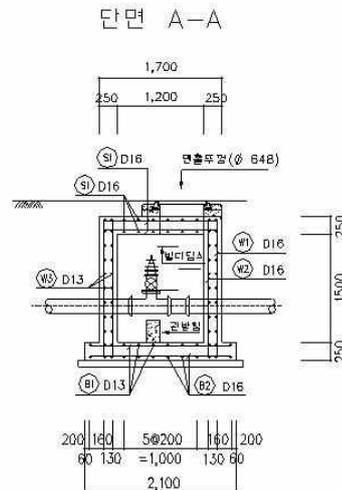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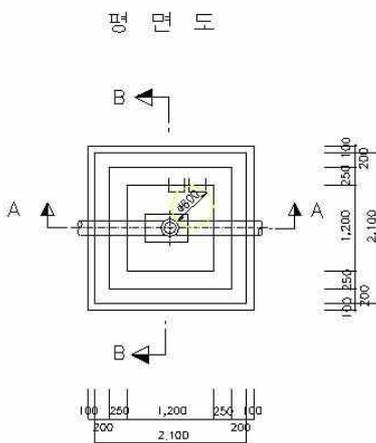
<제수변실(1.8m×1.2m)>



<제수변실(2.5m×2.0m)>



<공기변실(1.2m×1.2m)>



<이토변실(1.2m×1.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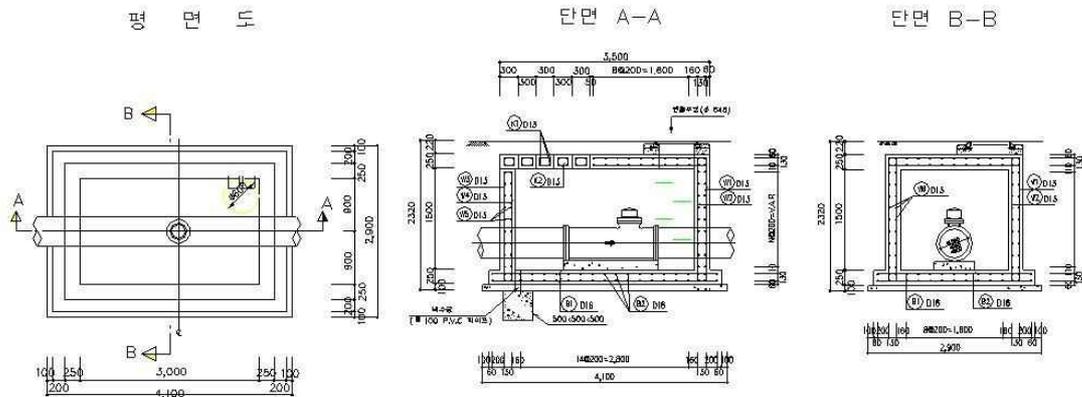
## ■ HB24\* 유량계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B245.00000	유량계실	3.0×1.8	nr(개소)	3,054,200	5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콘크리트 구입 및 타설, 거푸집 조립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철근 구입 및 가공 조립, PE맨홀발디딤쇠, 맨홀뚜껑(구상흑연), 받침대(구상흑연), PVC파이프의 구입 및 설치, 자갈, 모래의 구입 및 부설 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표준도】



<유량계실(3.0m×1.8m)>

■ HC31\* 조립식 U형 플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C310.01010	조립식 U형플룸	50kg/개 이상~ 150kg/개 미만	m	4,663	65%
HC310.01020	조립식 U형플룸	150kg/개 이상~ 300kg/개 미만	m	5,562	68%
HC310.01030	조립식 U형플룸	300kg/개 이상~ 500kg/개 미만	m	6,740	72%
HC310.01040	조립식 U형플룸	500kg/개 이상~ 700kg/개 미만	m	8,351	75%
HC310.01050	조립식 U형플룸	700kg/개 이상~ 900kg/개 미만	m	9,619	75%
HC310.01060	조립식 U형플룸	900kg/개 이상~ 1100kg/개 미만	m	10,890	76%
HC310.01070	조립식 U형플룸	1100kg/개 이상 1300kg/개 미만	m	12,505	7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조립식 U형플룸(수로, 측구, 기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U형 플룸의 설치, 소운반, 공구손료 및 이음모르타르 비용을 포함한다.
- ③ U형 플룸의 구입 및 운반,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비용은 제외한다.
- ④ 조립식 U형플룸의 1개당 길이는 2m를 기준으로 한다.

■ HC31\* 조립식 중량구조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C310.02010	조립식 중량구조물	850kg/개 이상 ~ 1,150kg/개 미만	m	29,584	67%
HC310.02020	조립식 중량구조물	1,150kg/개 이상 ~ 1,500kg/개 미만	m	36,750	68%
HC310.02030	조립식 중량구조물	1,500kg/개 이상 ~ 2,000kg/개 미만	m	46,370	67%
HC310.02040	조립식 중량구조물	2,000kg/개 이상 ~ 2,500kg/개 미만	m	58,049	68%
HC310.02050	조립식 중량구조물	2,500kg/개 이상 ~ 3,000kg/개 미만	m	66,938	68%
HC310.02060	조립식 중량구조물	3,000kg/개 이상 ~ 3,500kg/개 미만	m	80,674	68%
HC310.02070	조립식 중량구조물	3,500kg/개 이상 ~ 4,000kg/개 미만	m	92,152	6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조립식 중량구조물(낙차공, 분수관, L형플룸, 기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중량구조물의 설치, 소운반, 공구손료 및 이음모르타르 비용을 포함한다.
- ③ 중량구조물의 구입 및 운반,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비용은 제외한다.
- ④ 조립식 중량구조물 1개당 길이는 2m를 기준으로 한다.

## ■ HD12\* 맹암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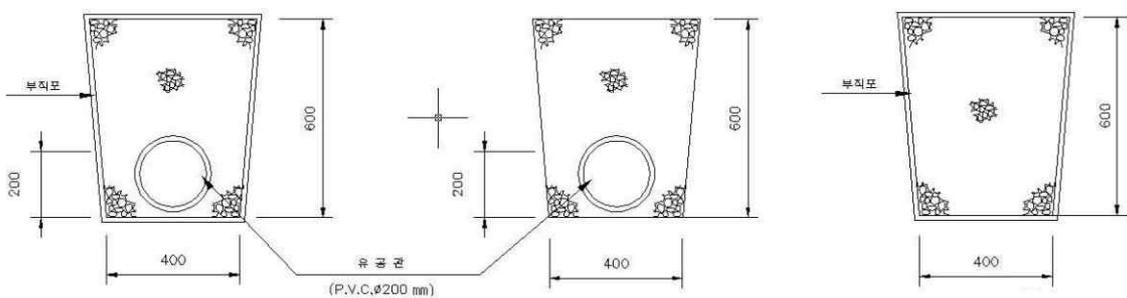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D120.01000	맹암거 (유공관 Ø200mm)	Type-1(토사구간)	m	11,867	43%
HD120.02000	맹암거 (유공관 Ø200mm)	Type-2(암구간)	m	10,366	49%
HD120.03000	맹암거	Type-3(절·성경계부 토사구간)	m	8,451	78%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유공관(고밀도 폴리에틸렌관: High-Density Polyethylene), 부직포의 재료비 및 설치비, 채움재의 부설비 및 소운반비가 포함되며, 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채움재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② 규격별 유공관 및 부직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공관	부직포
토사구간	있음	있음
암구간	있음	없음
절·성경계부 토사구간	없음	있음

### 【표준도】



<맹암거 형식-1><맹암거 형식-2>

<맹암거 형식-3>

■ HD22\* 맨암거(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D120.10000	맨암거 (유공관 Ø200mm)	Type-1(토사구간)	m	10,374	23%
HD120.20000	맨암거 (유공관 Ø200mm)	Type-2(리핑암구간)	m	18,045	48%
HD120.30000	맨암거 (유공관 Ø200mm)	Type-3(발파암구간)	m	23,672	52%
HD220.11000	맨암거	Type-4(절성경계부 토사구간)	m	7,983	3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유공관(고밀도 폴리에틸렌관: High-Density Polyethylene)의 구입/운반/접합/부설과 부직포 및 채움재의 구입 /운반/설치 및 기초 터파기, 소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규격별 유공관 및 부직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공관	부직포
토사구간	있음	있음
리핑암구간	있음	없음
발파암구간	있음	없음
절·성경계부 토사구간	없음	있음

■ HG1\*\*\* 경계표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G110.01000	분기표식 ELP관	Φ=80m/m, H=1.5m	nr(개소)	1,794	5%
HG110.04000	분기표식 (표시못)	보도부 (D45×90)	nr(개소)	5,340	5%
HG110.05000	분기표식 (표시못)	차도부 (D45×110)	nr(개소)	6,548	5%
HG110.02000	분기표식 (표시못)	상,오수관용 (D45×90)	nr(개소)	10,614	5%
HG110.03000	분기표식 (표시못)	상,오수관용 (D45×140)	nr(개소)	15,653	5%
HG120.01000	상수도관로 (경고)테이프 설치	흑갈색,폭 10cm	m	216	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상, 오수관 분기표식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HG120.01000 상수도관로(경고)테이프 설치비가 주철관 부설 및 접합의 예와 같이 단위공종별 단가의 일부로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중복하여 적용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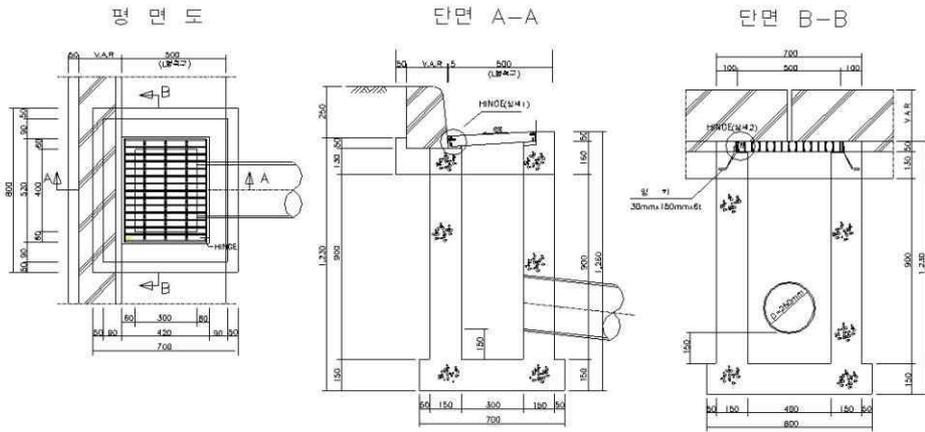
■ HM11\* 표면배수시설 / 우수받이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M111.11100	우수받이	0.3m×0.4m	nr(개소)	230,198	81%
HM111.21200	우수받이	0.3m×0.8m	nr(개소)	299,554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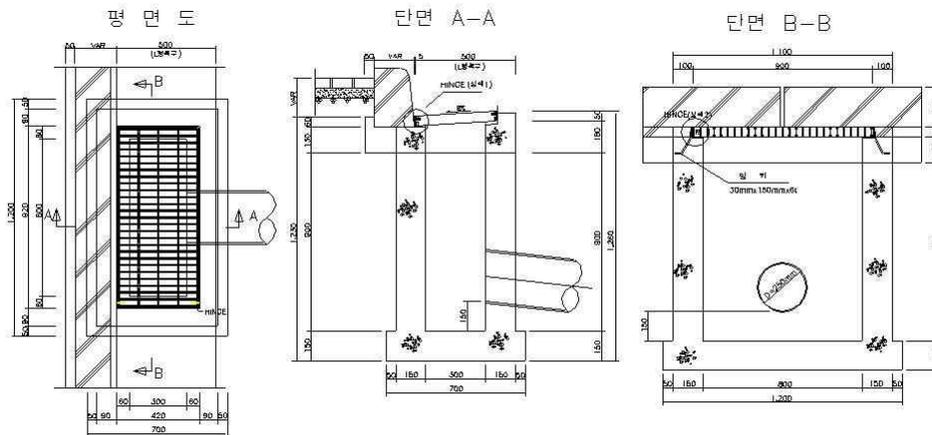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우수받이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구입 및 타설, 거푸집 설치 및 해체,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이 단가에는 우수받이 뚜껑 및 받침들의 자재비는 제외한다.
- ③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표준도】



<우수받이(0.3m×0.4m)>



<우수받이(0.3m×0.8m)>

## 대분류 I 강 구조 공사

### IA\*\*\* 강교제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A100.00000	강교제작	박스거더	ton	1,103,241	42%

#### 【단가정의】

- ① 박스거더형 강교제작을 위한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다.
  - 부재제작 및 조립비, 용접비, 가조립비
  - 공장제작비, 시공상세도 작성비
  - 기타 부속자재비 (앵카바, 용접봉, 산소, LPG가스, 잡품)
- ② 다만, 강재 구입 및 운반비, 고장력볼트의 조임비, 각종 검사·시험비는 제외한다.
- ③ 표준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적용사항
강교형식	박스거더
강판재질	SM400 ~ SM520, SS400
교량 연수	3~4런 (상하행선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교량 총 중량	150ton이상
사각	85°이상
곡률	500≤R
톤당 공수산정 기준	대형부재 대 소형부재 비율 ( 0.5 : 0.5 ) 맞댐용접 대 필렛용접 비율 ( 0.5 : 0.5 )
할증대상 비율 (부속자재비 제외)	0.9

#### 【단가보정】

- ① 강교 제작단가는 표준단가에 아래의 보정계수 및 가감산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강교제작단가 = (표준단가 × 보정계수) + (가감산비용)

② 부재의 대소 및 용접 방식에 따른 보정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용접방식 부재대소		맞댐용접의 비중 (필렛용접 = 1 - 맞댐용접)									
		0.1 (이하)	0.2	0.3	0.4	0.5	0.6	0.7	0.8	0.9	1.0
대형부재 의 비중  (소형부재 = 1 - 대형부재)	0.1 (이하)	1.14	1.15	1.17	1.18	1.19	1.20	1.21	1.23	1.24	1.25
	0.2	1.09	1.11	1.12	1.13	1.14	1.15	1.17	1.18	1.19	1.20
	0.3	1.05	1.06	1.07	1.08	1.09	1.11	1.12	1.13	1.14	1.16
	0.4	1.00	1.01	1.02	1.04	1.05	1.06	1.07	1.08	1.10	1.11
	0.5	0.95	0.96	0.98	0.99	1.00	1.01	1.02	1.04	1.05	1.06
	0.6	0.90	0.92	0.93	0.94	0.95	0.96	0.98	0.99	1.00	1.01
	0.7	0.86	0.87	0.88	0.89	0.91	0.92	0.93	0.94	0.95	0.97
	0.8	0.81	0.82	0.83	0.85	0.86	0.87	0.88	0.89	0.91	0.92
	0.9	0.76	0.77	0.79	0.80	0.81	0.82	0.83	0.85	0.86	0.87
	1.0	0.71	0.73	0.74	0.75	0.76	0.78	0.79	0.80	0.81	0.82

※ 부재의 판별, 용접길이 산정등은 표준품셈 “17-1 용접교제작”의 기준을 따른다

③ 각종조건에 따라 표준단가에 아래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가감한다.

· 가감산 비용 = 표준단가 × 0.9 × ( a+b+c+d )

(a)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

연 수	2	3내지 4	5내지 6	7이상
증가율(%)	(+)1%	0	(-)1%	(-)2%

\*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b) 총중량에 의한 증감 (T : 총량) : 교량 전체 총량을 기준

중량	T ≤ 40톤	40 < T ≤ 70톤	70 < T ≤ 100톤	100 < T ≤ 150톤	150 < T
증가율(%)	-	(+)15%	(+)7%	0	0

\* 교량 전체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c) 사각(斜角)에 대한 증감

사각	85°이상	85°미만~ 75°이상	75°미만~ 45°이상	45°미만
증가율(%)	0	(+)3%	(+)3%	(+)3%

\* 교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 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d) 곡률(曲率)에 대한 증감 (R : 곡률반경(m))

곡률	500 ≤ R	500 > R ≥ 250	250 > R ≥ 100	100 > R
증가율(%)	0	(+)19%	(+)25%	(+)29%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 IG21\* 강교도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G210.10000	강교내부도장/공장	일반환경용 중방식도장, 3회	m <sup>2</sup>	10,796	99%
IG210.40000	강교외부도장/공장	일반환경용 중방식도장, 3회	m <sup>2</sup>	8,535	99%
IH210.10000	강교외부도장/현장	일반환경용 중방식도장, 2회	m <sup>2</sup>	2,874	95%
IG210.30000	강교 내부볼트 및 연결판 도장/현장	일반환경용 중방식도장, 2회	m <sup>2</sup>	6,172	94%
IH210.30000	강교 외부볼트 및 연결판 도장/현장	일반환경용 중방식도장, 4회	m <sup>2</sup>	9,807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강교 제작시 강재를 도장(일반환경용 중방식)하는 비용으로, 표면처리비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식에 의한 도장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도장재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도장의 세부사양은 “강도로교 용접 및 도장요령(국토교통부 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대분류 J 말뚝 공사

### ■ JF1\*\* 강관말뚝 천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F100.01000	강관말뚝 천공	토사	m	25,807	80%
JF100.02000	강관말뚝 천공	풍화암	m	114,126	82%
JF100.03000	강관말뚝 천공	연암	m	136,478	79%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말뚝박기용 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천공용 비트의 재료비 및 천공기계경비(보링기, 양수기, 디젤엔진)를 포함한다.
- ③ 잡재료비, 공구손료, 급수비 기타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천공은 말뚝건입용으로  $\phi 40\text{cm}$ 에 기준하며, 비트 규격은 3-WING BIT에 준한다.

### ■ JE1\*\* 강관말뚝 향타 / 유압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E100.01000	강관말뚝 향타 (유압식)	$\phi 508.0\text{mm}$	m	16,286	40%
JE100.02000	강관말뚝 향타 (유압식)	$\phi 406.4\text{mm}$	m	15,626	4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유압파일 해머에 의해 강관말뚝을 향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소운반 비용, 잡재료비(접봉, 발판재, 용접기, 발전기손료, 비계재, Cushion재, 수직도 유지관리비) 및 손료를 포함한다.
- ③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강관말뚝의 자재비
  -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
  -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

- 말뚝두부정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 ④ 항타시 적용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 말뚝직경 : 508mm
  - 항타길이 : 16m이하
  - 판두께 : 12mm
  - 평균타격횟수(N) : 20이상
  - 유압식 파일햄머 : 5Ton
  - 말뚝이음시공이 아닌경우
  - 단말뚝인 경우

■ JE1\*\* 강관말뚝 항타 / 디젤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E101.0105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508.0mm, 5m이하	본	65,449	79%
JE101.0108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508.0mm, 8m이하	본	74,862	78%
JE101.0110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508.0mm, 10m이하	본	81,085	78%
JE101.0120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508.0mm, 12m이하	본	220,347	83%
JE101.0150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508.0mm, 15m이하	본	232,657	81%
JE101.0205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406.4mm, 5m이하	본	58,931	80%
JE101.0208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406.4mm, 8m이하	본	64,751	79%
JE101.0210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406.4mm, 10m이하	본	68,617	79%
JE101.0212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406.4mm, 12m이하	본	185,746	83%
JE101.02150	강관말뚝 항타 (디젤식)	ø406.4mm, 15m이하	본	192,893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디젤파일 해머에 의해 강관말뚝을 항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소운반비용, 잡재료비등 손료, 인건비, 기계경비를 포함한다.
- ③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말뚝이음에 따른 용접시간(단, 10m초과 항타시는 용접시간 포함)
  - 강관말뚝의 자재비
  -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
  -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
  - 말뚝두부정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 ④ 항타시 적용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 말뚝직경 : 508.0mm 또는 406.4mm
  - 관두께 : 12mm
  - 평균타격횟수(N) : 20회이하
  - 디젤식 파일해머의 중량 : 2.2ton급
  - 작업현장의 넓이와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말뚝세우기 횟수 : 1회

■ JE16\* 강관말뚝 두부정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E160.00400	강관말뚝 두부정리	D400mm	본	10,006	95%
JE160.00500	강관말뚝 두부정리	D500mm	본	12,419	95%
JE160.00600	강관말뚝 두부정리	D600mm	본	15,168	95%
JE160.00700	강관말뚝 두부정리	D700mm	본	17,613	95%
JE160.00800	강관말뚝 두부정리	D800mm	본	20,255	95%
JE160.00900	강관말뚝 두부정리	D900mm	본	22,684	95%
JE160.01000	강관말뚝 두부정리	D1000mm	본	25,161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강관말뚝 항타 완료후 설계높이에 맞게 파일을 절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절단방법은 산소 절단(산소+아세틸렌)에 준하며, 절단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 ③ 말뚝두부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대분류 K 교 량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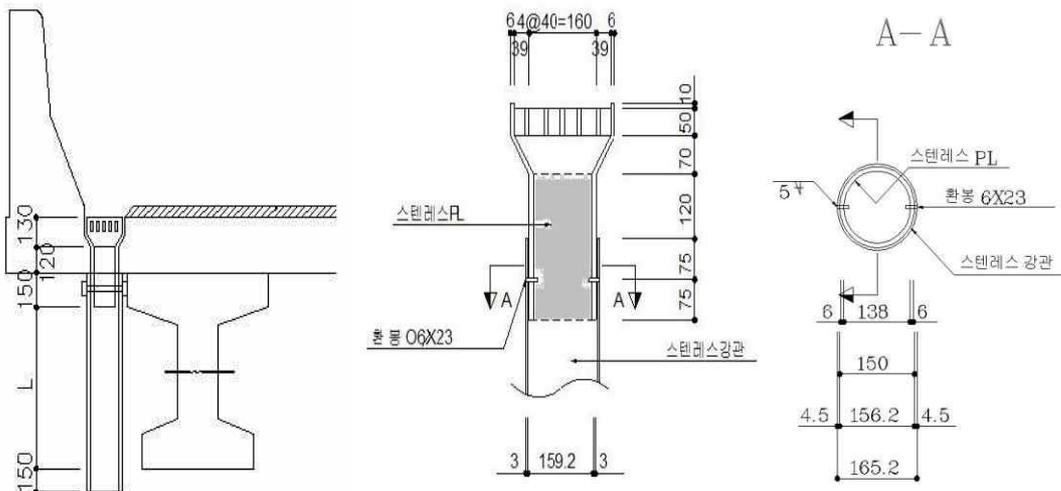
### ■ KD\*\*\* 교 량 배수시설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D110.00000	교량배수시설공 /배수구(하천용)	스텐레스	nr(개소)	2,245	100%
KD120.00000	교량배수시설공 /배수구(육교용)	스텐레스	nr(개소)	84,023	95%
KD220.00000	교량배수시설공 /직관(육교용)	스텐레스	m	18,517	94%
KD320.00000	교량배수시설공 /꼭관(육교용)	스텐레스	nr(개소)	16,799	95%
KD520.00000	교량배수시설공 /집수구(육교용)	스텐레스	nr(개소)	60,144	95%

#### 【단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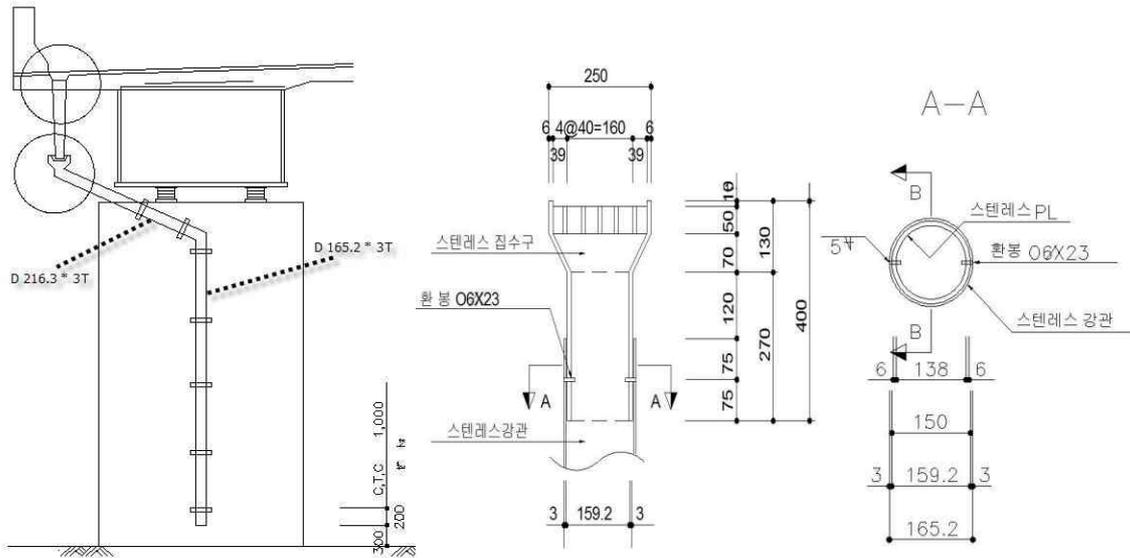
- ① 이 단가는 배수시설별(스텐레스) 재료의 제작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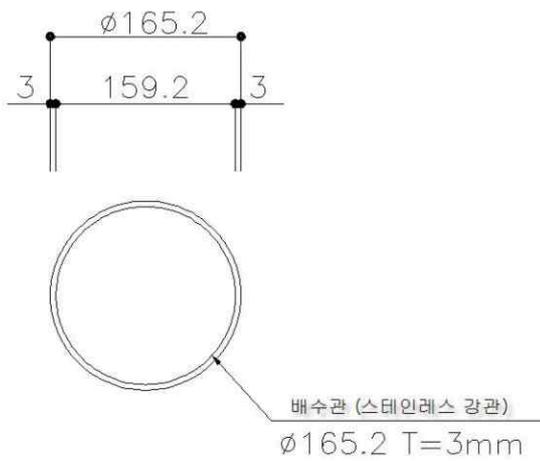


\*L=7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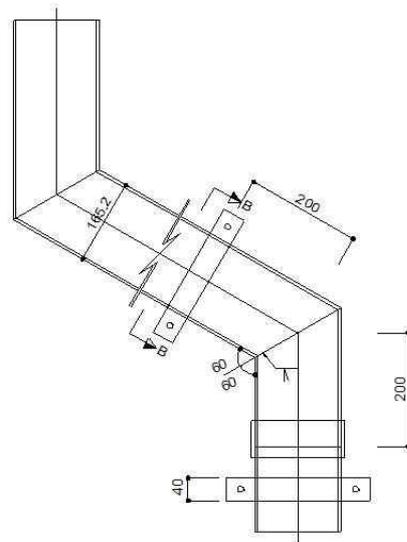
<하천용 배수구(∅165.2×3×1000)>



<육교용 집수구(250×250) 및 배수구(∅165.2×3×4,320)>



<직관(∅ 165.2×3×1000)>



<곡관(∅ 165.2×3×200)>

■ KD60\* 교면 물빠기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D600.00000	교면 물빠기공	유공관 (D=10mm)	m	14,007	1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교면 물빠기에 소요되는 재료비(유공관, 테이프) 및 설치비, 구멍뚫기(20m당 2개소) 및 잡재료비용이 포함된다.

■ KE15\* 교량유지관리용 표지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E150.20000	교량유지관리용 표지판	교각용 (1,200×900×1.0)	nr(개소)	85,538	49%
KE150.10000	교량유지관리용 표지판	박스거더 내부용 (930×350×0.5)	nr(개소)	31,113	91%
KE150.30000	교량유지관리용 표지판	방호벽용 (1,200×900×1.0)	nr(개소)	22,769	9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교량유지관리용 표지판 설치를 위한 알루미늄 재료비, 설치비, 도색비등이 포함된다.
- ② 교각용표지판, 박스거더 내부용 설치는 고소작업에 따른 할증비용을 포함한다.
- ③ 재료비에는 표지판과 고휘도 반사지(바탕면적의 50%) 또는 접착제 비용이, 도색비에는 바탕처리(아연도금면 적용) 및 바탕도색(조합페인트 2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 KE3\*\* 교명판 및 설명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E310.10000	교명판/황동주물	450×250×10	nr(개소)	63,410	5%
KE310.20000	교명판/황동주물	450×350×10	nr(개소)	79,377	5%
KE320.10000	설명판/황동주물	350×250×10	nr(개소)	39,358	5%
KE320.20000	설명판/황동주물	500×300×10	nr(개소)	70,757	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교명판, 설명판의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KE51\*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E510.01000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	m <sup>3</sup>	14,760	5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세굴방지용 사석채움에 대한 소요되는 깐잡석채취(현장발파암 유용) 및 현장내 소운반, 기계부설, 사석 먼고르기 비용을 포함한다.

■ KE52\* 교대보호블록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E520.11000	교대보호블록 설치	육교용 (400×250×120)	m <sup>2</sup>	22,007	71%
KE520.21000	교대보호블록 설치	하천용 (400×400×100)	m <sup>2</sup>	25,004	5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교대 보호블록 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 ② 육교용은 호안블록 자재비, 설치비, 뒷채움 콘크리트 비용이 포함되며, 하천용에는 호안블록, PVC 파이프(D=50mm)의 자재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KE60\* 측량기준점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E600.00000	측량기준점 설치	황동주물	nr(개소)	2,125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황동주물로 제작한 측량기준점(5kg)의 설치비로서, 재료(측량 기준점)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대분류 L 도로 및 포장 공사

### LA1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A100.150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5cm/30cm	m <sup>3</sup>	3,889	44%
LA100.200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20cm/40cm	m <sup>3</sup>	3,788	46%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동상방지층의 포설, 살수 및 다짐 등 제비용이 포함된다.
- ② 다만, 포장용 골재비용은 제외한다.
- ③ 보조기층에도 이 단가를 적용한다.
- ④ 시공조건은 기계시공-본선포장에 기준한다.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시, 길어깨 포장시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LB10\* 막자갈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B100.20000	막자갈부설	T=20cm	m <sup>3</sup>	2,985	57%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하천의 제방축조시 성토다짐 후 막자갈 부설, 정지 및 다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막자갈 부설 및 다짐은 기계시공, 정지작업은 인력 10%, 기계 90%에 준한다. 다만, 막자갈의 구입 및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 LC11\* 프라임코팅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C110.20000	아스콘포장 /프라임코팅	MC-1	m <sup>2</sup>	103	58%
LC110.10000	아스콘포장 /프라임코팅	RSC-3	m <sup>2</sup>	48	98%

【단가정의】

- ① 아스팔트 살포비(기계), 청소비를 포함한다.
- ②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모래양생, 비산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LC21\* 택코팅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C210.00000	아스콘포장/택코팅	-	m <sup>2</sup>	48	98%

【단가정의】

- ① 아스팔트 살포비(기계), 청소비를 포함한다.
- ②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모래양생, 비산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LC30\* 아스콘포장/기층 포설 및 다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C300.10000	아스콘포장/기층 /포설및다짐	T=10cm	m <sup>2</sup>	843	53%
LC300.15000	아스콘포장/기층 /포설및다짐	T=14-15cm	m <sup>2</sup>	1,521	5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포설 및 다짐 등을 위한 제비용이 포함되며, 아스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② 시공조건은 아스팔트 기층(BB층)에 기준한다.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 입도조정기층공,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시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LC40\* 아스콘포장/표층 포설 및 다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C400.05000	아스콘포장/표층 /포설및다짐	T=5.0cm	m <sup>2</sup>	565	54%
LC400.08000	아스콘포장/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m <sup>2</sup>	1,148	5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포설 및 다짐 등을 위한 제비용이 포함되며, 아스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② 시공폭 3m이상인 본선 아스팔트 포설에 준한다.
- ③ 시공조건은 기계시공에 기준한다. 특수 아스팔트 포장,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시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LC50\* 아스콘포장/ 중간층 포설 및 다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C500.06000	아스콘포장/중간층 /포설및다짐	T=6cm	m <sup>2</sup>	565	5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포설 및 다짐 등을 위한 제비용이 포함되며, 아스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② 시공폭 3m이상인 본선 아스팔트 포설에 준한다.
- ③ 시공조건은 기계시공에 기준한다. 특수 아스팔트 포장,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시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LD14\* 콘크리트 포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D140.20000	콘크리트포장 / 포설	T=20cm	m <sup>2</sup>	3,961	3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 포설비용으로 비닐깔기, 와이워 메쉬(#8-150×150) 구입 및 설치, 무근콘크리트 포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레미콘 구입 및 운반, 거푸집 설치해체 및 양생, 줄눈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LD40\* 분리막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D400.00000	분리막 설치	-	m <sup>2</sup>	379	5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콘크리트 포장과 중앙분리대 기초포설시 설치하는 비닐(0.1m/m)의 자재비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 LE40\* 콘크리트 포장줄눈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E400.10000	스티로폼 줄눈	T=10mm	m	276	58%
LE400.20000	스티로폼 줄눈	T=20mm	m	944	4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스티로폼 줄눈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LE60\* 콘크리트 포장줄눈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E600.00000	부체도로용 줄눈	판재(200×15)	m	3,736	5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부체도로용 줄눈(판재 200×15) 판재의 재료비 및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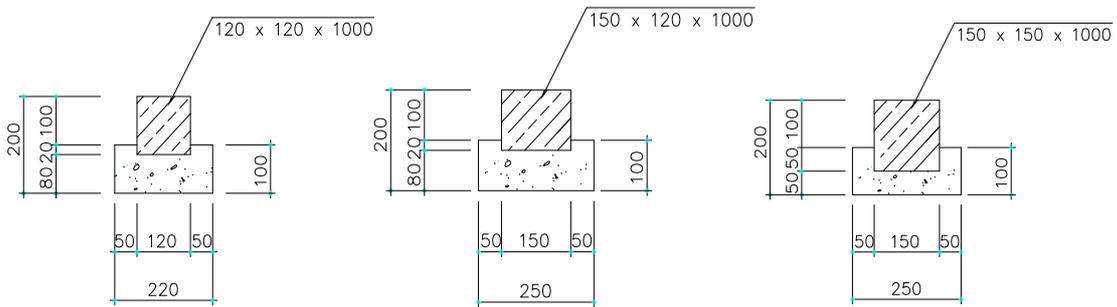
■ LF10\* 경계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F100.31212	대지경계블록 (콘크리트)	120×120×1000	m	11,801	66%
LF100.31512	도로경계블록 (콘크리트)	150×120×1000	m	12,027	55%
LF100.31515	도로경계블록 (콘크리트)	150×150×1000	m	12,774	5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경계블록의 구입, 운반 및 모르타르접합, 콘크리트의 구입, 운반 및 타설,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이 단가는 단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표준도】



<경계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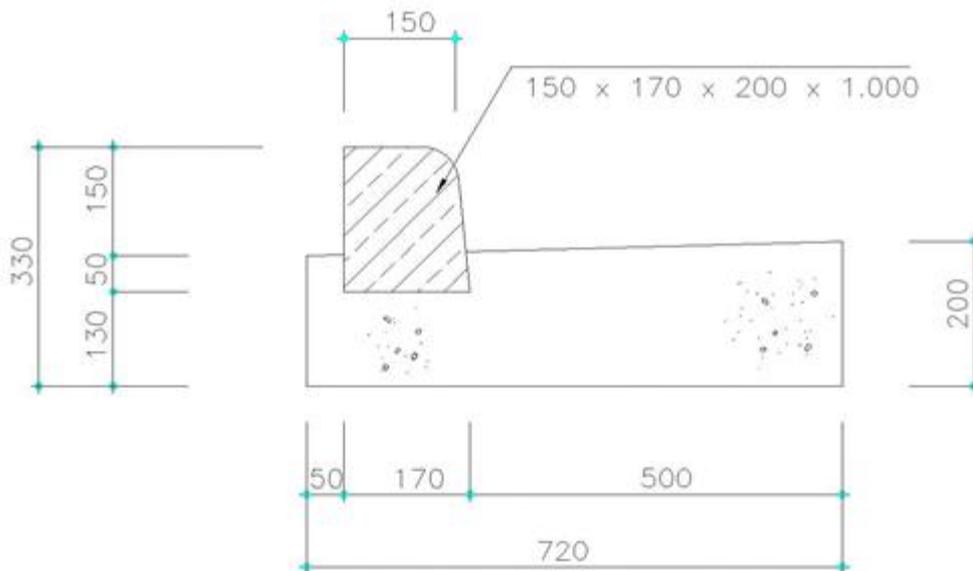
■ LF1\*\* 경계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F100.31517	보차도 경계블록 (콘크리트)	150×170×200×1000	m	30,409	3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경계블록의 구입 및 모르타르접합, 콘크리트의 구입/운반/타설, 거푸집의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신축이음재의 구입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표준도】



<보차도 경계블록(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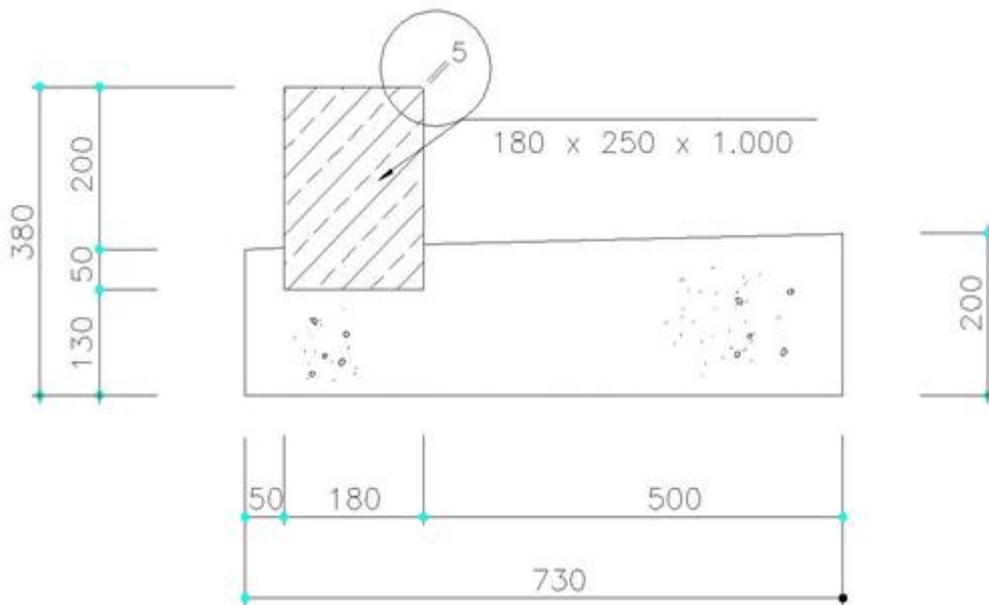
■ LF30\* 경계석(화강석) (경계석 구입 및 운반비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F300.31825	보차도경계석 (화강석)	180×250×1000	m	25,299	5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경계석의 모르타르접합, 콘크리트의 구입/운반/타설, 거푸집의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신축이음재의 구입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다만, 경계석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보차도 경계석(화강석)>

■ LF30\* 경계석(화강석) (경계석 구입 및 운반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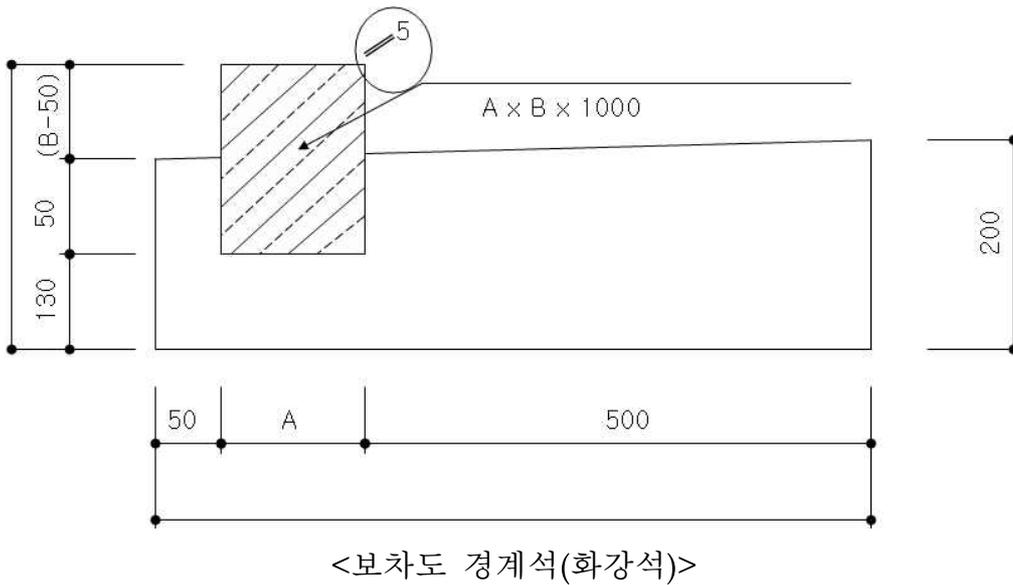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F300.31820	보차도경계석 (화강석)	180×200×1000	m	22,106	67%
LF300.32025	보차도경계석 (화강석)	200×250×1000	m	27,116	34%
LF300.32030	보차도경계석 (화강석)	200×300×1000	m	31,610	4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경계석의 모르타르접합, 콘크리트의 구입/운반/타설, 거푸집의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신축이음재의 구입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다만, 경계석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A)×200(B)×1000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A)×250(B)×1000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A)×300(B)×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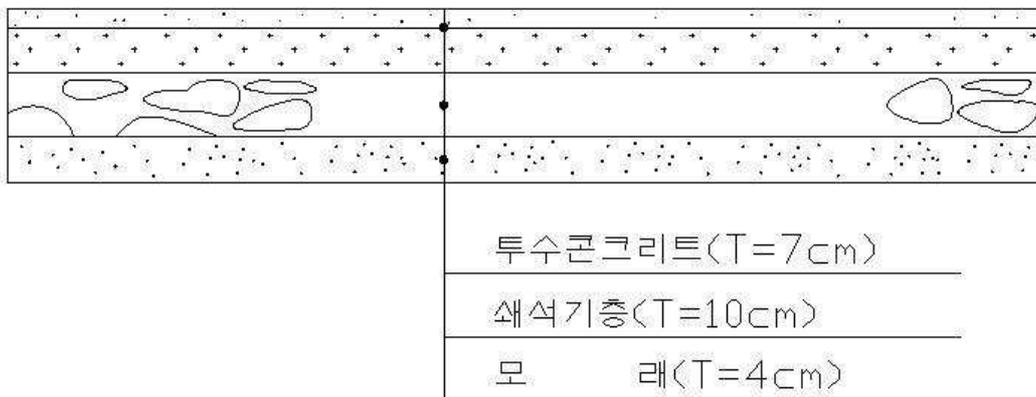
■ LG7\*\* 경하중포장/ 투수콘크리트 포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G730.30700	투수콘크리트포장	T=7cm	m <sup>2</sup>	21,536	5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투수콘크리트, 모래, 쇠석등 재료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② 투수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기계/인력조합), 모래부설, 쇠석부설 및 다짐, 양생,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표면보호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③ 투수콘크리트 재료는 적색(또는 적갈색)에 준한다.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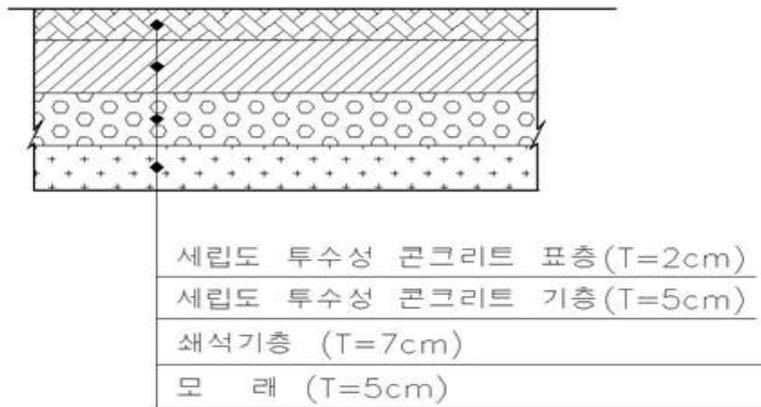
■ LG73\* 경하중포장/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박층포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G731.20000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박층포장	T=7cm	m <sup>2</sup>	29,474	4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세립도 투수콘크리트(표층+기층 합성단가), 쇄석골재 및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② 모래의 부설, 쇄석의 부설, 살수 및 다짐, 기층용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포설(기계/인력조합) 및 다짐(5cm), 표층용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포설(기계/인력조합) 및 다짐(2cm), 양생,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표면보호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표준도】



<세립도 투수콘크리트 박층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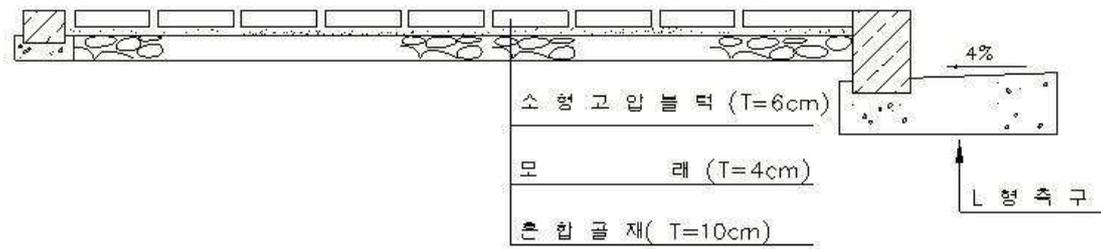
■ LG82\* 경하중포장/ 보도블록포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G820.30800	소형고압블록	T=6~8cm	m <sup>2</sup>	10,128	6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소형고압블록 포장에 필요한 혼합골재,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 포설, 다짐비용과 블록포장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블록의 구입과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 ③ 본 단가는 지장물이 면적대비 5%미만인 직선부 시공구간에 준하며, 곡선부나 지장물이 5% 이상인 경우, 노무비를 40%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표준도】



<소형고압블록>

■ LC82\* 아스콘포장/ 특수포장 / 미끄럼방지포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G820.01000	미끄럼방지포장		m <sup>2</sup>	43,606	3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용 제강슬래그, 도료(에폭시 수지) 및 충전재의 구입 및 운반비와 포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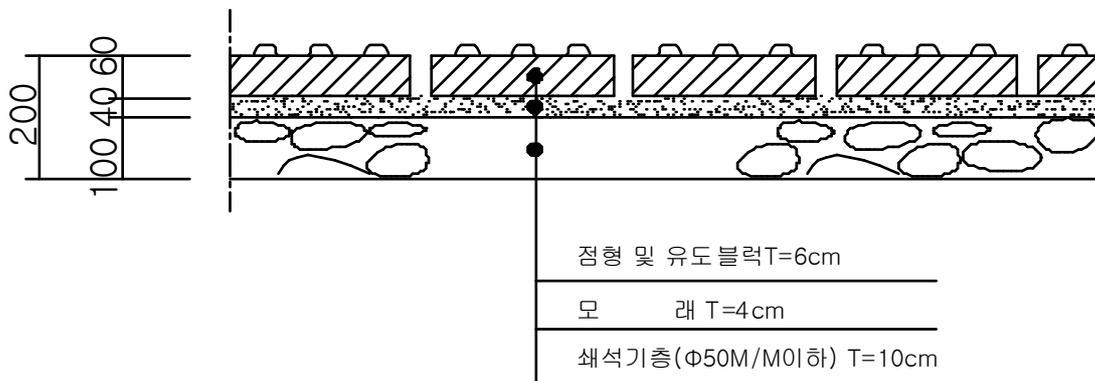
■ LG83\* 경하중 포장/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 포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G830.33030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	-	m <sup>2</sup>	7,550	9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 포장에 필요한 쇄석부설 및 다짐(살수포함), 모래포설 및 블록포장, 표면다짐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점자블록, 혼합골재, 모래, 쇄석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 LH31\* 방호책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310.11000	방호책 가드레일 1단	가드레일포스트	nr(개소)	7,023	69%
LH310.14000	방호책 가드레일 1단	표준레일	nr(개소)	9,612	100%
LH310.15000	방호책 가드레일 1단	단부레일	nr(개소)	2,357	100%
LH310.21000	방호책 가드레일 2단	가드레일포스트	nr(개소)	6,786	70%
LH310.22000	방호책 가드레일 2단	표준레일	nr(개소)	18,512	100%
LH310.23000	방호책 가드레일 2단	단부레일	nr(개소)	4,139	100%

【단가정의】

① 1단 가드레일

- LH310.11000 가드레일포스트

이 단가는 가드레일의 포스트 설치비용으로 자재비는 제외되며 자재 운반, 소운반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 LH310.14000 표준레일

이 단가는 표준레일의 설치비용으로 레일과 볼트 및 너트의 자재비는 제외되며 소운반비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 LH310.15000 단부레일

이 단가는 단부레일의 설치비용으로 레일의 자재비는 제외되며 소운반비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 LH310.11000 가드레일 포스트, LH310.14000 표준레일, LH310.15000 단부레일은 고속국도공사에 적용한다.

② 2단가드레일

- LH310.21000 가드레일포스트

이 단가는 가드레일의 포스트 설치비용으로 자재비는 제외되며 자재 운반, 소운반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 LH310.22000 표준레일

이 단가는 표준레일의 설치비용으로 레일과 볼트 및 너트의 자재비는 제외되며 소운반비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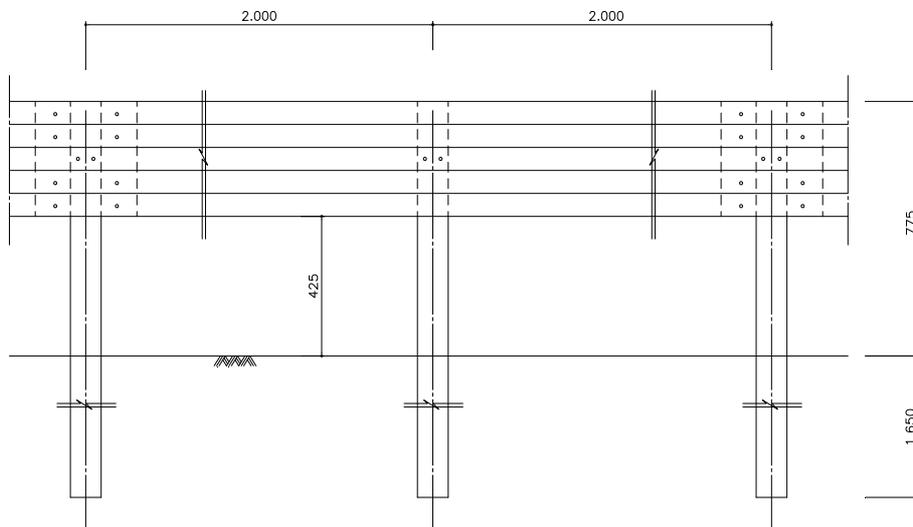
- LH310.23000 단부레일

이 단가는 단부레일의 설치비용으로 레일의 자재비는 제외되며 소운반비 및 설치비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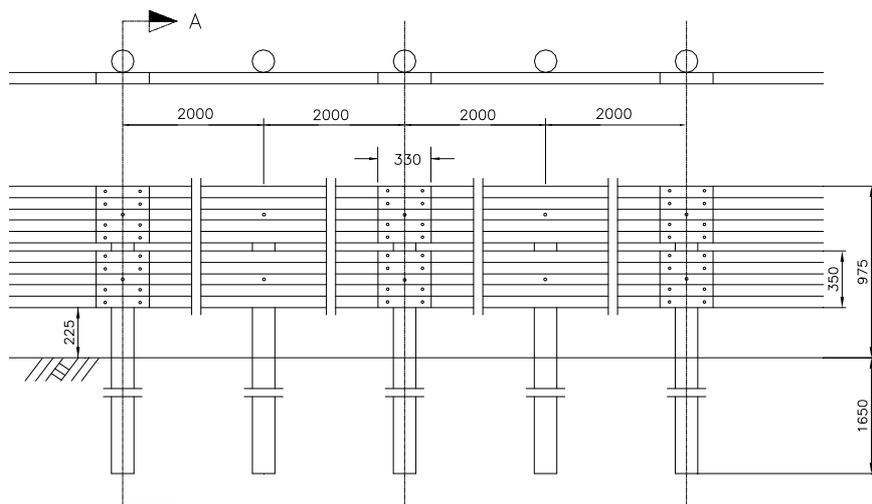
- LH310.21000 가드레일 포스트, LH310.22000 표준레일, LH310.23000 단부레일은 고속국도공사에 적용한다.

③ 시공조건은 노측용 가드레일 설치시에 기준한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시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도】**



<1단 가드레일>



<2단 가드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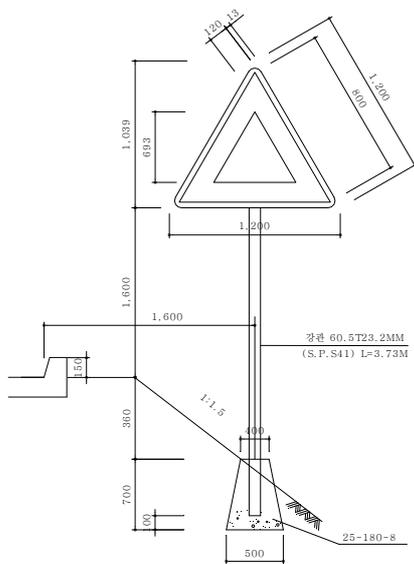
## ■ LH11\* 교통안전표지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110.10120	교통안전표지판 /삼각표지판	120cm	ea(개)	227,929	36%
LH110.10220	교통안전표지판 /원형표지판	90cm	ea(개)	219,871	41%
LH110.10820	교통안전표지판 /부착식/원형	90cm	ea(개)	163,47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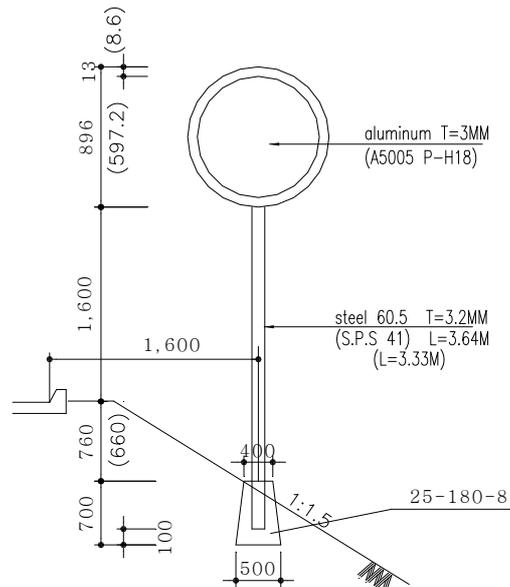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터파기(인력),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 잔토처리(인력),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각 규격별 재료비 및 설치비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콘크리트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② 단, 부착식의 경우에는 표지판 자재비 및 설치비만 포함한다.

### 【표준도】



<삼각표지판>



<원형표지판>

■ LH21\* 차선도색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210.12120	페인트 기계식	실선	m <sup>2</sup>	160	70%
LH210.12220	페인트 기계식	파선	m <sup>2</sup>	340	70%
LH210.22110	음착식 도료 수동식	실선	m <sup>2</sup>	648	73%
LH210.22210	음착식 도료 수동식	파선	m <sup>2</sup>	1,327	73%
LH210.22310	음착식 도료 수동식	횡단보도, 주차장	m <sup>2</sup>	2,089	73%
LH210.22410	음착식 도료 수동식	문자,기호	m <sup>2</sup>	4,688	7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차색도색등 노면표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페인트, 유리알, 프로판가스, 프라이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②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노무비를 10%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③ 공용구간(차량 부분 통제 후 시공하는 구간)인 경우, 노무비를 50%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LH22\* 교통안전시설공/ 표식/ 도로표지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220.10000	도로표지병	단면	nr(개소)	12,569	16%
LH220.20000	도로표지병	양면	nr(개소)	14,069	1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도로표지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도로표지병 설치비에는 도로표지병(사각형, 반사형) 및 접착제의 구입 및 운반비와 설치비가 포함된다.

【단가보정】

- ① 단일공사에 있어 “도로표지병”의 전체 수량이 30개소 미만일 경우 위 단가의 105%를 적용한다.

■ LH23\* 데리네이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230.11000	데리네이타	토공용	nr(개소)	23,220	50%
LH230.31000	데리네이타	가드레일용	nr(개소)	14,908	7%

【단가정의】

- ① LH230.11000 토공용 데리네이타는 데리네이타(백색·황색 2색 양면, ø100mm) 및 지주(ø48mm, pe pipe)설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비용을 포함한다.
- ② LH230.31000 가드레일용 데리네이타는 데리네이타(백색·황색 2색 양면, ø100mm) 및 취부 부속자재의 설치비를 포함한다.

【단가보정】

- ① 단일공사에 있어 데리네이타 “토공용” 또는 “가드레일용” 개별규격의 전체 수량이 30개소 미만일 경우 위 단가의 105%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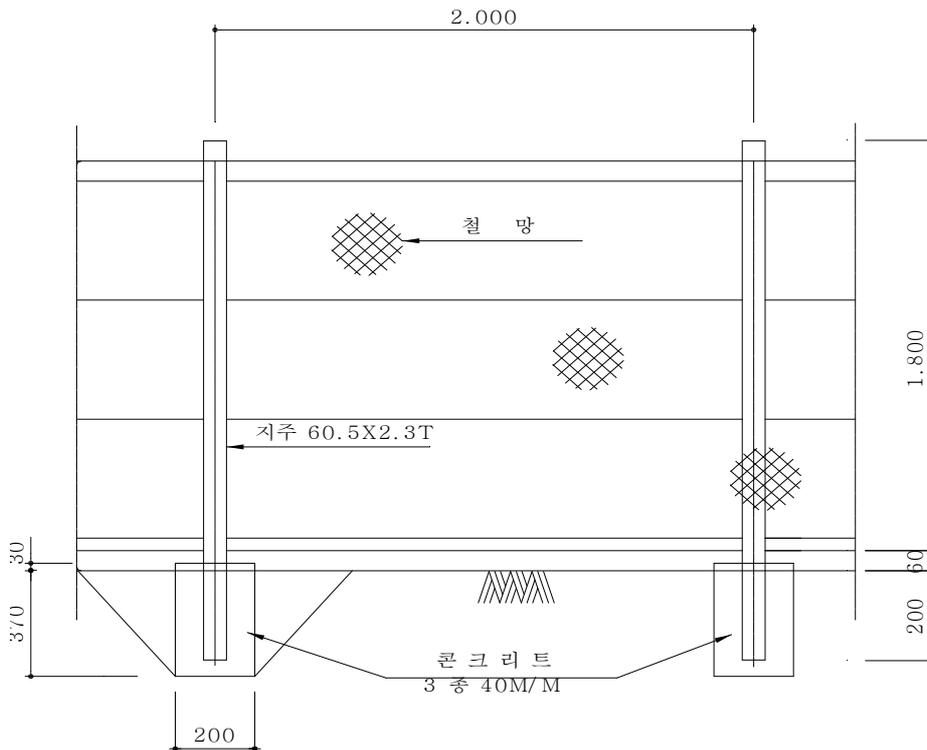
■ LH34\* 가드웬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340.01000	가드웬스	형식-1(토공용)	m	19,549	78%
LH340.02000	가드웬스	형식-2(육교용)	m	6,3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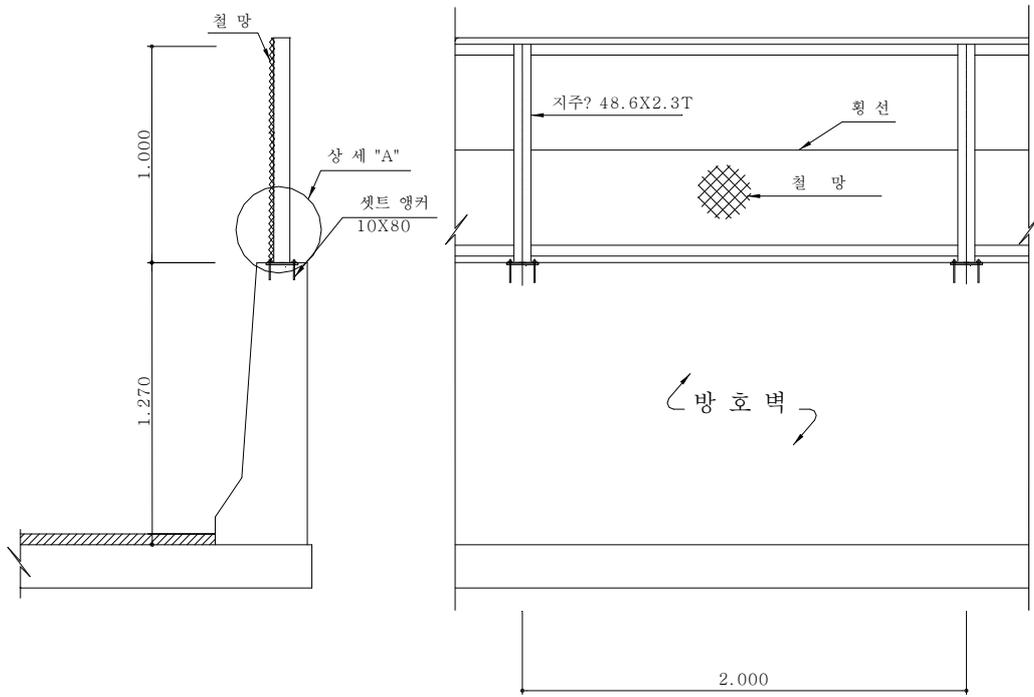
【단가정의】

- ① LH340.01000(토공용)는 토공부에 설치하는 가드웬스의 설치비용으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합판거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비와 웬스 설치비등이 포함되며 웬스 자재비는 제외한다
- ② LH340.02000(교량용)는 교량부에서 설치하는 가드웬스의 설치비를 포함한다. 다만, 웬스 자재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가드웬스-토공용>



<가드웬스-육교용>

■ LI30\* 그루빙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I300.02100	그루빙	중절단 (9×4×50)	m <sup>2</sup>	11,239	46%
LI300.02200	그루빙	횡절단 (9×4×50)	m <sup>2</sup>	13,476	43%
LI300.02300	그루빙	흠절단 (30×4×130)	m	9,596	3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아스팔트 포장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건식 그루빙 시공비용을 포함한다.
- ② 블레이드(T=4mm) 자재비, 장비사용료 및 인건비, 노면청소비,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를 포함한다.
- ③ 폐기물 적재 및 처리비용은 제외한다.

■ LH6\*\* 중앙분리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610.10000	중앙분리대	콘크리트포장용, (H)81cm	m	6,136	50%
LH610.20000	중앙분리대	아스콘포장용, (H)86cm	m	6,666	50%
LH610.30000	중앙분리대	콘크리트중분대용	m	11,542	3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중앙분리대 설치에 소요되는 철근가공, 콘크리트포설 및 양생, 부대작업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철근,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부대작업(수축줄눈, 조인트 마감처리, 와이어메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LJ1\*\* 측구터파기/ 인력1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110.00000	측구터파기	토사	m <sup>3</sup>	2,316	82%
LJ120.00000	측구터파기	리핑암	m <sup>3</sup>	43,637	72%
LJ130.00000	측구터파기	발파암	m <sup>3</sup>	66,510	7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배수공에 관계되는 측구터파기의 토질별 소요비용으로, 인력 10%, 기계 90%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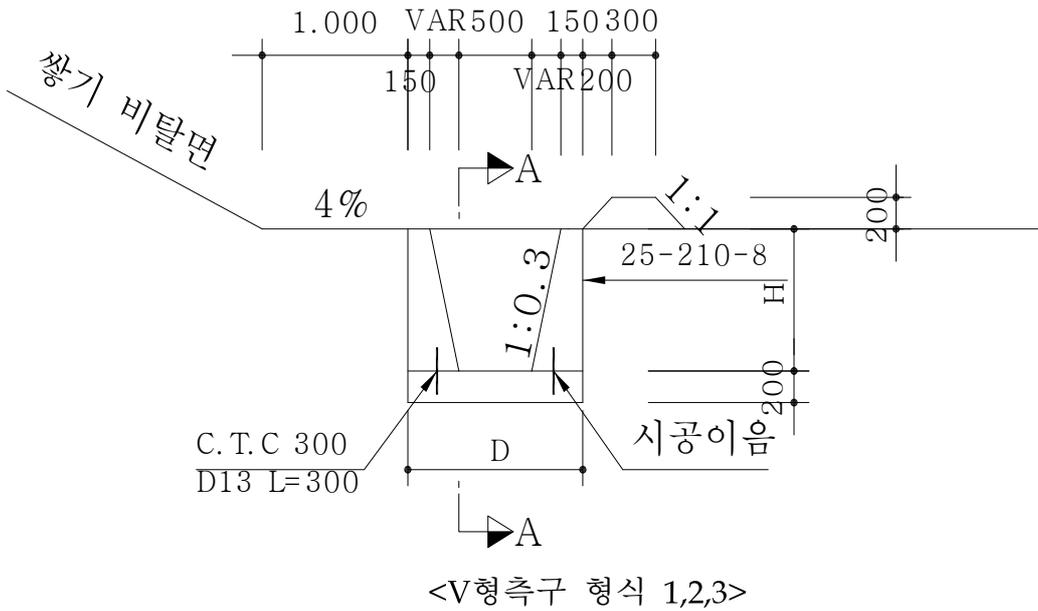
■ LJ20\* V형측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200.10000	V형측구	TYPE-1	m	66,067	80%
LJ200.20000	V형측구	TYPE-2	m	87,457	80%
LJ200.30000	V형측구	TYPE-3	m	104,174	82%

① 이 단가에는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철근 가공조립, 수축줄눈, 비닐깔기, 신축이음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되며,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 V형측구 Type1 : D-1,070mm, H-450mm
- V형측구 Type2 : D-1,160mm, H-600mm
- V형측구 Type3 : D-1,400mm, H-1,000mm



■ LJ20\* V형측구 [고속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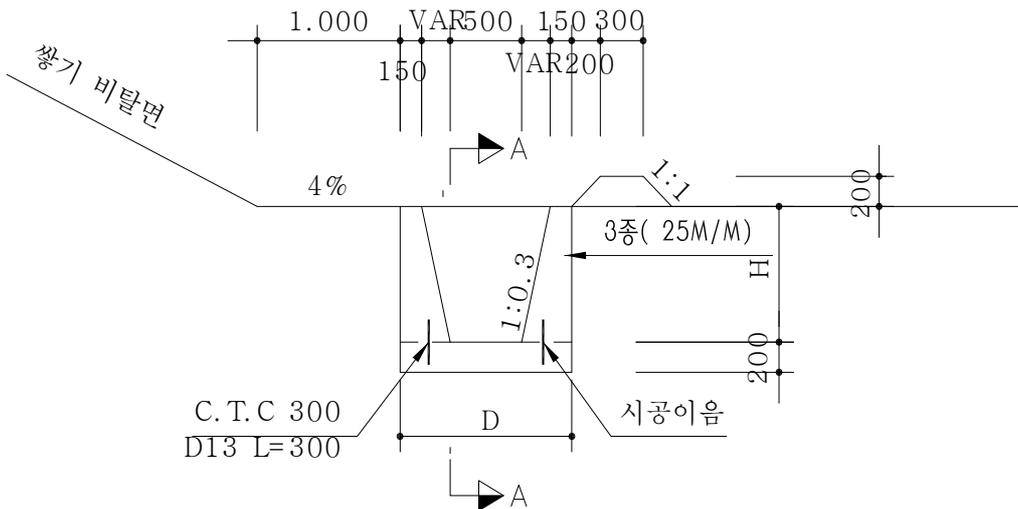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210.10000	V형측구/토사구간	TYPE-1	m	98,186	61%
LJ210.20000	V형측구/토사구간	TYPE-2	m	123,917	62%
LJ210.32000	V형측구/토사구간	TYPE-3	m	166,039	63%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V형측구의 설치비용으로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 철근가공, 철근자재비, 철근운반비, 줄눈설치, 비닐깔기, 되메우기, 터파기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표준도】

- V형측구 Type1 : D-1,070mm, H-450mm
- V형측구 Type2 : D-1,160mm, H-600mm
- V형측구 Type3 : D-1,400mm, H-1,000mm



<V형측구 형식 1,2,3-고속국도>

■ LJ30\* 산마루측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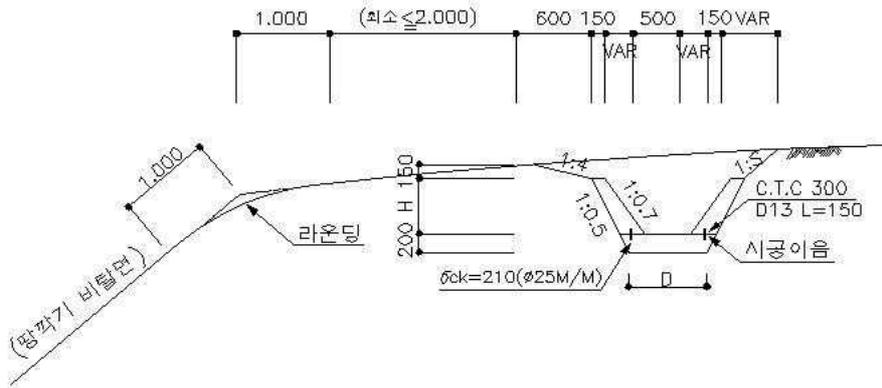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300.10000	산마루측구	TYPE-1	m	90,868	71%
LJ300.20000	산마루측구	TYPE-2	m	116,375	70%
LJ300.30000	산마루측구	TYPE-3	m	186,848	7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철근 가공조립, 수축줄눈, 비닐깔기, 신축이음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되며,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 산마루측구 Type1 : H-450mm
- 산마루측구 Type2 : H-600mm
- 산마루측구 Type3 : H-1,000mm



<산마루측구 형식 1,2,3>

■ LJ30\* 산마루측구 [고속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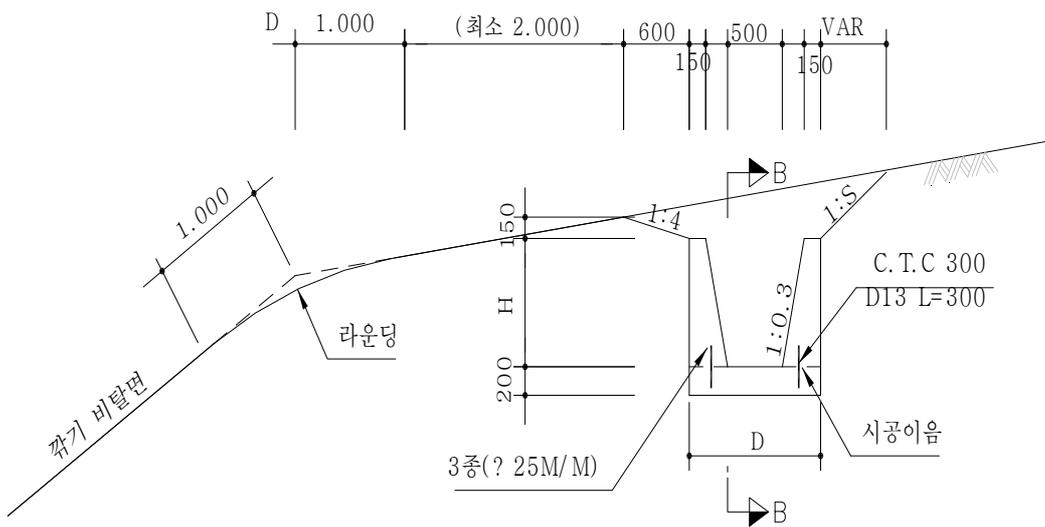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310.10000	산마루측구/토사구간	TYPE-1	m	96,957	60%
LJ310.20000	산마루측구/토사구간	TYPE-2	m	119,184	61%
LJ310.30000	산마루측구/토사구간	TYPE-3	m	179,558	5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산마루측구의 설치비용으로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 철근가공, 철근자재비, 철근운반비, 줄눈설치, 비닐깔기, 터파기, 되메우기 비용이 포함되며,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 구입,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등이 포함된다.

【표준도】

- 산마루측구 Type1 : H-450mm
- 산마루측구 Type2 : H-600mm
- 산마루측구 Type3 : H-1,000mm



<산마루측구 형식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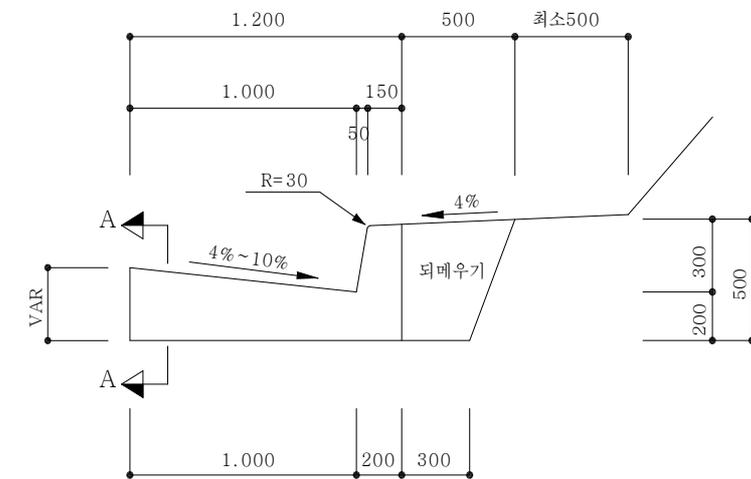
■ LJ40\* L형측구/TYPE-1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400.10000	L형측구	TYPE-1	m	38,312	82%

【단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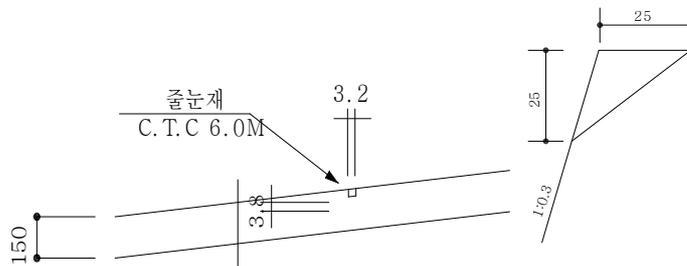
- ① 이 단가는 L형측구(TYPE-1)의 설치비용으로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양생 및 수축줄눈 설치, 신축이음 설치, 철근가공조립, 비닐깔기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하며,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단면 A-A

상세 "A"



<L형측구 형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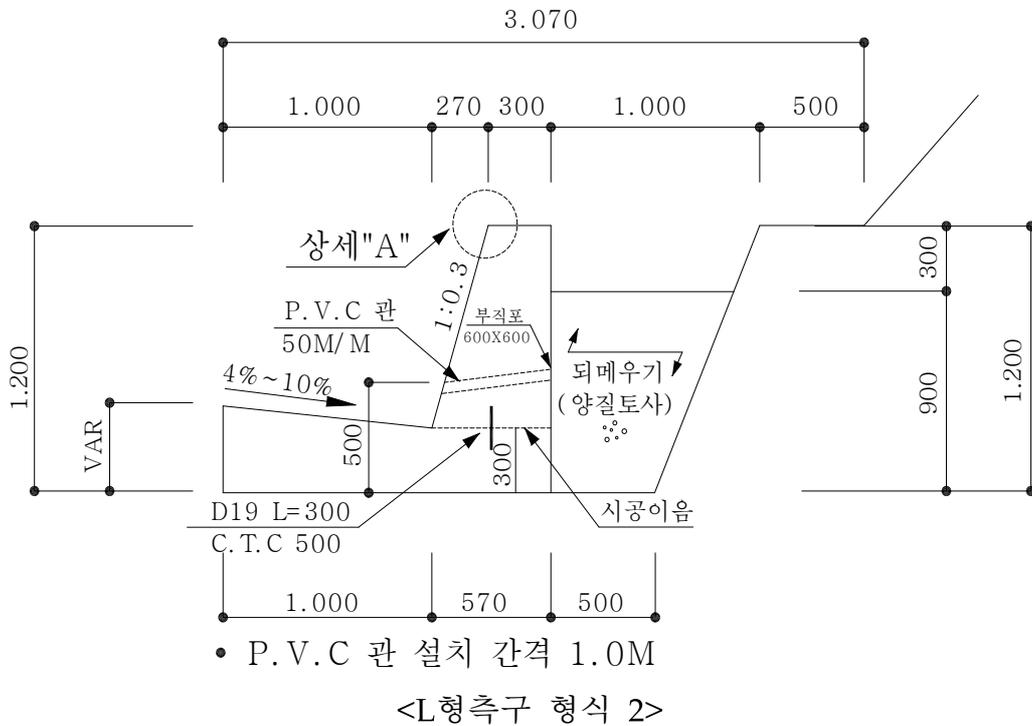
■ LJ40\* L형측구/TYPE-2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400.20000	L형측구	TYPE-2	m	91,256	8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L형 측구(TYPE-2)의 설치비용으로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수축줄눈 설치, 신축이음 설치, 철근가공 조립, 비닐깔기, 부직포, P.V.C.관, 뒷채움재 부설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하며,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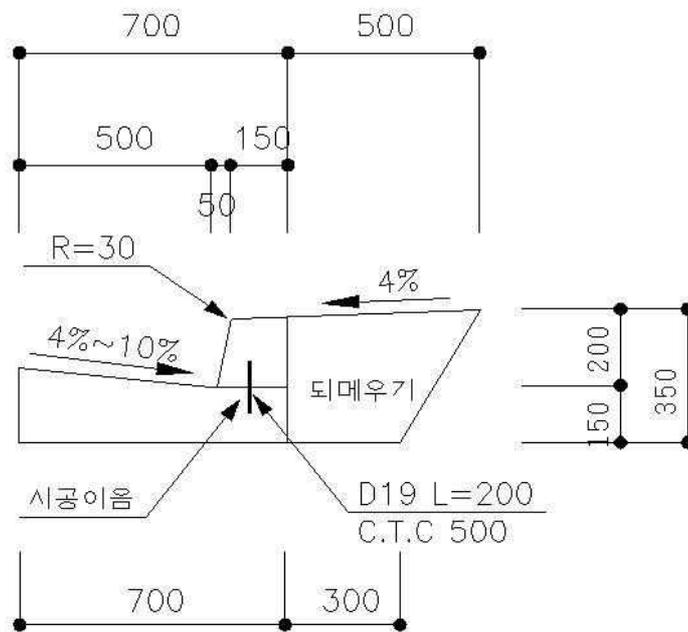
■ LJ40\* L형측구/TYPE-4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400.40000	L형측구	TYPE-4	m	22,503	5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L형 측구(TYPE-4)의 설치비용으로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수축줄눈 설치, 신축이음 설치, 철근가공 조립, 비닐깔기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하며,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L형측구 형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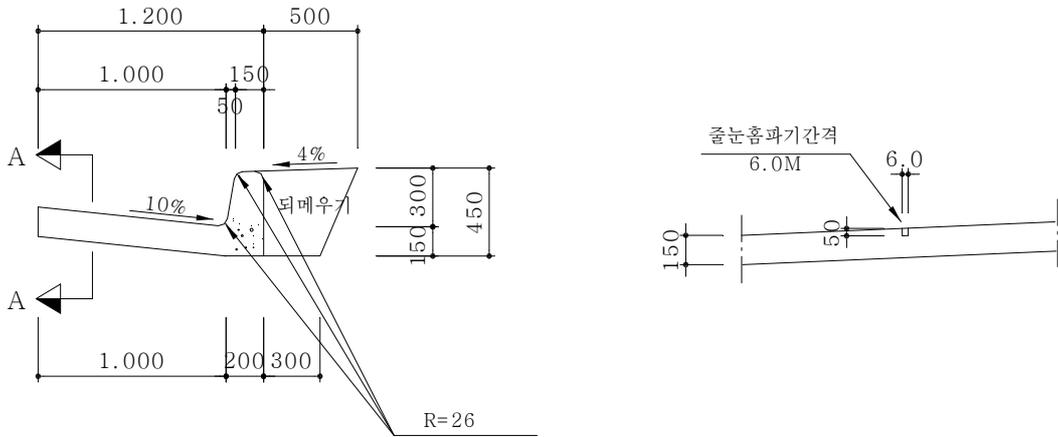
■ LJ40\* L형측구/ TYPE-1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400.01000	L형측구/토사구간	TYPE-1	m	23,144	2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L형측구(TYPE-1)의 기계포설 시공비용으로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에 필요한 시멘트, 석분, 모래등의 구입 및 운반,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포설 및 양생, 비닐 깔기, AE감수제, 줄눈 설치, 되메우기 비용이 포함되며, 생산된 콘크리트 운반비(믹서트럭),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 투입비용등이 포함된다.

【표준도】



<L형측구 형식 1-고속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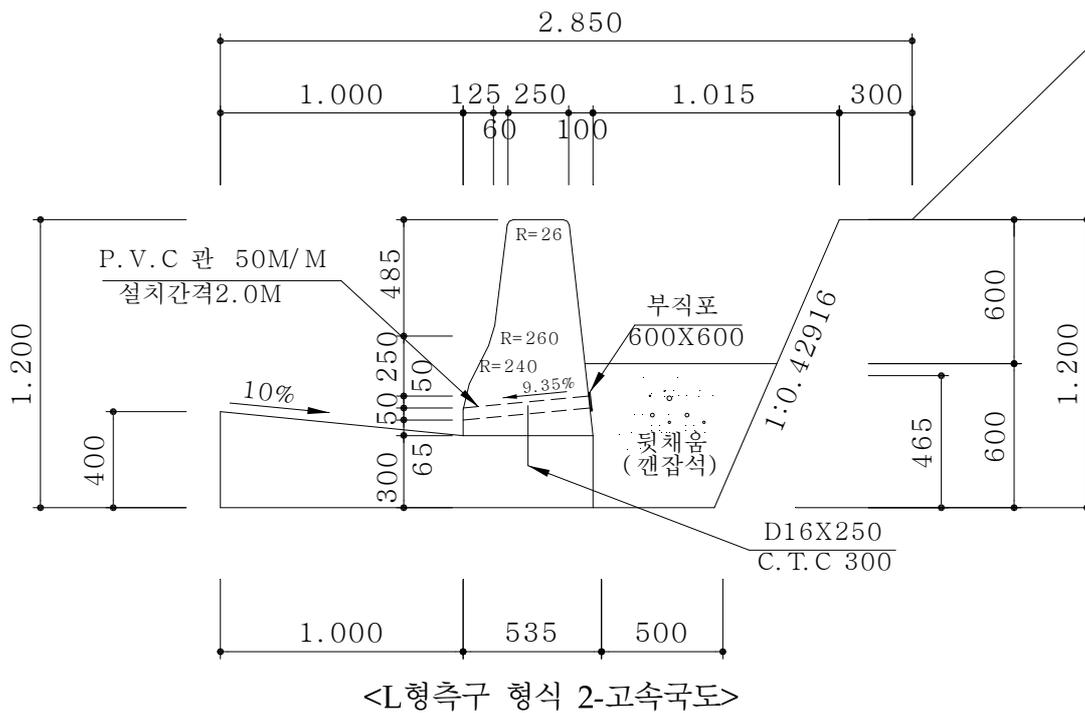
■ LJ40\* L형측구/ TYPE-2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400.02000	L형측구/토사구간	TYPE-2	m	57,126	1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L형측구(TYPE-2)의 기계포설 시공비용으로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에 필요한 시멘트, 석분, 모래등의 구입 및 운반,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포설 및 양생, P.V.C 파이프, 부직포, 비닐깔기, AE감수제, 줄눈설치, 뒷채움재의 채집 및 운반, 부설, 면고르기와 철근가공, 자재비, 운반비용이 포함되며, 생산된 콘크리트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용료, 골재 투입비용등이 포함된다.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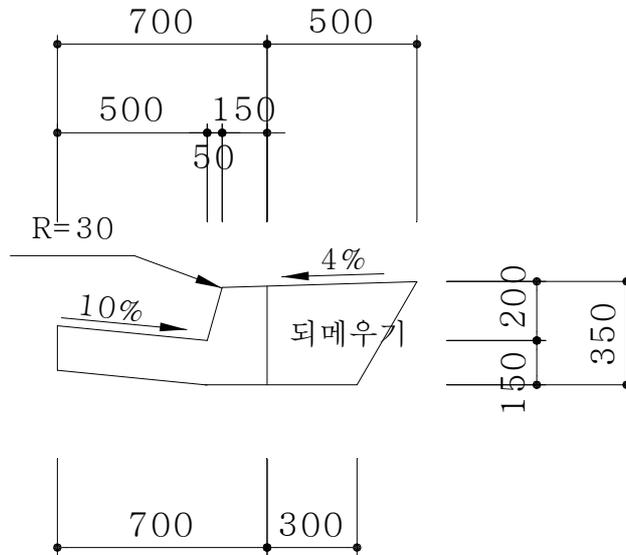
■ LJ40\* L형측구/ TYPE-4(부채도로용)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400.04000	L형측구/토사구간	TYPE-4	m	15,792	3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L형측구(TYPE-4)의 기계포설 시공비용으로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에 필요한 시멘트, 석분, 모래등의 구입 및 운반,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포설 및 양생, 비닐 깔기, AE감수제, 줄눈 설치, 되메우기 비용이 포함되며, 생산된 콘크리트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용등이 포함된다.

【표준도】



<L형측구 형식 4-고속국도>

## ■ LJ60\* U형측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600.10000	U형측구	TYPE-1	m	86,511	34%
LJ600.20000	U형측구	TYPE-2	m	165,825	62%
LJ600.30000	U형측구	TYPE-3	m	188,321	64%
LJ600.40000	U형측구	TYPE-4	m	210,658	66%

### 【단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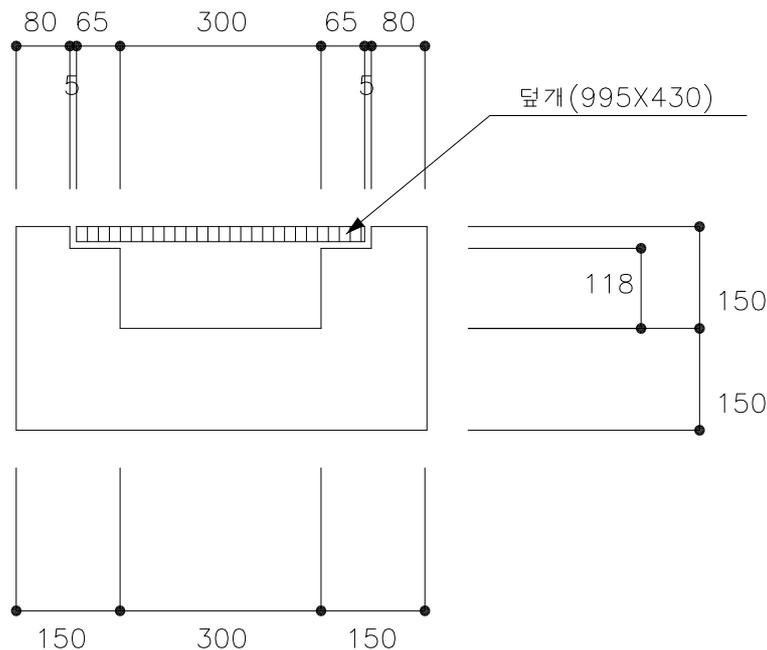
#### ① 형식-1(H=0.3M)

-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스틸그레이팅(차도용, 995X430)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콘크리트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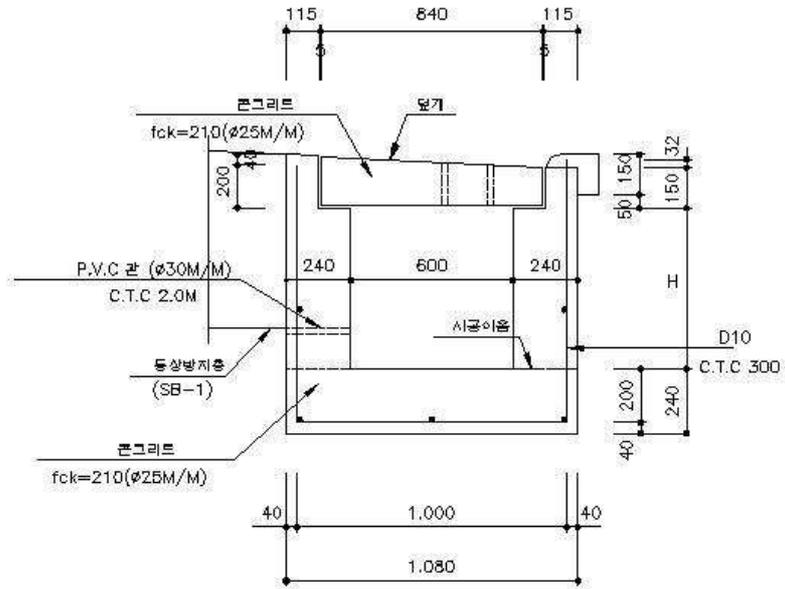
#### ② 형식-2(H=0.6M), 형식-3(H=0.8M), 형식-4 (H=1M)

-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덮개, PVC(30mm)관 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된다.

### 【표준도】



<U형측구 형식 1>



<U형측구 형식 2, 형식 3, 형식 4>

■ LJ61\* U형측구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610.10000	U형측구	Type-1	m	33,365	64%
LJ610.20000	U형측구	Type-2	m	197,596	60%
LJ610.30000	U형측구	Type-3	m	214,667	64%
LJ610.40000	U형측구	Type-4	m	246,291	63%
LJ610.50000	U형측구	Type-5	m	97,231	61%

【단가정의】

① 형식-1(H=0.15M)

-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U형측구(형식-1)의 시공비용으로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 뚜껑 설치(스틸그레이팅의 자재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 줄눈설치, 비닐깔기 비용이 포함된다.
-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 구입,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등이 포함된다.

② 형식-2(H=0.6M), 형식-3(H=0.8M), 형식-4(H=1M)

- 이 단가는 U형측구(형식-2, 3, 4)의 시공비용으로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 철근 가공조립, P.V.C파이프 재료비 및 설치비, 줄눈설치, 비닐깔기, 터파기, 철근자재의 구입 및 운반비용이 포함된다.
- 뚜껑 설치 비용으로는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운반, 타설, 강제거푸집, 철근자재비 운반비, 철근가공조립 및 설치비가 포함된다.
-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 구입,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등이 포함된다.

③ 형식-5(H=0.50M, 녹지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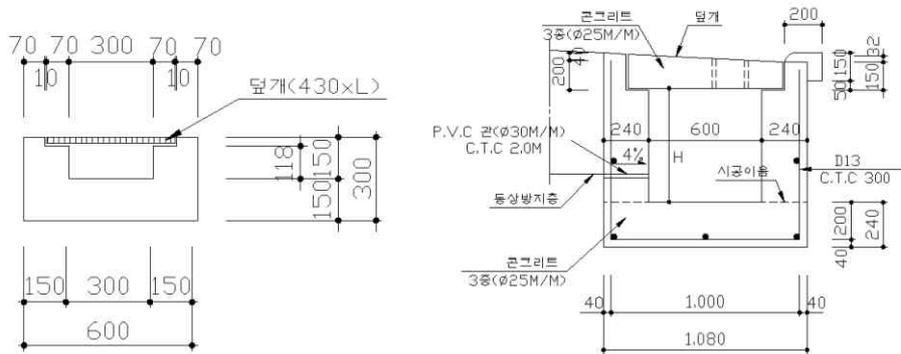
- 이 단가는 U형측구(형식-5)의 시공비용으로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 철근가공, 줄눈설치, 비닐깔기, 터파

기, 되메우기, 철근자재 및 운반비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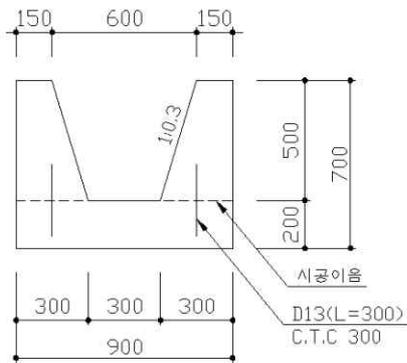
-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 구입,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등이 포함된다.

④ 이 단가는 고속국도 공사에 적용한다.

**【표준도】**



<U형측구 형식 1><U형측구 형식 2, 형식 3, 형식 4>



<U형측구 형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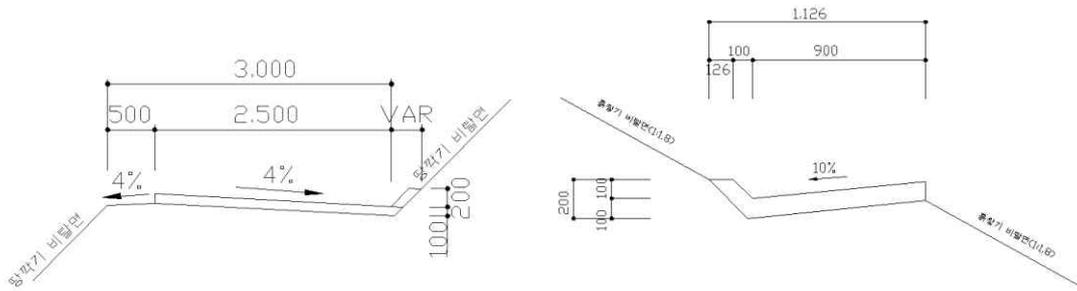
■ LJ75\* 소단 측구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750.10000	소단 측구	Type-1 (깎기부)	m	51,953	55%
LJ750.40000	소단 측구	Type-4 (쌓기부,고성토구간)	m	16,922	5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 줄눈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 ②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 구입,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등이 포함된다.
- ③ 이 단가는 고속국도 공사에 적용한다.

【표준도】



<소단측구 형식 1>      <소단측구 형식 4>

■ LJ80\* 콘크리트다이크 [고속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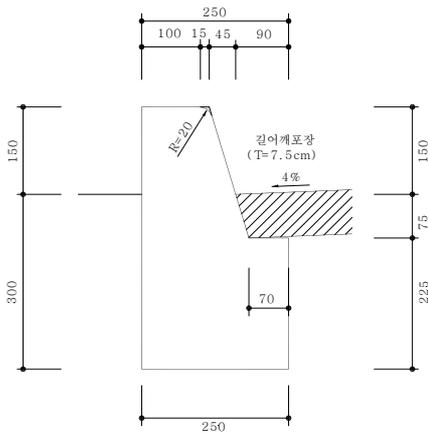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800.01000	콘크리트다이크	TYPE 1-1	m	9,838	28%
LJ800.02000	콘크리트다이크	TYPE 1-2	m	9,234	28%

【단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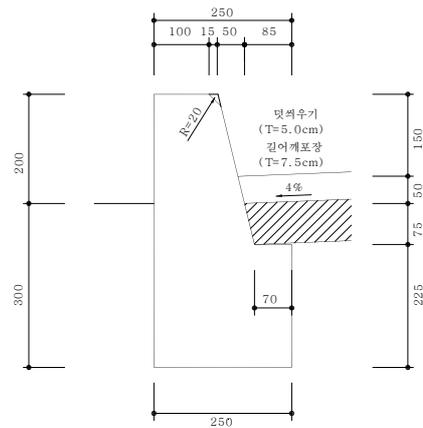
- ①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쌓기부 콘크리트다이크의 시공비용으로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에 필요한 시멘트, 석분, 모래등의 구입 및 운반,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포설 및 양생, A·E감수제, 줄눈 설치 비용이 포함되며, 생산된 콘크리트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용등이 포함된다.

【표준도】

- 콘크리트 다이크 Type 1-1 : 일반부
- 콘크리트 다이크 Type 1-2 : 오목구간 : 덧씌우기 포장 보수구간



<콘크리트 다이크 Type 1-1>



<콘크리트 다이크 Type 1-2>

■ LJ80\* 콘크리트다이크 [고속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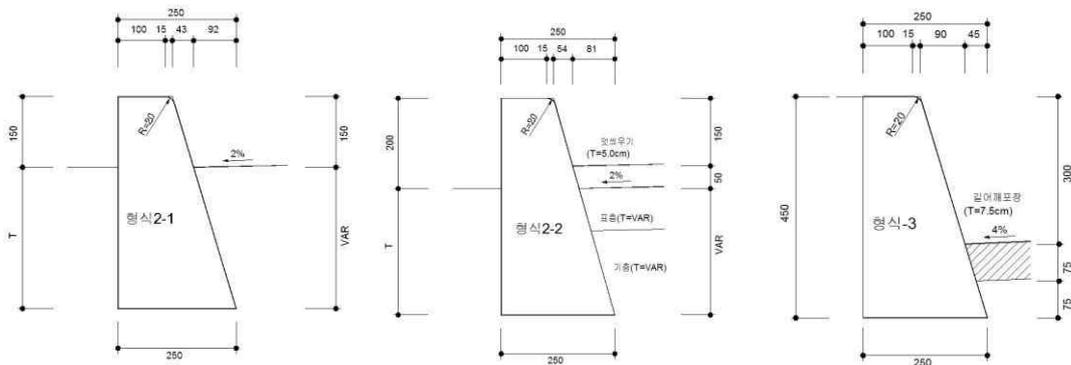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800.03000	콘크리트다이크	TYPE 2-1	m	9,101	33%
LJ800.05000	콘크리트다이크	TYPE 2-2	m	10,035	33%
LJ800.07000	콘크리트다이크	TYPE 3-1	m	8,659	3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속국도용 쌓기부 콘크리트다이크의 시공비용으로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에 필요한 시멘트, 석분, 모래등의 구입 및 운반,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포설 및 양생, A·E감수제, 줄눈 설치 비용이 포함되며, 생산된 콘크리트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용등이 포함된다.

【표준도】

- 콘크리트 다이크 Type 2-1 : 콘크리트 포장 연결로 보강구
- 콘크리트 다이크 Type 2-2 : 아스콘 포장연결로 보강구
- 콘크리트 다이크 Type 3-1 : 방음벽 구간



<콘크리트 다이크 Type 2-1, 2-2>

<콘크리트 다이크 Type 3>

■ LJ9\*\* 측구 뚝쌓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J900.00000	측구뚝쌓기	-	m <sup>3</sup>	6,252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측구 뚝쌓기를 위한 인건비등을 포함한다.

■ LK20\* VR관 기계부설 - VR관재료비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K200.31030	배수관(VR관) 기계부설	Ø300mm	m	44,062	75%
LK200.31045	배수관(VR관) 기계부설	Ø450mm	m	55,794	78%
LK200.31060	배수관(VR관) 기계부설	Ø600mm	m	77,509	86%
LK200.31080	배수관(VR관) 기계부설	Ø800mm	m	108,808	87%
LK200.31100	배수관(VR관) 기계부설	Ø1000mm	m	156,569	87%
LK200.31120	배수관(VR관) 기계부설	Ø1200mm	m	216,614	8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진동전압 콘크리트관(VR)관의 하차, 설치, 관부설, 기초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VR관 재료비와 콘크리트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②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물푸기 및 잡재료와 시험 및 검사비용은 제외한다.
- ③ 보강 VR관 부설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LK20\* 흡관 기계부설 / 흡관재료비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K201.21030	배수관(흡관) 기계부설	Ø300mm	m	27,469	80%
LK201.21045	배수관(흡관) 기계부설	Ø450mm	m	42,614	83%
LK201.21060	배수관(흡관) 기계부설	Ø600mm	m	67,362	87%
LK201.21080	배수관(흡관) 기계부설	Ø800mm	m	77,865	88%
LK201.21100	배수관(흡관) 기계부설	Ø1000mm	m	132,671	92%
LK201.21120	배수관(흡관) 기계부설	Ø1200mm	m	181,552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원심력콘크리트관의 하차, 부설 및 접합비용이 포함되며, 흡관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②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물푸기 및 잡재료와 시험 및 검사비용은 제외한다.
- ③ 기초 또는 보강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경우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LK2\*\* 흡관 절단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K201.25025	흡관 절단	ø250mm	nr(개소)	1,945	97%
LK201.25030	흡관 절단	ø300mm	nr(개소)	3,074	96%
LK201.25035	흡관 절단	ø350mm	nr(개소)	5,836	97%
LK201.25040	흡관 절단	ø400mm	nr(개소)	8,595	97%
LK201.25045	흡관 절단	ø450mm	nr(개소)	9,731	97%
LK201.25050	흡관 절단	ø500mm	nr(개소)	14,118	97%
LK201.25060	흡관 절단	ø600mm	nr(개소)	19,640	97%
LK201.25070	흡관 절단	ø700mm	nr(개소)	24,870	97%
LK201.25080	흡관 절단	ø800mm	nr(개소)	32,379	98%

【단가정의】

- ① 절단기를 사용하여 흡관을 절단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절단기(40.64cm) 사용료 및 소운반 비용이 포함된다.

■ LK3\*\* 보강 배수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K341.00800	보강배수관/흡관	D800	m	133,126	78%
LK351.01000	보강배수관/흡관	D1000	m	185,080	80%
LK351.02000	보강배수관/흡관	D1200	m	236,512	82%
LK342.00800	보강배수관/VR관	D800	m	138,628	77%
LK352.01000	보강배수관/VR관	D1000	m	188,897	80%
LK352.02000	보강배수관/VR관	D1200	m	240,587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보강 배수관 설치에 소요되는 배수관 접합 및 부설,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배수관 및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물푸기 및 잡재료와 시험 및 검사비용은 제외한다.
- ④ 토피고는 15m미만, 보강은 사면보강(Surround)에 준한다.

■ LK40\* 파형강관 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K400.40300	파형강관 부설	D=300mm	m	2,380	97%
LK400.40450	파형강관 부설	D=450mm	m	4,627	96%
LK400.40600	파형강관 부설	D=600mm	m	6,487	74%
LK400.40800	파형강관 부설	D=800mm	m	10,354	71%
LK400.41000	파형강관 부설	D=1000mm	m	13,129	73%
LK400.41200	파형강관 부설	D=1200mm	m	15,900	7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나선형 파형강관의 접합 및 부설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파형강관 및 접합부품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비용은 제외한다.
- ④ 기초 또는 보강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경우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LL1\*\* 집수정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111.1101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1, D300	nr(개소)	441,522	69%
LL111.1102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1, D450	nr(개소)	434,513	69%
LL111.1103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1, D600	nr(개소)	424,332	69%
LL111.1104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1, D800	nr(개소)	677,854	69%
LL111.1105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1, D1000	nr(개소)	654,649	69%
LL111.1106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1, D1200	nr(개소)	738,886	69%
LL111.2201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2, D300	nr(개소)	474,979	74%
LL111.2202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2, D450	nr(개소)	460,961	74%
LL111.2203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2, D600	nr(개소)	426,702	75%
LL111.2204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2, D800	nr(개소)	684,345	74%
LL111.2205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2, D1000	nr(개소)	661,194	74%
LL111.22060	흡쌍기부 집수정	형식2, D1200	nr(개소)	758,255	75%
LL121.1104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1, D800	nr(개소)	623,048	72%
LL121.1105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1, D1000	nr(개소)	631,897	73%
LL121.1106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1, D1200	nr(개소)	815,144	72%
LL121.2201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2, D300	nr(개소)	213,850	63%
LL121.2202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2, (L)700*(H)200	nr(개소)	193,562	72%
LL121.3301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3, D200	nr(개소)	216,720	62%
LL121.3302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3, D250	nr(개소)	229,415	59%
LL121.4404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4, D800	nr(개소)	604,400	72%
LL121.4405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4, D1000	nr(개소)	706,246	72%
LL121.4406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4, D1200	nr(개소)	806,415	72%
LL121.5504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5, D800	nr(개소)	493,644	78%
LL121.5505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5, D1000	nr(개소)	591,210	79%
LL121.55060	흡깔기부 집수정	형식5, D1200	nr(개소)	684,220	7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집수정 설치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거푸집, 스틸그레이팅, 부대작업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콘크리트, 스틸그레이팅)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부대작업(계단철근 제작 및 도금, PVC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표준도 및 적용기준】**

- ① “국도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의 해당 공종·규격의 표준도를 준용한다
- ②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거푸집,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 ③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체 (A)			<b>*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b>			
	무근콘크리트타설	m <sup>3</sup>	( )	25,573	( A1 )	· EC120.11001
	거푸집 /보통마감	m <sup>2</sup>	( )	27,795	( A2 )	· ED200.01000
	소계		A1~A2의 합( ① )			
부대공 (B)			<b>* 실 설계수량 × 시중물가</b>			
	계단철근 설치/도금	ton	( )	( )	( B1 )	
	스틸그레이팅 설치	ea	( )	( )	( B2 )	
	소계		B1~B2의 합( ② )  ※항목별 직접계상이 곤란한 경우는 <b>본체공사비 ①의 ( )% 계상</b> -성토부 형식1(11%), 형식2(7%) -절토부 형식1(8%), 형식2(16%) -            형식3(25%), 형식4(7%) -            형식5(11%)			
	합계		① + ②			목적물 단위당 단가

■ LL10\* 배수구조물 / 집수정 [고속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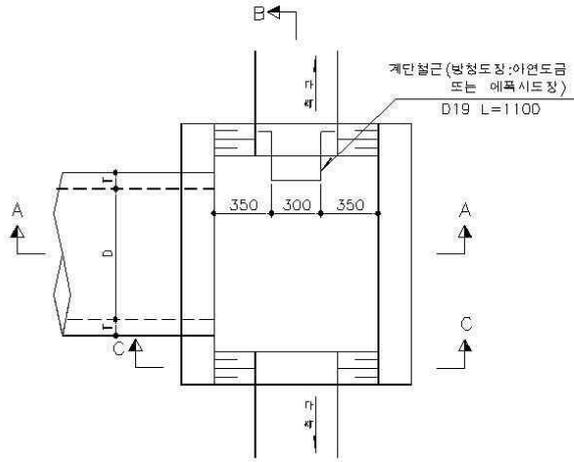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110.40600	집수정/흙쌓기부	D=600mm	nr(개소)	492,987	65%
LL110.50800	집수정/흙쌓기부	D=800mm	nr(개소)	832,203	64%
LL110.61000	집수정/흙쌓기부	D=1000mm	nr(개소)	835,330	67%
LL110.71200	집수정/흙쌓기부	D=1200mm	nr(개소)	762,438	67%

【단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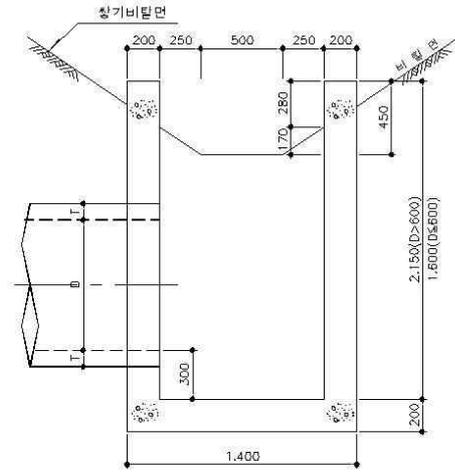
- ① 이 단가는 집수정 설치에 소요되는 토공비용과 구조물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토공비용에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비용이 포함된다.
- ③ 구조물 설치비용에는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 철근구입 및 운반, 철근가공조립, 스틸그레이팅 설치, 계단철근도장비용이 포함되며, 콘크리트 생산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구입,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비,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스틸그레이팅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④ 이 단가는 고속국도 공사에 적용한다.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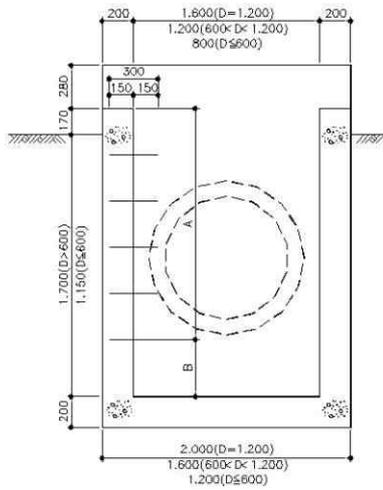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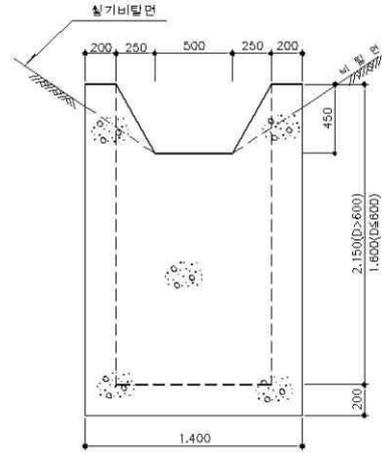
단면 A-A



단면 B-B



단면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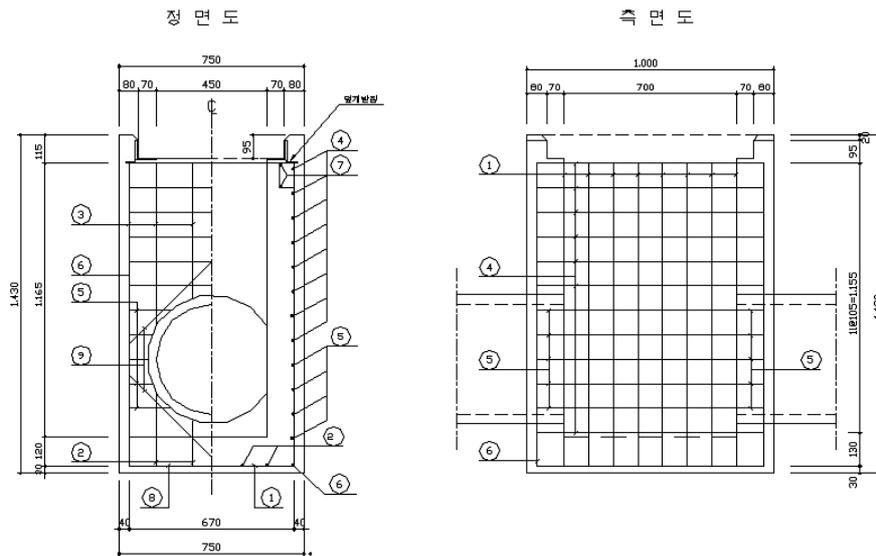
■ LL14\* 배수구조물/ 중분대 집수정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140.01000	중분대 집수정	Type-1	nr(개소)	327,574	60%
LL140.02000	중분대 집수정	Type-2	nr(개소)	321,852	60%
LL140.03000	중분대 집수정	Type-3	nr(개소)	313,173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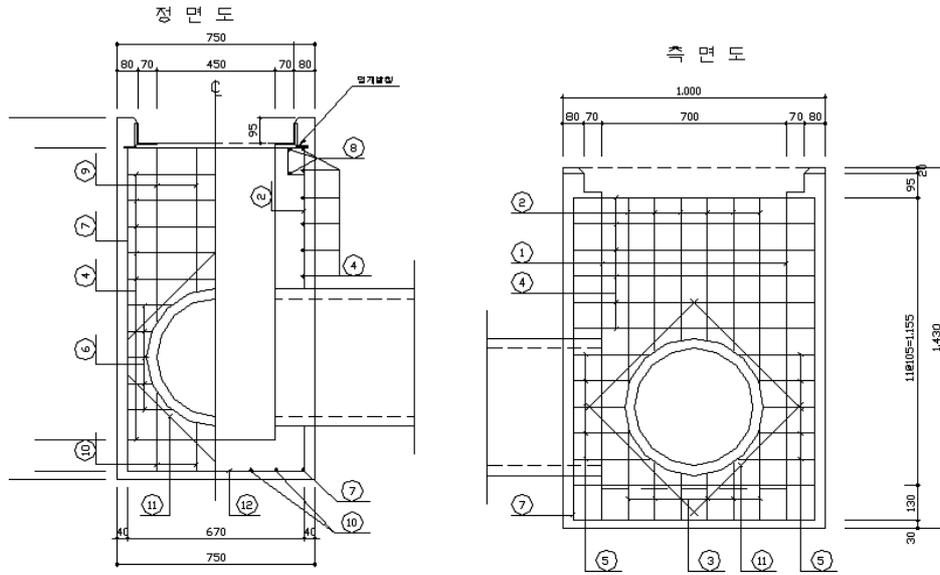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및 운반, 타설비, 합판거푸집, 철근 재료비 및 운반, 가공 조립, 터파기, 되메우기, 스틸그레이팅 설치비가 포함된다. 다만, 스틸그레이팅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② 콘크리트 생산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구입, 조골재생산 및 운반(또는 구입)비,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투입비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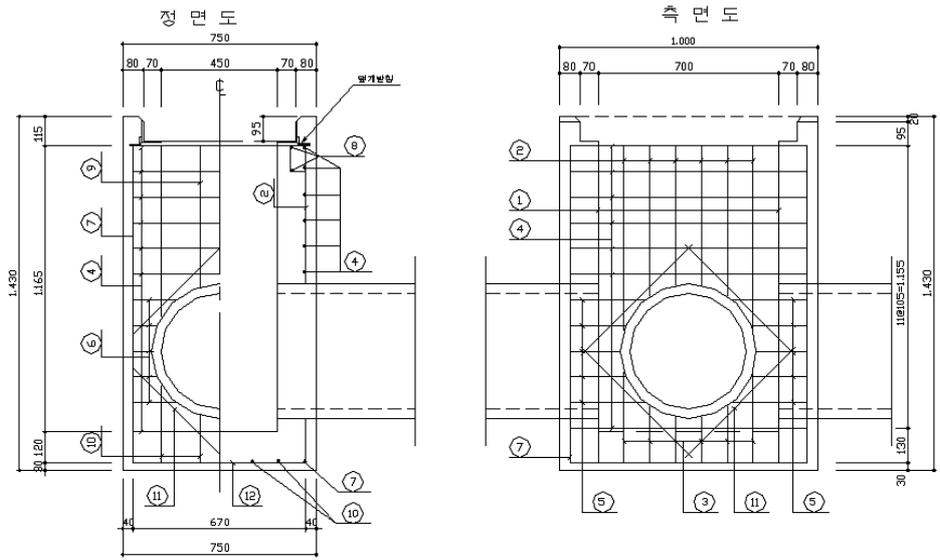
【표준도】



<중분대 집수정 형식-1(1방향:580x830x1430)>



<중분대 집수정 형식-2(2방향:580x830x1430)>



<중분대 집수정 형식-3(3방향:580x830x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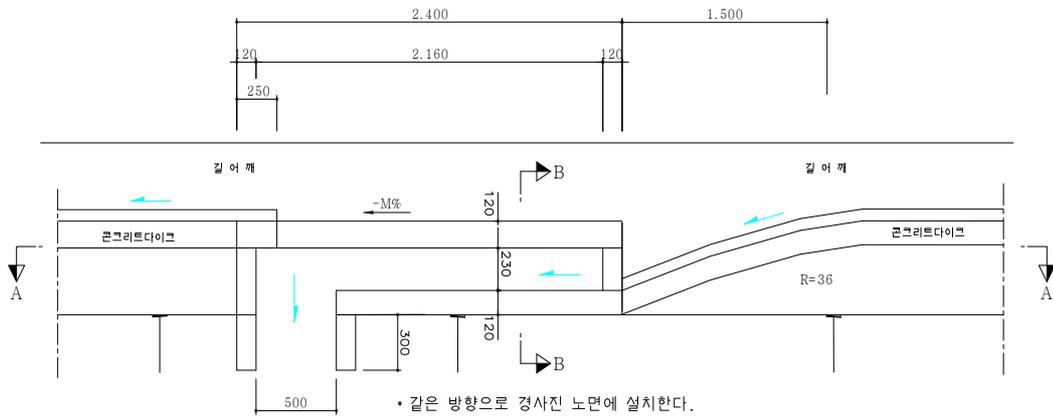
## ■ LL20\* 다이크 집수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201.00000	다이크 집수거	L형	ea(개)	117,876	80%
LL202.00000	다이크 집수거	T형	ea(개)	225,08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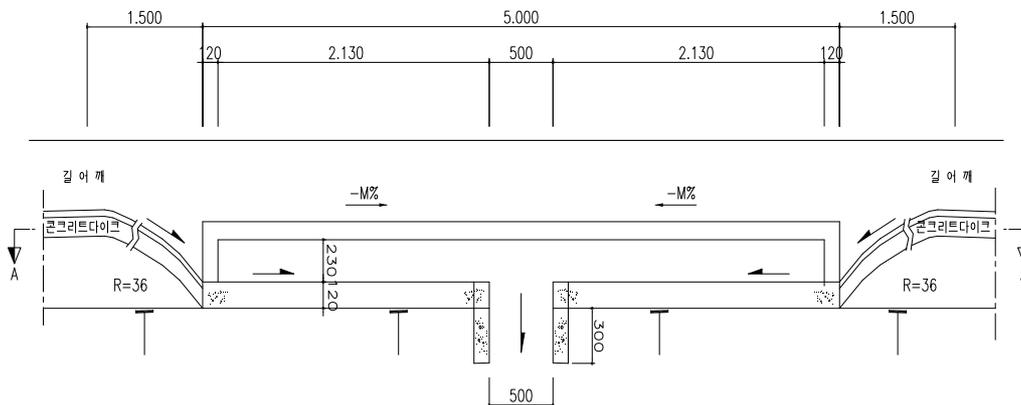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다이크 집수거 설치에 소요되는 콘크리트타설, 거푸집 재료비 및 조립, 해체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된다.

### 【표준도】



<다이크 집수거 L형>



<다이크 집수거 T형>

■ LL31\* 용수개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310.00909	용수개거	(H)0.9m×(B)0.9m	m	156,014	69%
LL310.00915	용수개거	(H)0.9m×(B)1.5m	m	163,213	70%
LL310.01010	용수개거	(H)1.0m×(B)1.0m	m	170,664	69%
LL310.01015	용수개거	(H)1.0m×(B)1.5m	m	176,666	70%
LL310.01111	용수개거	(H)1.1m×(B)1.1m	m	191,163	70%
LL310.01115	용수개거	(H)1.1m×(B)1.5m	m	196,239	70%
LL310.01212	용수개거	(H)1.2m×(B)1.2m	m	206,096	70%
LL310.01215	용수개거	(H)1.2m×(B)1.5m	m	209,907	70%
LL310.01313	용수개거	(H)1.3m×(B)1.3m	m	221,886	70%
LL310.01315	용수개거	(H)1.3m×(B)1.5m	m	224,462	70%
LL310.01414	용수개거	(H)1.4m×(B)1.4m	m	239,617	71%
LL310.01415	용수개거	(H)1.4m×(B)1.5m	m	240,952	71%
LL310.01515	용수개거	(H)1.5m×(B)1.5m	m	262,650	72%
LL310.01520	용수개거	(H)1.5m×(B)2.0m	m	270,592	73%
LL310.01616	용수개거	(H)1.6m×(B)1.6m	m	281,586	73%
LL310.01620	용수개거	(H)1.6m×(B)2.0m	m	288,134	73%
LL310.01717	용수개거	(H)1.7m×(B)1.7m	m	300,954	73%
LL310.01720	용수개거	(H)1.7m×(B)2.0m	m	306,061	74%
LL310.01818	용수개거	(H)1.8m×(B)1.8m	m	323,303	74%
LL310.01820	용수개거	(H)1.8m×(B)2.0m	m	326,741	74%
LL310.01919	용수개거	(H)1.9m×(B)1.9m	m	342,013	74%
LL310.01920	용수개거	(H)1.9m×(B)2.0m	m	343,792	74%
LL310.02020	용수개거	(H)2.0m×(B)2.0m	m	361,664	74%
LL310.02025	용수개거	(H)2.0m×(B)2.5m	m	371,052	75%
LL310.02121	용수개거	(H)2.1m×(B)2.1m	m	386,276	75%
LL310.02125	용수개거	(H)2.1m×(B)2.5m	m	393,787	75%
LL310.02222	용수개거	(H)2.2m×(B)2.2m	m	413,671	76%
LL310.02225	용수개거	(H)2.2m×(B)2.5m	m	419,561	76%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310.02323	용수개거	(H)2.3m×(B)2.3m	m	436,604	76%
LL310.02325	용수개거	(H)2.3m×(B)2.5m	m	440,662	76%
LL310.02424	용수개거	(H)2.4m×(B)2.4m	m	454,165	76%
LL310.02425	용수개거	(H)2.4m×(B)2.5m	m	456,193	76%
LL310.02525	용수개거	(H)2.5m×(B)2.5m	m	482,182	77%
LL310.02530	용수개거	(H)2.5m×(B)3.0m	m	493,142	77%
LL310.03030	용수개거	(H)3.0m×(B)3.0m	m	586,446	78%
LL310.03035	용수개거	(H)3.0m×(B)3.5m	m	598,163	78%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용수개거 설치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부대작업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철근,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또한, 비계,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비용을 제외한다.
- ③ 부대작업(지수판, 채움제, 봉합재, 스페이서, 지수재, 수축줄눈, 버팀대, 계단철근 제작 및 도금)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표준도 및 적용기준】

- ① “국도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의 해당 공종·규격의 표준도를 준용한다
- ②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③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체 (A)				<b>*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b>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ton	( )	400,715	( A1 )	• EE000.300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카, S=15	m <sup>3</sup>	( )	13,141	( A2 )	• EC220.12321
	무근콘크리트타설 /빈배합	m <sup>3</sup>	( )	24,425	( A3 )	• EC110.11002
	거푸집 /매끈한마감	m <sup>2</sup>	( )	32,474	( A4 )	• ED300.01000
	거푸집 /보통마감	m <sup>2</sup>	( )	27,795	( A5 )	• ED200.01000
	거푸집 /거친마감	m <sup>2</sup>	( )	22,836	( A6 )	• ED100.01000
소계		A1~A6의 합( ① )				
부대공 (B)				<b>* 실 설계수량 × 시중물가</b>		
	수축줄눈	m	( )	( )	( B1 )	
	지수판	m	( )	( )	( B2 )	
	채움재(스티로폼)	m <sup>2</sup>	( )	( )	( B3 )	
	봉합제(실런트)	m	( )	( )	( B4 )	
	다웰바	ea	( )	( )	( B5 )	
	지수재(수팽창고무)	m	( )	( )	( B6 )	
	스페이셔	m <sup>2</sup>	( )	( )	( B7 )	
	계단철근 설치/도금	ton	( )	( )	( B8 )	
	버팀대 설치	m	( )	( )	( B9 )	
소계		B1~B9의 합( ② )				※항목별 직접계상이 곤란한 경우는 본체공사비 ①의 13% 계상
합계		① + ②				목적물 단위당 단가

■ LL3\*\* 도수로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330.10100	흡쌍기부 도수로	형식1,2, D300	m	57,336	74%
LL330.10200	흡쌍기부 도수로	형식1,2, D600	m	74,089	74%
LL330.10300	흡쌍기부 도수로	형식1,2, D800	m	77,394	74%
LL330.10400	흡쌍기부 도수로	형식1,2, D1000	m	92,667	74%
LL330.10500	흡쌍기부 도수로	형식1,2, D1200	m	108,569	74%
LL330.10600	흡쌍기부 도수로	형식1,2, 중분대배수용	m	66,825	75%
LL341.01100	흡깔기부 도수로	토사, (B)300×(H)250	m	52,928	73%
LL341.01200	흡깔기부 도수로	토사, (B)400×(H)350	m	68,741	73%
LL341.01300	흡깔기부 도수로	토사, (B)500×(H)450	m	84,240	73%
LL341.01400	흡깔기부 도수로	토사, (B)600×(H)500	m	92,511	73%
LL342.02100	흡깔기부 도수로	암구간, (B)300×(H)250	m	37,088	76%
LL342.02200	흡깔기부 도수로	암구간, (B)400×(H)350	m	48,941	76%
LL342.02300	흡깔기부 도수로	암구간, (B)500×(H)450	m	60,480	75%
LL342.02400	흡깔기부 도수로	암구간, (B)600×(H)500	m	66,771	7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도수로 설치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철근,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 ① “국도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의 해당 공종·규격의 표준도를 준용한다
- ②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 ③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			
본체 (A)	철근가공 및 조립 /간단	ton	( )	314,903	( A1 )	· EE000.10000
	비탈면구조물 콘크리트타설 /1:12보다 급한경우	m <sup>3</sup>	( )	79,951	( A2 )	· EC000.70020
	거푸집 /보통마감	m <sup>2</sup>	( )	27,795	( A3 )	· ED200.01000
	합계			A1 ~ A3의 합		목적물 단위당 단가

■ LL73\* 배수관 날개벽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730.111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300, Ø90-82	nr(개소)	140,458	73%
LL730.111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300, Ø82-68	nr(개소)	153,675	73%
LL730.111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300, Ø68-53	nr(개소)	152,051	73%
LL730.111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300, Ø53-38	nr(개소)	170,958	73%
LL730.112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450, Ø90-82	nr(개소)	206,716	73%
LL730.112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450, Ø82-68	nr(개소)	227,348	73%
LL730.112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450, Ø68-53	nr(개소)	224,400	73%
LL730.112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450, Ø53-38	nr(개소)	250,201	73%
LL730.113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600, Ø90-82	nr(개소)	317,779	74%
LL730.113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600, Ø82-68	nr(개소)	350,013	74%
LL730.113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600, Ø68-53	nr(개소)	343,185	74%
LL730.113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600, Ø53-38	nr(개소)	383,525	74%
LL730.114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800, Ø90-82	nr(개소)	447,659	74%
LL730.114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800, Ø82-68	nr(개소)	491,323	74%
LL730.114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800, Ø68-53	nr(개소)	483,880	74%
LL730.114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800, Ø53-38	nr(개소)	538,399	74%
LL730.115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000, Ø90-82	nr(개소)	644,499	75%
LL730.115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000, Ø82-68	nr(개소)	706,717	75%
LL730.115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000, Ø68-53	nr(개소)	695,574	75%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730.115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000, Ø53-38	nr(개소)	774,308	75%
LL730.116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200, Ø90-82	nr(개소)	845,362	75%
LL730.116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200, Ø82-68	nr(개소)	926,065	75%
LL730.116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200, Ø68-53	nr(개소)	910,102	75%
LL730.116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1.5, D1200, Ø53-38	nr(개소)	1,009,009	76%
LL730.121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300, Ø90-82	nr(개소)	155,802	73%
LL730.121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300, Ø82-68	nr(개소)	171,958	73%
LL730.121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300, Ø68-53	nr(개소)	168,984	73%
LL730.121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300, Ø53-38	nr(개소)	189,829	73%
LL730.122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450, Ø90-82	nr(개소)	231,176	73%
LL730.122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450, Ø82-68	nr(개소)	256,959	73%
LL730.122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450, Ø68-53	nr(개소)	251,336	73%
LL730.122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450, Ø53-38	nr(개소)	281,013	74%
LL730.123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600, Ø90-82	nr(개소)	357,241	74%
LL730.123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600, Ø82-68	nr(개소)	398,024	74%
LL730.123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600, Ø68-53	nr(개소)	387,573	74%
LL730.123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600, Ø53-38	nr(개소)	433,641	74%
LL730.124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800, Ø90-82	nr(개소)	505,814	74%
LL730.124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800, Ø82-68	nr(개소)	561,860	74%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730.124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800, Ø68-53	nr(개소)	549,443	74%
LL730.124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800, Ø53-38	nr(개소)	612,848	75%
LL730.125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000, Ø90-82	nr(개소)	719,514	74%
LL730.125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000, Ø82-68	nr(개소)	794,072	74%
LL730.125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000, Ø68-53	nr(개소)	775,460	74%
LL730.125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000, Ø53-38	nr(개소)	861,339	74%
LL730.1261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200, Ø90-82	nr(개소)	960,445	75%
LL730.1262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200, Ø82-68	nr(개소)	1,065,584	75%
LL730.1263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200, Ø68-53	nr(개소)	1,040,374	76%
LL730.12640	배수관 날개벽(1런)	경사:1:8, D1200, Ø53-38	nr(개소)	1,158,025	76%
LL730.2111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300, Ø90-82	nr(개소)	192,851	72%
LL730.2112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300, Ø82-68	nr(개소)	207,853	73%
LL730.2113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300, Ø68-53	nr(개소)	213,116	73%
LL730.2114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300, Ø53-38	nr(개소)	246,324	73%
LL730.2121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450, Ø90-82	nr(개소)	283,537	73%
LL730.2122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450, Ø82-68	nr(개소)	307,739	73%
LL730.2123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450, Ø68-53	nr(개소)	314,334	73%
LL730.2124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450, Ø53-38	nr(개소)	361,509	73%
LL730.2131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600, Ø90-82	nr(개소)	418,781	73%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730.2132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600, Ø82-68	nr(개소)	455,250	73%
LL730.2133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600, Ø68-53	nr(개소)	462,954	73%
LL730.2134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600, Ø53-38	nr(개소)	531,997	74%
LL730.2141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800, Ø90-82	nr(개소)	591,638	74%
LL730.2142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800, Ø82-68	nr(개소)	643,815	74%
LL730.2143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800, Ø68-53	nr(개소)	653,440	74%
LL730.2144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800, Ø53-38	nr(개소)	748,559	74%
LL730.2151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000, Ø90-82	nr(개소)	834,446	74%
LL730.2152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000, Ø82-68	nr(개소)	907,608	74%
LL730.2153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000, Ø68-53	nr(개소)	922,365	74%
LL730.2154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000, Ø53-38	nr(개소)	1,056,041	75%
LL730.2161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200, Ø90-82	nr(개소)	1,093,348	75%
LL730.2162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200, Ø82-68	nr(개소)	1,188,008	75%
LL730.2163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200, Ø68-53	nr(개소)	1,206,248	75%
LL730.21640	배수관 날개벽(2런)	경사:1:1.5, D1200, Ø53-38	nr(개소)	1,378,571	7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배수관 날개벽 설치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날개벽 높이(H)는 6m이내를 기준한 것이다.

**【표준도】**

- ① “국도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의 해당 공종·규격의 표준도를 준용한다
- ②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 ③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체 (A)			*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			
	무근콘크리트타설	m <sup>3</sup>	( )	25,573	( A1 )	· EC120.11001
	거푸집 /매끈한마감	m <sup>2</sup>	( )	32,474	( A2 )	· ED300.01000
	합계			A1~A2의 합		목적물 단위당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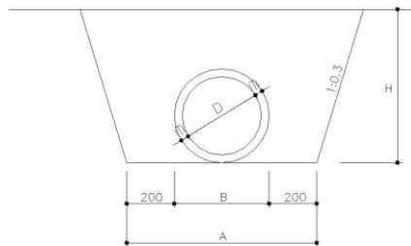
■ LL63\* 배수구조물 / 배수관면벽 [고속국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L630.00600	배수관 면벽	D=600mm	nr(개소)	119,846	70%
LL630.00800	배수관 면벽	D=800mm	nr(개소)	202,793	68%
LL630.01000	배수관 면벽	D=1,000mm	nr(개소)	276,018	67%
LL630.01200	배수관 면벽	D=1,200mm	nr(개소)	427,427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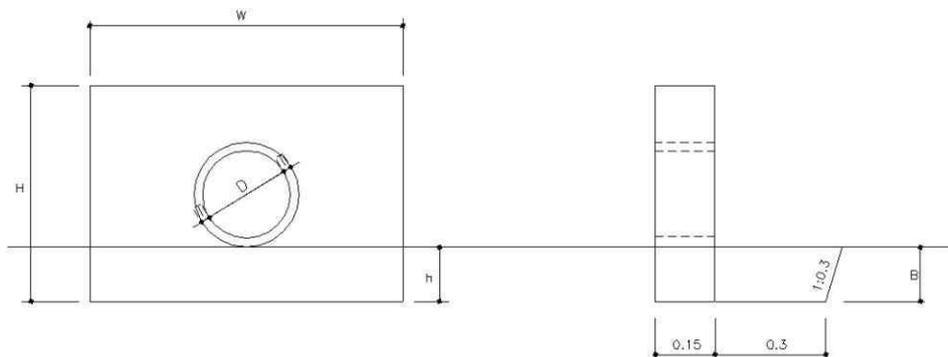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배수관의 면벽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터파기, 되메우기,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타설비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생산인 경우 시멘트, 세골재, 조골재 생산(또는 구입) 및 운반,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사용료, 골재 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 ③ 이 단가는 고속국도 공사에 적용한다.

【표준도】



<배수관>



<면벽>

■ LM1\*\* 수로암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10.01010	수로암거(1련)	(B)2.0m×(H)1.5m, 토포:2m이하	m	483,679	76%
LM110.01020	수로암거(1련)	(B)2.0m×(H)1.5m, 토포:3m이하	m	496,502	76%
LM110.01030	수로암거(1련)	(B)2.0m×(H)1.5m, 토포:5m이하	m	500,890	75%
LM110.01040	수로암거(1련)	(B)2.0m×(H)1.5m, 토포:7m이하	m	513,293	76%
LM110.01050	수로암거(1련)	(B)2.0m×(H)1.5m, 토포:10m이하	m	539,684	77%
LM110.02010	수로암거(1련)	(B)2.0m×(H)2.0m, 토포:2m이하	m	564,425	75%
LM110.02020	수로암거(1련)	(B)2.0m×(H)2.0m, 토포:3m이하	m	580,454	76%
LM110.02030	수로암거(1련)	(B)2.0m×(H)2.0m, 토포:5m이하	m	584,461	76%
LM110.02040	수로암거(1련)	(B)2.0m×(H)2.0m, 토포:7m이하	m	606,846	76%
LM110.02050	수로암거(1련)	(B)2.0m×(H)2.0m, 토포:10m이하	m	633,659	77%
LM110.03010	수로암거(1련)	(B)2.5m×(H)2.0m, 토포:2m이하	m	623,151	76%
LM110.03020	수로암거(1련)	(B)2.5m×(H)2.0m, 토포:3m이하	m	634,772	76%
LM110.03030	수로암거(1련)	(B)2.5m×(H)2.0m, 토포:5m이하	m	659,359	77%
LM110.03040	수로암거(1련)	(B)2.5m×(H)2.0m, 토포:7m이하	m	679,625	77%
LM110.03050	수로암거(1련)	(B)2.5m×(H)2.0m, 토포:10m이하	m	720,456	78%
LM110.04010	수로암거(1련)	(B)2.5m×(H)2.5m, 토포:2m이하	m	707,507	76%
LM110.04020	수로암거(1련)	(B)2.5m×(H)2.5m, 토포:3m이하	m	724,738	76%
LM110.04030	수로암거(1련)	(B)2.5m×(H)2.5m, 토포:5m이하	m	751,330	77%
LM110.04040	수로암거(1련)	(B)2.5m×(H)2.5m, 토포:7m이하	m	772,793	77%
LM110.04050	수로암거(1련)	(B)2.5m×(H)2.5m, 토포:10m이하	m	821,508	7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10.05010	수로암거(1런)	(B)3.0m×(H)2.5m, 토포:2m이하	m	771,769	76%
LM110.05020	수로암거(1런)	(B)3.0m×(H)2.5m, 토포:3m이하	m	782,833	77%
LM110.05030	수로암거(1런)	(B)3.0m×(H)2.5m, 토포:5m이하	m	814,803	77%
LM110.05040	수로암거(1런)	(B)3.0m×(H)2.5m, 토포:7m이하	m	875,434	78%
LM110.05050	수로암거(1런)	(B)3.0m×(H)2.5m, 토포:10m이하	m	939,466	78%
LM110.06010	수로암거(1런)	(B)3.0m×(H)3.0m, 토포:2m이하	m	858,926	76%
LM110.06020	수로암거(1런)	(B)3.0m×(H)3.0m, 토포:3m이하	m	875,205	77%
LM110.06030	수로암거(1런)	(B)3.0m×(H)3.0m, 토포:5m이하	m	934,420	78%
LM110.06040	수로암거(1런)	(B)3.0m×(H)3.0m, 토포:8m이하	m	987,167	79%
LM110.06050	수로암거(1런)	(B)3.0m×(H)3.0m, 토포:10m이하	m	1,057,480	79%
LM110.08010	수로암거(1런)	(B)3.5m×(H)3.5m, 토포:2m이하	m	1,033,633	78%
LM110.08020	수로암거(1런)	(B)3.5m×(H)3.5m, 토포:3m이하	m	1,062,267	78%
LM110.08030	수로암거(1런)	(B)3.5m×(H)3.5m, 토포:5m이하	m	1,125,963	78%
LM110.08040	수로암거(1런)	(B)3.5m×(H)3.5m, 토포:7m이하	m	1,181,014	78%
LM110.08050	수로암거(1런)	(B)3.5m×(H)3.5m, 토포:10m이하	m	1,312,438	80%
LM110.09010	수로암거(1런)	(B)4.0m×(H)4.0m, 토포:2m이하	m	1,223,099	78%
LM110.09020	수로암거(1런)	(B)4.0m×(H)4.0m, 토포:3m이하	m	1,235,521	79%
LM110.09030	수로암거(1런)	(B)4.0m×(H)4.0m, 토포:5m이하	m	1,327,357	78%
LM110.09040	수로암거(1런)	(B)4.0m×(H)4.0m, 토포:7m이하	m	1,445,677	80%
LM110.09050	수로암거(1런)	(B)4.0m×(H)4.0m, 토포:10m이하	m	1,560,810	81%
LM110.11010	수로암거(1런)	(B)4.5m×(H)4.5m, 토포:2m이하	m	1,420,952	79%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10.11020	수로암거(1련)	(B)4.5m×(H)4.5m, 토포:3m이하	m	1,462,225	79%
LM110.11030	수로암거(1련)	(B)4.5m×(H)4.5m, 토포:5m이하	m	1,598,403	80%
LM110.11040	수로암거(1련)	(B)4.5m×(H)4.5m, 토포:7m이하	m	1,694,249	81%
LM110.11050	수로암거(1련)	(B)4.5m×(H)4.5m, 토포:10m이하	m	1,907,702	81%
LM120.01010	수로암거(2련)	(B)2.0m×(H)1.5m, 토포:2m이하	m	785,910	76%
LM120.01020	수로암거(2련)	(B)2.0m×(H)1.5m, 토포:3m이하	m	796,329	77%
LM120.01030	수로암거(2련)	(B)2.0m×(H)1.5m, 토포:5m이하	m	824,518	76%
LM120.01040	수로암거(2련)	(B)2.0m×(H)1.5m, 토포:8m이하	m	848,389	77%
LM120.01050	수로암거(2련)	(B)2.0m×(H)1.5m, 토포:10m이하	m	870,663	77%
LM120.02010	수로암거(2련)	(B)2.0m×(H)2.0m, 토포:2m이하	m	899,075	76%
LM120.02020	수로암거(2련)	(B)2.0m×(H)2.0m, 토포:3m이하	m	915,504	76%
LM120.02030	수로암거(2련)	(B)2.0m×(H)2.0m, 토포:5m이하	m	943,294	76%
LM120.02040	수로암거(2련)	(B)2.0m×(H)2.0m, 토포:8m이하	m	980,788	77%
LM120.02050	수로암거(2련)	(B)2.0m×(H)2.0m, 토포:10m이하	m	999,055	77%
LM120.03010	수로암거(2련)	(B)2.5m×(H)2.0m, 토포:2m이하	m	989,030	76%
LM120.03020	수로암거(2련)	(B)2.5m×(H)2.0m, 토포:3m이하	m	1,013,655	76%
LM120.03030	수로암거(2련)	(B)2.5m×(H)2.0m, 토포:5m이하	m	1,056,045	77%
LM120.03040	수로암거(2련)	(B)2.5m×(H)2.0m, 토포:8m이하	m	1,123,196	78%
LM120.03050	수로암거(2련)	(B)2.5m×(H)2.0m, 토포:10m이하	m	1,210,154	79%
LM120.04010	수로암거(2련)	(B)2.5m×(H)2.5m, 토포:2m이하	m	1,110,208	76%
LM120.04020	수로암거(2련)	(B)2.5m×(H)2.5m, 토포:3m이하	m	1,137,635	76%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20.04030	수로암거(2런)	(B)2.5m×(H)2.5m, 토포:5m이하	m	1,196,058	77%
LM120.04040	수로암거(2런)	(B)2.5m×(H)2.5m, 토포:8m이하	m	1,265,875	78%
LM120.04050	수로암거(2런)	(B)2.5m×(H)2.5m, 토포:10m이하	m	1,343,471	79%
LM120.05010	수로암거(2런)	(B)3.0m×(H)2.5m, 토포:2m이하	m	1,241,448	77%
LM120.05020	수로암거(2런)	(B)3.0m×(H)2.5m, 토포:3m이하	m	1,243,494	76%
LM120.05030	수로암거(2런)	(B)3.0m×(H)2.5m, 토포:5m이하	m	1,334,315	78%
LM120.05040	수로암거(2런)	(B)3.0m×(H)2.5m, 토포:7m이하	m	1,437,746	79%
LM120.05050	수로암거(2런)	(B)3.0m×(H)2.5m, 토포:10m이하	m	1,562,063	79%
LM120.06010	수로암거(2런)	(B)3.0m×(H)3.0m, 토포:2m이하	m	1,361,425	76%
LM120.06020	수로암거(2런)	(B)3.0m×(H)3.0m, 토포:3m이하	m	1,393,526	77%
LM120.06030	수로암거(2런)	(B)3.0m×(H)3.0m, 토포:5m이하	m	1,472,476	78%
LM120.06040	수로암거(2런)	(B)3.0m×(H)3.0m, 토포:7m이하	m	1,545,856	78%
LM120.06050	수로암거(2런)	(B)3.0m×(H)3.0m, 토포:10m이하	m	1,703,674	79%
LM120.07010	수로암거(2런)	(B)3.5m×(H)3.0m, 토포:2m이하	m	1,512,162	77%
LM120.07020	수로암거(2런)	(B)3.5m×(H)3.0m, 토포:3m이하	m	1,528,191	78%
LM120.07030	수로암거(2런)	(B)3.5m×(H)3.0m, 토포:5m이하	m	1,615,274	78%
LM120.07040	수로암거(2런)	(B)3.5m×(H)3.0m, 토포:7m이하	m	1,799,102	79%
LM120.07050	수로암거(2런)	(B)3.5m×(H)3.0m, 토포:10m이하	m	1,931,644	80%
LM120.08010	수로암거(2런)	(B)3.5m×(H)3.5m, 토포:2m이하	m	1,662,188	78%
LM120.08020	수로암거(2런)	(B)3.5m×(H)3.5m, 토포:3m이하	m	1,691,841	78%
LM120.08030	수로암거(2런)	(B)3.5m×(H)3.5m, 토포:5m이하	m	1,762,231	7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20.08040	수로암거(2런)	(B)3.5m×(H)3.5m, 토포:7m이하	m	1,991,291	80%
LM120.08050	수로암거(2런)	(B)3.5m×(H)3.5m, 토포:10m이하	m	2,103,971	80%
LM120.09010	수로암거(2런)	(B)4.0m×(H)4.0m, 토포:2m이하	m	1,904,413	77%
LM120.09020	수로암거(2런)	(B)4.0m×(H)4.0m, 토포:3m이하	m	1,960,112	78%
LM120.09030	수로암거(2런)	(B)4.0m×(H)4.0m, 토포:5m이하	m	2,185,435	79%
LM120.09040	수로암거(2런)	(B)4.0m×(H)4.0m, 토포:8m이하	m	2,380,441	80%
LM120.09050	수로암거(2런)	(B)4.0m×(H)4.0m, 토포:10m이하	m	2,501,283	80%
LM130.01010	수로암거(3런)	(B)2.0m×(H)1.5m, 토포:2m이하	m	1,081,014	76%
LM130.01020	수로암거(3런)	(B)2.0m×(H)1.5m, 토포:3m이하	m	1,104,255	77%
LM130.01030	수로암거(3런)	(B)2.0m×(H)1.5m, 토포:5m이하	m	1,141,855	77%
LM130.01040	수로암거(3런)	(B)2.0m×(H)1.5m, 토포:7m이하	m	1,163,986	77%
LM130.01050	수로암거(3런)	(B)2.0m×(H)1.5m, 토포:10m이하	m	1,203,389	78%
LM130.04010	수로암거(3런)	(B)2.5m×(H)2.5m, 토포:2m이하	m	1,378,075	76%
LM130.02020	수로암거(3런)	(B)2.5m×(H)2.0m, 토포:3m이하	m	1,413,781	77%
LM130.02030	수로암거(3런)	(B)2.5m×(H)2.0m, 토포:6m이하	m	1,502,155	78%
LM130.02040	수로암거(3런)	(B)2.5m×(H)2.0m, 토포:8m이하	m	1,546,054	78%
LM130.02050	수로암거(3런)	(B)2.5m×(H)2.0m, 토포:10m이하	m	1,594,437	79%
LM130.05010	수로암거(3런)	(B)3.0m×(H)2.5m, 토포:2m이하	m	1,711,685	77%
LM130.05020	수로암거(3런)	(B)3.0m×(H)2.5m, 토포:3m이하	m	1,748,793	77%
LM130.05030	수로암거(3런)	(B)3.0m×(H)2.5m, 토포:5m이하	m	1,827,950	78%
LM130.05040	수로암거(3런)	(B)3.0m×(H)2.5m, 토포:7m이하	m	1,894,025	7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30.05050	수로암거(3런)	(B)3.0m×(H)2.5m, 토포:10m이하	m	2,151,032	80%
LM130.06010	수로암거(3런)	(B)3.0m×(H)3.0m, 토포:2m이하	m	1,879,705	77%
LM130.06020	수로암거(3런)	(B)3.0m×(H)3.0m, 토포:3m이하	m	1,919,616	77%
LM130.06030	수로암거(3런)	(B)3.0m×(H)3.0m, 토포:5m이하	m	2,017,852	78%
LM130.06040	수로암거(3런)	(B)3.0m×(H)3.0m, 토포:7m이하	m	2,120,681	79%
LM130.06050	수로암거(3런)	(B)3.0m×(H)3.0m, 토포:10m이하	m	2,336,941	79%
LM130.07010	수로암거(3런)	(B)3.5m×(H)3.0m, 토포:2m이하	m	2,077,347	78%
LM130.07020	수로암거(3런)	(B)3.5m×(H)3.0m, 토포:3m이하	m	2,109,805	78%
LM130.07030	수로암거(3런)	(B)3.5m×(H)3.0m, 토포:5m이하	m	2,214,446	78%
LM130.07040	수로암거(3런)	(B)3.5m×(H)3.0m, 토포:7m이하	m	2,420,836	79%
LM130.07050	수로암거(3런)	(B)3.5m×(H)3.0m, 토포:10m이하	m	2,671,314	81%
LM130.08010	수로암거(3런)	(B)3.5m×(H)3.5m, 토포:2m이하	m	2,246,569	77%
LM130.08020	수로암거(3런)	(B)3.5m×(H)3.5m, 토포:3m이하	m	2,303,069	78%
LM130.08030	수로암거(3런)	(B)3.5m×(H)3.5m, 토포:5m이하	m	2,406,636	78%
LM130.08040	수로암거(3런)	(B)3.5m×(H)3.5m, 토포:7m이하	m	2,645,081	79%
LM130.08050	수로암거(3런)	(B)3.5m×(H)3.5m, 토포:10m이하	m	2,857,889	80%
LM130.09010	수로암거(3런)	(B)4.0m×(H)4.0m, 토포:2m이하	m	2,608,789	78%
LM130.09020	수로암거(3런)	(B)4.0m×(H)4.0m, 토포:3m이하	m	2,655,272	78%
LM130.09030	수로암거(3런)	(B)4.0m×(H)4.0m, 토포:5m이하	m	2,947,921	79%
LM130.09040	수로암거(3런)	(B)4.0m×(H)4.0m, 토포:7m이하	m	3,125,302	80%
LM130.09050	수로암거(3런)	(B)4.0m×(H)4.0m, 토포:10m이하	m	3,461,679	8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수로암거 설치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부대작업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철근,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또한, 비계,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비용을 제외한다.
- ③ 부대작업(지수관, 채움제, 봉합제, 다웰바, 스페이서, 지수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표준도 및 적용기준】**

- ① 표준도 및 적용기준은 “도로암거표준도(국토교통부)”지침을 따른다.
- ②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 ③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체 (A)				<b>*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b>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ton	( )	400,715	( A1 )	· EE000.300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카, S=15	m <sup>3</sup>	( )	13,141	( A2 )	· EC220.12321
	무근콘크리트타설 /빈배합	m <sup>3</sup>	( )	24,425	( A3 )	· EC110.11002
	거푸집 /매끈한마감	m <sup>2</sup>	( )	32,474	( A4 )	· ED300.01000
	거푸집 /거친마감	m <sup>2</sup>	( )	22,836	( A5 )	· ED100.01000
	소계		A1~A5의 합( ① )			
부대공 (B)				<b>* 실 설계수량 × 시중물가</b>		
	지수관	m	( )	( )	( B1 )	
	채움제(스티로폼)	m <sup>2</sup>	( )	( )	( B2 )	
	봉합제(실런트)	m	( )	( )	( B3 )	
	다웰바	ea	( )	( )	( B4 )	
	지수재(수팽창고무)	m	( )	( )	( B5 )	
스페이서	m <sup>2</sup>	( )	( )	( B6 )		
	소계		B1~B6의 합( ② )			
			※항목별 직접계상이 곤란한 경우는 본체공사비 ①의 12% 계상			
	합계		① + ②			목적물 단위당 단가

■ LM1\*\* 통로암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41.05010	통로암거(1런)	(B)3.0m×(H)2.5m, 토포:2m이하	m	840,323	72%
LM141.05020	통로암거(1런)	(B)3.0m×(H)2.5m, 토포:3m이하	m	851,292	72%
LM141.05030	통로암거(1런)	(B)3.0m×(H)2.5m, 토포:5m이하	m	882,149	72%
LM141.05040	통로암거(1런)	(B)3.0m×(H)2.5m, 토포:8m이하	m	950,602	72%
LM141.05050	통로암거(1런)	(B)3.0m×(H)2.5m, 토포:10m이하	m	1,012,648	75%
LM141.06010	통로암거(1런)	(B)3.0m×(H)3.0m, 토포:2m이하	m	932,530	73%
LM141.06020	통로암거(1런)	(B)3.0m×(H)3.0m, 토포:3m이하	m	945,909	74%
LM141.06030	통로암거(1런)	(B)3.0m×(H)3.0m, 토포:5m이하	m	993,273	74%
LM141.06040	통로암거(1런)	(B)3.0m×(H)3.0m, 토포:8m이하	m	1,066,984	73%
LM141.06050	통로암거(1런)	(B)3.0m×(H)3.0m, 토포:10m이하	m	1,133,309	74%
LM141.08010	통로암거(1런)	(B)3.5m×(H)3.5m, 토포:2m이하	m	1,112,619	73%
LM141.08020	통로암거(1런)	(B)3.5m×(H)3.5m, 토포:3m이하	m	1,143,160	73%
LM141.08030	통로암거(1런)	(B)3.5m×(H)3.5m, 토포:5m이하	m	1,207,959	73%
LM141.08040	통로암거(1런)	(B)3.5m×(H)3.5m, 토포:7m이하	m	1,270,925	74%
LM141.08050	통로암거(1런)	(B)3.5m×(H)3.5m, 토포:10m이하	m	1,383,514	75%
LM141.09010	통로암거(1런)	(B)4.0m×(H)4.0m, 토포:2m이하	m	1,308,950	73%
LM141.09020	통로암거(1런)	(B)4.0m×(H)4.0m, 토포:3m이하	m	1,325,780	73%
LM141.09030	통로암거(1런)	(B)4.0m×(H)4.0m, 토포:5m이하	m	1,428,051	74%
LM141.09040	통로암거(1런)	(B)4.0m×(H)4.0m, 토포:7m이하	m	1,543,771	75%
LM141.09050	통로암거(1런)	(B)4.0m×(H)4.0m, 토포:10m이하	m	1,666,628	76%
LM141.11010	통로암거(1런)	(B)4.5m×(H)4.5m, 토포:2m이하	m	1,521,495	73%
LM141.11020	통로암거(1런)	(B)4.5m×(H)4.5m, 토포:3m이하	m	1,533,516	73%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41.11030	통로암거(1런)	(B)4.5m×(H)4.5m, 토포:5m이하	m	1,668,319	75%
LM141.11040	통로암거(1런)	(B)4.5m×(H)4.5m, 토포:7m이하	m	1,799,136	76%
LM141.11050	통로암거(1런)	(B)4.5m×(H)4.5m, 토포:10m이하	m	1,961,218	78%
LM141.12010	통로암거(1런)	(B)5.0m×(H)4.5m, 토포:2m이하	m	1,616,910	74%
LM141.12020	통로암거(1런)	(B)5.0m×(H)4.5m, 토포:3m이하	m	1,668,201	75%
LM141.12030	통로암거(1런)	(B)5.0m×(H)4.5m, 토포:5m이하	m	1,841,437	76%
LM141.12040	통로암거(1런)	(B)5.0m×(H)4.5m, 토포:8m이하	m	2,014,202	77%
LM141.12050	통로암거(1런)	(B)5.0m×(H)4.5m, 토포:9m이하	m	2,083,052	78%
LM141.13010	통로암거(1런)	(B)6.0m×(H)4.5m, 토포:2m이하	m	1,886,768	76%
LM141.13020	통로암거(1런)	(B)6.0m×(H)4.5m, 토포:3m이하	m	1,970,517	77%
LM141.13030	통로암거(1런)	(B)6.0m×(H)4.5m, 토포:4m이하	m	2,072,374	78%
LM141.13040	통로암거(1런)	(B)6.0m×(H)4.5m, 토포:5m이하	m	2,103,909	77%
LM141.13050	통로암거(1런)	(B)6.0m×(H)4.5m, 토포:6m이하	m	2,236,535	78%
LM142.05010	통로암거(2런)	(B)3.0m×(H)2.5m, 토포:2m이하	m	1,327,457	72%
LM142.05020	통로암거(2런)	(B)3.0m×(H)2.5m, 토포:3m이하	m	1,355,053	73%
LM142.05030	통로암거(2런)	(B)3.0m×(H)2.5m, 토포:5m이하	m	1,420,010	72%
LM142.05040	통로암거(2런)	(B)3.0m×(H)2.5m, 토포:7m이하	m	1,546,064	74%
LM142.05050	통로암거(2런)	(B)3.0m×(H)2.5m, 토포:10m이하	m	1,659,248	76%
LM142.06010	통로암거(2런)	(B)3.0m×(H)3.0m, 토포:2m이하	m	1,468,908	72%
LM142.06020	통로암거(2런)	(B)3.0m×(H)3.0m, 토포:3m이하	m	1,498,107	73%
LM142.06030	통로암거(2런)	(B)3.0m×(H)3.0m, 토포:5m이하	m	1,566,503	73%
LM142.06040	통로암거(2런)	(B)3.0m×(H)3.0m, 토포:7m이하	m	1,660,115	74%
LM142.06050	통로암거(2런)	(B)3.0m×(H)3.0m, 토포:10m이하	m	1,814,318	76%
LM142.08010	통로암거(2런)	(B)3.5m×(H)3.5m, 토포:2m이하	m	1,749,215	73%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M142.08020	통로암거(2런)	(B)3.5m×(H)3.5m, 토포:3m이하	m	1,804,514	73%
LM142.08030	통로암거(2런)	(B)3.5m×(H)3.5m, 토포:5m이하	m	1,874,355	73%
LM142.08040	통로암거(2런)	(B)3.5m×(H)3.5m, 토포:7m이하	m	2,036,276	77%
LM142.08050	통로암거(2런)	(B)3.5m×(H)3.5m, 토포:10m이하	m	2,231,751	74%
LM142.09010	통로암거(2런)	(B)4.0m×(H)4.0m, 토포:2m이하	m	2,051,712	73%
LM142.09020	통로암거(2런)	(B)4.0m×(H)4.0m, 토포:3m이하	m	2,093,787	74%
LM142.09030	통로암거(2런)	(B)4.0m×(H)4.0m, 토포:5m이하	m	2,309,438	77%
LM142.09040	통로암거(2런)	(B)4.0m×(H)4.0m, 토포:8m이하	m	2,539,366	78%
LM142.09050	통로암거(2런)	(B)4.0m×(H)4.0m, 토포:10m이하	m	2,712,788	74%
LM142.10010	통로암거(2런)	(B)4.0m×(H)4.5m, 토포:2m이하	m	2,187,285	73%
LM142.10020	통로암거(2런)	(B)4.0m×(H)4.5m, 토포:3m이하	m	2,256,208	76%
LM142.10030	통로암거(2런)	(B)4.0m×(H)4.5m, 토포:5m이하	m	2,512,461	76%
LM142.10040	통로암거(2런)	(B)4.0m×(H)4.5m, 토포:7m이하	m	2,592,814	78%
LM142.10050	통로암거(2런)	(B)4.0m×(H)4.5m, 토포:10m이하	m	2,951,337	75%
LM142.11010	통로암거(2런)	(B)4.5m×(H)4.5m, 토포:2m이하	m	2,349,906	74%
LM142.11020	통로암거(2런)	(B)4.5m×(H)4.5m, 토포:3m이하	m	2,394,786	76%
LM142.11030	통로암거(2런)	(B)4.5m×(H)4.5m, 토포:5m이하	m	2,659,659	78%
LM142.11040	통로암거(2런)	(B)4.5m×(H)4.5m, 토포:7m이하	m	2,959,103	79%
LM142.11050	통로암거(2런)	(B)4.5m×(H)4.5m, 토포:10m이하	m	3,206,421	76%
LM142.12010	통로암거(2런)	(B)5.0m×(H)4.5m, 토포:2m이하	m	2,610,686	76%
LM142.12020	통로암거(2런)	(B)5.0m×(H)4.5m, 토포:3m이하	m	2,669,591	77%
LM142.12030	통로암거(2런)	(B)5.0m×(H)4.5m, 토포:5m이하	m	2,939,433	78%
LM142.12040	통로암거(2런)	(B)5.0m×(H)4.5m, 토포:6m이하	m	3,077,343	79%
LM142.12050	통로암거(2런)	(B)5.0m×(H)4.5m, 토포:8m이하	m	3,299,719	7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통로암거 설치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부대작업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재료(철근,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또한, 비계,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비용을 제외한다.
- ③ 부대작업(지수관, 채움재, 봉합재, 다웰바, 스페이서, 지수재, 아스팔트코팅)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표준도 및 적용기준】**

- ① 표준도 및 적용기준은 “도로암거표준도(국토교통부)”지침을 따른다.
- ②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에 제시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단가와 도면등으로부터 산출한 목적물 세부구성요소별 수량을 적용하여 목적물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다. 필요시,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콘크리트타설등의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본 단가집 “대분류 E.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해당규격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 ③ 작성예시

분류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체 (A)				<b>* 실 설계수량 × 표준시장단가</b>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ton	( )	400,715	( A1 )	· EE000.300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카, S=15	m <sup>3</sup>	( )	13,141	( A2 )	· EC220.12321
	무근콘크리트타설 /빈배합	m <sup>3</sup>	( )	24,425	( A3 )	· EC110.11002
	거푸집 /매끈한마감	m <sup>2</sup>	( )	32,474	( A4 )	· ED300.01000
	거푸집 /거친마감	m <sup>2</sup>	( )	22,836	( A5 )	· ED100.01000
	코팅거푸집 /3회	m <sup>2</sup>	( )	( )	( A6 )	· 시중물가
소계			A1 ~ A6의 합( ① )			
부대공 (B)				<b>* 실 설계수량 × 시중물가</b>		
	지수관	m	( )	( )	( B1 )	
	채움재(스티로폼)	m <sup>2</sup>	( )	( )	( B2 )	
	봉합재(실런트)	m	( )	( )	( B3 )	
	다웰바	ea	( )	( )	( B4 )	
	지수재(수팽창고무)	m	( )	( )	( B5 )	
	스페이서	m <sup>2</sup>	( )	( )	( B6 )	
	아스팔트코팅	m <sup>2</sup>	( )	( )	( B7 )	
소계			B1 ~ B7의 합( ② )			
			※항목별 직접계상이 곤란한 경우는 본체공사비 ①의 17% 계상			
합계			① + ②		목적물 단위당 단가	

## ■ LR10\* 낙석방지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R100.05020	낙석 방지망	-	m <sup>2</sup>	18,116	20%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낙석 방지망 설치를 위한 기초 천공작업, 철망 및 와이어로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철망(PVC코팅망), 와이어로프, 결속선, 조립구, 조립구주입재(에폭시)등 재료비, 설치비와 기초천공을 위한 착암비용을 포함한다.
- ③ 철망(PVC코팅망)은 KSD 7036과 KSD 7018, 철망 및 와이어로프 설치는 기계식 시공, 와이어로프의 설치간격은 포켓식(종로프 2m, 횡로프 5m)에 준한다.

## ■ LR2\*\* 낙석방지울타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R212.10000	낙석방지울타리	형식2 /일반부	m	47,464	73%
LR212.20000	낙석방지울타리	형식2 /단부	nr(개소)	326,563	61%
LR212.30000	낙석방지울타리	형식2 /출입문	nr(개소)	20,085	100%
LR221.10000	낙석방지울타리	형식3 /일반부	m	108,025	67%
LR221.20000	낙석방지울타리	형식3 /단부	nr(개소)	756,837	63%
LR221.30000	낙석방지울타리	형식3 /출입문	nr(개소)	21,607	100%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옹벽용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적용부위	높이	경간
형식-2	옹벽용	2m	3m
형식-3	옹벽용	2.5m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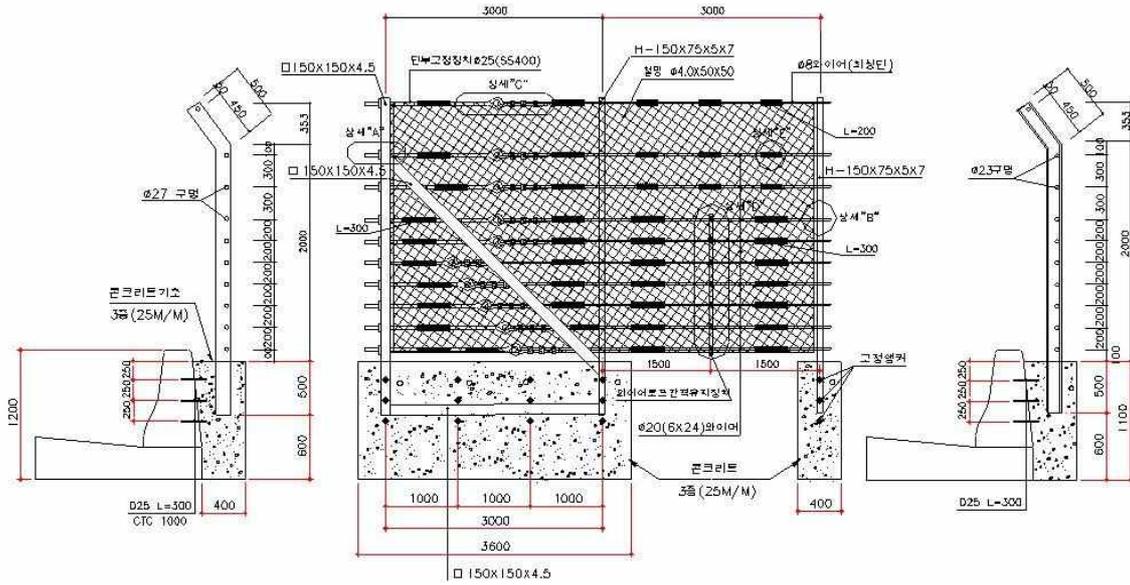
- ② 토공비용(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구조물 시공비용(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타설비용과 철근 구입, 운반 및 가공조립),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비가 포함된다.
- ③ 다만 낙석방지울타리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측면도  
(단부 지주)

정면도

측면도  
(중간 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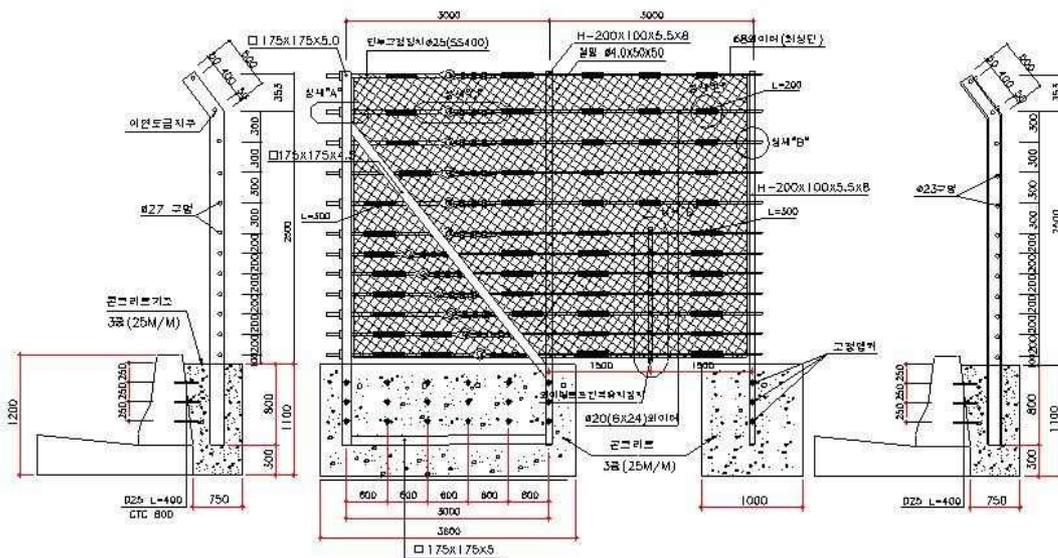


낙석방지울타리 (TYPE-2)

측면도  
(단부 지주)

정면도

측면도  
(중간 지주)



낙석방지울타리 (TYPE-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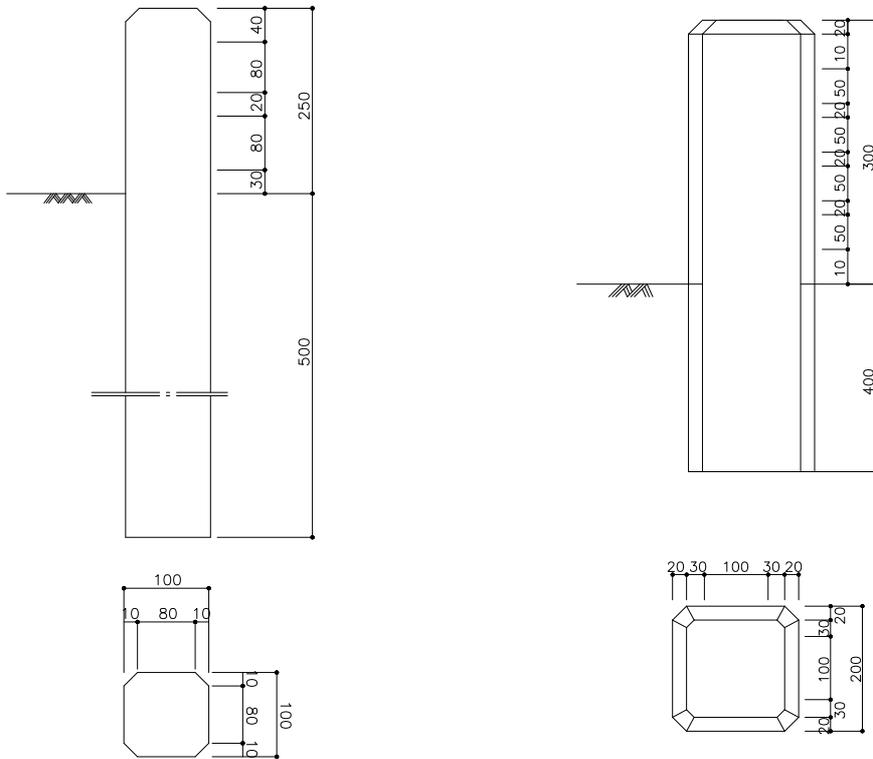
■ LR41\* 경계표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R410.00000	경계표주	접도구역 경계표주	nr(개소)	16,397	18%
LR420.00000	경계표주	용지 경계표주	nr(개소)	10,471	2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경계표주 자재비와 운반비, 설치비,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비용등이 포함된다.

【표준도】



<용지 경계표주>

<접도구역 경계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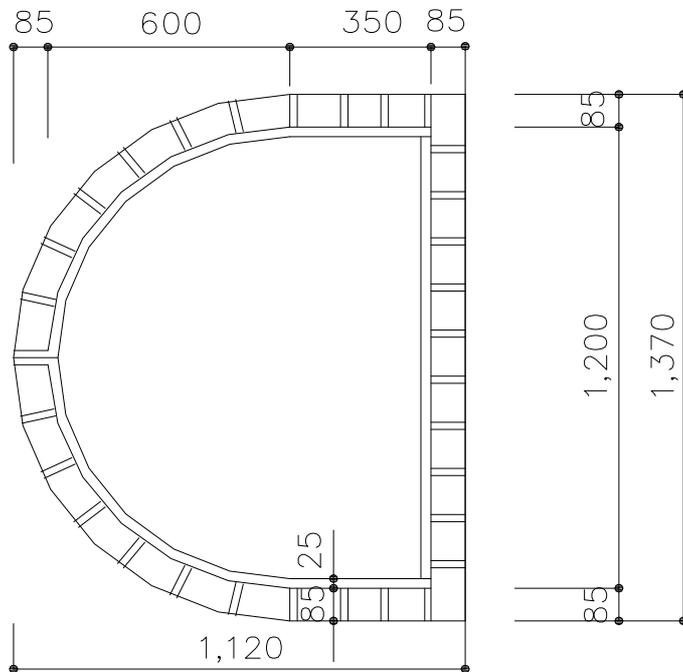
■ LR50\* 가로수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R500.31295	가로수분(받침틀)	말굽형 (1200×950m/m)	nr(개소)	35,721	1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가로수분 설치에 소요되는 받침틀 구입(현장도착도 기준)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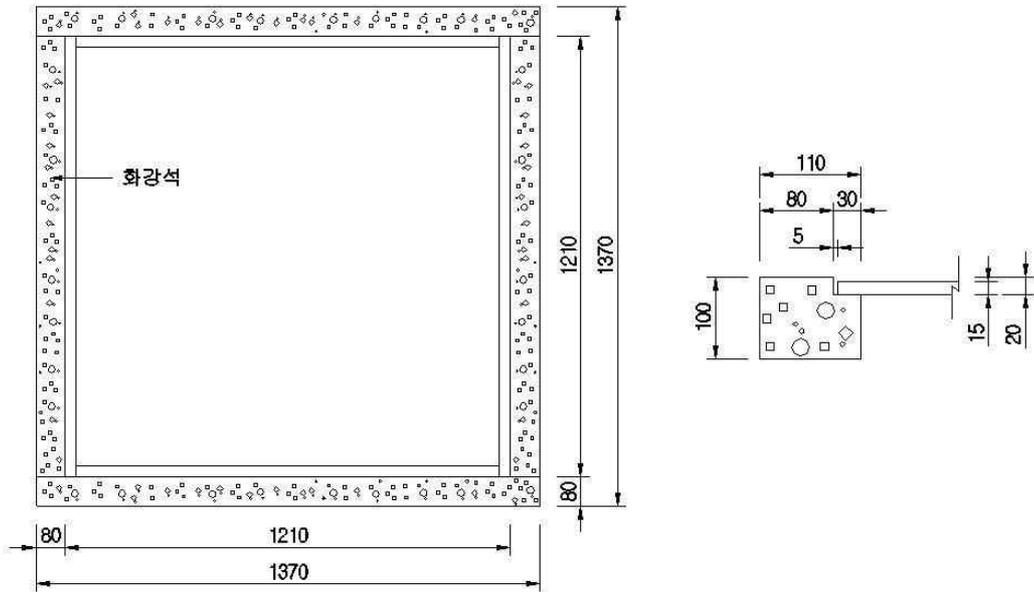
■ LR50\* 가로수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R501.31295	가로수분(받침틀)	화강석 (1,370×1,370mm)	nr(개소)	121,908	2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가로수분 설치에 소요되는 받침틀 구입(현장도착도 기준)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다만, 보호덮개의 구입 및 설치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가로수분(받침틀)>

## 대분류 N 터널공사

### ■ NI10\* 방수막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I100.01000	방수막 설치	-	m <sup>2</sup>	11,690	16%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라이닝콘크리트 타설전에 설치되는 방수막 시공비용을 포함한다.
- ② 재료비(방수막, 못, 와셔), 인건비 및 기구손료를 포함하며, 방수막은 일체형 에틸렌초산비닐수지(EVA: Ethylene Vinyl Acetate)시트에 준한다.

### ■ NI21\* 필터 콘크리트 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I210.00000	필터 콘크리트	-	m <sup>3</sup>	69,803	97%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필터콘크리트의 배합 및 치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시멘트, 모래, 골재의 구입/운반비는 제외된다.

### ■ NR2\*\* 터널내부 타일붙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R200.02000	터널내부 타일붙임	-	m <sup>2</sup>	42,529	83%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터널내 라이닝콘크리트 타설후 타일붙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타일은 외장타일(190×90×11mm) 기준이며 타일붙임을 위한 재료비 (타일, 타일시멘트, 접착제)와 설치비, 소운반 및 기구 손료가 포함된다.

## 대분류 0 하천 및 항만공사

### ■ OB10\* 사석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100.90000	사석부설 (인력)	30kg이상	m <sup>3</sup>	24,986	100%
OB100.10000	사석부설 (인력10%)	30kg이상	m <sup>3</sup>	2,665	74%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인력 또는 인력10%, 기계90%에 의해 사석을 부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하며, 다만, 사석구입 및 운반, 부설 후 다짐비용은 제외한다.

### ■ OH1\*\* 돌망태설치/ 타원형,이불형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H130.04500	돌망태설치/타원형	높이 45cm	m <sup>2</sup>	10,435	98%
OH170.04400	돌망태설치/이불형	높이 40cm	m <sup>2</sup>	8,836	97%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돌망태의 조립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며, 돌망태/채움재등의 구입 및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 OH1\*\* 계비온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H150.00000	계비온 옹벽	높이 5m 이하	m <sup>3</sup>	67,878	88%
OH180.03000	계비온 매트리스	높이 30cm	m <sup>2</sup>	7,544	88%
OH180.05000	계비온 매트리스	높이 50cm	m <sup>2</sup>	13,145	8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계비온(GABION) 돌망태의 조립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며, 계비온 /채움재등의 구입 및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 ② 계비온 옹벽의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아래의 할증율 가산한다.

계비온옹벽	5m초과 ~ 8m이하	8m초과 ~11m이하	11m초과 ~14m 이하	14m초과
할증률	10%	20%	25%	30%

■ OH4\*\* 블록붙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H410.00000	블록붙임/장방형	400×250×120mm	m <sup>2</sup>	26,571	57%
OH420.11000	블록붙임/환경블록	400×400×120mm	m <sup>2</sup>	30,882	5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시멘트 블록붙임에 소요되는 재료비, 설치비 및 운반비를 포함하며, 필요시 잔디식재비용(환경블록의 경우)을 포함한다.
- ② 환경블록은 압축강도가 180kg/m<sup>2</sup>인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OH90\* 들망태 부대공/ 천단잡석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H900.10000	천단잡석부설	Ø100~200mm	m <sup>3</sup>	21,031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인력으로 게비온 매트리스의 천단부에 잡석을 부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잡석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대분류 Q 기타공사(1) - 특공, 조적, 미장, 도장, 방수

### ■ QQ13\* 아스팔트 방수 / 아스팔트 코팅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QQ130.00000	아스팔트코팅	2회	m <sup>2</sup>	7,060	70%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아스팔트의 코팅(2회)에 소요되는 재료비(브라운 아스팔트)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 QQ\*\*\* 교면방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QQ410.00000	교면방수/침투식	-	m <sup>2</sup>	4,932	84%
QQ310.00000	교면방수/도막방수	-	m <sup>2</sup>	22,163	53%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교량 슬라브면의 방수처리를 위한 방수재의 재료비 및 설치 인건비(표면처리 포함)를 포함한다.
- ② QQ410.00000 침투식방수의 재료는 무기질(규산질계) 단체형 침투성 방수제에 기준한 것이며, QQ310.00000 도막식방수는 클로로프렌 고무계 또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제에 기준한 것이다.

#### 【단가보정】

- ① 단일공사에 있어 교면방수 “침투식” 또는 “도막방수” 개별규격의 전체 수량이 200m<sup>2</sup>미만일 경우 위 단가의 110%를 적용한다.

**대분류 R 기타공사(2) - 올타리, 석공, 창호, 수장, 설비, 전기통신**

**■ RB50\* 돌붙임(인력 5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RB500.02500	돌붙임/찰붙임	깎돌 뒷길이 25cm	m <sup>2</sup>	29,172	97%
RB500.03000	돌붙임/찰붙임	깎돌 뒷길이 30cm	m <sup>2</sup>	33,064	96%
RB500.03500	돌붙임/찰붙임	깎돌 뒷길이 35cm	m <sup>2</sup>	37,789	97%
RB500.04000	돌붙임/찰붙임	깎돌 뒷길이 45cm	m <sup>2</sup>	45,292	95%
RB400.02500	돌붙임/매붙임	깎돌 뒷길이 25cm	m <sup>2</sup>	33,071	95%
RB400.03000	돌붙임/매붙임	깎돌 뒷길이 30cm	m <sup>2</sup>	36,970	96%
RB400.03500	돌붙임/매붙임	깎돌 뒷길이 35cm	m <sup>2</sup>	41,693	96%
RB400.04000	돌붙임/매붙임	깎돌 뒷길이 45cm	m <sup>2</sup>	49,840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50%, 인력50%에 의한 돌붙임, 줄눈메꿈 모르타르채움, 콘크리트타설, PVC파이프(D=50mm) 설치, 소운반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붙임돌, 틈메움돌, 채움 콘크리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RC30\* 잡석부설(인력 1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RC300.00000	잡석부설	150mm이하	m <sup>3</sup>	3,753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구조물 기초부에 잡석을 부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력 10%, 기계 9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잡석구입 및 운반, 부설 후 다짐비용은 제외한다.

###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A. 공통공사	1
D. 철근 콘크리트공사	10
E. 철골 공사	16
F. 조적공사	20
G. 미장공사	24
H. 방수공사	29
I. 목공사	37
J. 금속공사	40
K. 지붕 및 흙통공사	43
L. 창호 및 유리공사	49
M. 타일 및 돌공사	52
N. 도장공사	59
O. 수장공사	66
P. 건축물 부대공사	83

**대분류 A    공 통 공 사**

**■ AA16\* 가설울타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161.30000	가설울타리	칼라철판	m	29,056	100%
AA162.30000	가설울타리	EGI휨스	m	15,855	94%

**【단가정의】**

- ① 조립식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AA161.30000은 설치높이 2m, AA162.30000은 설치높이 2.4m에 준한다.
- ③ 가설울타리 자재비 및 부자재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④ 기초콘크리트 타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기초 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⑤ 출입구 문을 설치하거나,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AA28\* 보호막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80.62000	보호막설치	PE매쉬망	m <sup>2</sup>	2,169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건물주위에 시공안전 및 미관등을 목적으로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보호막을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

■ AA31\* 강관비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61000	강관비계	30m이하, 3개월이하	m <sup>2</sup>	13,798	76%

【단가정의】

- ① 강관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비계 및 비계발판(이동용 내부계단 포함)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강관비계(발판/내부계단 포함)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④ 설치높이 30m이하를 기준한다.

【단가보정】

- ①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강관비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16	1.49
노무비율	1	0.86	0.67

■ AA31\* 가설계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02100	가설계단	경사형, 3개월이하	m <sup>2</sup>	69,061	80%

【단가정의】

- ① 경사형 가설계단은 높이 6m이하에서 조립형 발판과 강관을 사용하여 경사형태로 조립, 설치,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이며, 단위는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다.
- ③ 가설계단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단가보정】

- ①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경사형 가설계단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18	1.55
노무비율	1	0.84	0.64

■ AA31\* 시스템비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71000	시스템비계	30m이하	m <sup>2</sup>	8,340	98%

【단가정의】

- ① 시스템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비계 및 비계발판(이동용 내부계단 포함)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시스템 비계(비계발판 포함)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 ④ 설치높이 30m이하를 기준한다.

■ AA31\* 조립 말비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44100	조립말비계	강관, 3개월 이하 1단, 2m	대	74,516	76%

【단가정의】

- ① 비계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및 부자재(가새, 수평띠장 손잡이기둥, 손잡이, 바퀴, 자키등)와 손료 등을 포함한다.
- ② 비계기본틀(기둥)은 H1700×w1219, 1대당 설치높이 2m이하에 준한다.
- ③ 이 단가는 비계 사용기간 3개월 이하에 적용한다.

【단가보정】

- ① 비계의 설치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조립말비계	3개월 이하	
	1단(2m)	2단(4m)
표준시장단가	1	1.58
노무비율	1	1.05

■ AA32\* 동바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22.11000	동바리	강관, 3개월 이하	m <sup>2</sup>	6,343	8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동바리용 자재의 공급, 설치 및 철거 비용이 포함된다.
- ② 강관동바리(직경 48.6mm×2.4mm)의 설치높이는 4.2m이내에 준한다.
- ③ 이 단가는 일반적인 라멘구조 건축물에 적용한다.
- ④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동바리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08	1.11
노무비율	1	0.92	0.90

■ AA32\* 동바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22.11100	동바리	강관, 벽식구조 1개월	m <sup>2</sup>	4,460	97%
AA322.12100	동바리	강관, 라멘구조 1개월	m <sup>2</sup>	5,515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동바리용 자재의 공급, 설치 및 철거 비용이 포함된다.
- ② 강관동바리(직경 48.6mm×2.4mm)의 설치높이는 4.2m이내에 준한다.

■ AA323 조립식 강관동바리 / 자재비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23.11000	조립식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10m이하, 3개월	공m <sup>3</sup>	13,702	97%
AA323.12000	조립식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10~20m이하, 3개월	공m <sup>3</sup>	15,904	97%
AA323.13000	조립식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20~30m이하, 3개월	공m <sup>3</sup>	17,534	96%

【단가정의】

- ①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 동바리)의 설치, 해체, 소운반비를 포함한다.
- ② 동바리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동바리 설치를 위한 지반고르기, 콘크리트타설 비용은 제외한다.
- ④ 슬라브 두께 130cm이하에 기준한다.

■ AB21\* 도급자용 사무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B210.30000	도급자용 사무실	조립식 12개월미만	m <sup>2</sup>	75,081	7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조립식(PRE-FAB)가설물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토공사(지정 및 하부구조)를 제외한 바닥공사(기초콘크리트 타설)를 포함한다.
- ③ 기초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비, 전기, 위생설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④ 특수구조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동بار리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표준시장단가	1	1.11
노무비율	1	0.90

■ AB22\* 가설창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B220.30000	가설창고	조립식 12개월미만	m <sup>2</sup>	57,348	81%

【단가정의】

- ① 조립식 가설창고(PRE-FAB)의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토공사(지정 및 하부구조)를 제외한 바닥공사(기초콘크리트 타설)를 포함한다.
- ③ 기초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비, 내부패널, 천정판, T-BAR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④ 특수구조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가설창고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표준시장단가	1	1.10
노무비율	1	0.91

■ AB21\*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B215.11000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6*2.4*2.6m, 3개월	nr(개소)	541,672	32%
AB215.12000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6*3.0*2.6m, 3개월	nr(개소)	575,812	35%
AB215.13000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9*2.4*2.6m, 3개월	nr(개소)	661,673	33%
AB215.14000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9*3.0*2.6m, 3개월	nr(개소)	720,839	3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토공사(지정 및 하부구조)를 제외한 바닥공사(기초콘크리트 타설)를 포함한다.
- ③ 기초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비, 전기, 위생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또한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비용은 제외한다.
- ④ 특수구조의 컨테이너형 가설건축의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6*2.4*2.6m	3개월	6개월	12개월
표준시장단가	1	1.11	1.36
노무비율	1	0.92	0.71
6*3.0*2.6m	3개월	6개월	12개월
표준시장단가	1	1.11	1.35
노무비율	1	0.81	0.73
9*2.4*2.6m	3개월	6개월	12개월
표준시장단가	1	1.12	1.42
노무비율	1	0.88	0.71
9*3.0*2.6m	3개월	6개월	12개월
표준시장단가	1	1.12	1.40
노무비율	1	0.88	0.68

■ AC11\* 장비운반/ 수송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C110.10000	타워크레인	8 ton	대	2,237,543	6%
AC110.20000	타워크레인	10 ton	대	2,732,795	6%
AC110.30000	타워크레인	12 ton	대	3,284,801	6%

【단가정의】

- ① 타워크레인을 현장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 AC21\* 인양장비/ 임대료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C210.10000	타워크레인 임대료	T형, 8 ton	월	9,309,446	40%
AC210.20000	타워크레인 임대료	T형, 10 ton	월	9,704,235	38%
AC210.30000	타워크레인 임대료	T형, 12 ton	월	11,316,349	35%

【단가정의】

- ① 타워크레인 운전사의 노임, 손료 등을 포함하며, 운반비, 설치 및 해체비용과 수량산출기준 대분류 B~R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 ②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적용함에 있어 단위는 각 공사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내부자료를 토대로 환산 적용할 수 있다.

■ AD16\* 현장정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160.40000	현장정리	RC조	m <sup>2</sup>	8,527	100%
AD160.20000	현장정리	철골조	m <sup>2</sup>	4,878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공사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청소용 소모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AD24\* 현장관리비/ 품질관리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240.41000	측량 및 검측비	수평기준틀 (귀기준틀)	nr(개소)	55,879	95%
AD240.42000	측량 및 검측비	수평기준틀 (평기준틀)	nr(개소)	33,317	94%
AD240.43000	측량 및 검측비	수평기준틀 (벽식구조)	m	3,356	81%

【단가정의】

- ① 기준틀 제작 및 설치,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 ② AD240.43000 수평기준틀(벽식구조)의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AD42\* 준공도서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420.12000	준공도서(문서) 제작	Index (출력자료, 이미지 파일 제공시)	매	105	0%
AD420.31000	준공도서CD-ROM복제	문서35000, 도면3000면당	장	7,397	0%

【단가정의】

-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도서 비용을 포함한다.

## 대분류 D 철근 콘크리트공사

### ■ DA\*\*\* 거푸집/동바리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301.21000	거푸집/매끈한마감	0 ~ 7m	m <sup>2</sup>	32,527	67%
DA201.31000	거푸집/보통마감	0 ~ 7m	m <sup>2</sup>	27,841	70%
DA101.61000	거푸집/거친마감	0 ~ 7m	m <sup>2</sup>	22,873	68%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거푸집의 준비, 조립 및 철거를 위한 제 비용이 포함된다.
- ② 다만, 수평연결보강을 위한 동바리의 소요비용은 제외한다.
- ③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m<sup>3</sup>미만)인 경우에는 노무비를 3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④ 이 단가는 일반 건축공사(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 ⑤ 보통마감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량산출기준	전용회수	적용기준
매끈한마감	2회	노출콘크리트마감 또는 콘크리트면위 페인트마감등 비교적 미려하고 견고한 시공이 요구되는 구조
보통마감	3~4회	기초, 기둥, 보, 슬라브등의 지상구조물 또는 땅밑에 묻히는 시설로서 안전하고 견고한 기능만을 제공하면 되는 구조물
거친마감	6회	옹벽기초, L형측구기초, 석축기초, 흙관기초등으로 땅속에 묻히는 시설이며 기능상 외관과는 관련이 없는 구조물

- ⑥ 거푸집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초과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 DA30\* 제치장 거푸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300.60000	제치장 거푸집	6회	m <sup>2</sup>	20,488	81%
DA300.80000	제치장 거푸집	10회	m <sup>2</sup>	14,633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제치장 거푸집의 준비, 조립 및 철거를 위한 제 비용이 포함된다.
- ② 동바리의 소요비용과, 곡면 및 특수형상부분(와플슬라브, 난간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 DA40\* 거푸집/ 동바리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401.81000	유로폼	0 ~ 7m	m <sup>2</sup>	22,643	8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거푸집의 준비, 조립 및 철거를 위한 제 비용이 포함된다.
- ② 다만, 수평연결보강을 위한 동바리의 소요비용은 제외한다.
- ③ 이 단가는 일반 건축공사(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 ④ 거푸집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초과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 DA40\* 거푸집/ 동바리 포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404.01000	알루미늄폼 조립해체	10층이상 ~ 15층미만	m <sup>2</sup>	17,398	69%
DA404.02000	알루미늄폼 조립해체	15층이상 ~ 20층미만	m <sup>2</sup>	16,633	70%
DA404.03000	알루미늄폼 조립해체	20층이상	m <sup>2</sup>	16,487	7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알루미늄폼 거푸집의 준비, 조립 및 해체비를 포함한다.
- ② 알루미늄폼 거푸집(부속자재 포함)의 재료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동바리의 재료구입 및 운반비, 설치 및 철거비를 포함한다.
- ④ 조립해체시의 소운반, 청소, 기름칠, 보수비용을 포함한다.
- ⑤ 알루미늄폼의 사용횟수는 150회에 준한다.
- ⑥ 이 단가는 철근콘크리트(RC) 벽식구조를 기준한 것이다.

■ DA40\* 거푸집/ 동바리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403.01000	갱폼 조립해체	-	m <sup>2</sup>	11,850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갱폼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비를 포함한다.
- ② 거푸집의 청소, 기름칠 및 보수비용을 포함한다.
- ③ 거푸집의 재료비, 기계경비, 공구손료는 제외한다.
- ④ 이 단가는 철근콘크리트(RC) 벽식구조를 기준한 것이다.

■ DB00\* 철근가공 및 조립 / 현장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B000.20000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일반건축)	보통	ton	372,277	96%
DB000.21000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공동주택)	보통	ton	338,292	96%
DB000.31000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공동주택)	복잡	ton	370,956	96%

【단가정의】

- ① 철근자재 및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또한,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현장내 소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DB000.21000/DB000.31000은 고자재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 ③ 버팀재(Bar chair, Bar support), 간격재(Bar spacer), 결속선(tying wire) 등 부속자재의 조달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 ④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m<sup>3</sup>미만)에서는 노무비를 3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⑤ DB000.21000/DB000.31000은 철근콘크리트(RC)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DB000.20000은 일반 건축공사(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단가보정】

- ① 단일공사에 있어 “철근가공 및 조립”의 전체 수량이 10ton 미만일 경우 위 단가의 115%를 적용한다.

■ DB\*\*\*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B000.22000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공동주택)	보통	ton	281,379	96%
DB000.32000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공동주택)	복잡	ton	304,191	9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철근가공조립(공장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철근구입 및 운반비(공장→현장)는 제외한다.
- ③ 고자재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 ④ 철근콘크리트(RC)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DF\*\*\* 콘크리트 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F102.60000	무근콘크리트 타설	슬럼프 15 (100m <sup>3</sup> 이상/일)	m <sup>3</sup>	11,690	84%
DF202.60000	철근콘크리트 타설	슬럼프 15 (100m <sup>3</sup> 이상/일)	m <sup>3</sup>	12,496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붓타설) 및 다짐하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레미콘 재료비,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 및 보양비용은 제외한다.
- ③ 배관으로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슬럼프값 또는 일일타설량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카)	슬럼프 15				슬럼프 8-12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표준시장단가	0.92	1	1.07	1.28	0.96	1.05	1.14	1.37
노무비율	1.07	1	0.95	0.83	1.04	0.96	0.90	0.79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카)	슬럼프 15				슬럼프 8-12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300m' 이상/일	100m' 이상/일	50~100m' 미만/일	50m' 미만/일
표준시장단가	0.91	1	1.08	1.34	0.95	1.05	1.15	1.43
노무비율	1.08	1	0.94	0.80	1.04	0.96	0.90	0.76

■ DF\*\*\* 콘크리트 양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F000.10000	콘크리트 양생	-	m <sup>2</sup>	358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살수양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DR12\*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쇠풍손 마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R120.10000	쇠풍손 마감	콘크리트면	m <sup>2</sup>	4,214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 바닥면(별도마감이 필요없는 경우)을 쇠풍손으로 마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DR13\* 콘크리트 면처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R130.10000	콘크리트면처리 /벽	T=10cm	m	2,008	99%
DR130.40000	콘크리트면처리 /천장	T=10cm	m	2,040	9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내·외부 콘크리트면에 10cm 폭으로 적용부위별 면 처리 (연마석 및 면처리 포함)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시멘트,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대분류 E 철골공사

### EB\*\*\* 앵커볼트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B001.00600	앵커볼트 설치	D=16mm (L=600)	nr(개소)	10,225	97%
EB002.00500	앵커볼트 설치	D=19mm (L=500)	nr(개소)	15,084	95%
EB003.01000	앵커볼트 설치	D=24mm (L=1,000)	nr(개소)	25,836	96%
EB004.01200	앵커볼트 설치	D=28mm (L=1,200)	nr(개소)	32,722	9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일반 철골공사시 앵커볼트(Anchor Bolt)의 구입 및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설치비용에는 인력설치에 의한 먹매김, 가조임 및 틀의 제작/설치 비용이 포함된다.

### EB\*\*\* 스테드볼트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B011.00120	스테드볼트 설치 /자동용접	D=19mm (L=120)	nr(개소)	868	39%
EB012.00200	스테드볼트 설치 /자동용접	D=19mm (L=200)	nr(개소)	1,142	24%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철골공사시 자동용접에 의한 스테드볼트(Stud Bolt)의 구입 및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EC12\* 철판가공조립(공장생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C120.11100	철판가공조립	ROLL, 30ton미만	ton	618,970	97%
EC120.11200	철판가공조립	ROLL, 30~60ton미만	ton	644,878	97%
EC120.21100	철판가공조립	Built-up, 30ton미만	ton	983,367	96%
EC120.21200	철판가공조립	Built-up, 30~60ton미만	ton	983,367	9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표준 라멘구조에 대한 철판제작 시 철판가공 및 조립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산소, 아세틸렌, 서비스 볼트, 보조강재등 철판가공 및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 비용을 포함한다.
- ③ 다만, 철판의 구입/운반비, 용접, 현장철판세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④ Built-up방식은 전용접 부재, Roll은 H형강 부재에 준하며, 작업난이도는 사무청사등 표준라멘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 ⑤ 본 단가는 공장간접비율 200%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한다. (참고- 2013년도 표준품셈에서 동 비율은 200%에서 60%로 조정되었음)

■ EE12\* 철골세우기(현장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E121.34000	철골세우기	저층	ton	83,267	99%
EE122.32000	철골세우기	중층	ton	83,267	9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철골의 가조임, 변형잡기, 현장세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만, 기계경비 및 철골의 가설, 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철골세우기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철골세우기(현장설치)로서 저층(단층), 중층(6층미만)
  - 철골세우기 1일 작업량은 15ton
  - 1㎡당 강재사용량은 90kg이상~110k미만
  - 강재 총사용량은 250ton이상~500ton미만

■ EE1\*\* 고장력볼트 본조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E100.00200	고장력볼트 본조임	20본/t 미만	ton	55,797	97%
EE100.00300	고장력볼트 본조임	30본/t 미만	ton	71,414	97%
EE100.00500	고장력볼트 본조임	50본/t 미만	ton	87,007	97%
EE100.00700	고장력볼트 본조임	70본/t 미만	ton	95,926	97%
EE100.00900	고장력볼트 본조임	90본/t 미만	ton	120,252	97%
EE100.01100	고장력볼트 본조임	110본/t 미만	ton	129,870	9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장력볼트의 본조임, 조임기구 손료, 조임검사비용을 포함한다.
- ② 철골설계수량은 300ton미만에 준한다.

■ EE000 기둥밀 무수축 고름모르타르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E000.50400	기둥밀 무수축 고름 모르타르 바름	400각	nr(개소)	24,859	100%
EE000.50500	기둥밀 무수축 고름 모르타르 바름	500각	nr(개소)	29,824	100%
EE000.50600	기둥밀 무수축 고름 모르타르 바름	600각	nr(개소)	34,436	100%
EE000.50700	기둥밀 무수축 고름 모르타르 바름	700각	nr(개소)	39,673	100%

**【단가정의】**

- ① 철골공사시 기둥밀 무수축 고름모르타르의 바름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무수축 모르타르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모르타르 두께는 50mm에 기준한다.
- ④ 철골공사시 주각부 주위에 형틀(목재, 강재)을 설치하여 모르타르를 충전하거나, 부분 또는 전면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시공의 경우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대분류 F 조 직 공 사

### ■ FA11\* 벽돌공사/ 벽돌쌓기/ 재료비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A111.21000	시멘트벽돌(0.5B 쌓기)	1층 소운반	m <sup>2</sup>	16,238	100%
FA111.22000	시멘트벽돌(0.5B 쌓기)	2층 소운반	m <sup>2</sup>	16,385	100%
FA111.23000	시멘트벽돌(0.5B 쌓기)	리프트 운반	m <sup>2</sup>	15,313	100%
FA113.21000	시멘트벽돌(1.0B 쌓기)	1층 소운반	m <sup>2</sup>	28,927	100%
FA113.22000	시멘트벽돌(1.0B 쌓기)	2층 소운반	m <sup>2</sup>	30,302	100%
FA113.23000	시멘트벽돌(1.0B 쌓기)	리프트 운반	m <sup>2</sup>	31,544	100%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시멘트 벽돌의 쌓기비용을 포함한다.
- ② 벽돌쌓기는 소운반,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규준틀 설치, 정착 철물 설치, 벽돌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다만, 벽돌, 시멘트, 모래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④ 벽돌쌓기는 1000매기준이며, 층고 3.6m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 ⑤ 층고 3.6m이상인 경우에는 노무비의 3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⑥ 벽돌 공간쌓기의 경우에는 노무비의 1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⑦ 벽돌쌓기 기준량은 면적당(m<sup>2</sup>) 0.5B는 75매, 1B는 149매에 준한다.

■ FA12\* 벽돌공사/ 치장벽돌쌓기/ 재료비 제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A121.13000	치장벽돌(0.5B 쌓기)	한면치장, 1,000매이상	m <sup>2</sup>	40,472	100%
FA123.13000	치장벽돌(1.0B 쌓기)	한면치장, 1,000매이상	m <sup>2</sup>	66,054	100%
FA121.23000	치장벽돌(0.5B 쌓기)	양면치장, 1,000매이상	m <sup>2</sup>	46,096	100%
FA123.23000	치장벽돌(1.0B 쌓기)	양면치장, 1,000매이상	m <sup>2</sup>	71,657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치장벽돌 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치장 벽돌쌓기는 소운반,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떡매김, 규준틀 설치, 정착철물 설치, 벽돌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다만, 벽돌, 시멘트, 모래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와 벽돌의 소운반 비용은 제외한다.
- ④ 벽돌쌓기량은 1000매 기준이며, 층고는 3.6m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 ⑤ 층고 3.6m이상인 경우에는 노무비의 2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⑥ 벽돌쌓기 기준량은 면적당(m<sup>2</sup>) 0.5B는 75매, 1B는 149매에 준한다.

■ FB11\* 블록공사/ 시멘트블록 쌓기/ 블록재료비 포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B111.10000	시멘트블록 쌓기	100*190*390	m <sup>2</sup>	20,694	75%
FB112.10000	시멘트블록 쌓기	150*190*390	m <sup>2</sup>	26,327	74%
FB113.10000	시멘트블록 쌓기	190*190*390	m <sup>2</sup>	33,860	7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시멘트 블록의 쌓기비용을 포함한다.
- ② 블록쌓기는 소운반, 모르타르배합(1:3) 및 비빔, 떡매김, 규준틀설치, 블록쌓기, 와이어메쉬 삽입,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속빈 시멘트 블록의 구입 및 운반비(블록할증 포함)를 포함한다.
- ④ 시멘트,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FB12\* 블록공사/ 시멘트블록 보강쌓기/ 블록재료비 포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B121.10000	시멘트블록 보강쌓기	100*190*390 (사춤1종)	m <sup>2</sup>	26,052	79%
FB122.10000	시멘트블록 보강쌓기	150*190*390 (사춤1종)	m <sup>2</sup>	30,437	78%
FB122.20000	시멘트블록 보강쌓기	190*190*390 (사춤1종)	m <sup>2</sup>	37,141	7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시멘트블록의 보강쌓기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블록 보강쌓기는 소운반, 모르타르배합(1:3) 및 비빔, 떡매김, 규준틀 설치, 블록쌓기, 철근설치, 와이어메쉬 삽입,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속빈시멘트블록(블록할증포함), 보강철근, 용접철망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다만 시멘트, 모래, 자갈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FR4\*\* 콘크리트 방수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R400.01010	콘크리트 방수터	100×100 (가로×세로)	m	5,351	77%
FR400.01020	콘크리트 방수터	100×200 (가로×세로)	m	10,075	76%
FR400.01025	콘크리트 방수터	100×250 (가로×세로)	m	13,044	75%
FR400.01030	콘크리트 방수터	100×300 (가로×세로)	m	15,555	75%
FR400.01510	콘크리트 방수터	150×100 (가로×세로)	m	5,512	78%
FR400.01520	콘크리트 방수터	150×200 (가로×세로)	m	10,848	77%
FR400.01525	콘크리트 방수터	150×250 (가로×세로)	m	13,446	76%
FR400.01530	콘크리트 방수터	150×300 (가로×세로)	m	16,039	76%
FR400.02010	콘크리트 방수터	200×100 (가로×세로)	m	5,671	78%
FR400.02020	콘크리트 방수터	200×200 (가로×세로)	m	11,231	77%
FR400.02025	콘크리트 방수터	200×250 (가로×세로)	m	13,849	77%
FR400.02030	콘크리트 방수터	200×300 (가로×세로)	m	16,516	7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 방수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합판거꾸집, 철근가공조립, 레미콘타설등 콘크리트 방수터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③ 철근 및 레미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대분류 G 미 장 공 사

### ■ GA10\* 시멘트 모르타르 비빔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A100.01000	시멘트모르타르 비빔	1 : 3	m <sup>3</sup>	55,281	97%
GA100.03000	시멘트모르타르 비빔	1 : 7	m <sup>3</sup>	55,130	97%

#### 【단가정의】

- 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배합비별로 비비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재료의 할증부분, 공구손료, 소운반비용을 포함한다.
- ③ 다만, 시멘트 및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 GA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A111.11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벽)	콘크리트면 (T=6mm, 1회)	m <sup>2</sup>	5,360	100%
GA113.00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벽)	콘크리트면 (T=11mm, 2회)	m <sup>2</sup>	12,897	100%
GA113.10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벽)	콘크리트면 (T=18mm, 3회)	m <sup>2</sup>	20,431	100%
GA123.00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벽)	콘크리트면 (T=15mm, 2회)	m <sup>2</sup>	12,897	100%
GA124.31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벽)	콘크리트면 (T=24mm, 3회)	m <sup>2</sup>	20,431	100%
GA134.11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바닥)	콘크리트면 (T=24mm, 1회)	m <sup>2</sup>	5,360	100%
GA134.12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바닥)	콘크리트면 (T=27mm, 1회)	m <sup>2</sup>	5,421	100%
GA134.13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바닥)	콘크리트면 (T=30mm, 1회)	m <sup>2</sup>	5,481	100%
GA153.3100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천정)	콘크리트면 (T=15mm, 3회)	m <sup>2</sup>	20,431	100%

#### 【단가정의】

- ①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바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줄눈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② 다만, 시멘트 및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외벽의 높이는 지상 3층이하에 준한다.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층의 층고를 3.6m에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④ 바탕의 폭 30cm이하(계단, 걸레받이)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이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지상 1,2,3층	4,5,6층	7,8,9층	10,11,12층	13,14,15층	16,17,18층
0%	5%	8%	12%	16%	20%

■ GA2\*\*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A211.00000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내벽	m <sup>2</sup>	5,745	97%
GA221.00000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외벽	m <sup>2</sup>	6,058	97%
GA212.00000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내부천정	m <sup>2</sup>	6,400	9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노출 콘크리트(제치장 콘크리트 또는 견출) 마감면에 대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비빔 및 바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시멘트, 연마재, 감수재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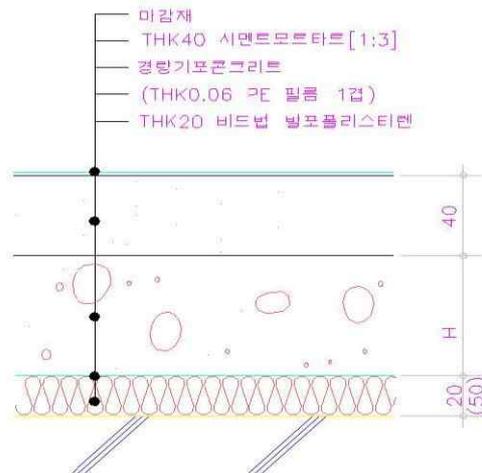
## ■ GF21\* 판넬히팅시스템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F212.01000	경량기포바닥판넬(일반층)	T = 110mm	m <sup>2</sup>	12,910	68%
GF212.04000	경량기포바닥판넬(지층)	T = 140mm	m <sup>2</sup>	14,396	62%

### 【단가정의】

- ① 다음의 작업을 포함한다.
  - 주자재 및 부자재 포함                      · 바탕면 처리
  - 마감면 처리, 양생 및 보호                  · 소운반                  · Mixer 및 Tool 포함
- ②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③ 바닥 슬라브와 바닥 마감재 사이의 모든 작업(item)을 포함한다. 단, 설비 및 전기는 별도로 한다.
- ④ 다음의 표준도에서 일반층은 스티로폼 T=20mm, 지층(1층)은 T=50mm를 적용한다.
- ⑤ 다음의 표준도에서 마감재의 구입 및 설치비용은 제외한다.

### 【표준도】



■ GH11\* 시멘트모르타르충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H110.10000	시멘트모르타르 충전	창호주위	m	2,262	100%

【단가정의】

- ① 다음의 작업을 포함한다.
  - 틀주변의 바탕정리를 포함(벽체 미장은 제외)
  - 마감면 처리, 양생 및 보호
  - 소운반
- ②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GH12\* 우레탄폼 충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H120.10000	우레탄폼 충전	창호주위 (건식벽)	m	3,012	7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건식벽 창호주위의 우레탄폼 충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우레탄폼(발포용량 30 ~ 40 l)의 재료비를 포함한다.

■ GJ00\* 비드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J001.10000	결레받이 비드설치	AL, H=10mm	m	3,527	91%
GJ001.20000	미장용 코너비드설치	AL, H=13mm	m	3,620	86%
GJ001.31000	조인트 비드설치	AL, H=12mm (크랙방지)	m	3,922	75%
GJ004.40000	타일벽 코너비드설치	PVC	m	4,678	64%
GJ005.21000	표준 코너비드설치	아연도 강판 (100×50×50)	m	3,654	8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미장바름 보호를 위한 비드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대분류 H 방 수 공 사**

**HA2\*\* 아스팔트 바름(솔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A200.11000	아스팔트 바름	벽	m <sup>2</sup>	4,382	69%
HA200.12000	아스팔트 바름	천정	m <sup>2</sup>	10,314	6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아스팔트 바름시 솔칠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아스팔트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벽은 솔칠1회, 천정은 솔칠2회에 준한다.
- ④ 이 단기는 냉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열공법의 경우 노무비를 30% 가산한다.

**HB\*\*\* 시트 방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B100.20000	개량아스팔트 시트	바닥	m <sup>2</sup>	8,682	97%
HB200.20000	개량아스팔트 시트	수직	m <sup>2</sup>	11,984	97%
HB100.30000	합성고분자 시트	바닥	m <sup>2</sup>	5,787	97%
HG200.30000	합성고분자 시트	수직	m <sup>2</sup>	7,524	9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시트방수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소운반 및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다만, 개량아스팔트, 합성고분자 시트 등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개량아스팔트 시트 설치하는 토치공법에 의한 모체와 시트를 접착시키는 단층공법에 준한다. 합성고분자 시트 설치하는 시트부착 전용 접착제에 의한 모체와 시트를 전면 접착시키는 단층공법에 준한다.
- ⑤ 시트 두께 2.5~3mm, 폭 1.0m, 1겹 시공시를 기준한다.

■ HC\*\*\* 도막방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C100.10000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노출 (T=3mm)	m <sup>2</sup>	25,453	41%
HC200.10000	우레탄도막방수	벽, 노출 (T=2mm)	m <sup>2</sup>	19,264	51%
HC900.10000	우레탄도막방수	접합부위, 비노출	m	6,322	52%
HA900.20000	고무아스팔트계 에멀션 방수	2.5KG/m <sup>2</sup> 바름	m <sup>2</sup>	28,145	76%

【단가정의】

- ① 도막방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② 우레탄 도막방수 바닥시공은 우레탄 방수제(노출용), 마감코팅제, 프라이머, 회석제에 준하며, 벽 시공시 마감코팅제는 제외한다. 접합부위(벽, 바닥접합)는 우레탄 방수제(비노출용), 저밀도 PE테이프, 부직포에 준한다.
- ③ 고무아스팔트계 에멀션 방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프라이머, 부직포에 준한다.
- ④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비용과 바탕 청소, 정리, 표면의 요철부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 ⑤ 이 단가는 철근콘크리트(RC)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⑥ 이 단가는 바닥면을 기준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 노무비를 30% 가산한다.

■ HF\*\*\* 실링/ 유리공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F131.10000	치오콜(삼각)	5mm × 5mm (복층유리)	m	237	89%

【단가정의】

- ① 바탕면처리, 접착제 등 설치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 HF2\*\* 실링/ 창호공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F211.30000	실리콘(삼각)	5mm × 5mm	m	995	85%
HF211.31000	실리콘(삼각)	10mm × 10mm	m	1,627	71%
HF211.32000	실리콘(삼각)	15mm × 15mm	m	1,962	62%
HF211.10000	실리콘(삼각)	5mm × 5mm 내곰팡이성	m	1,016	81%
HF211.20000	실리콘(삼각)	10mm × 10mm 내곰팡이성	m	1,701	51%
HF212.10000	실리콘(사각)	10mm×10mm	m	2,066	38%
HF212.20000	실리콘(사각)	15mm×15mm	m	3,664	22%
HF241.10000	우레탄(삼각)	5mm × 5mm	m	854	97%
HF241.20000	우레탄(삼각)	10mm×10mm	m	975	84%
HF241.40000	우레탄(삼각)	15mm×15mm	m	1,686	68%
HF242.10000	우레탄(사각)	5mm × 5mm	m	914	93%
HF242.22000	우레탄(사각)	10mm×10mm	m	1,187	71%
HF242.31000	우레탄(사각)	15mm×10mm	m	1,324	63%
HF242.32000	우레탄(사각)	15mm×15mm	m	1,861	49%
HF242.34000	우레탄(사각)	15mm×25mm	m	3,228	38%
HF242.50000	우레탄(사각)	20mm×20mm	m	2,236	36%
HF242.60000	우레탄(사각)	25mm×25mm	m	3,424	28%

【단가정의】

- ① 바탕면처리, 접착제 등 설치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이음, 마감면 처리, 양생 및 보호를 포함한다.

■ HF40\* 발포우레탄 재충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F400.20000	발포우레탄	10mm,1액형, 자기소화성	m	1,244	53%
HF400.30000	발포우레탄	10mm,1액형, 자기소화성(일면)	m	461	69%

【단가정의】

- ① 발포 우레탄 재충전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와 기구손료를 포함한다.

■ HG0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G022.01000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1종	m <sup>2</sup>	8,392	97%
HG022.02000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2종	m <sup>2</sup>	5,219	9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② 방수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바탕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HG03\* 방수모르타르위 내벽모르타르 바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G030.10000	방수모르타르위 내벽모르타르 바름	방수 6mm +미장 6mm	m <sup>2</sup>	12,855	98%
HG030.20000	방수모르타르위 내벽모르타르 바름	방수 6mm +미장 12mm	m <sup>2</sup>	16,052	98%

【단가정의】

- ① 벽체방수를 위하여 방수모르타르 6mm + 내벽모르타르를 두께별로 시공(비빔 및 바름)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② 방수모르타르는 배합비 1:2, 바름두께 6mm, 내벽모르타르는 배합비 1:3 바름두께 6mm 또는 12mm에 준한다.  
 ③ 방수액, 몰탈 혼화제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하나, 시멘트 및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HG11\* 방수 모르타르 바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G112.3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6mm)	m <sup>2</sup>	4,056	89%
HG112.5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10mm)	m <sup>2</sup>	6,502	92%
HG113.0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12mm)	m <sup>2</sup>	11,268	92%
HG113.1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15mm)	m <sup>2</sup>	13,062	91%
HG114.0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21mm)	m <sup>2</sup>	13,650	90%
HG114.2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24mm)	m <sup>2</sup>	17,937	89%
HG115.0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27mm)	m <sup>2</sup>	19,589	89%
HG115.1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콘크리트면 (T=30mm)	m <sup>2</sup>	21,228	89%
HG012.5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콘크리트면 (T=10mm)	m <sup>2</sup>	5,819	93%
HG013.0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콘크리트면 (T=12mm)	m <sup>2</sup>	11,116	93%
HG013.4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콘크리트면 (T=18mm)	m <sup>2</sup>	12,761	92%
HG014.0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콘크리트면 (T=21mm)	m <sup>2</sup>	13,033	91%
HG014.2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콘크리트면 (T=24mm)	m <sup>2</sup>	15,588	90%
HG015.0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콘크리트면 (T=27mm)	m <sup>2</sup>	18,988	90%
HG015.10000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콘크리트면 (T=30mm)	m <sup>2</sup>	20,498	90%

【단가정의】

- ① 방수 모르타르의 비빔 및 바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방수액 재료비를 포함하며, 시멘트 및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외벽의 높이는 지상 3층이하에 준한다.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층의 층고를 3.6m에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④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지상 1,2,3층	4,5,6층	7,8,9층	10,11,12층	13,14,15층	16,17,18층
0%	5%	8%	12%	1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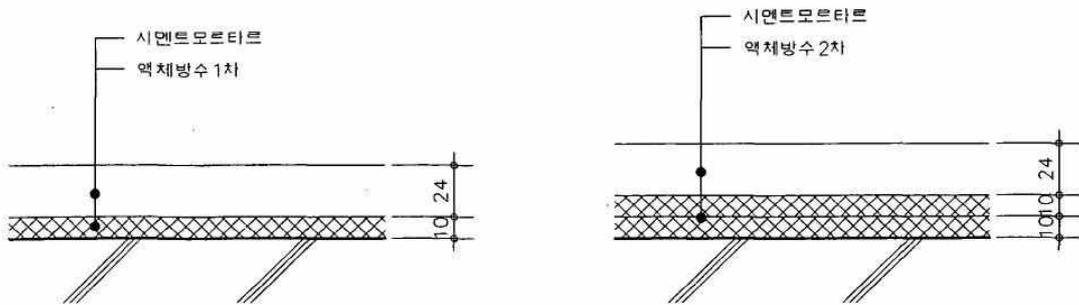
## ■ HI00\* 시멘트액체방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I000.30000	시멘트액체방수	바닥	m <sup>2</sup>	12,355	96%
HI000.20000	시멘트액체방수	벽	m <sup>2</sup>	9,928	99%

### 【단가정의】

- ①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설치도 작성
  - 견본 제출
  - 이음, 마감면 처리, 양생 및 보호
  - 주자재 및 부자재(접착제 등 설치부속품) 포함
- ②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③ 지방사에서 시멘트액체방수 재료나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히 기재한 경우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표준도】



### ■ HJ5\*\* 시트방수 마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J500.01100	시트방수 마감	(스테인레스판, 삼각-15×20)	m	16,292	47%
HJ500.02100	시트방수 마감	(스테인레스판, 사각-15×20)	m	17,189	53%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스테인레스판에 의한 시트방수 마감비용을 포함한다.
- ② 자재비(스테인레스판(T=1.0mm), 합판(12×910×1820mm), STS평비스)와 제작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 HJ11\* 보호 모르타르 바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J111.10000	보호 모르타르바름 /벽	콘크리트면 (T=15mm)	m <sup>2</sup>	7,978	100%
HJ111.20000	보호 모르타르바름 /벽	콘크리트면 (T=18mm)	m <sup>2</sup>	10,938	100%
HJ111.30000	보호 모르타르바름 /벽	콘크리트면 (T=24mm)	m <sup>2</sup>	11,168	100%
HJ112.20000	보호 모르타르바름 /벽	콘크리트면 (T=50mm)	m <sup>2</sup>	12,370	100%
HJ112.10000	보호 모르타르바름 /바닥	콘크리트면 (T=15mm)	m <sup>2</sup>	5,584	100%
HJ112.30000	보호 모르타르바름 /바닥	콘크리트면 (T=24mm)	m <sup>2</sup>	7,954	100%
HJ112.40000	보호 모르타르바름 /바닥	콘크리트면 (T=30mm)	m <sup>2</sup>	9,054	100%

#### 【단가정의】

- ① 보호 모르타르의 비빔 및 바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줄눈시공 비용을 포함하며, 시멘트 및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HK\*\*\* 방습공사 / 방습필름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K110.10000	방습필름 설치	바닥, 0.01mm, 1겹	m <sup>2</sup>	548	96%
HK110.22000	방습필름 설치	바닥, 0.03mm, 2겹	m <sup>2</sup>	655	78%
HK110.23000	방습필름 설치	바닥, 0.04mm, 2겹	m <sup>2</sup>	918	75%
HK110.52000	방습필름 설치	바닥, 0.05mm, 2겹	m <sup>2</sup>	930	57%
HK210.21000	방습필름 설치	벽, 0.03mm, 2겹	m <sup>2</sup>	827	85%
HK210.22000	방습필름 설치	벽, 0.04mm, 2겹	m <sup>2</sup>	1,205	7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방습필름(폴리에틸렌필름)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HS0\*\* 벤토나이트 방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S020.10000	벤토나이트방수	매트,벽	m <sup>2</sup>	34,444	20%
HS020.20000	벤토나이트방수	매트,바닥	m <sup>2</sup>	36,115	17%
HS010.10000	벤토나이트방수	시트,벽	m <sup>2</sup>	21,133	21%
HS010.20000	벤토나이트방수	시트,바닥	m <sup>2</sup>	21,522	19%

【단가정의】

- ① 벤토나이트 방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다.
- 방수재(매트: 1219×4570×6.4mm), 시트: 1220×6700×4.5mm)
  - 실재, 알갱이, 마감줄대(시트형에만 해당)
  - PE필름(0.04mm), 카트리지(화약), 콘크리트못(32mm)
  - 와셔, 조인트 테이프
  -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비용
- ③ 바탕처리 및 보호층 설치비용은 제외한다.
- ④ 지하구조물 외부방수공사에 준한다.

## 대분류 I 목 공사

### ■ IA\*\*\* 구조목공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A300.00000	목조 마루틀 설치	콘크리트 바탕위	m <sup>2</sup>	9,206	99%
IA400.00000	목조 마루널 깔기	-	m <sup>2</sup>	11,343	98%

#### 【단가정의】

- ① 목조 마루틀 설치 또는 마루널 깔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못, 일반철물의 재료비를 포함한다. 다만, 마루널 또는 마루틀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마루 밀창널 설치 또는 마루널 사이에 단열재 설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 IB31\* 벽체 띠장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B310.10250	벽체 띠장설치	25cm×25cm	m <sup>2</sup>	4,989	77%
IB310.10300	벽체 띠장설치	30cm×30cm	m <sup>2</sup>	5,509	70%
IB310.10360	벽체 띠장설치	36cm×36cm	m <sup>2</sup>	7,639	51%
IB310.10500	벽체 띠장설치	50cm×50cm	m <sup>2</sup>	8,538	46%
IB310.20700	벽체 띠장설치	70cm×70cm	m <sup>2</sup>	13,081	31%

#### 【단가정의】

- ① 벽체 띠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자재(미송 각재, 일반못)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설치조건은 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벽체에 띠장간격 가로와 세로 각각 45cm~60cm로 설치할 때를 기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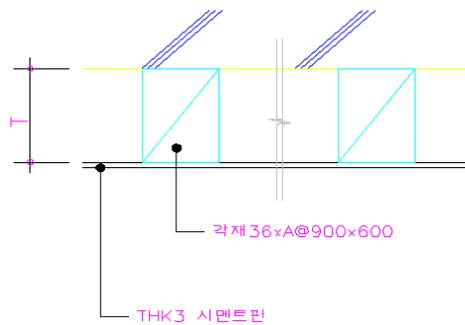
## ■ IB10\* 수장목공사/ 목조반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B101.11000	목조반자(달대없음) (일반층)	석고보드 (T=9.5mm)	m <sup>2</sup>	12,575	75%
IB101.83000	목조반자(평지붕) (최상층)	석고보드 (T=9.5mm)	m <sup>2</sup>	14,499	81%
IB100.20000	목조반자(평지붕) (최상층)	PVC판넬 (T=10T×300)	m <sup>2</sup>	23,074	57%

### 【단가정의】

- ① 고정, 구멍뚫기, 절단, 이음 등에 필요한 철물을 포함한다.
- ② 천정 설치에 필요한 가설비계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③ 현장마감 제품 경우 도장공사는 제외(칠공사에서 산출)한다.
- ④ 반자틀, 천장 마감재 설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포함한다.
- ⑤ 도배지 및 도장공사는 제외한다.
- ⑥ 보온재 설치를 제외한다.
- ⑦ 층고가 3.0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표준도】



- \* 지하층, PIT층 (세대현관, 욕실하부)
- \* T : DA-60-002참조
- \* A : 변화치수

■ IB40\* 떡매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B401.00000	떡매김	주택	m <sup>2</sup>	4,055	100%
IB402.00000	떡매김	학교,공장,사무소등	m <sup>2</sup>	2,297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떡매김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목조건물등에서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거푸집 떡매김” 또는 “구조부 떡매김”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분	주택	학교, 공장, 사무소 등
거푸집 떡매김	0.70	0.70
구조부 떡매김	0.30	0.30

## 대분류 J 금속공사

### ■ JG33\* 스텐PD 점검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G330.05020	스텐PD 점검구	500X200, 피스고정식	nr(개소)	17,029	61%
JG330.05021	스텐PD 점검구	500X210, 피스고정식	nr(개소)	19,859	62%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피스고정식 스텐레스 PD(Pipe Duct) 점검구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스텐레스 판(T=1.5), ㄱ형강(L-30×30×3), 비스(3-18mm), 원형봉강(SS41 : 9mm)의 구입 및 운반비용과 고철공제비용을 포함한다.

### ■ JG41\* 트렌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G410.10000	오픈 트렌치	한면, 아연도금 (L-25*25*3T)	m	7,663	74%
JG410.20000	오픈 트렌치	양면, 아연도금 (L-25*25*3T)	m	14,585	74%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픈 트렌치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ㄱ형강(등변, 25\*25\*3T), 평강제작, 아연도금, 녹막이페인트등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JI1\*\* 경량천정철골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I110.01000	경량철골천정틀	M-BAR H:1m미만.인서트유	m <sup>2</sup>	23,651	83%
JI120.01000	경량철골천정틀	M-BAR H:1m이상.인서트유	m <sup>2</sup>	24,188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경량철골천정틀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다.
  - 천정바탕재료의 제작 및 설치 : 달대볼트(φ 9×1,000mm), 인서트(φ 9mm, 6mm),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행거 및 핀, 채널클립, 캐링조인트
  - M-BAR형 천정틀의 제작 및 설치 : M-BAR(더블 및 싱글), BAR클립, BAR조인트, 피스류(기타부속재)
  -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비용
- ③ 경량천장의 반자틀(M-BAR) 설치까지 마감(합판텍스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④ 각종 기구 부착에 따른 천장틀 보강비용은 제외한다.
- ⑤ 본 단가는 M-BAR의 기본형 방식에 준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M-BAR의 기본형 방식이 아닌 변형방식의 경우
  - 천장면적이 협소하거나 기타 작업환경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특수구조의 천장인 경우
- ⑥ JI120.01000 "M-BAR H:1m이상"의 최대높이(천장슬래브와 천장틀까지의 높이)는 2m미만으로 한다.

■ JI6\*\* 천정점검구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I600.10000	천정점검구 설치	450X450	nr(개소)	53,886	83%
JI600.20000	천정점검구 설치	650X650	nr(개소)	62,113	8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천정점검구 보강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천정점검구(알루미늄재)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천정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정틀과 천정틀 받이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④ 잡재료 및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대분류 K 지붕 및 홈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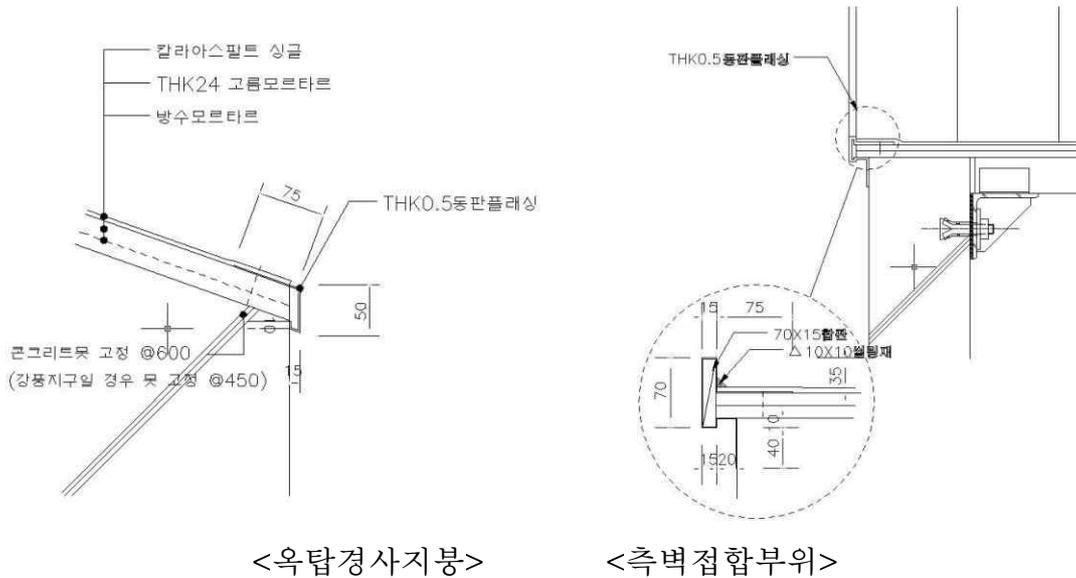
**KA51\* 동판 후레싱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A510.10000	동판후레싱 설치	T=0.3mm	m <sup>2</sup>	31,451	34%
KA510.20000	동판후레싱 설치	T=0.5mm	m <sup>2</sup>	54,934	23%
KA510.30000	동판후레싱 설치	T=0.5mm (측벽접합부위)	m	14,296	2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아스팔트 싱글잇기에 의한 지붕마감시 동판 후레싱 설치에 소요되는 동판(400×1200), 코킹등 재료비와 설치비를 포함한다.

**【표준도】 - 적용부위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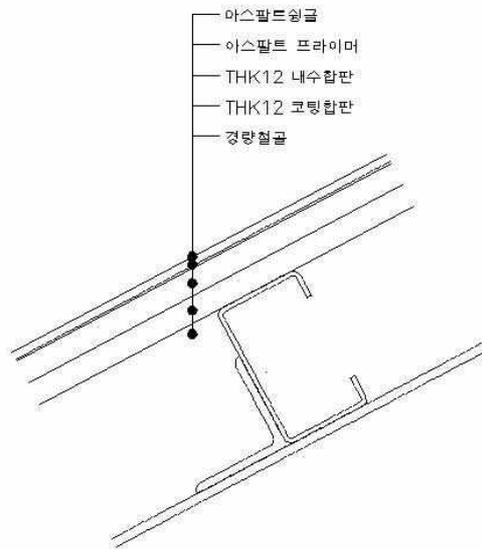
## ■ KA5\*\* 칼라아스팔트 싱글잇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A530.10000	칼라아스팔트 싱글잇기	철골경사면	m <sup>2</sup>	27,857	1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칼라아스팔트 싱글, 합판, 코팅합판등 칼라 아스팔트 싱글잇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표준도】



■ KB\*\*\* 홈통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B110.20000	칼라선홈통 설치	D-75	m	4,723	68%
KB110.30000	칼라선홈통 설치	D-75, 이중관	m	7,956	47%
KB100.40000	칼라선홈통 설치	D-100	m	6,691	66%
KB110.40000	강관선홈통 설치	D-100	m	36,480	97%
KB430.00000	처마(동판)홈통 설치	D-75	m	33,522	5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홈통 및 부속재등 자재비와 설치비(드레인 설치포함)를 포함된다. 다만, 드레인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② D-75, D-100 칼라선홈통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M 3413-FG2, 칼라), D-75 이중관 칼라선홈통 시공은 오.배수용저소음 PVC파이프(컬러)에 준한다.

■ KB11\* 홈통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B110.11000	PVC선홈통 설치	VG1, D-50	m	8,960	58%
KB110.12000	PVC선홈통 설치	VG1, D-75	m	11,614	48%
KB110.13000	PVC선홈통 설치	VG1, D-100	m	14,666	44%
KB110.21000	PVC선홈통 설치	VG2, D-50	m	7,471	84%
KB110.22000	PVC선홈통 설치	VG2, D-75	m	8,651	76%
KB110.23000	PVC선홈통 설치	VG2, D-100	m	12,134	6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PVC선홈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PVC관 구입 및 운반비와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PVC관은 일반용 경화염질비닐관(KSm<sup>3</sup>404)에 준한다.

■ KB14\* 스테인레스 선흡통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B140.21000	스테인레스 선흡통 설치	D-50mm, T-1.5mm	m	28,386	49%
KB140.22000	스테인레스 선흡통 설치	D-75mm, T-1.5mm	m	32,185	40%
KB140.23000	스테인레스 선흡통 설치	D-100mm, T-1.5mm	m	41,347	39%
KB140.35000	스테인레스 선흡통 설치	D-150mm, T-2mm	m	62,857	3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스테인레스 선흡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스테인레스 선흡통, 선흡통 지지철물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선흡통은 배관용 스테인레스 파이프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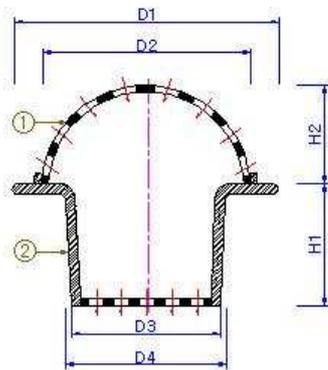
■ KC11\* 루프드레인(PVC배관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C110.10000	루프드레인/주철제	D-75mm	nr(개소)	39,827	46%
KC110.20000	루프드레인/주철제	D-100mm	nr(개소)	42,518	4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루프드레인(PVC배관용, 수직형)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설치비, 공구손료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표준도】 - 루프드레인 예시(PVC 배관용)



규격	75A	100A
D1	176	176
D2	139	139
D3	75	99
D4	81	105
H1	82	82
H2	6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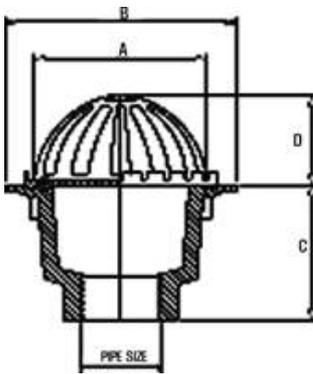
■ KC12\* 루프드레인(강관배관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C120.01000	루프드레인/주철제	D-50mm	nr(개소)	66,628	40%
KC120.02000	루프드레인/주철제	D-75mm	nr(개소)	67,012	35%
KC120.03000	루프드레인/주철제	D-100mm	nr(개소)	75,021	3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루프드레인(강관배관용, 수직형)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설치비, 공구손료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표준도】 - 루프드레인 예시(강관 배관용)



규격	50A	75A	100A
A	160	200	200
B	210	260	260
C	120	145	145
D	85	130	130

■ KC22\* 루프드레인(강관배관용 L형)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C220.01000	루프드레인(L형) /주철제	D-50mm	nr(개소)	55,762	39%
KC220.03000	루프드레인(L형) /주철제	D-100mm	nr(개소)	63,758	38%
KC220.05000	루프드레인(L형) /주철제	D-150mm	nr(개소)	137,106	2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루프드레인(강관배관용, L형, ISRD8570)의 구입, 운반, 설치비를 포함한다. 또한 공구손료 및 잡재료 비용을 포함한다.

■ KC42\* 플로어드레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C420.21000	플로어드레인/주철재	D-50mm	nr(개소)	29,500	68%
KC420.22000	플로어드레인/주철재	D-75mm	nr(개소)	36,992	58%
KC420.23000	플로어드레인/주철재	D-100mm	nr(개소)	56,819	3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플로어드레인(일반사각형, ISFD302)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설치비, 공구손료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 대분류 L 창호 및 유리공사

### ■ LF13\* 도어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F131.01000	도어록	원통형 목재문	nr(개소)	1,133	99%
LF131.02000	도어록	원통형 철재문	nr(개소)	1,048	97%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원통형 도어록의 재질별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도어록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 LF16\* 부속자재/ 도어클로우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F161.10000	도어체크 / 방화용	FSD (Fire Steel Door)	nr(개소)	40,175	22%
LF162.10000	도어체크 / 일반용	SD (Steel Door)	nr(개소)	25,677	32%

#### 【단가정의】

- ① 도어 클로우저의 자재비 및 설치비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재료 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문의 크기	문의 중량	비고
도어체크 / 방화용	950×2,100mm	40-65kg	고급방화용(1밸브)
도어체크 / 일반용	950×2,100mm	40-65kg	중급정지용(1밸브)

### ■ LF\*\*\* 부속자재/ 후로어힌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F210.10000	후로어힌지	강화유리문	nr(개소)	52,802	23%

#### 【단가정의】

- ① 후로어힌지의 자재비 및 설치비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재료 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문의 중량	비고
후로어힌지 / 강화유리문	105kg	고급강화유리문(1밸브), 정지용

■ LG\*\*\* 판유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G111.02000	맑은유리 / 일반유리	3mm	m <sup>2</sup>	8,564	65%
LG113.01000	맑은유리 / 일반유리	5mm	m <sup>2</sup>	11,382	58%
LG113.02000	맑은유리 / 일반유리	5mm (강재)	m <sup>2</sup>	14,785	66%
LG114.01000	맑은유리 / 일반유리	6mm (강재)	m <sup>2</sup>	32,625	85%
LG211.01000	색유리 / 일반유리	3mm	m <sup>2</sup>	12,114	54%
LG213.01000	색유리 / 일반유리	5mm	m <sup>2</sup>	12,910	55%
LG411.01000	무늬유리 / 일반유리	3mm	m <sup>2</sup>	10,651	46%
LG413.01000	무늬유리 / 일반유리	5mm	m <sup>2</sup>	13,239	52%
LG611.00000	에칭유리 / 일반유리	3mm	m <sup>2</sup>	15,322	47%
LG613.00000	에칭유리 / 일반유리	5mm	m <sup>2</sup>	17,677	44%
LG123.00000	강화유리	5mm	m <sup>2</sup>	19,109	34%
LG126.00000	강화유리	8mm	m <sup>2</sup>	40,208	45%
LG128.00100	강화유리	10mm	m <sup>2</sup>	52,981	49%
LG128.00120	강화유리	12mm	m <sup>2</sup>	65,181	44%

【단가정의】

- ① 유리, 녕마의 자재비 및 소운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부속자재(퍼티, 보일드유, 가스켓, 코킹재등) 비용은 제외한다.
- ③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고급자재 등 특수한 사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LH\*\*\* 복층유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LH111.00000	투명유리 / 일반유리	12mm	m <sup>2</sup>	24,193	35%
LH112.00000	투명유리 / 일반유리	16mm	m <sup>2</sup>	25,591	30%
LH114.00220	투명유리 / 일반유리	22mm	m <sup>2</sup>	33,190	22%
LH114.00240	투명유리 / 일반유리	24mm	m <sup>2</sup>	41,120	21%
LH115.00000	투명유리 / 일반유리	28mm	m <sup>2</sup>	44,536	28%
LH211.00000	칼라유리 / 일반유리	12mm	m <sup>2</sup>	27,405	29%
LH212.00000	칼라유리 / 일반유리	16mm	m <sup>2</sup>	32,746	31%
LH412.00160	로이유리 / 일반유리	16mm	m <sup>2</sup>	44,974	22%
LH414.00220	로이유리 / 일반유리	22mm	m <sup>2</sup>	52,138	24%
LH611.00000	불투명에칭유리 / 일반유리	12mm	m <sup>2</sup>	31,614	31%
LH612.00000	불투명에칭유리 / 일반유리	16mm	m <sup>2</sup>	36,664	30%
LH003.20000	양면강화유리	16mm	m <sup>2</sup>	49,435	29%

【단가정의】

- ① 복층유리, 녕마의 자재비 및 소운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② 부속자재(퍼티, 보일드유, 가스켓, 코킹재등) 비용은 제외한다.
- ③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고급자재 등 특수한 사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분류 M 타일 및 들공사**

**MA1\*\* 도기질 타일붙이기/ 내벽**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A190.11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200×200)	주방벽, 접착식	m <sup>2</sup>	24,165	57%
MA190.12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200×250)	주방벽, 접착식	m <sup>2</sup>	24,556	57%
MA190.13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400×250)	주방벽, 접착식	m <sup>2</sup>	25,098	52%
MA190.14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600×300)	주방벽, 접착식	m <sup>2</sup>	25,368	45%
MA112.21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200×250)	욕실벽, 떠붙임 12mm	m <sup>2</sup>	34,174	75%
MA112.24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200×250)	욕실벽, 떠붙임 18mm	m <sup>2</sup>	35,649	73%
MA112.22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400×250)	욕실벽, 떠붙임 12mm	m <sup>2</sup>	36,336	68%
MA112.26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400×250)	욕실벽, 떠붙임 18mm	m <sup>2</sup>	36,510	68%
MA112.16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200×250)	주방벽, 바탕12+압착5	m <sup>2</sup>	42,521	79%
MA112.14000	도기질 타일붙이기 (유색, 400×250)	주방벽, 바탕12+압착5	m <sup>2</sup>	42,614	7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유색 도기질 타일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바탕 고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바탕+압착식(MA112.16000, MA112.14000) 타일붙이기는 바탕고르기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접착식 타일 붙이기는 도기질 타일(유색), 백색시멘트, 접착재등 자재비와 타일부착, 백색줄눈 시공, 타일면 양생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③ 타일 떠붙이기는 도기질 타일(유색), 백색시멘트, 혼화재등 자재비와 타일부착, 줄눈시공, 모르타르 비빔, 타일면 양생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④ 압착식 타일 붙이기에 소요되는 도기질 타일(유색), 백색시멘트, 혼화재등 자재비와 타일부착, 줄눈시공, 모르타르비빔, 타일면 양생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⑤ 붙이는 장소면적이 1.6m<sup>2</sup> 이하이거나 복잡한 장소는 노무비의 **25%**를 가산한다.

■ MA31\* 자기질 타일붙이기 / 바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A311.22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200×200	욕실및샤워실, 바탕10+압착5	m <sup>2</sup>	23,560	75%
MA313.21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200×200	욕실및샤워실, 바탕25+압착5	m <sup>2</sup>	27,172	74%
MA312.31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200×200	발코니 바탕15+압착5	m <sup>2</sup>	24,186	74%
MA312.33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200×200	발코니 바탕20+압착5	m <sup>2</sup>	26,041	76%
MA312.41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300×300	발코니 바탕15+압착5	m <sup>2</sup>	27,990	79%
MA314.41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고급문양 300×300	현관 바탕65+압착5	m <sup>2</sup>	36,583	77%
MA314.42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고급문양 300×300	현관 바탕95+압착5	m <sup>2</sup>	43,493	76%
MA314.425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고급문양 400×400	현관 바탕45+압착5	m <sup>2</sup>	37,500	70%
MA314.43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고급문양 400×400	현관 바탕65+압착5	m <sup>2</sup>	37,650	69%
MA314.44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고급문양 400×400	현관 바탕95+압착5	m <sup>2</sup>	42,882	71%
MA314.21000	자기질 타일붙이기(바닥) / 200×200	욕실및샤워실 판넬히팅60+압착5	m <sup>2</sup>	30,349	7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유색 자기질 타일의 바닥면 설치에 소요되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 부착 비용을 포함한다.
- ② MA311.22000/MA313.21000(욕실 및 샤워실),MA312.31000/MA312.33000 /MA312.41000(발코니),MA314.41000/MA314.42000/MA314.43000 /MA314.44000(현관)은 압착식 타일 붙이기에 소요되는 자기질 타일, 백색시멘트, 혼화재등 자재비와 타일부착, 줄눈시공, 모르타르비빔, 타일면 양생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③ MA314.21000(욕실 및 샤워실, 판넬히팅60+압착5)은 압착식 타일 붙이기에 소요되는 자기질 타일, 백색시멘트, 혼화재, 섬유보강재등 자재비와 타일부착, 줄눈시공, 섬유보강재설치, 온돌바닥모르타르 타설, 타일면 양생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 ④ 붙이는 장소면적이 1.6m<sup>2</sup> 이하이거나 복잡한 장소는 노무비의 25%를 가산한다.

■ MA3\*\* 석재타일 붙이기 /바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A312.80100	석재타일 붙이기/바닥 (100×100)	바탕20+압착5	m <sup>2</sup>	38,898	63%
MA313.80100	석재타일 붙이기/바닥 (100×100)	바탕30+압착5	m <sup>2</sup>	39,856	58%
MA313.80200	석재타일 붙이기/바닥 (200×200)	바탕30+압착5	m <sup>2</sup>	46,859	4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석재타일의 바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석재타일의 부착, 줄눈설치, 타일면 양생비용을 포함한다.
- ③ 석재(인조)타일, 혼화재(타일접착용)의 구입 및 운반비와 기구손료를 포함한다.
- ④ 시멘트,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⑤ 붙이는 장소면적이 1.6m<sup>2</sup> 이하이거나 복잡한 장소는 노무비의 25%를 가산한다.

■ MA3\*\* 건축물 보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A300.00200	석재면, 타일보양	툽밥	m <sup>2</sup>	941	15%
MA300.00300	석재면, 타일보양	하드롱지	m <sup>2</sup>	966	7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건축물 보양(석재면 또는 타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MA3\*\* 비닐타일 붙임 / 바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A300.10304	비닐타일 붙임 (300×300)	바닥,2mm,왁스유	m <sup>2</sup>	13,419	73%
MA300.10305	비닐타일 붙임 (300×300)	바닥,2.5mm,왁스유	m <sup>2</sup>	14,712	71%
MA300.10306	비닐타일 붙임 (300×300)	바닥,3mm,왁스유	m <sup>2</sup>	15,411	65%
MA300.10405	비닐타일 붙임 (450×450)	바닥,2.5mm,왁스유	m <sup>2</sup>	15,575	67%
MA300.10406	비닐타일 붙임 (450×450)	바닥,3mm,왁스유	m <sup>2</sup>	16,657	64%
MA300.11304	비닐타일 붙임 (300×300)	바닥,2mm,왁스무	m <sup>2</sup>	11,493	69%
MA300.11305	비닐타일 붙임 (300×300)	바닥,2.5mm,왁스무	m <sup>2</sup>	12,157	65%
MA300.11306	비닐타일 붙임 (300×300)	바닥,3mm,왁스무	m <sup>2</sup>	12,676	60%
MA300.11405	비닐타일 붙임 (450×450)	바닥,2.5mm,왁스무	m <sup>2</sup>	13,324	62%
MA300.11406	비닐타일 붙임 (450×450)	바닥,3mm,왁스무	m <sup>2</sup>	13,702	5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비닐타일의 바닥깔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비닐타일, 접착제, 광택제(왁스시공시)등 재료비(할증포함)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재료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 비닐타일 : 비닐무석면 디럭스타일
  - 접착제 : 초산비닐계 접착제
  - 광택제 : 수성왁스

■ MA31\* 색소지타일 붙이기 / 바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A312.70100	색소지타일 붙이기/바닥 (400×400)	바탕20mm	m <sup>2</sup>	31,651	60%
MA312.70200	색소지타일 붙이기/바닥 (300×600)	바탕20mm	m <sup>2</sup>	37,543	54%
MA312.70500	색소지타일 붙이기/바닥 (물막이타일, THK15이상)	바탕20mm	m <sup>2</sup>	38,963	4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강도 색소지타일의 바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타일의 부착, 줄눈설치, 타일면 양생비용을 포함한다.
- ③ 고강도 색소지타일, 백색시멘트, 혼화재(타일접착용)의 구입 및 운반비와 기구손료를 포함한다.
- ④ 시멘트, 모래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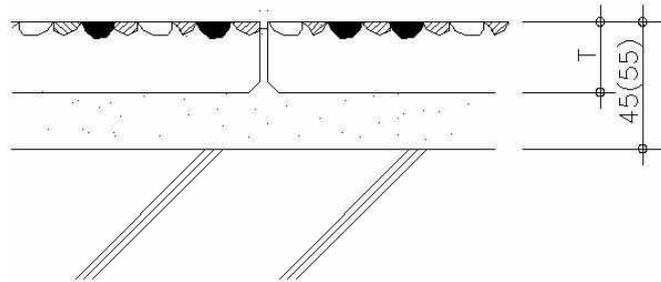
■ MB3\*\* 들붙이기/ 바닥/ 습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B313.21000	테라조 (시멘트,모래 제외)	바탕 20mm, t=25mm	m <sup>2</sup>	32,788	61%
MB313.24000	테라조 (시멘트,모래 제외)	바탕 25mm, t=25mm	m <sup>2</sup>	34,230	59%
MB313.25000	테라조 (시멘트,모래 제외)	바탕 30mm, t=25mm	m <sup>2</sup>	34,422	60%

【단가정의】

- ① 다음의 작업을 포함한다.
  - 타일(400×400×25)의 구입 및 운반비
  - 붙임 모르타르, 모르타르 비빔 및 닦기
  - 필요시 줄눈 모르타르 및 바탕고르기 모르타르
  - 필요시 조절줄눈(Control joint)과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 필요시 줄눈용 모르타르 혼화제 및 코킹제      · 양생 및 보호
- ②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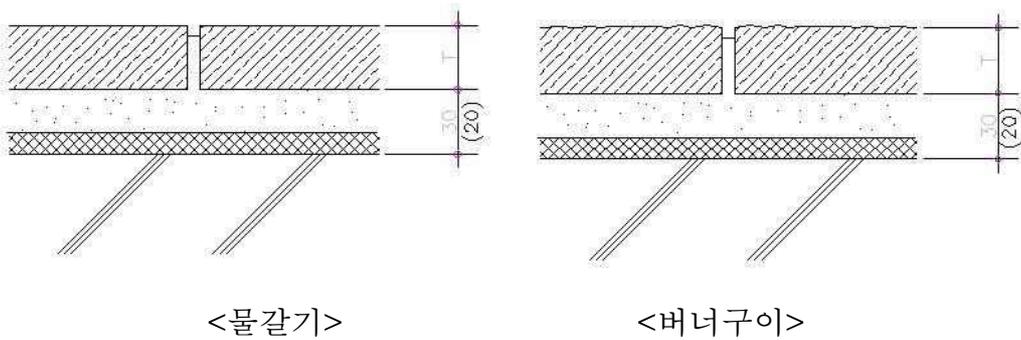
■ MB3\*\* 들붙이기/바닥/습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MB321.11000	화강석 바닥깔기	바탕 20mm, 물갈기 25mm	m <sup>2</sup>	66,916	53%
MB321.12000	화강석 바닥깔기	바탕 25mm, 물갈기 25mm	m <sup>2</sup>	71,423	53%
MB321.13000	화강석 바닥깔기	바탕 30mm, 물갈기 25mm	m <sup>2</sup>	73,037	53%
MB311.11000	화강석 바닥깔기	바탕 20mm, 버너구이 25mm	m <sup>2</sup>	73,715	51%
MB311.12000	화강석 바닥깔기	바탕 25mm, 버너구이 25mm	m <sup>2</sup>	74,641	51%
MB311.13000	화강석 바닥깔기	바탕 30mm, 버너구이 25mm	m <sup>2</sup>	76,278	51%

【단가정의】

- ① 다음의 작업을 포함한다.
  - 화강석(포천석 · 황등석, 수마 T=25mm)의 구입 및 운반비
  - 화강석(포천석 · 황등석, 버너구이 T=25mm)의 구입 및 운반비
  - 양생 및 보호
- ② 시멘트, 모래의 재료비 및 용수비를 제외한 단가이다.

【표준도】



**대분류 N 도장공사**

**■ NA01\* 녹막이(방청) 페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A014.12100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붓칠	m <sup>2</sup>	2,919	81%
NA014.12200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붓칠	m <sup>2</sup>	5,777	71%
NA014.12300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3회, 붓칠	m <sup>2</sup>	7,658	77%
NA015.31100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뿜칠	m <sup>2</sup>	2,555	61%
NA015.31200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뿜칠	m <sup>2</sup>	3,915	49%
NA015.12100	녹막이 페인트칠 (무기징크)	철재면, 1회, 붓칠	m <sup>2</sup>	4,878	63%
NA015.12200	녹막이 페인트칠 (무기징크)	철재면, 2회, 붓칠	m <sup>2</sup>	6,955	5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바탕만들기 및 도장공법별 녹막이용 페인트(KSM 6030) 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② 천장칠의 경우 노무비를 20% 가산한다.
- ③ 비계 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④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NB1\*\* 에나멜 페인트 / 조합 페인트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B122.20200	조합페인트칠	목재면 2회, 로울러칠	m <sup>2</sup>	5,981	79%
NB123.20200	조합페인트칠	목재면 천정 2회, 로울러칠	m <sup>2</sup>	7,147	81%
NB112.20200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2회, 로울러칠	m <sup>2</sup>	4,319	77%
NB113.20200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천정 2회, 로울러칠	m <sup>2</sup>	6,296	77%
NB115.31200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2회, 뿔칠	m <sup>2</sup>	1,910	24%
NB122.20300	조합페인트칠	목재면 3회, 로울러칠	m <sup>2</sup>	8,161	80%
NB123.20300	조합페인트칠	목재면 천정 3회, 로울러칠	m <sup>2</sup>	9,748	81%
NB112.20300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3회, 로울러칠	m <sup>2</sup>	7,392	77%
NB113.20300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천정 3회, 로울러칠	m <sup>2</sup>	8,726	7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바탕만들기 및 도장공법별로 조합페인트(KSM 6020) 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NC13\* 에멀존계 페인트 / 수성 페인트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C132.21200	수성페인트칠	내벽 2회, 로울러칠	m <sup>2</sup>	5,268	86%
NC133.21200	수성페인트칠	내천장 2회, 로울러칠	m <sup>2</sup>	6,551	85%
NC132.23200	수성페인트칠	외벽 2회, 로울러칠	m <sup>2</sup>	5,082	84%
NC139.21200	수성페인트칠	외천정 2회, 로울러칠	m <sup>2</sup>	5,991	83%
NC132.21300	수성페인트칠	내벽 3회, 로울러칠	m <sup>2</sup>	5,435	86%
NC133.21300	수성페인트칠	내천장 3회, 로울러칠	m <sup>2</sup>	6,742	87%
NC132.23300	수성페인트칠	외벽 3회, 로울러칠	m <sup>2</sup>	5,920	84%
NC139.21300	수성페인트칠	외천장 3회, 로울러칠	m <sup>2</sup>	9,203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바탕만들기 및 수성페인트의 로울러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바탕만들기는 콘크리트/몰탈/플라스터면에 준한다.
- ② 수성페인트의 재료는 내벽은 KSM 6010(2종), 외벽은 KSM 6010(1종) 에멀존 페인트에 준한다.
- ③ 비계 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④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NC2\*\* 에멀존계 페인트 / 걸레받이용(세라민) 페인트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C236.0020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모르타르면 2회, 붓칠	m <sup>2</sup>	8,647	8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바탕만들기 및 걸레받이용 페인트(아크릴 수지)의 붓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NF02\* 바니시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F020.00100	바니시칠	목재면 1회	m <sup>2</sup>	3,889	92%
NF020.00200	바니시칠	목재면 2회	m <sup>2</sup>	7,206	93%
NF020.00300	바니시칠	목재면 3회	m <sup>2</sup>	9,066	9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바탕만들기 및 바니시(KSM 5601) 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NJ00\* 에폭시 코팅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J001.03000	에폭시코팅	엘리베이터기계실 (EV)바닥	m <sup>2</sup>	5,022	50%
NJ001.04000	에폭시코팅	주차장바닥	m <sup>2</sup>	7,315	43%

【단가정의】

- ① 에폭시코팅(로울러칠)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 ② 에폭시코팅의 적용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주차장 바닥
도장 총 두께	0.15mm	0.3mm
도장 회수	3회	4회

- ③ 에폭시 코팅에 소요되는 재료는 에폭시 페인트(방진용), 에폭시 프라이머, 시너, 연마지(연질용)등이며, 바탕처리 및 파워트롤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④ 이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NM\*\*\* 오일스테인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M000.00100	오일스테인칠	1회	m <sup>2</sup>	2,800	97%
NM000.00200	오일스테인칠	2회	m <sup>2</sup>	5,205	98%

【단가정의】

- ① 오일스테인 칠에 소요되는 부자재 및 도장비용을 포함한다.
- ② 주자재(오일스테인 페인트)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③ 부자재(시너, 퍼티, 가솔린, 녕마)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소운반비용을 포함한다.
- ⑤ 바탕처리용 스테인 휠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NO\*\*\* 에멀존계 페인트 /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0032.00200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모르타르면 2회, 로울러칠	m <sup>2</sup>	4,664	7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에는 바탕만들기 및 낙서방지용 페인트(아크릴 수지)의 로울러 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NQ\*\*\* 결로보완용 페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Q000.01102	결로보완용 페인트	콘크리트면, 내벽2회, 로울러칠	m <sup>2</sup>	7,008	48%
NQ000.01302	결로보완용 페인트	콘크리트면, 천정2회, 로울러칠	m <sup>2</sup>	7,869	52%
NQ000.02102	결로보완용 페인트	석고보드면, 내벽2회, 로울러칠	m <sup>2</sup>	8,248	58%
NQ000.02302	결로보완용 페인트	석고보드면, 천정2회, 로울러칠	m <sup>2</sup>	9,051	6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바탕만들기, 결로보완용 페인트의 로울러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② 결로보완용 페인트 칠은 외기에 면하는 시공면적(단위면적의 20~25%)에 한하며, 기타 면적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 NQ\*\*\* 내산에폭시 페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NI000.01103	내산에폭시 페인트	내벽3회, 로울러칠	m <sup>2</sup>	9,039	61%
NI000.01203	내산에폭시 페인트	바닥3회, 로울러칠	m <sup>2</sup>	9,112	58%
NI000.01303	내산에폭시 페인트	천정3회, 로울러칠	m <sup>2</sup>	11,624	6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내산에폭시 페인칠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② 내산 에폭시페인트, 에폭시 프라이머, 시너, 연마지등 자재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OA30\* 바닥깔기/ 비닐장판 깔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A301.10000	비닐장판 깔기	T=2mm (경보행용)	m <sup>2</sup>	8,898	17%
OA301.20000	비닐장판 깔기	T=2.3mm (중보행용)	m <sup>2</sup>	12,877	13%
OA301.30000	천연 비닐장판 깔기	T=2mm (경보행용)	m <sup>2</sup>	17,514	11%

【단가정의】

- ① 비닐장판, 접착제(아스타일용)의 구입 및 운반비와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비닐장판의 적용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종류	품질기준	두께		폭	
			호칭 (mm)	허용오차 (%)	호칭 (mm)	허용오차 (%)
비닐장판 (T=2mm)	자외선코팅 (U.V.)	KS M 3507	2.0	+20, -10	1,830	+20, -10
비닐장판 (T=2.3mm)	자외선코팅 (U.V.)	KS M 3507	2.3	+20, -10	1,830	+20, -10
천연비닐장판 (T=2mm)	천연소재 바닥재	KS M 3802	2.0~2.5	+20, -10	2,000	0~+20

- ③ 이 단가는 철근콘크리트(RC)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OB1\*\* 도배공사/ 도배지바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113.00000	벽지(초배유)	실크	m <sup>2</sup>	5,335	46%
OB111.00000	벽지(초배유)	합지(폭90Cm이상, 180g/m <sup>2</sup> 이상)	m <sup>2</sup>	4,743	76%
OB118.00000	벽지(초배유)	한지 (150g/m <sup>2</sup> 이상)	m <sup>2</sup>	5,531	65%
OB123.00000	벽지(초배무)	실크	m <sup>2</sup>	4,500	42%
OB123.30000	벽지(초배무)	방염실크	m <sup>2</sup>	4,735	43%
OB121.00000	벽지(초배무)	합지(폭90Cm이상, 180g/m <sup>2</sup> 이상)	m <sup>2</sup>	3,545	67%
OB128.00000	벽지(초배무)	한지 (150g/m <sup>2</sup> 이상)	m <sup>2</sup>	4,350	57%
OB132.00000	천정지(초배유)	발포 (140g/m <sup>2</sup> 이상)	m <sup>2</sup>	6,068	79%
OB133.00000	천정지(초배유)	실크	m <sup>2</sup>	7,989	53%
OB148.01000	천정지(초배유)	한지 (150g/m <sup>2</sup> 이상)	m <sup>2</sup>	6,018	67%
OB142.00000	천정지(초배무)	발포 (140g/m <sup>2</sup> 이상)	m <sup>2</sup>	3,183	73%
OB141.00000	천정지(초배무)	합지(폭90Cm이상, 180g/m <sup>2</sup> 이상)	m <sup>2</sup>	3,675	71%
OB143.00000	천정지(초배무)	실크	m <sup>2</sup>	4,993	47%
OB143.30000	천정지(초배무)	방염실크	m <sup>2</sup>	5,244	50%
OB148.00000	천정지(초배무)	한지 (150g/m <sup>2</sup> 이상)	m <sup>2</sup>	4,466	60%

【단가정의】

- ① 자재 및 운반, 설치, 바탕처리를 포함한다.
- ② 부자재를 포함한다.
- ③ 이음새 부위 초배지 바름 포함한다.
- ④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고급자재 등 특수한 사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C3\*\* 석고판 못붙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311.00100	석고판 못붙임/바탕	벽, 일반9.5mm	m <sup>2</sup>	7,775	80%
OC311.00200	석고판 못붙임/바탕	벽, 일반12.5mm	m <sup>2</sup>	8,282	77%
OC313.00100	석고판 못붙임/바탕	벽, 방화9.5mm	m <sup>2</sup>	8,897	75%
OC313.00200	석고판 못붙임/바탕	벽, 방화12.5mm	m <sup>2</sup>	9,071	72%
OC312.00100	석고판 못붙임/바탕	벽, 방수9.5mm	m <sup>2</sup>	8,811	72%
OC312.00200	석고판 못붙임/바탕	벽, 방수12.5mm	m <sup>2</sup>	10,282	64%
OC311.10100	석고판 못붙임/치장	벽, 일반9.5mm	m <sup>2</sup>	13,617	88%
OC311.10200	석고판 못붙임/치장	벽, 일반12.5mm	m <sup>2</sup>	14,144	87%
OC313.10100	석고판 못붙임/치장	벽, 방화9.5mm	m <sup>2</sup>	14,278	86%
OC313.10200	석고판 못붙임/치장	벽, 방화12.5mm	m <sup>2</sup>	14,931	83%
OC312.10100	석고판 못붙임/치장	벽, 방수9.5mm	m <sup>2</sup>	14,671	84%
OC312.10200	석고판 못붙임/치장	벽, 방수12.5mm	m <sup>2</sup>	16,141	7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석고판 못붙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석고판, 못등 재료비(할증포함)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재료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9.5mm	12.5mm
일반	평보드 9.5×900×1800	평보드 12.5×900×1800
방화	평보드 방화 9.5×900×1800	평보드 방화 12.5×900×1800
방수	평보드 방수 9.5×900×2700	평보드 방수 12.5×1200×2400
못	일반못 N50	

- ④ 석고판을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30%를 가산한다.

■ OC3\*\* 석고판 본드붙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311.01100	석고판 본드붙임	벽, 일반9.5mm	m <sup>2</sup>	7,623	67%
OC311.01200	석고판 본드붙임	벽, 일반12.5mm	m <sup>2</sup>	8,005	63%
OC313.01100	석고판 본드붙임	벽, 방화9.5mm	m <sup>2</sup>	8,254	63%
OC313.01200	석고판 본드붙임	벽, 방화12.5mm	m <sup>2</sup>	8,927	60%
OC312.01100	석고판 본드붙임	벽, 방수9.5mm	m <sup>2</sup>	8,661	60%
OC312.01200	석고판 본드붙임	벽, 방수12.5mm	m <sup>2</sup>	10,140	5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석고판 본드붙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석고판, 본드등 재료비(할증포함)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재료규격은 다음에 준한다.

	9.5mm	12.5mm
일반	평보드 9.5×900×1800	평보드 12.5×900×1800
방화	평보드 방화 9.5×900×1800	평보드 방화 12.5×900×1800
방수	평보드 방수 9.5×900×2700	평보드 방수 12.5×1200×2400
본드	석고본드	

- ④ 석고판을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30%를 가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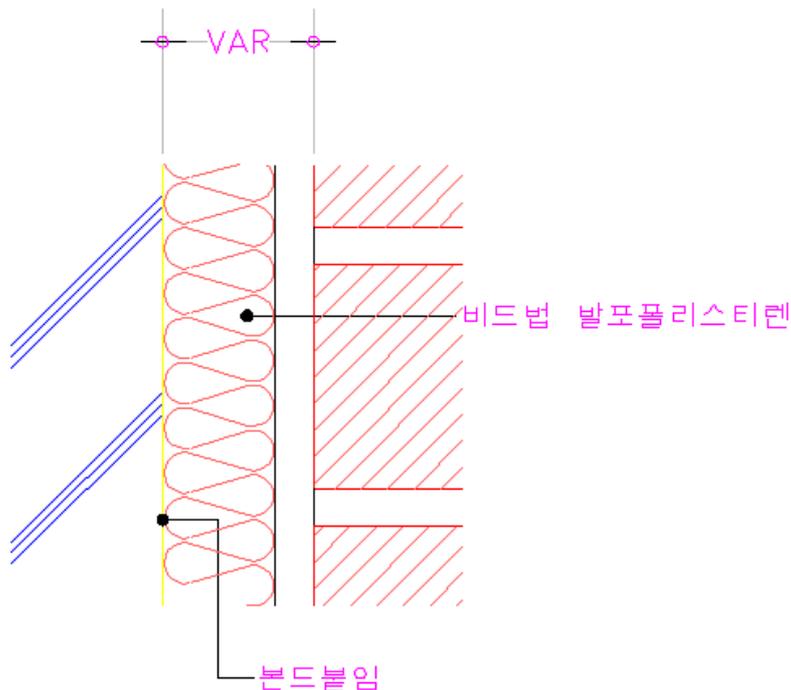
■ OD1\*\* 다공성단열재 설치/ 벽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111.342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20mm)	m <sup>2</sup>	7,156	90%
OD111.345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40mm)	m <sup>2</sup>	8,973	82%
OD111.346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50mm)	m <sup>2</sup>	9,085	79%
OD111.348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70mm)	m <sup>2</sup>	9,105	73%
OD122.31200	발포폴리스티렌 (KS특호)	압출스티로폼 (35mm)	m <sup>2</sup>	13,471	58%
OD122.31300	압출폴리스티렌 (KS특호)	압출스티로폼 (45mm)	m <sup>2</sup>	14,896	51%
OD122.31500	압출폴리스티렌 (KS특호)	압출스티로폼 (65mm)	m <sup>2</sup>	18,007	44%
OD112.11400	압출폴리스티렌 (KS특호)	압출스티로폼 (80mm)	m <sup>2</sup>	17,204	40%

【단가정의】

- ① 단열재 및 설치, 바탕고르기 , 소운반, 부속자재 및 소모재를 포함한다.
- ② 단열재 설치는 본드붙임에 준한다.

【표준도】



■ OD12\* 다공성단열재 설치/ 천정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121.341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40mm)	m <sup>2</sup>	13,330	81%
OD121.342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50mm)	m <sup>2</sup>	14,328	80%
OD121.343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60mm)	m <sup>2</sup>	14,744	81%
OD121.34500	발포폴리스티렌 (KS 4호, 밀도 0.015)	스티로폼 (80mm)	m <sup>2</sup>	15,519	81%

【단가정의】

- ① 단열재 및 설치, 바탕고르기 , 소운반, 부속자재 및 소모재를 포함한다.
- ② 단열재 설치는 본드붙임에 준한다.

■ OD13\* 다공성 단열재 설치 / 바닥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131.02100	스티로폼 깔기 (KS 2호, 밀도 0.025)	옥상바닥 2호,40mm	m <sup>2</sup>	3,600	27%
OD131.02300	스티로폼 깔기 (KS 2호, 밀도 0.025)	옥상바닥 2호,60mm	m <sup>2</sup>	4,686	25%
OD131.02400	스티로폼 깔기 (KS 2호, 밀도 0.025)	옥상바닥 2호,90mm	m <sup>2</sup>	6,153	18%
OD131.02500	스티로폼 깔기 (KS 2호, 밀도 0.025)	옥상바닥 2호,100mm	m <sup>2</sup>	7,609	16%
OD131.02600	스티로폼 깔기 (KS 2호, 밀도 0.025)	옥상바닥 2호,110mm	m <sup>2</sup>	7,628	15%
OD131.42800	스티로폼 깔기 (KS 2호, 밀도 0.025)	콘크리트타설부착 2호, 80mm	m <sup>2</sup>	9,964	63%
OD131.441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콘크리트타설부착 4호, 20mm	m <sup>2</sup>	3,613	90%
OD131.444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콘크리트타설부착 4호, 50mm	m <sup>2</sup>	5,278	75%
OD131.446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콘크리트타설부착 4호, 60mm	m <sup>2</sup>	5,687	71%
OD131.447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콘크리트타설부착 4호, 70mm	m <sup>2</sup>	6,202	66%
OD131.448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콘크리트타설부착 4호, 80mm	m <sup>2</sup>	7,310	65%
OD132.45500	압축스티로폼 깔기 (KS 특호)	콘크리트타설부착 50mm	m <sup>2</sup>	10,421	33%
OD132.45600	압축스티로폼 깔기 (KS 특호)	콘크리트타설부착 60mm	m <sup>2</sup>	13,730	33%
OD132.45750	압축스티로폼 깔기 (KS 특호)	콘크리트타설부착 75mm	m <sup>2</sup>	14,703	29%
OD132.45900	압축스티로폼 깔기 (KS 특호)	콘크리트타설부착 90mm	m <sup>2</sup>	15,619	25%
OD131.02200	스티로폼 깔기 (KS 2호, 밀도 0.025)	바닥 2호,50mm	m <sup>2</sup>	3,617	26%
OD131.041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바닥 4호,40mm	m <sup>2</sup>	2,379	46%
OD131.042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바닥 4호,50mm	m <sup>2</sup>	2,493	41%
OD131.04300	스티로폼 깔기 (KS 4호, 밀도 0.015)	바닥 4호,60mm	m <sup>2</sup>	2,888	36%
OD132.03100	압축스티로폼 깔기 (KS 3호 성능, KSM 3808)	바닥 3호,10mm	m <sup>2</sup>	4,711	82%
OD132.03200	압축스티로폼 깔기 (KS 3호 성능, KSM 3808)	바닥 3호,15mm	m <sup>2</sup>	4,730	7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바닥위에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 OD21\* 유리면보온재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211.02100	유리보온재 설치	벽2호(40mm)	m <sup>2</sup>	5,537	55%
OD211.02200	유리보온재 설치	벽2호(50mm)	m <sup>2</sup>	5,617	49%
OD211.02300	유리보온재 설치	벽2호(70mm)	m <sup>2</sup>	6,498	3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유리면 보온판의 구입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유리보온재 설치는 조적벽과 조적벽사이의 공간에 유리면 보온판을 기밀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준한다.

■ OG13\* 재료분리대설치/ 스테인레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G130.00100	재료분리대(스테인레스)	20×20×1.5	m	11,596	64%
OG130.00200	재료분리대(스테인레스)	20×30×1.5	m	12,248	63%
OG130.00300	재료분리대(스테인레스)	20×40×1.2	m	15,159	67%
OG130.00350	재료분리대(스테인레스)	20×45×1.5	m	17,651	63%

【단가정의】

- ① 다음을 포함한다.
  - 자재구입 및 운반비
  - 철물제작 및 설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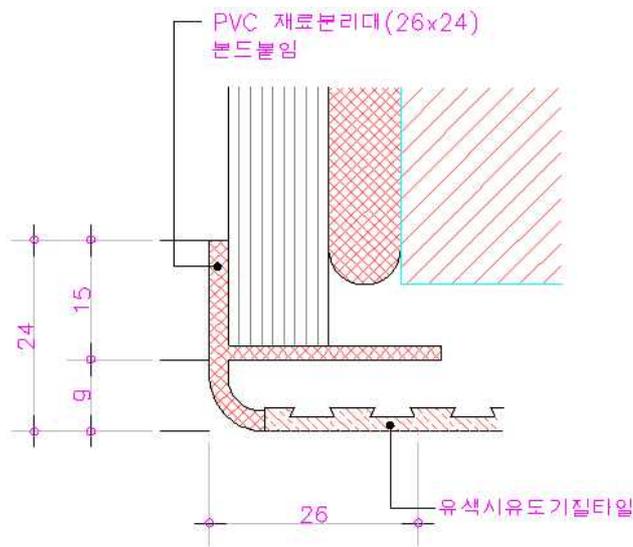
## ■ OG43\* 재료분리대설치/ 합성수지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G430.01000	재료분리대(합성수지)	25×9 강화PVC수지	m	1,608	65%
OG430.02000	재료분리대(합성수지)	20×17 강화PVC수지	m	1,659	62%
OG430.03000	재료분리대(합성수지)	26×24 강화PVC수지	m	1,734	64%

### 【단가정의】

- ① 자재 및 운반, 설치, 바탕처리와 부자재를 포함한다.
- ② 재료분리대 설치는 본드붙임에 준한다.

### 【표준도】



\* 모서리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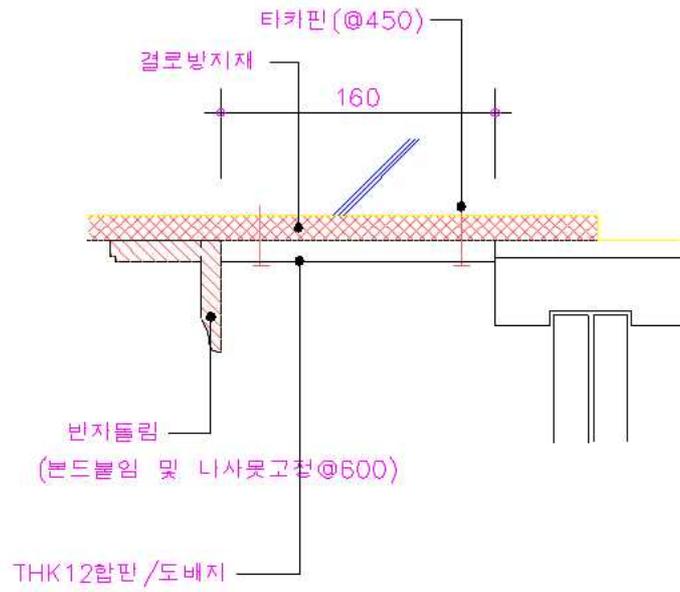
■ OH50\* 커텐박스 설치/ 합성수지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H500.10000	커텐박스 (TYPE A)	합성수지위 비닐쉬트40 × 12	m	6,370	41%
OH500.20000	커텐박스 (TYPE B)	합성수지위 비닐쉬트40 × 12	m	6,089	52%
OH500.30000	커텐박스 (TYPE A)	합성수지위 비닐쉬트60 × 15	m	5,245	42%
OH500.40000	커텐박스 (TYPE B)	합성수지위 비닐쉬트60 × 15	m	5,538	51%
OH500.50000	커텐박스 (TYPE A)	합성수지위 비닐쉬트52 × 65	m	7,728	33%
OH500.60000	커텐박스 (TYPE B)	합성수지위 비닐쉬트52 × 65	m	7,566	52%
OH500.70000	커텐박스 (TYPE A)	합성수지위 비닐쉬트72 × 65	m	8,119	30%
OH500.80000	커텐박스 (TYPE B)	합성수지위 비닐쉬트72 × 65	m	7,93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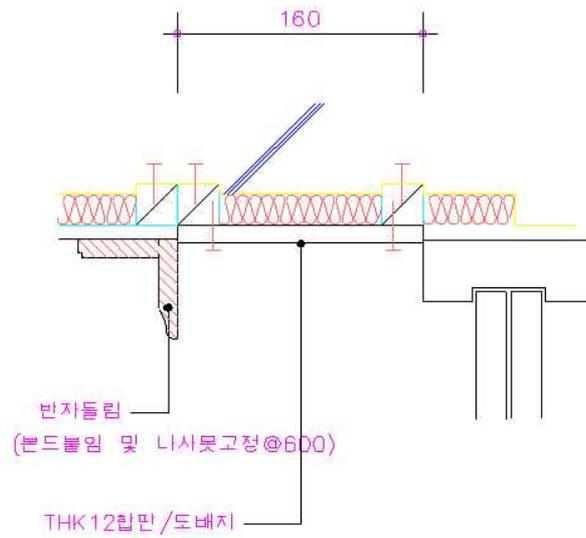
【단가정의】

- ① 자재 및 운반, 설치, 바탕처리를 포함한다.
- ② 보양을 포함한다.
- ③ 부자재를 포함한다.
- ④ 커텐박스의 설치는 본드붙임 및 나사못고정에 준한다.

【표준도】



<Type A>



<Typ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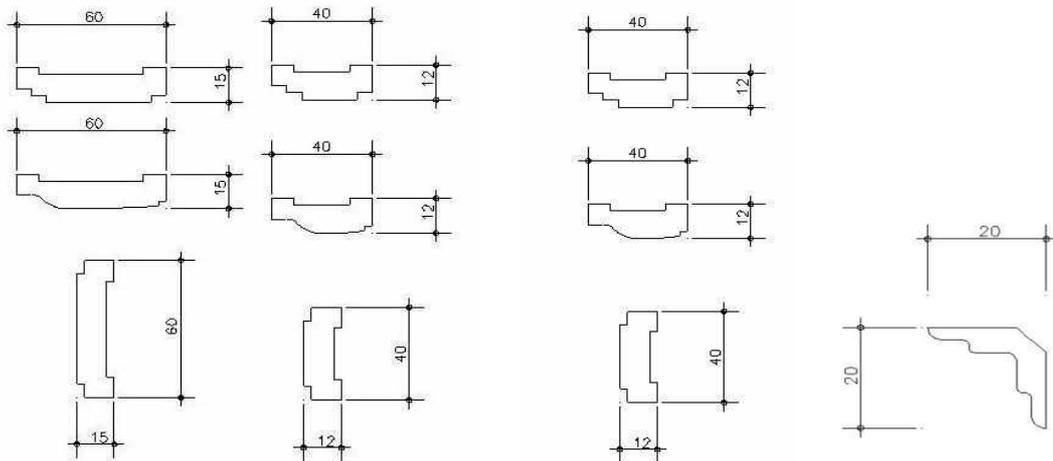
■ OI\*\*\* 몰딩 / 반자돌림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500.12000	반자돌림설치	20×20, PVC	m	1,961	76%
OI500.13000	반자돌림설치 (몰딩고정대포함)	20×20(10), PVC	m	1,973	83%
OI500.20100	반자돌림설치	40×12,합성수지위 비닐시트	m	1,861	54%
OI500.20200	반자돌림설치	60×15,합성수지위 비닐시트	m	2,165	48%
OI500.21000	반자돌림설치	45×45,합성수지위 비닐시트	m	2,569	49%
OI500.23000	반자돌림설치	52×65,합성수지위 비닐시트	m	3,969	33%
OI500.25000	반자돌림설치	72×65,합성수지위 비닐시트	m	4,334	31%
OI600.20000	반자돌림설치	45×45,MDF위 비닐시트	m	2,506	42%
OI600.30000	반자돌림설치	90×90,MDF위 비닐시트	m	6,303	41%

【단가정의】

- ① 자재 및 운반, 설치, 바탕처리를 포함한다.
- ② 보양을 포함한다.
- ③ 부자재를 포함한다.

【표준도】 - 적용 부위별 예시



< 주방, 거실 >

< 침실 >

< 공용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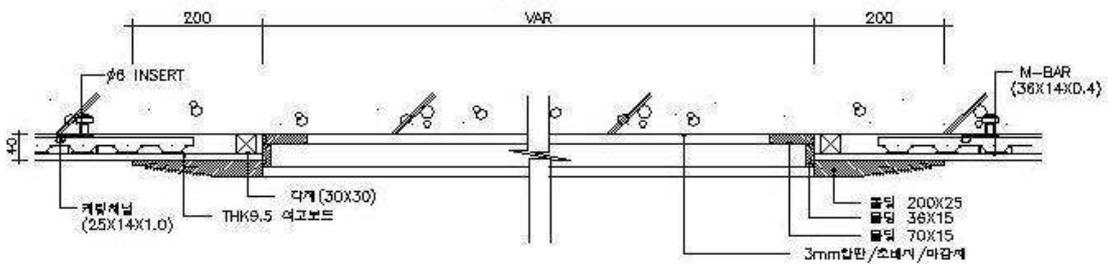
■ OI70\* 몰딩 / 천정등 박스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701.10000	천정등 박스 설치 (천정틀 있음)	1100×110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nr(개소)	55,448	39%
OI701.20000	천정등 박스 설치 (천정틀 있음)	1400×140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nr(개소)	68,359	40%
OI701.30000	천정등 박스 설치 (천정틀 있음)	1500×150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nr(개소)	85,143	40%
OI701.40000	천정등 박스 설치 (천정틀 있음)	2000×200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nr(개소)	106,864	40%
OI702.10000	천정등 박스 설치 (천정틀 없음)	1100×110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nr(개소)	55,448	37%
OI702.20000	천정등 박스 설치 (천정틀 없음)	1400×140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nr(개소)	65,985	37%
OI702.30000	천정등 박스 설치 (천정틀 없음)	1500×150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nr(개소)	69,97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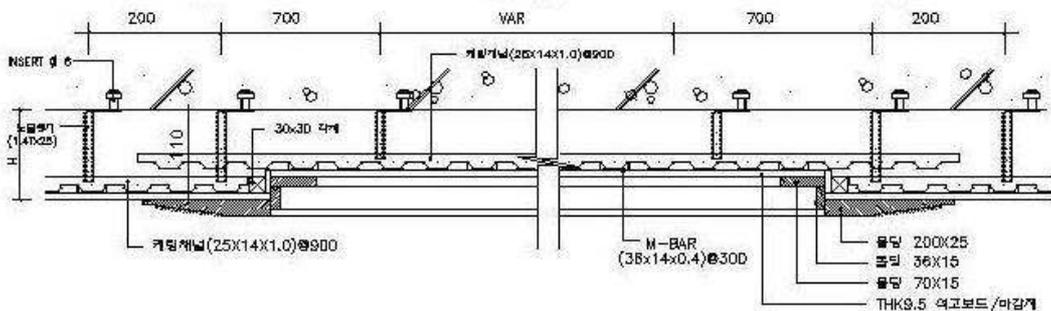
【단가정의】

- ① 자재 및 운반, 설치, 바탕처리를 포함한다.
- ② 보양을 포함한다.
- ③ 부자재를 포함한다.

【표준도】



<천정등 박스 설치-합성수지, 천정틀 없음>



<천정등 박스 설치-합성수지, 천정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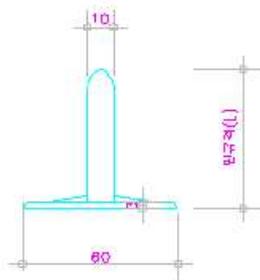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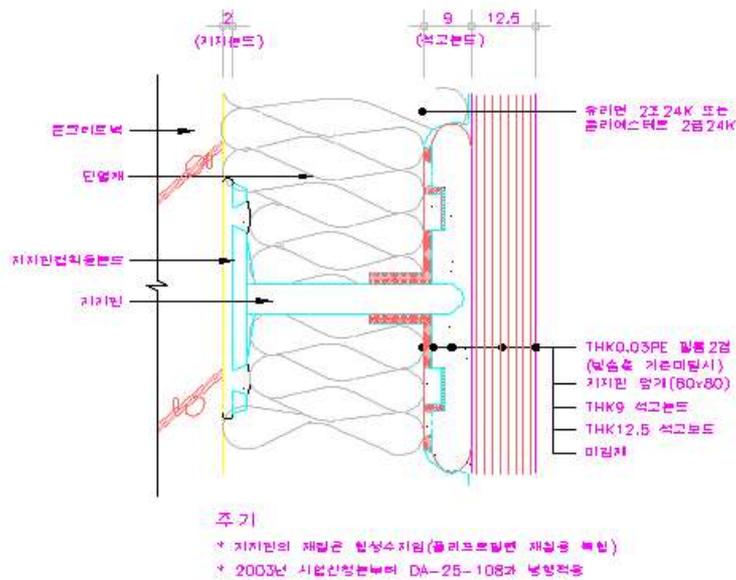
## ■ OJ11\* 복합판넬 설치/ 벽체보온층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J110.21000	벽체보온층설치 (유리면)	외벽(지지판/프리캡) / 폴리에스터 (T70)	m <sup>2</sup>	12,702	44%
OJ110.22000	벽체보온층설치 (유리면)	측벽(지지판/프리캡) / 폴리에스터 (T95)	m <sup>2</sup>	13,971	38%

### 【단가정의】

- ① 보온층 재료 및 설치비, 단열재 및 설치, 방습층 재료 및 설치, 보온층 설치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포함한다.

### 【표준도】



### 부위별 지지판 규격

구 분	적 용	설계치수				단위 MM	
		외면	내면	외면	내면	본드두께	
외 부	중 부	70	45	65	40	2+9	
	남 부	50	30	45	25	2+9	
	계 주	45	20	40	15	2+9	
측 부	중 부	95		90		2+9	
	남 부	70		65		2+9	
	계 주	50		45		2+9	

\*외면: 외기에 직접면인 경우 \*내면: 외기에 간접면인 경우

### 창문틀 주위 핀 배열기준

구 분	석고보드 폭	핀 배열
외 부	200MM 미만	1 필
	200-500MM	2 필
	500MM 초과	3 필 이상
측 부	200MM 미만	1 필
	200-400MM	2 필
	400MM 초과	3 필 이상

■ OJ\*\*\* 복합판넬 설치/ 샌드위치(단열) 패널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J411.00500	샌드위치(단열) 패널설치/벽	폴리스틸렌계 (T=50mm)	m <sup>2</sup>	30,670	43%
OJ412.00500	샌드위치(단열) 패널설치/벽	폴리우레탄계 (T=50mm)	m <sup>2</sup>	50,712	28%
OJ421.00500	샌드위치(단열) 패널설치/지붕	폴리스틸렌계 (T=50mm)	m <sup>2</sup>	30,570	30%
OJ421.01000	샌드위치(단열) 패널설치/지붕	폴리스틸렌계 (T=100mm)	m <sup>2</sup>	32,645	29%
OJ422.00750	샌드위치(단열) 패널설치/지붕	폴리우레탄계 (T=75mm)	m <sup>2</sup>	48,821	1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내부 칸막이벽 시공시 샌드위치(단열) 패널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샌드위치 패널 구입 및 운반비, 설치비, 먹매김,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 ③ 출입문과 패널의 연결부분에 사용되는 코킹, 줄눈재의 재료비 및 설치비는 제외한다.

■ OK30\* 마루귀틀설치/ 인조대리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K300.10000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T=110	m	22,725	42%
OK300.20000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T=140	m	23,274	42%

【단가정의】

- ①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에 필요한 작업을 포함한다.
- ② 자재(대리석등) 및 부자재를 포함한다.

■ OL10\* 걸레받이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L100.20000	걸레받이 설치	9×80mm (MDF위비닐시트)	m	2,253	51%
OL100.10000	걸레받이 설치	9×80mm (합성수지위비닐시트)	m	2,322	54%
OL100.30000	걸레받이 설치	9×80mm (인조대리석)	m	3,886	33%

【단가정의】

- ① 걸레받이 설치에 소요되는 재질별 재료비(접착제 포함)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② 소운반 비용을 포함하며, 뒷채움 모르타르 비용은 제외된다.

■ OM\*\*\* 유리면 흡음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M101.01000	유리면 흡음판	벽	m <sup>2</sup>	31,198	57%
OM201.01000	유리면 흡음판	천정	m <sup>2</sup>	33,953	6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유리면 흡음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유리면 흡음재(50T, 유공 G/W64K+G/C), PVC조이너(50T), 초산비닐계 접착제의 구입 및 운반비와 설치비를 포함한다.
- ③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비용을 포함한다.



##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B. 배관공사 .....	1
D. 보온공사 .....	7
F. 밸브설비 .....	14
G. 측정기기 .....	18
I. 공기조화설비 .....	19
J. 기타공사 .....	22
K. 소방공사 .....	23

## 대분류 B 배관공사

### BA\*\*\*\*\*, BB\*\*\*\*\* 강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A251.00000	백강관 옥내일반배관	D40mm (탄소용강관)	m	6,439	97%
BA261.00000	백강관 옥내일반배관	D50mm (탄소용강관)	m	8,308	97%
BA271.00000	백강관 옥내일반배관	D65mm (탄소용강관)	m	10,998	97%
BA281.00000	백강관 옥내일반배관	D80mm (탄소용강관)	m	13,375	97%
BB211.00000	백강관 옥내일반배관	D100mm (탄소용강관)	m	17,836	97%
BB221.00000	백강관 옥내일반배관	D125mm (탄소용강관)	m	24,670	97%
BB231.00000	백강관 옥내일반배관	D150mm (탄소용강관)	m	29,124	97%
BA21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15mm (탄소용강관)	m	5,149	97%
BA22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20mm (탄소용강관)	m	5,268	97%
BA23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25mm (탄소용강관)	m	6,494	97%
BA25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40mm (탄소용강관)	m	9,815	97%
BA26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50mm (탄소용강관)	m	16,228	97%
BA27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65mm (탄소용강관)	m	18,163	97%
BA28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80mm (탄소용강관)	m	20,505	97%
BB21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100mm (탄소용강관)	m	24,948	97%
BB234.00000	백강관 기계실배관	D150mm (탄소용강관)	m	39,070	97%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백강관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수압 또는 통기시험, 소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관접합, 슬리브 설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 ④ 백강관,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등의 재료비는 제외되어있다.
- ⑤ 잡자재 및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 ⑥ 부설배관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⑦ 관이음 부자재(엘보, 리듀서, 플랜지, 어댑터, 티 등)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⑧ 이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BC\*\*\*\*\*, BD\*\*\*\*\* 동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C21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15mm	m	3,311	96%
BC22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20mm	m	3,754	96%
BC23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25mm	m	4,992	96%
BC24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32mm	m	6,315	96%
BC25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40mm	m	6,407	97%
BC26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50mm	m	8,187	97%
BC27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65mm	m	10,532	97%
BC28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80mm	m	11,880	97%
BD21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L_Type D100mm	m	17,927	97%
BD213.00000	동관 공동구배관	L_Type D15mm	m	3,058	96%
BD223.00000	동관 공동구배관	L_Type D20mm	m	3,864	96%
BD243.00000	동관 공동구배관	L_Type D32mm	m	5,513	97%
BD263.00000	동관 공동구배관	L_Type D50mm	m	7,013	97%
BD273.00000	동관 공동구배관	L_Type D65mm	m	9,304	97%
BD283.00000	동관 공동구배관	L_Type D80mm	m	11,308	97%
BD233.10000	동관 공동구배관	L_Type D150mm	m	29,145	97%
BC21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15mm	m	4,318	96%
BC22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20mm	m	4,956	96%
BC23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25mm	m	6,440	96%
BC25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40mm	m	9,086	96%
BC26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50mm	m	11,082	97%
BC27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65mm	m	14,768	97%
BC28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80mm	m	15,553	97%
BD21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100mm	m	25,593	97%
BD22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125mm	m	37,113	97%
BD23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150mm	m	43,801	97%
BD24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200mm	m	61,828	97%
BD254.00000	동관 기계실배관	L_Type D250mm	m	69,263	97%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C31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15mm	m	3,069	96%
BC32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20mm	m	3,555	96%
BC33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25mm	m	4,433	96%
BC34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32mm	m	5,573	96%
BC35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40mm	m	6,233	96%
BC36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50mm	m	7,881	97%
BC37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65mm	m	10,302	97%
BC381.0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M_Type D80mm	m	12,181	97%
BC315.00000	동관 화장실배관	M_Type D15mm	m	3,843	96%
BC325.00000	동관 화장실배관	M_Type D20mm	m	4,504	96%
BC335.00000	동관 화장실배관	M_Type D25mm	m	5,575	96%
BC345.00000	동관 화장실배관	M_Type D32mm	m	7,001	96%
BC355.00000	동관 화장실배관	M_Type D40mm	m	7,745	96%
BC365.00000	동관 화장실배관	M_Type D50mm	m	10,252	9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동관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소운반, 통수, 배관시험비를 포함한다.
- ③ 관접합, 슬리브 설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 ④ 동파이프,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등의 재료비는 제외되어있다.
- ⑤ 잡자재 및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 ⑥ 부설배관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⑦ 관이음 부자재(엘보, 리듀서, 플랜지, 어댑터, 티 등)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⑧ 이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BI\*\*\*\*\*, BJ\*\*\*\*\* PVC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I241.25000	PVC 옥내일반배관 (오배수/고무링접합)	D35mm	m	4,215	100%
BI251.25000	PVC 옥내일반배관 (오배수/고무링접합)	D40mm	m	4,441	100%
BI261.25000	PVC 옥내일반배관 (오배수/고무링접합)	D50mm	m	5,852	100%
BI281.25000	PVC 옥내일반배관 (오배수/고무링접합)	D75mm	m	7,196	100%
BJ211.25000	PVC 옥내일반배관 (오배수/고무링접합)	D100mm	m	8,688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PVC관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 접합, 수압 또는 통기 시험, 소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PVC관,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 등의 재료비는 제외되어있다.
- ④ 부설배관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관이음 부자재(엘보, 리듀서, 플랜지, 어댑터, 티 등)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이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BP\*\*\*, BQ\*\*\* 관접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P110.00150	강관용접(아크용접)	D15mm	nr(개소)	4,133	98%
BP120.00200	강관용접(아크용접)	D20mm	nr(개소)	4,946	97%
BP130.00250	강관용접(아크용접)	D25mm	nr(개소)	5,991	97%
BP140.00320	강관용접(아크용접)	D32mm	nr(개소)	7,135	97%
BP150.00400	강관용접(아크용접)	D40mm	nr(개소)	8,099	97%
BP160.00500	강관용접(아크용접)	D50mm	nr(개소)	9,854	97%
BP170.00650	강관용접(아크용접)	D65mm	nr(개소)	12,310	96%
BP180.00800	강관용접(아크용접)	D80mm	nr(개소)	14,172	96%
BQ110.01000	강관용접(아크용접)	D100mm	nr(개소)	15,549	95%
BQ120.01250	강관용접(아크용접)	D125mm	nr(개소)	17,237	95%
BQ130.01500	강관용접(아크용접)	D150mm	nr(개소)	17,659	94%
BQ140.02000	강관용접(아크용접)	D200mm	nr(개소)	20,680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강관접합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부자재(용접봉) 및 공구손료를 포함한다.
- ③ 이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BP\*\*\*\*\*, BQ\*\*\*\*\* 관접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P310.37000	동관용접(Brazing)	D15mm	nr(개소)	3,040	95%
BP320.37000	동관용접(Brazing)	D20mm	nr(개소)	3,660	92%
BP330.37000	동관용접(Brazing)	D25mm	nr(개소)	4,554	92%
BP340.37000	동관용접(Brazing)	D32mm	nr(개소)	5,641	91%
BP350.37000	동관용접(Brazing)	D40mm	nr(개소)	6,321	90%
BP360.37000	동관용접(Brazing)	D50mm	nr(개소)	8,110	89%
BP370.37000	동관용접(Brazing)	D65mm	nr(개소)	10,428	88%
BP380.37000	동관용접(Brazing)	D80mm	nr(개소)	12,443	86%
BQ310.37000	동관용접(Brazing)	D100mm	nr(개소)	18,082	83%
BQ320.37000	동관용접(Brazing)	D125mm	nr(개소)	22,990	82%
BQ330.37000	동관용접(Brazing)	D150mm	nr(개소)	32,803	81%
BQ340.37000	동관용접(Brazing)	D200mm	nr(개소)	51,022	72%
BP310.36000	동관용접(Soldering)	D15mm	nr(개소)	3,024	96%
BP320.36000	동관용접(Soldering)	D20mm	nr(개소)	3,506	9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동관접합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이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대분류 D 보 은 공 사

### ■ DA\*\*\*\*\*, DB\*\*\*\*\* 관보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117.30000	관보은T=5mm	D15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1,075	71%
DA127.30000	관보은T=5mm	D20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1,442	74%
DA137.30000	관보은T=5mm	D25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1,672	74%
DA237.30000	관보은T=10mm	D25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2,045	69%
DA247.30000	관보은T=10mm	D32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2,520	72%
DA257.30000	관보은T=10mm	D40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2,773	74%
DA267.30000	관보은T=10mm	D50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2,872	72%
DA277.30000	관보은T=10mm	D65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4,241	76%
DA287.30000	관보은T=10mm	D80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4,813	76%
DA317.30000	관보은T=15mm	D15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2,128	65%
DA327.30000	관보은T=15mm	D20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2,611	67%
DA337.30000	관보은T=15mm	D25mm (은박발포폴리에틸렌)	m	2,673	67%
DA511.50000	관보은T=25mm	D15mm (유리솜매직)	m	4,259	63%
DA521.50000	관보은T=25mm	D20mm (유리솜매직)	m	4,802	66%
DA531.50000	관보은T=25mm	D25mm (유리솜매직)	m	5,403	66%
DA541.50000	관보은T=25mm	D32mm (유리솜매직)	m	6,254	68%
DA551.50000	관보은T=25mm	D40mm (유리솜매직)	m	7,239	68%
DA561.50000	관보은T=25mm	D50mm (유리솜매직)	m	7,788	65%
DA571.50000	관보은T=25mm	D65mm (유리솜매직)	m	9,552	68%
DA581.50000	관보은T=25mm	D80mm (유리솜매직)	m	9,833	6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B511.50000	관보온T=25mm	D100mm (유리섬매직)	m	13,251	70%
DB521.50000	관보온T=25mm	D125mm (유리섬매직)	m	17,267	72%
DA517.10000	관보온T=25mm	D15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5,196	76%
DA527.10000	관보온T=25mm	D2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5,312	75%
DA537.10000	관보온T=25mm	D25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6,192	76%
DA547.10000	관보온T=25mm	D32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7,079	75%
DA557.10000	관보온T=25mm	D4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8,078	77%
DA567.10000	관보온T=25mm	D5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8,371	75%
DA577.10000	관보온T=25mm	D65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0,338	77%
DA587.10000	관보온T=25mm	D8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0,588	75%
DB517.10000	관보온T=25mm	D10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4,259	77%
DA517.50000	관보온T=25mm	D15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3,939	56%
DA527.50000	관보온T=25mm	D2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4,426	59%
DA537.50000	관보온T=25mm	D25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4,839	60%
DA547.50000	관보온T=25mm	D32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5,518	59%
DA557.50000	관보온T=25mm	D4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6,455	61%
DA567.50000	관보온T=25mm	D5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7,512	58%
DA577.50000	관보온T=25mm	D65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8,884	60%
DA587.50000	관보온T=25mm	D8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0,235	63%
DB517.50000	관보온T=25mm	D10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2,198	61%
DB527.50000	관보온T=25mm	D125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5,277	61%
DB537.50000	관보온T=25mm	D15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8,471	59%
DB547.50000	관보온T=25mm	D20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24,529	57%
DA661.50000	관보온T=40mm	D50mm (유리섬매직)	m	11,207	64%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671.50000	관보온T=40mm	D65mm (유리솜매직)	m	13,033	66%
DA681.50000	관보온T=40mm	D80mm (유리솜매직)	m	13,519	62%
DD611.50000	관보온T=40mm	D100mm (유리솜매직)	m	17,745	65%
DD617.50000	관보온T=40mm	D10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7,422	55%
DD627.50000	관보온T=40mm	D125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21,646	55%
DD637.50000	관보온T=40mm	D15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25,779	51%
DD647.50000	관보온T=40mm	D20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33,293	47%
DA711.50000	관보온T=50mm	D15mm (유리솜매직)	m	7,937	57%
DA721.50000	관보온T=50mm	D20mm (유리솜매직)	m	8,724	59%
DA731.50000	관보온T=50mm	D25mm (유리솜매직)	m	9,321	60%
DA741.50000	관보온T=50mm	D32mm (유리솜매직)	m	10,740	61%
DA751.50000	관보온T=50mm	D40mm (유리솜매직)	m	12,143	61%
DA761.50000	관보온T=50mm	D50mm (유리솜매직)	m	12,813	60%
DA781.50000	관보온T=50mm	D80mm (유리솜매직)	m	15,462	61%
DB711.50000	관보온T=50mm	D100mm (유리솜매직)	m	19,990	62%
DB721.50000	관보온T=50mm	D125mm (유리솜매직)	m	24,924	63%
DA717.10000	관보온T=50mm	D15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0,111	57%
DA727.10000	관보온T=50mm	D2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0,539	53%
DA737.10000	관보온T=50mm	D25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2,279	58%
DA747.10000	관보온T=50mm	D32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3,275	59%
DA757.10000	관보온T=50mm	D4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4,283	57%
DA767.10000	관보온T=50mm	D50mm (발포폴리에틸렌포리마)	m	14,863	54%
DA777.50000	관보온T=50mm	D65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5,117	48%
DA787.50000	관보온T=50mm	D8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6,702	50%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B717.50000	관보온T=50mm	D10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19,670	47%
DB727.50000	관보온T=50mm	D125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24,393	50%
DB737.50000	관보온T=50mm	D150mm (발포폴리에틸렌매직)	m	30,658	4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배관보온에 적용되며, 위생용 급수, 급탕, 환탕, 난방관 보온공사도 이에 준한다.
- ② 이 단가는 옥내배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③ 이 단가는 보온재의 소운반 비용을 포함한다.
- ④ 보온마감에 필요한 부자재를 포함한다.

■ DC\*\*\*\*\*, DD\*\*\*\*\*, DG\*\*\*\*\* 밸브보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151.11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40mm (유리솜포리마)	nr(개소)	19,116	85%
DC161.11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50mm (유리솜포리마)	nr(개소)	19,151	84%
DC171.11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65mm (유리솜포리마)	nr(개소)	20,624	85%
DC181.11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80mm (유리솜포리마)	nr(개소)	22,261	85%
DD111.11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100mm (유리솜포리마)	nr(개소)	27,711	81%
DC15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40mm (유리솜매직)	nr(개소)	20,185	74%
DC16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50mm (유리솜매직)	nr(개소)	20,262	74%
DC17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65mm (유리솜매직)	nr(개소)	21,800	75%
DC18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80mm (유리솜매직)	nr(개소)	23,341	76%
DD11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이하	D100mm (유리솜매직)	nr(개소)	28,896	71%
DC36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초과~50t이하	D=50mm (유리솜매직)	nr(개소)	22,176	72%
DC37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초과~50t이하	D=65mm (유리솜매직)	nr(개소)	24,802	74%
DC38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초과~50t이하	D=80mm (유리솜매직)	nr(개소)	27,356	75%
DD31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초과~50t이하	D=100mm (유리솜매직)	nr(개소)	33,754	70%
DD32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초과~50t이하	D=125mm (유리솜매직)	nr(개소)	35,836	70%
DD331.15000	밸브보온 일반마감 25t초과~50t이하	D=150mm (유리솜매직)	nr(개소)	37,874	69%
DC22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20mm	nr(개소)	82,942	95%
DC23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25mm	nr(개소)	83,220	95%
DC24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32mm	nr(개소)	83,613	94%
DC25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40mm	nr(개소)	84,056	94%
DC36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50mm	nr(개소)	85,255	93%
DC37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65mm	nr(개소)	95,662	93%
DC38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80mm	nr(개소)	106,052	93%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31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100mm	nr(개소)	120,870	93%
DD32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125mm	nr(개소)	135,692	92%
DD33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150mm	nr(개소)	148,669	91%
DD341.27000	밸브보온 칼라함석마감 25t초과~50t이하	D200mm	nr(개소)	174,353	9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밸브보온에 적용하며 위생용 급수, 급탕, 환탕, 난방관 보온공사에도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이 단가는 보온재의 소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보온마감에 필요한 부자재를 포함한다.

■ DG\*\*\*\*\* 발열선(정온전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G101.20000	발열선 (세대내)	1.0m(센서,접지)	nr(개소)	17,332	17%
DG101.30000	발열선 (세대내)	1.5m(센서,접지)	nr(개소)	22,162	19%
DG101.40000	발열선 (세대내)	2.0m(센서,접지)	nr(개소)	28,254	21%
DG101.50000	발열선 (세대내)	2.5m(센서,접지)	nr(개소)	33,884	22%
DG101.60000	발열선 (세대내)	3.0m(센서,접지)	nr(개소)	35,742	24%
DG101.70000	발열선 (세대내)	3.5m(센서,접지)	nr(개소)	44,737	24%
DG101.80000	발열선 (세대내)	4.0m(센서,접지)	nr(개소)	49,427	25%
DG101.01000	발열선 (세대내)	4.5m(센서,접지)	nr(개소)	54,522	25%
DG101.02000	발열선 (세대내)	5.0m(센서,접지)	nr(개소)	60,387	25%
DG101.03000	발열선 (세대내)	5.5m(센서,접지)	nr(개소)	65,523	25%
DG101.04000	발열선 (세대내)	6.0m(센서,접지)	nr(개소)	73,272	25%
DG101.05000	발열선 (세대내)	6.5m(센서,접지)	nr(개소)	84,364	24%
DG101.06000	발열선 (세대내)	7.0m(센서,접지)	nr(개소)	84,951	25%
DG101.07000	발열선 (세대내)	7.5m(센서,접지)	nr(개소)	92,519	25%
DG101.08000	발열선 (세대내)	8.0m(센서,접지)	nr(개소)	101,177	25%
DG101.00200	발열선 (세대내)	9.0m(센서,접지)	nr(개소)	116,592	25%
DG101.00400	발열선 (세대내)	10.0m(센서,접지)	nr(개소)	122,583	2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발열선(정온전선)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세대내 급수, 급탕, 계량기 주위, 가스보일러하부배관 등의 설치기준이다.
- ③ 소운반 비용을 포함한다.

## 대분류 F 밸브 설비

### ■ FA\*\*\*\*, FB\*\*\*\*, FE\*\*\*\*, FH\*\*\*\*, FI\*\*\*\* 밸브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A121.10000	게이트밸브(청동)	D20mm 5kg/cm <sup>2</sup>	nr(개소)	9,741	31%
FA131.10000	게이트밸브(청동)	D25mm 5kg/cm <sup>2</sup>	nr(개소)	12,674	22%
FA112.10000	게이트밸브(청동)	D15mm 10kg/cm <sup>2</sup>	nr(개소)	11,714	27%
FA122.10000	게이트밸브(청동)	D20mm 10kg/cm <sup>2</sup>	nr(개소)	13,588	19%
FA132.10000	게이트밸브(청동)	D25mm 10kg/cm <sup>2</sup>	nr(개소)	19,464	13%
FA142.10000	게이트밸브(청동)	D32mm 10kg/cm <sup>2</sup>	nr(개소)	26,011	12%
FA152.10000	게이트밸브(청동)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33,109	10%
FA162.10000	게이트밸브(청동)	D50mm 10kg/cm <sup>2</sup>	nr(개소)	44,724	6%
FA172.30000	게이트밸브(주철)	D65mm 10kg/cm <sup>2</sup>	nr(개소)	83,605	16%
FA182.30000	게이트밸브(주철)	D80mm 10kg/cm <sup>2</sup>	nr(개소)	93,993	18%
FB112.30000	게이트밸브(주철)	D100mm 10kg/cm <sup>2</sup>	nr(개소)	149,251	16%
FB122.30000	게이트밸브(주철)	D125mm 10kg/cm <sup>2</sup>	nr(개소)	179,110	15%
FA282.30000	글로브밸브설치(주철제)	D80mm 10kg/cm <sup>2</sup>	nr(개소)	108,040	17%
FB212.30000	글로브밸브설치(주철제)	D100mm 10kg/cm <sup>2</sup>	nr(개소)	144,482	15%
FA312.20000	볼밸브(황동)	D15mm 10kg/cm <sup>2</sup>	nr(개소)	6,517	56%
FA322.20000	볼밸브(황동)	D20mm 10kg/cm <sup>2</sup>	nr(개소)	9,101	43%
FA332.20000	볼밸브(황동)	D25mm 10kg/cm <sup>2</sup>	nr(개소)	10,529	33%
FA342.20000	볼밸브(황동)	D32mm 10kg/cm <sup>2</sup>	nr(개소)	13,240	28%
FA352.20000	볼밸브(황동)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14,353	12%
FA362.20000	볼밸브(황동)	D50mm 10kg/cm <sup>2</sup>	nr(개소)	18,830	1%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A422.30000	스트레이나(주철제)	D20mm 10kg/cm <sup>2</sup>	nr(개소)	12,803	38%
FA432.30000	스트레이나(주철제)	D25mm 10kg/cm <sup>2</sup>	nr(개소)	15,968	29%
FA542.10000	체크밸브(청동제)	D32mm 10kg/cm <sup>2</sup>	nr(개소)	20,831	17%
FA552.10000	체크밸브(청동제)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24,080	9%
FA562.10000	체크밸브(청동제)	D50mm 10kg/cm <sup>2</sup>	nr(개소)	35,827	5%
FA542.31000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주철)	D32mm 10kg/cm <sup>2</sup>	nr(개소)	49,620	15%
FA552.31000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주철)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65,384	14%
FB512.31000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주철)	D100mm 10kg/cm <sup>2</sup>	nr(개소)	99,320	30%
FB513.31000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주철)	D100mm 20kg/cm <sup>2</sup>	nr(개소)	237,163	9%
FB532.31000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주철)	D150mm 10kg/cm <sup>2</sup>	nr(개소)	271,808	29%
FB533.31000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주철)	D150mm 20kg/cm <sup>2</sup>	nr(개소)	553,861	6%
FA652.34220	버터플라이밸브(주철제/ Lever/탬퍼미부착/물용)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60,950	8%
FA682.34220	버터플라이밸브(주철제/ Lever/탬퍼미부착/물용)	D80mm 10kg/cm <sup>2</sup>	nr(개소)	93,950	20%
FB612.34220	버터플라이밸브(주철제/ Lever/탬퍼미부착/물용)	D100mm 10kg/cm <sup>2</sup>	nr(개소)	132,827	18%
FB622.34220	버터플라이밸브(주철제/ Lever/탬퍼미부착/물용)	D125mm 10kg/cm <sup>2</sup>	nr(개소)	194,074	20%
FB632.34220	버터플라이밸브(주철제/ Lever/탬퍼미부착/물용)	D150mm 10kg/cm <sup>2</sup>	nr(개소)	223,553	21%
FA712.20000	목긴볼밸브(황동)	D15mm 10kg/cm <sup>2</sup>	nr(개소)	10,604	42%
FA722.20000	목긴볼밸브(황동)	D20mm 10kg/cm <sup>2</sup>	nr(개소)	14,002	32%
FA732.20000	목긴볼밸브(황동)	D25mm 10kg/cm <sup>2</sup>	nr(개소)	18,264	25%
FA742.20000	목긴볼밸브(황동)	D32mm 10kg/cm <sup>2</sup>	nr(개소)	26,750	19%
FA752.20000	목긴볼밸브(황동)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32,024	13%
FA762.20000	목긴볼밸브(황동)	D50mm 10kg/cm <sup>2</sup>	nr(개소)	44,675	10%
FA822.1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청동제)	D20mm 10kg/cm <sup>2</sup>	nr(개소)	34,356	13%
FA832.1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청동제)	D25mm 10kg/cm <sup>2</sup>	nr(개소)	42,564	10%
FA842.1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청동제)	D32mm 10kg/cm <sup>2</sup>	nr(개소)	53,700	9%
FA852.1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청동제)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61,946	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A862.1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청동제)	D50mm 10kg/cm <sup>2</sup>	nr(개소)	76,682	6%
FA862.3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주철제)	D50mm 10kg/cm <sup>2</sup>	nr(개소)	111,764	4%
FA872.3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주철제)	D65mm 10kg/cm <sup>2</sup>	nr(개소)	133,819	9%
FA882.3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주철제)	D80mm 10kg/cm <sup>2</sup>	nr(개소)	174,797	11%
FB812.30000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주철제)	D100mm 10kg/cm <sup>2</sup>	nr(개소)	249,149	9%
FC112.00310	감압밸브 (나사식/세대용)	D15mm 10kg/cm <sup>2</sup>	nr(개소)	41,112	10%
FC122.00320	감압밸브 설치 (나사식/물용)	D20mm 10kg/cm <sup>2</sup>	nr(개소)	68,355	9%
FC132.00320	감압밸브 설치 (나사식/물용)	D25mm 10kg/cm <sup>2</sup>	nr(개소)	175,947	3%
FC142.00320	감압밸브 설치 (나사식/물용)	D32mm 10kg/cm <sup>2</sup>	nr(개소)	258,512	2%
FC152.00320	감압밸브 설치 (나사식/물용)	D40mm 10kg/cm <sup>2</sup>	nr(개소)	286,976	2%
FC320.00000	밸런싱밸브	D20mm	nr(개소)	47,705	8%
FC330.00000	밸런싱밸브	D25mm	nr(개소)	55,803	7%
FC340.00000	밸런싱밸브	D32mm	nr(개소)	92,616	4%
FC350.00000	밸런싱밸브	D40mm	nr(개소)	97,002	5%
FC360.00000	밸런싱밸브	D50mm	nr(개소)	118,254	4%
FE211.10000	앵글밸브(청동)	D15mm 5kg/cm <sup>2</sup>	nr(개소)	11,096	42%
FE221.10000	앵글밸브(청동)	D20mm 5kg/cm <sup>2</sup>	nr(개소)	12,432	32%
FE312.10000	볼탭(청동)	D15mm 10kg/cm <sup>2</sup>	nr(개소)	6,431	66%
FE822.30000	안전밸브 설치(주철제)	D20mm 10kg/cm <sup>2</sup>	nr(개소)	47,426	6%
FE832.30000	안전밸브 설치(주철제)	D25mm 10kg/cm <sup>2</sup>	nr(개소)	66,135	5%
FH15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40mm 10kg/cm <sup>2</sup> 플렌지용	nr(개소)	32,570	27%
FH16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50mm 10kg/cm <sup>2</sup> 플렌지용	nr(개소)	41,942	24%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H17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65mm 10kg/cm <sup>2</sup> 플랜지용	nr(개소)	78,889	32%
FH18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80mm 10kg/cm <sup>2</sup> 플랜지용	nr(개소)	84,745	39%
FI11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100mm 10kg/cm <sup>2</sup> 플랜지용	nr(개소)	93,449	34%
FI12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125mm 10kg/cm <sup>2</sup> 플랜지용	nr(개소)	166,977	52%
FI13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150mm 10kg/cm <sup>2</sup> 플랜지용	nr(개소)	169,080	51%
FI141.22000	후렉시블조인트 (벨로즈)	D200mm 10kg/cm <sup>2</sup> 플랜지용	nr(개소)	319,771	51%
FH221.01110	익스펜션조인트 (단식)	D20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66,245	56%
FH231.01110	익스펜션조인트 (단식)	D25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75,740	61%
FH241.01110	익스펜션조인트 (단식)	D32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86,701	51%
FH251.01110	익스펜션조인트 (단식)	D40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102,507	57%
FH231.01210	익스펜션조인트 (복식)	D25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119,849	51%
FH241.01210	익스펜션조인트 (복식)	D32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123,432	47%
FH251.01210	익스펜션조인트 (복식)	D40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141,632	48%
FH261.01210	익스펜션조인트 (복식)	D50mm 10kg/cm <sup>2</sup> 용접식동관용	nr(개소)	169,567	43%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게이트밸브, 볼밸브, 스트레이나, 체크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목긴볼밸브, 스트레이나일체형밸브, 감압밸브, 밸런싱밸브, 앵글밸브, 볼탭, 안전밸브, 플렉시블조인트, 익스펜션조인트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잡자재(패킹, 너트, 볼트) 비용을 포함한다.
- ③ 지지철물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 ④ 지지철물 재료비는 제외되어있다.
- ⑤ 소운반 비용을 포함한다.

## 대분류 G 측정기기

### GA\*\*\*\*\*, GC\*\*\*\*\* 측정기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A411.11000	수도미터기 (직독식)	D13mm(단갑건식)	nr(개소)	33,484	51%
GA431.11000	수도미터기 (직독식)	D25mm(단갑건식)	nr(개소)	54,890	45%
GA441.12000	수도미터기 (직독식)	D32mm(복갑습식)	nr(개소)	82,920	27%
GA411.20100	수도미터기 (원격식)	D13mm(보호커버포함, 제어선제외)	nr(개소)	15,850	94%
GA412.11000	온수미터기 (직독식)	D13mm(단갑건식)	nr(개소)	37,271	49%
GA422.11000	온수미터기 (직독식)	D20mm(단갑건식)	nr(개소)	55,191	45%
GA412.20000	온수미터기 (원격식)	D13mm(보호커버포함, 제어선제외)	nr(개소)	40,831	40%
GC110.20000	압력계 (강관용)	D100mm 2-35 kg/cm <sup>2</sup>	nr(개소)	21,915	68%
GC110.10000	압력계 (동관용)	D100mm 2-35 kg/cm <sup>2</sup>	nr(개소)	12,402	54%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수도미터기, 온수미터기, 압력계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연결대의 철거,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소운반, 통수 등 배관 시험비용을 포함한다.
- ③ 다만, 수도미터기(원격식)은 수도미터기 재료비를 제외한다.

## 대분류 I 공기조화설비

### ■ II\*\*\*\*\* 온수분배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I702.1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2구수직, 노출형	nr(개소)	68,297	57%
II702.2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3구수직, 노출형	nr(개소)	86,128	49%
II702.3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4구수직, 노출형	nr(개소)	102,492	41%
II702.4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5구수직, 노출형	nr(개소)	120,131	42%
II702.5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6구수직, 노출형	nr(개소)	136,210	41%
II702.6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7구수직, 노출형	nr(개소)	153,710	42%
II702.7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8구수직, 노출형	nr(개소)	176,902	40%
II702.80000	온수분배기 (청동 또는 황동)	9구수직, 노출형	nr(개소)	194,346	40%
II701.1100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청동 또는 황동)	2구수직, 노출형 +드레인밸브	nr(개소)	97,547	37%
II701.2100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청동 또는 황동)	3구수직, 노출형 +드레인밸브	nr(개소)	124,214	34%
II701.3100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청동 또는 황동)	4구수직, 노출형 +드레인밸브	nr(개소)	148,652	32%
II701.1101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청동 또는 황동)	2구수평, 노출형 +드레인밸브배관보호관	nr(개소)	105,089	35%
II701.2101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청동 또는 황동)	3구수평, 노출형 +드레인밸브배관보호관	nr(개소)	130,401	33%
II701.3101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청동 또는 황동)	4구수평, 노출형 +드레인밸브배관보호관	nr(개소)	156,715	31%
II802.1100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폴리부틸렌)	2구수직, 노출형 +드레인밸브	nr(개소)	83,236	43%
II802.2100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폴리부틸렌)	3구수직, 노출형 +드레인밸브	nr(개소)	109,937	37%
II801.1101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폴리부틸렌)	2구수평, 노출형 +드레인밸브배관보호관	nr(개소)	87,146	39%
II801.21010	온수분배기(미세유량조절) (폴리부틸렌)	3구수평, 노출형 +드레인밸브배관보호관	nr(개소)	117,965	3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공기조화설비 온수분배기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지지철물설치 및 소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분배밸브, 공기빼기밸브, 커넥터 설치를 포함한다.
- ④ 조립, 설치, 수압시험을 포함한다.

■ II\*\*\*\*\* 온수분배기 / 실별온도조절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I700.2001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2구(개별난방)	nr(개소)	173,697	21%
II700.3001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3구(개별난방)	nr(개소)	225,373	20%
II700.4001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4구(개별난방)	nr(개소)	281,110	18%
II700.5001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구(개별난방)	nr(개소)	338,485	16%
II700.6001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구(개별난방)	nr(개소)	395,811	15%
II700.22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2/2구(지역난방)	nr(개소)	275,601	25%
II700.32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3/2구(지역난방)	nr(개소)	328,923	23%
II700.33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3/3구(지역난방)	nr(개소)	366,347	25%
II700.42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4/2구(지역난방)	nr(개소)	385,038	22%
II700.43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4/3구(지역난방)	nr(개소)	422,461	24%
II700.44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4/4구(지역난방)	nr(개소)	453,481	25%
II700.52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2구(지역난방)	nr(개소)	440,201	21%
II700.53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3구(지역난방)	nr(개소)	477,623	23%
II700.54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4구(지역난방)	nr(개소)	513,107	24%
II700.55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5구(지역난방)	nr(개소)	552,472	25%
II700.63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3구(지역난방)	nr(개소)	549,860	22%
II700.64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4구(지역난방)	nr(개소)	572,119	23%
II700.65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5구(지역난방)	nr(개소)	607,910	24%
II700.66021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6구(지역난방)	nr(개소)	646,968	25%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1700.22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2/2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257,327	25%
I1700.32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3/2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308,506	24%
I1700.33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3/3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352,774	26%
I1700.42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4/2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366,142	22%
I1700.43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4/3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407,019	24%
I1700.44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4/4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442,074	25%
I1700.52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2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418,960	21%
I1700.53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3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469,188	23%
I1700.54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4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489,145	24%
I1700.55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5/5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533,138	25%
I1700.63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3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514,434	22%
I1700.64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4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545,417	23%
I1700.65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5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588,501	24%
I1700.66020	온수분배기(실별온도조절) (청동 또는 황동)	6/6구(지역난방)홈네트워크	nr(개소)	624,805	25%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공기조화설비 온수분배기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지지철물설치 및 소운반비를 포함한다.
- ③ 분배밸브, 공기빼기밸브, 커넥터 설치를 포함한다.
- ④ 조립, 설치, 수압시험을 포함한다.
- ⑤ 실별온도조절용(개별난방) 온수분배기는 온수분배기, 실별유량제어밸브, 차압밸브세트의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다만, 온도조절기 및 온도조절기용 설치 박스의 재료비 및 설치비는 제외한다.
- ⑥ 실별온도조절용(지역난방) 온수분배기는 온수분배기, 실별유량제어밸브, 밸브제어함, 온도조절기의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다만, 온도조절용 설치박스의 재료비 및 설치비는 제외한다.

## 대분류 J 기 타 공 사

### JE\*\*\* 슬리브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E120.00500	슬리브 설치	D25mm~D50mm (바닥)	nr(개소)	6,011	97%
JE120.01000	슬리브 설치	D65mm~D100mm (바닥)	nr(개소)	7,758	97%
JE120.01500	슬리브 설치	D125mm~D150mm (바닥)	nr(개소)	9,326	97%
JE120.02500	슬리브 설치	D200mm~D250mm (바닥)	nr(개소)	10,893	97%
JE110.00500	슬리브 설치	D25mm~D50mm (벽)	nr(개소)	6,937	97%
JE110.01000	슬리브 설치	D65mm~D100mm (벽)	nr(개소)	8,303	97%
JE110.01500	슬리브 설치	D125mm~D150mm (벽)	nr(개소)	10,760	97%
JE110.02500	슬리브 설치	D200mm~D250mm (벽)	nr(개소)	14,061	97%

####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슬리브 설치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배관 사전작업으로 먹줄치기, 마팅, 소운반,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 ③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 ④ 이 단가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대분류 K 소방공사

### ■ KC\*\*\*\*, KF\*\*\*\*, KI\*\*\*\*, KJ\*\*\*\*, KO\*\*\*\* 소방밸브류, 송수구, 소화용 헤드, 소화기, 피난기구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C130.00000	소화앵글밸브	D40mm	nr(개소)	20,006	9%
KC620.00000	오토드립	D20mm	nr(개소)	9,075	45%
KF010.00000	연결송수구 (쌍구형)	D100X65X65 노출형	nr(개소)	134,863	37%
KF020.00000	연결송수구 (단구형)	D80xD65 노출형	nr(개소)	106,799	51%
KI111.00000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하향형)	D15mm 79℃이하	nr(개소)	12,131	63%
KI112.00000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하향형)	D15mm 79℃~121℃이하	nr(개소)	12,307	60%
KI113.00000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하향형)	D15mm 121℃~162℃이하	nr(개소)	12,307	59%
KI131.00000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측벽형)	D15mm 79℃이하	nr(개소)	13,579	58%
KI132.00000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측벽형)	D15mm 79~121℃이하	nr(개소)	13,975	56%
KI171.00000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원형)	D15mm 79℃이하	nr(개소)	14,063	53%
KI172.00000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원형)	D15mm 79℃~121℃이하	nr(개소)	14,239	52%
KJ401.10000	자동식소화기	LNG용 가스렌지기계식	nr(개소)	185,882	29%
KJ402.10000	자동식소화기	LPG용 가스렌지기계식	nr(개소)	238,957	37%
KO100.11000	완강기	3층용	nr(개소)	78,347	12%
KO100.21000	완강기	4층용	nr(개소)	79,809	11%
KO100.31000	완강기	5층용	nr(개소)	81,418	11%
KO100.41000	완강기	6층용	nr(개소)	84,080	10%
KO100.51000	완강기	7층용	nr(개소)	86,506	9%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K0100.61000	완강기	8층용	nr(개소)	88,815	9%
K0100.71000	완강기	9층용	nr(개소)	91,352	8%
K0100.81000	완강기	10층용	nr(개소)	93,584	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기계설비 소화앵글밸브, 오토드립, 연결송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자동식소화기, 완강기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 ② 소운반비용을 포함한다.
- ③ 스프링클러 헤드는 헤드와샤를 포함한다.
- ④ 스프링클러 헤드는 헤드렌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 ⑤ 자동식 소화기는 배관, 배선 및 연결, 경보장치, 가스차단밸브 등 시공 및 설치비 일체를 포함한다.
- ⑥ 완강기는 피난용 기준이며, 지지대(1절형),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완강기 및 지지대는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7호(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규격(최대사용하중 1000n이상 등)에 기준한다. (참고, '13년도 개정된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0호에서는 동 형식승인 제품규격을 최대사용하중 1500n이상등으로 변경 고시하고 있음)

##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참고자료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공사가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적절한 금액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규모 <sup>2)</sup>	공사종류 <sup>3)</sup>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sup>1)</sup>	비고 <sup>2)</sup>
5억 미만	일반건설(갑)	2.65	90.5%
	일반건설(을)	2.80	90.5%
	특수및기타	1.61	87.2%
	철도궤도	2.24	91.6%
	중건설	3.13	91.4%
5억~50억 미만	일반건설(갑)	1.70	91.3%
	일반건설(을)	1.82	91.3%
	특수및기타	1.06	88.0%
	철도궤도	1.45	92.4%
	중건설	2.17	92.1%
50억 이상	일반건설(갑)	1.87	94.8%
	일반건설(을)	1.99	94.8%
	특수및기타	1.16	91.5%
	철도궤도	1.59	95.9%
	중건설	2.33	95.6%

- 1) 본 산업안전관리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와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적용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정액가산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비고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공사종류(건설업)의 분류,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를 따른다.
-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 본 자료는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하며,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계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경비율

공사규모 <sup>2)</sup>	공사기간	기타경비율 <sup>1)</sup>				
		토목	건축	산업설비 (토목)	산업설비 (건축)	조경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0	5.0	6.2	5.1	5.9
	7~12개월 (365일)	6.1	5.0	6.2	5.1	5.9
	12~36개월 (1095일)	6.2	6.0	6.4	6.1	6.0
	36개월이상 (1096일)	6.3	6.3	6.4	6.4	6.1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3	6.2	6.4	6.2	6.1
	7~12개월 (365일)	6.3	6.2	6.5	6.3	6.2
	12~36개월 (1095일)	6.5	7.2	6.6	7.2	6.3
	36개월이상 (1096일)	6.5	7.4	6.7	7.5	6.4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2	6.0	6.4	6.1	6.1
	7~12개월 (365일)	6.2	6.0	6.4	6.1	6.2
	12~36개월 (1095일)	6.4	7.0	6.5	7.0	6.2
	36개월이상 (1096일)	6.5	7.3	6.6	7.4	6.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6.3	6.0	6.4	6.1	6.2
	7~12개월 (365일)	6.3	6.1	6.4	6.1	6.2
	12~36개월 (1095일)	6.4	7.0	6.6	7.2	6.3
	36개월이상 (1096일)	6.5	7.4	6.6	7.4	6.3

- 1) 본 기타경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적용한다.
-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 3)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의 정의는 조달청의 기준을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이윤율

이윤율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규모등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참 고 자 료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훈령) ..... 1
  
2.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24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5.6.30] [국토교통부훈령 제547호, 2015.6.30., 제정]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 생략**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 생략**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 생략**

##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DB구축,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측량협회장 또는 건설신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제84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8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86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이 국토교통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

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 한다.

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산출시 지역별·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표준시장단가를 당해 공사에 적용할 경우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보정기준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

정·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 항목을 각 그룹별로 분류하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 필요한 항목을 상시적으로 검토·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 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2조(표준품셈의 제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 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된 표준품셈 항목을 제1항에 의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품셈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품셈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품셈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령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97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시장단가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품셈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이하 "그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의 필요한 항목 검토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심의
  3. 기타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②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하며, 공사비산정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사비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 생략

부칙 <제547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3. 생략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5~8. 생략

제3조(금지행위 및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 생략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22호서식]

표준시장단가 축적서식

1)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계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자료

공종코드	공종명칭	단위	수량	단가			비고
				예정단가	계약단가(입찰단가)	시공단가	

\*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대상공종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I. 신청자 정보

작성기관		부 서	
성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II. 신청 신기술 개요

2-1. 신기술명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 상 귀사의 신기술 고유범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는 신기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신기술의 고유영역을 독립적인 시공프로세스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대상 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 시공절차 비교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b>비교대상 기존기술 설명</b>	* 비교대상 기술의 적정성 설명
기존기술 명 : 기존기술 특성 및 신기술 대체 적정성 - - -	

\* 비교대상 기술은 아래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특성 보유

\*\*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 또는 기존 신기술

\* 표준품셈 : [www.kict.re.kr](http://www.kict.re.kr) → 국토교통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 건설공사표준품셈

[작성예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분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b>예시1) 참고하고 있는 표준품셈 상세히 제시</b>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구체화 필요)	
	②특수시트 부착	자사기준	○
②거푸집 조립	③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4회)	
③콘크리트 타설	④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무근,50㎡미만)	
<b>예시2) 신기술 영역 세분화 제시</b>		표준품셈 관련 부분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 - 일렬말뚝 - H말뚝 -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사용	- 신기술 고유영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시 공절차 분리 필요	
↓	↓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일렬 H말뚝		
-	④ 캡형 유공강판보강 재		○

3-2 시공절차 비교표 설명자료

“3-1 시공절차 비교표”에 제시하신 기존기술 및 신기술 시공절차의 세부 항목별 설명자료를 사진 또는 도해(圖解) 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V.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

(단위)

시공절차 세부항목 <sup>①</sup>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sup>②</sup>	출처 <sup>③</sup>
	품명	규격			

[주<sup>④</sup>] ①

②

③

.

.

.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가. 항목명 : 유 형 : 조정사유 : 조정내용 :  나. 항목명 : .....	

\* 자사기준 적용 품 유형

- \*\* 1.현장실사에 의한 조사 값 적용 : 실사내용(조사기준) 간략 설명
- \*\* 2.유사 관련 기준 응용 : 응용한 품 기준 및 증감사유 설명
- \*\* 3.개발 또는 신규장비 적용 : 손료산정기준 설명

- ① “3-1 시공절차 비교표”의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아래 예시 첫칸)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 ② 소요량 적용기준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양식변경 또는 별지 사용
- ③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 ④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등, 설계시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작성예시]

(m<sup>2</sup>)

시공절차 세부항목 <sup>[1]</sup>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sup>[2]</sup>	출처 <sup>[3]</sup>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m <sup>2</sup>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m <sup>3</sup>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② 특수시트부 착	시트재료		m <sup>2</sup>	1.252	자사기준
	보통인부		인	0.042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및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동바리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예시)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 항목명 : ②특수시트부착 유 형 : 유사 관련 기준 응용( 관련품셈 건축 13-6-1 합성고분자 시트) 조정사유 : 현행품의 경우 방수공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공이 단순화되어 보통인부 로 시공가능 조정내용 : 방수공 삭제, 현행품셈 방수공+보통인부 투입기준(0.6인) 품의 70%를 보 통인부에 적용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기준 제시 * 재료의 경우 할증포함 여부 제시 * 공구손료기준(공구 종류)제시	



[별지 제24호서식]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신청 신기술명(관리번호            호)

I. 신기술 분류

기존공법 보완	자재/재료/장비 개발(보완)	독립기술	기타

II. 신청 신기술 시공절차 및 고유영역

1) 시공절차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3) 표준품셈 관련항목(장,절,항)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4) 비교대상 기존기술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5) 신청 신기술 고유영역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 Ⅲ. 신청 신기술 원가산정 적정성

1) 3-1의 시공절차 별 세부항목과 일치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2) 출처(품셈)제시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3) 현행 품셈과 비교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4) 적용단위 제시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5) 간접비 등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6) 일위대가와 일치 여부 - 항목, 수량, 단위 등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7) 적용단가, 신규자재, 노임단가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8) 수량산출 및 할증 등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9) 기존 기술과의 공사비 비교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10) 신기술 범위내에서 작성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b>보완사항</b>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기타의견

\* 해당 항목별 종합검토의견 제시

--	--

년 월 일

검토기관 :

검 토 자 :

(인)

## 2.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6.12.3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15.9.21.>

###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 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5.9.21.>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

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9.21.>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  
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  
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  
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  
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  
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  
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  
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  
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  
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  
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  
를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개정 2015.9.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5.1.1.>

26.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개정 2011.5.13, 2015.9.21.>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6.0	5억원미만	6.0
50억원~300억원미만	5.5	5억~30억원미만	5.5
300억원이상	5.0	30억원이상	5.0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

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 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 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9.21.>

##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용역수행기관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개정 2016.1.1.>

다.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2015.9.21.>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일 것) <개정 2010.4.15., 2016.1.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개정 2010.10.22.>

②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10.4.15.>

제31조의2(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4.15. 개정 2015.9.2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4.15.>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

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4.15.>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4.15. 개정 2010.10.22. 2016.12.30>

### 제7절 보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1.>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별로 직접조사·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

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13, 2015.9.21.>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6.0	5억원미만	6.0
50억원~300억원미만	5.5	5억~30억원미만	5.5
300억원이상	5.0	30억원이상	5.0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4장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46조(등록자격요건)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 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 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판매방법"이라 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 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해당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

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 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제47조제4호에 의한 자가 그 직무분야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 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비 기타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개정 2011.5.13.>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 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14
	50~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7) <개정 2016.12.30.>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년 1.0%)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6)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p>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전화 : )</p> <p>기획재정부장관 귀하</p> </div>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li> <li>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li> <li>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li> <li>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li> </ol>

22451-01511일  
'93.5.18 승인

201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별표 10 서식)

- (1) 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 (2) 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 (3) 코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 (4) 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 (5) 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 (6) 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 (7) 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 (8) 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 (9) 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 (10) 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 (11) 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 (12) 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 (13) 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 (14) 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 (15) 총생산자수
- (16) 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 (17) 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 (18) 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 (19) 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 (20) 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 (21) 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 (22) 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 (23) 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 (24) 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 (25) ~ (26) 생략
- (27) 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 (28) ~ (29) 생략

-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가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축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